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5-10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5-10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 명 선 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 동 강 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수칙

Ⅰ.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 · 사법적 · 사회적 ·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 ·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 · 정서적 · 사회 · 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Ⅳ.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4.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발 간 사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성장 · 발달 과정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학대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기틀을 마련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변화와 역경을 직면하였음에도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되어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우리 노력의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아동학대 현장조사 수행 시 학대행위자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와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히 수행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개입한 아동학대사례 및 교육, 홍보사업의 결과를 집약하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 민

머리말

2011년에는 더욱 발전된 아동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해 온 의미 있는 해입니다. 또한 최초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2001년에 발간된 이후, 열한 번째의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현황보고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현황 뿐 아니라 지난 십여 년 간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현 실태의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새로이 조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동안 발간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각 연도별로 집계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 주소를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은 10주년을 거쳐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가 향상되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 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6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Contents

[요 약] 35

제1장 서 론 67

1. 발간목적 및 배경 67
2. 주요내용 68
3. 자료수집 과정 69
4. 자료분석 69

제2장 신고 접수 현황 73

1. 신고 접수 73
   1) 신고 접수 73
   2) 기관별 신고 접수 76
2. 신고자 유형 78
3. 신고 접수 경로 유형 82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87

1. 현장조사 87
   1) 현장조사 횟수 87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87
2. 사례판정 89
   1) 사례판정 결과 89
   2)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90
   3) 피해아동 보호 수 92
3. 피해아동 보호율 92

Contents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97

1. 인구사회학적 요인 97
   1) 피해아동 97
      가. 피해아동 성별 97
      나. 피해아동 연령 97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00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1
      마. 피해아동 특성 102
   2) 학대행위자 105
      가. 학대행위자 성별 105
      나. 학대행위자 연령 106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7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09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0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사. 학대행위자 특성 112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14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14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15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16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17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17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118
   2)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19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0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0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2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4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5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26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26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6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3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37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37
나.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140
5. 서비스 제공 현황 144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44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144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Ⅱ 146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47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147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Ⅱ 149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50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150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Ⅱ 151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57

1.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157
1)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판정결과 157
2)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15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59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60
3)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1
4)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발생현황 164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64

Contents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64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5
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6
5)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67
6)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조치결과 16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69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0
2. 재학대 신고 사례 171
1) 재학대 신고 사례의 현황 171
2)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172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2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2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3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4
3)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176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6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7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78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79
마.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0
바.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1
4)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2
5)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현황 184
가.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184
나.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184
다.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185
6)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87
7) 재학대 신고 사례의 조치결과 189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9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89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190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1
3.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192
1) 다문화가족 사례의 현황 192
2)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192
가.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2
나.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3
다.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4
라.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5
3)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197
가.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7
나.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7
다.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8
라.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9
마.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00
바.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01
4)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2
5) 다문화가족 사례의 발생현황 204
가.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204
나.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205
6)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6
7) 다문화가족 사례의 조치결과 208
가.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나.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8
다.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라.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4. 사망아동 사례 211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11

Contents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11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1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2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3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15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5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5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6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7
5. 영아대상 사례 218
1) 영아대상 사례의 현황 218
2)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219
가.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9
나.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219
다.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220
라.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221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223
가.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23
나.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223
다.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24
라.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225
마.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26
바.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27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29
5) 영아대상 사례의 발생현황 230
가.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230
나.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231
6) 영아대상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32
7) 영아대상 사례의 조치결과 233

가.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3
나.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34
다.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35
라.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6
6.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 발생 사례 237
1)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37
2)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39
가.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39
나.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39
다.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40
3)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42
가.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42
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42
다.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43
4)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4
5)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6
가.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46
나.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47
6)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48
가.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8
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7. 장애아동 사례 250
1) 장애아동 사례의 현황 250
2) 장애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251
가.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51
나.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52
다.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53
라.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55
3)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257

Contents

가.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57
나.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58
다.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59
라.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260
마.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261
바.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62
4)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3
5) 장애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65
가. 장애유형별 발생장소 265
나.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266
6) 장애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7
7) 장애아동 사례의 조치결과 269
가.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9
나.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0

제6장 교육 및 홍보사업 275

제7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83

제8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2001~2011년) 293

1.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293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93
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95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96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299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300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00
5.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현황 302
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 302

2)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303
3)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304
4)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05
5)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06
6.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현황 308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건수 308
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 유형 309
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10
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1
7.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현황 312
1)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건수 312
2)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313
3)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4
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315
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19
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321
1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323
1) 연도별 사망아동 수 323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324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25
12.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327
13.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330

제9장 결론 및 제언 335

[부록] 353

용어집 353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36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363

Contents

[표목차]

〈표 1- 1〉 현황보고서 내용구성 68
〈표 2- 1〉 신고 접수 건수 73
〈표 2- 2〉 재신고 및 신규신고 접수 건수 74
〈표 2- 3〉 월별 신고 접수 현황 75
〈표 2- 4〉 기관별 신고 접수 건수 77
〈표 2- 5〉 신고자 유형 79
〈표 2- 6〉 기관별 신고자 유형 80
〈표 2- 7〉 신고 경로 유형 82
〈표 2- 8〉 기관별 신고 경로 유형 83
〈표 3- 1〉 현장조사 횟수 87
〈표 3- 2〉 기관별 현장조사 88
〈표 3- 3〉 사례판정 결과 89
〈표 3- 4〉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91
〈표 3- 5〉 피해아동 보호 수 92
〈표 3- 6〉 피해아동 보호율 93
〈표 4- 1〉 피해아동 성별 97
〈표 4- 2〉 피해아동 연령 99
〈표 4- 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1
〈표 4- 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101
〈표 4- 5〉 피해아동 특성 104
〈표 4- 6〉 학대행위자 성별 105
〈표 4- 7〉 학대행위자 연령 106
〈표 4- 8〉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108
〈표 4- 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09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별 동거여부 110
〈표 4-11〉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1
〈표 4-12〉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112
〈표 4-13〉 학대행위자 특성 113
〈표 4-14〉 아동학대 발생장소 115
〈표 4-15〉 아동학대 발생빈도 116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17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119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0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1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3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4
〈표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5
〈표 4-23〉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7
〈표 4-24〉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28
〈표 4-25〉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28
〈표 4-26〉 피해아동 보호율과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 비교 130
〈표 4-27〉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1
〈표 4-2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2
〈표 4-29〉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34
〈표 4-3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6
〈표 4-3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7
〈표 4-32〉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38
〈표 4-3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39
〈표 4-34〉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142
〈표 4-3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143

Contents

〈표 4-3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145
〈표 4-3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Ⅱ 147
〈표 4-3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148
〈표 4-3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Ⅱ 149
〈표 4-4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151
〈표 4-4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Ⅱ 153
〈표 5-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157
〈표 5-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158
〈표 5- 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59
〈표 5- 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60
〈표 5- 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1
〈표 5- 6〉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3
〈표 5- 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64
〈표 5- 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65
〈표 5- 9〉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6
〈표 5-10〉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7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68
〈표 5-1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69
〈표 5-1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0
〈표 5-1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0
〈표 5-15〉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건수 171
〈표 5-16〉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2
〈표 5-17〉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3
〈표 5-18〉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4
〈표 5-19〉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5
〈표 5-20〉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6

〈표 5-21〉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7
〈표 5-22〉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78
〈표 5-23〉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79
〈표 5-24〉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0
〈표 5-25〉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1
〈표 5-26〉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3
〈표 5-27〉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184
〈표 5-28〉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185
〈표 5-29〉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186
〈표 5-30〉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87
〈표 5-31〉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188
〈표 5-32〉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9
〈표 5-33〉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90
〈표 5-34〉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190
〈표 5-35〉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1
〈표 5-36〉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보호율 192
〈표 5-37〉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2
〈표 5-38〉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3
〈표 5-39〉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4
〈표 5-40〉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6
〈표 5-41〉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7
〈표 5-42〉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8
〈표 5-43〉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9
〈표 5-44〉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200
〈표 5-4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00
〈표 5-46〉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01

Contents

〈표 5-47〉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3
〈표 5-48〉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204
〈표 5-49〉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205
〈표 5-50〉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06
〈표 5-51〉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07
〈표 5-52〉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표 5-53〉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표 5-54〉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표 5-5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표 5-56〉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11
〈표 5-5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2
〈표 5-5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2
〈표 5-5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4
〈표 5-60〉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5
〈표 5-61〉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6
〈표 5-62〉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7
〈표 5-6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8
〈표 5-64〉 영아대상 사례 발생 건수 219
〈표 5-65〉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9
〈표 5-66〉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220
〈표 5-67〉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221
〈표 5-68〉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222
〈표 5-69〉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23
〈표 5-70〉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224
〈표 5-71〉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25

〈표 5-72〉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226
〈표 5-73〉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27
〈표 5-74〉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28
〈표 5-75〉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29
〈표 5-76〉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231
〈표 5-77〉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232
〈표 5-78〉 영아대상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33
〈표 5-79〉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4
〈표 5-80〉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35
〈표 5-81〉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35
〈표 5-82〉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6
〈표 5-83〉 시설 내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38
〈표 5-84〉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39
〈표 5-85〉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40
〈표 5-86〉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41
〈표 5-87〉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42
〈표 5-88〉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43
〈표 5-89〉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44
〈표 5-90〉 시설 유형별 학대생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5
〈표 5-91〉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46
〈표 5-92〉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47
〈표 5-93〉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8
〈표 5-94〉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49
〈표 5-95〉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251
〈표 5-96〉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52
〈표 5-97〉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53

Contents

〈표 5-98〉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54
〈표 5-99〉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56
〈표 5-100〉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57
〈표 5-101〉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59
〈표 5-102〉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60
〈표 5-103〉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261
〈표 5-104〉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262
〈표 5-105〉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63
〈표 5-106〉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4
〈표 5-107〉 장애유형별 발생장소 266
〈표 5-108〉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267
〈표 5-109〉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68
〈표 5-110〉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9
〈표 5-111〉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0
〈표 6- 1〉 일반인 교육 276
〈표 6- 2〉 신고의무자 교육 277
〈표 6- 3〉 홍보사업 279
〈표 7-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84
〈표 7- 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85
〈표 7-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289
〈표 8-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94
〈표 8- 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95
〈표 8-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98
〈표 8- 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299
〈표 8-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01
〈표 8- 6〉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 302

〈표 8- 7〉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303
〈표 8- 8〉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04
〈표 8- 9〉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시기 305
〈표 8-10〉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06
〈표 8-1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07
〈표 8-1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건수 308
〈표 8-1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09
〈표 8-1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10
〈표 8-15〉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1
〈표 8-16〉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건수 312
〈표 8-17〉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14
〈표 8-18〉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5
〈표 8-19〉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316
〈표 8-20〉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318
〈표 8-21〉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20
〈표 8-22〉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322
〈표 8-23〉 연도별 사망아동 수 324
〈표 8-24〉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25
〈표 8-25〉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26
〈표 8-26〉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328
〈표 8-27〉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330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 1〉 신고 접수 건수 74
〈그림 2- 2〉 재신고 및 신규신고 접수 건수 75
〈그림 2- 3〉 월별 신고 접수 현황 76
〈그림 2- 4〉 신고자 유형 79
〈그림 2- 5〉 신고 경로 유형 82
〈그림 3- 1〉 사례판정 결과 89
〈그림 4- 1〉 피해아동 성별 97
〈그림 4- 2〉 피해아동 연령 99
〈그림 4- 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1
〈그림 4- 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102
〈그림 4- 5〉 피해아동 특성 105
〈그림 4- 6〉 학대행위자 성별 105
〈그림 4- 7〉 학대행위자 연령 106
〈그림 4- 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8
〈그림 4- 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09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112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장소 115
〈그림 4-12〉 아동학대 발생빈도 116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18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119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0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1
〈그림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4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7

〈그림 4-19〉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격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27
〈그림 4-20〉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복귀된 시기 129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3
〈그림 4-22〉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6
〈그림 4-2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7
〈그림 4-2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38
〈그림 4-2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39
〈그림 5-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157
〈그림 5-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159
〈그림 5- 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2
〈그림 5- 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66
〈그림 5- 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68
〈그림 5- 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0
〈그림 5- 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1
〈그림 5- 8〉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172
〈그림 5- 9〉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173
〈그림 5-10〉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74
〈그림 5-11〉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176
〈그림 5-12〉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77
〈그림 5-13〉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78
〈그림 5-14〉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79
〈그림 5-15〉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0
〈그림 5-16〉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0
〈그림 5-17〉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1
〈그림 5-18〉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3
〈그림 5-19〉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184

Contents

〈그림 5-20〉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185
〈그림 5-21〉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186
〈그림 5-22〉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87
〈그림 5-23〉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188
〈그림 5-24〉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9
〈그림 5-25〉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90
〈그림 5-26〉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191
〈그림 5-27〉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91
〈그림 5-28〉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193
〈그림 5-29〉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4
〈그림 5-30〉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4
〈그림 5-31〉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6
〈그림 5-32〉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7
〈그림 5-33〉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8
〈그림 5-34〉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9
〈그림 5-3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200
〈그림 5-36〉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01
〈그림 5-37〉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02
〈그림 5-38〉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3
〈그림 5-39〉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204
〈그림 5-40〉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205
〈그림 5-41〉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06
〈그림 5-42〉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07
〈그림 5-43〉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그림 5-44〉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그림 5-4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10

〈그림 5-46〉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1
〈그림 5-4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2
〈그림 5-4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3
〈그림 5-4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5
〈그림 5-5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6
〈그림 5-5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7
〈그림 5-5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8
〈그림 5-53〉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9
〈그림 5-54〉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220
〈그림 5-55〉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221
〈그림 5-56〉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222
〈그림 5-57〉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23
〈그림 5-58〉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224
〈그림 5-59〉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225
〈그림 5-60〉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226
〈그림 5-61〉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227
〈그림 5-62〉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228
〈그림 5-63〉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30
〈그림 5-64〉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231
〈그림 5-65〉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232
〈그림 5-66〉 영아대상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33
〈그림 5-67〉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4
〈그림 5-68〉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35
〈그림 5-69〉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36
〈그림 5-70〉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6
〈그림 5-71〉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39

Contents

〈그림 5-72〉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40
〈그림 5-73〉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41
〈그림 5-74〉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42
〈그림 5-75〉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43
〈그림 5-76〉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44
〈그림 5-77〉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5
〈그림 5-78〉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247
〈그림 5-79〉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248
〈그림 5-80〉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49
〈그림 5-81〉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0
〈그림 5-82〉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251
〈그림 5-83〉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52
〈그림 5-84〉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53
〈그림 5-85〉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55
〈그림 5-86〉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57
〈그림 5-87〉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58
〈그림 5-88〉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59
〈그림 5-89〉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261
〈그림 5-90〉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262
〈그림 5-91〉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5
〈그림 5-92〉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267
〈그림 5-93〉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68
〈그림 5-94〉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70
〈그림 5-95〉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그림 8-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94
〈그림 8- 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95

〈그림 8- 3〉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96
〈그림 8- 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299
〈그림 8-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01
〈그림 8- 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302
〈그림 8- 7〉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303
〈그림 8- 8〉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04
〈그림 8- 9〉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시기 305
〈그림 8-10〉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06
〈그림 8-1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07
〈그림 8-1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건수 308
〈그림 8-1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09
〈그림 8-1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310
〈그림 8-15〉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11
〈그림 8-16〉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건수 313
〈그림 8-1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317
〈그림 8-1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중복학대 미분류) 318
〈그림 8-1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21
〈그림 8-2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323
〈그림 8-21〉 연도별 사망아동 수 324
〈그림 8-2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25
〈그림 8-2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26
〈그림 8-24〉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일반인) 329
〈그림 8-25〉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신고의무자) 329
〈그림 8-26〉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331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요 약

- 본 보고서는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10,146건의 사례를 아동학대사례 개입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것임.
- 본 보고서를 통해 분석된 2011년 아동학대사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 수집된 자료는 2011년의 신고 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및 서비스 제공,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재학대 신고 사례, 다문화가족 사례, 사망아동 사례, 영아대상 사례, 시설 내 발생 사례, 장애아동 사례,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 나아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신고 접수 현황

신고 접수

- 2011년,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0,146건에 해당됨.
  - ▷ 아동학대 신고 접수 10,146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325건(82.1%), 중복신고는 84건(0.8%), 일반상담은 1,737건(17.1%)임.
  - ▷ 아동학대 신고 접수 10,146건 중 재신고 사례는 1,325건(13.1%)이며, 2011년 신규신고는 8,821건(86.9%)임.
  - ▷ 2011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를 월별로 나누면 6월이 1,152건(1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9월 951건(9.4%), 5월 929건(9.2%), 7월 923건(9.1%), 10월 882건(8.7%)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시이며 1,253건임.

▷ 기관별 신고 접수 건수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401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399건,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397건,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51건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충청남도 88.8%, 서울특별시 88.6%, 전라북도 87.3%, 경상남도 85.9%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기관별로 살펴보면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97.4%,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96.1%,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93.8%,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92.9%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5%,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7.5%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14.0%임. 다음으로는 교원 7.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1%,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2.4% 순으로 나타남.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신고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 16.9%, 이웃 · 친구 11.9%, 친인척 5.5%, 경찰 3.8%의 순으로 파악됨.

신고 접수 경로 유형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로의 유형을 살펴보면 1577-1391을 통한 신고가 9,470건(93.3%)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콜센터 '129' 382건(3.8%), 내방 194건(1.9%), 인터넷 100건(1.0%)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8,325건에 대한 현장조사는 총 14,278회에 걸쳐 실시됨.
-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 사례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약 1.7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사례판정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6,058건(72.8%), 잠재위험사례 745건(8.9%), 일반사례 1,522건(18.3%)임.
- 아동학대사례 6,058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5,963명으로 나타남.

피해아동 보호율

-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1년 지역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수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 아동인구 천 명 당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인 피해아동 보호율은 0.63‰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1.38‰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0.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220,190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 경우 477,934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333,831명, 대전광역시 327,569명, 경상남도

322,212명, 경기도는 320,078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1개 기관 당 약 62,151명이었고, 강원도는 90,881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3,069건(50.7%), 여아 2,989건(49.3%)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임.
-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0~12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1,44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재학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3~15세가 1,317건(21.7%),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105건(18.3%)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1,988건(32.8%), 친부모가족 외 형태 3,688건(60.9%), 대리양육형태 213건(3.5%), 기타와 파악 안 됨은 각각 67건(1.1%), 102건(1.7%)으로 나타남.
  - ▷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 모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44.0%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 한편 피해아동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28건(0.4%), 30건(0.5%), 155건(2.6%)의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이 1,881건(31.0%), 비수급권 대상이 4,166건(68.8%), 파악 안 됨이 11건(0.2%)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크게 장애, 정서 · 정신건강, 적응 · 행동, 발달 · 신체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항 · 충동 ·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 · 행동 특성을 지닌 경우가 전체 피해아동 중 5,348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오락중독 등과 같은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5,085건(35.6%)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3,442건(56.8%), 여성 2,606건(43.0%)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비교적 많았으며, 파악 안 됨은 10건(0.2%)임.
-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2,560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920건(31.7%)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연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 친인척, 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83.1%에 해당하는 5,039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였으며, 친인척 349건(5.8%), 타인 574건(9.5%)로 나타남. 특히 친부와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는 각각 2,855건(47.1%), 1,963건(32.4%)임.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4,739건으로 전체의 78.2%에 해당하였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1,319건(21.8%)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1,503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 829건(13.7%), 전업주부 692건(11.4%), 기타 499건(8.2%), 서비스 및 판매직 456건(7.5%), 비정규직 424건(7.0%) 순으로 나타남. 전체 학대행위자의 2,756건(45.5%)이 무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이 1,483건(24.5%), 비수급권 대상이 4,305건(71.1%), 파악 안 됨이 270건(4.4%)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1.8%에 해당하는 6,515건이며,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4,680건(22.9%), 부부 및 가족 갈등 2,115건(10.3%)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6.6%에 해당되는 5,246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어린이집과 기타에 해당하는 사례는 각각 159건(2.6%), 집근처 또는 길가의 경우 150건(2.5%)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624건(43.3%),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054건(17.4%)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중복학대가 2,621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학대 226건(3.7%), 유기 53건(0.9%)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3,312건(36.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방임이 2,919건(31.9%), 신체학대 2,464건(27.0%), 성학대 368건(4.0%), 유기 85건(0.9%)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성학대 사례의 경우, 남아 46건(12.5%), 여아 322건(87.5%)으로 여아의 비율이 약 7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의 경우, 유기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7~12세 아동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였으며,학교생활 등으로 외부인에게 학대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원인 중 하나임. 반면 유기 사례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유기된 전체 아동 중 46건(54.1%)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출산하자마자 병원 또는 시설 등에 자녀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유기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 사례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이 포함된 적응 · 행동 특성을 가장

많이 나타냄. 유기 사례의 경우 45건(40.9%)에 해당하는 아동이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유기 사례 아동의 과반수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이기 때문에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전체 유기사례의 77건(90.6%)이 부모에 의해 발생함. 하지만 성학대의 경우,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77건(48.1%)으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타인에 의해 발생한 성학대는 123건(33.4%)으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모든 아동학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임. 한편 성학대의 경우 다른 학대 유형 사례에 비해 성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가 월등히 높음.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을 원가정에 보호한 경우가 4,462건(73.7%)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는 1,555건(25.6%), 타기관으로 의뢰된 사례는 40건(0.7%), 아동이 사망한 경우 1건(0.0%)으로 파악됨. 이를 종합해보면, 피해아동이 격리보호된 경우보다 원가정보호가 약 2.9배 정도 많이 나타남.

  ▷ 피해아동이 초기에 격리보호 조치된 경우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시보호가 946건(1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족에 의해 보호되는 사례는 270건(4.4%)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기타 170건(2.8%), 장기보호조치 165건(2.7%), 가정위탁 4건(0.1%) 순으로 나타남.

  ▷ 초기 격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413건(26.6%)이었으며, 이들의 복귀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격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에 원가정으로 복귀된 경우가 265건(64.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격리보호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원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94건(22.8%)임.

  ▷ 피해아동의 초기 격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41.1%로 가장 높게 드러났으며, 대구광역시 39.7%, 인천광역시 30.3%, 부산광역시 29.6%

순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성학대 및 유기를 제외한 학대 유형에서 모두 원가정보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함. 성학대의 경우, 208건(56.5%)에 해당하는 사례의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되었으며, 격리보호 조치는 155건(42.1%)에 해당하는 사례에 한하여 이루어짐. 유기는 65건(76.5%)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격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짐.

▣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1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6,058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함.

▷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3,956건(65.3%), 격리보호 1,585건(26.2%), 가정복귀 413건(6.8%), 타기관 의뢰 91건(1.5%), 사망 13건(0.2%)으로 파악됨. 격리보호 조치된 아동들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호 668건(11.0%), 일시보호 471건(7.8%), 친인척 보호 305건(5.0%), 기타 119건(2.0%), 가정위탁 22건(0.4%)으로 나타남.

▷ 2011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보호가 3,164건(72.1%)이나 격리보호는 955건(21.8%)으로 파악됨. 그러나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792건(47.4%), 격리보호 630건(37.7%)으로 파악됨.

▷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조치하는 비율이 50.8%에서 68.5%의 분포를 나타냄. 유기 사례의 경우 피해아동을 격리보호하는 비율은 68건(80.0%)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5,058건(8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 고발과 만나지 못한 경우는 각각 389건(6.4%), 367건(6.1%)임. 타기관 의뢰는 244건(4.0%)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 및 정서학대와 방임, 유기 사례에서 지속관찰 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는 고소 · 고발이 162건(44.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고소 ·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389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수사는 199건(51.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법원공판 및 판결은 98건(25.2%), 검찰수사의 경우 92건(23.6%)을 나타냄.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 · 고발의 결과를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고소 · 고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아동학대 유형은 성학대로 123건임.

서비스 제공 현황

▣ 2011년과 2011년 이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중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310,406회임.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1년 이전과 2011년에 신고 접수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담서비스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61,253건(38.3%), 63,337건(42.1%)임. 다음으로는 일시보호서비스였으며 2011년 이전사례의 경우 43,176건(27.0%), 2011년 신고사례는 43,692건(29.0%)을 차지함.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각각 107,275건(39.9%), 17,315건(42.2%)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비스 종류는 일시보호서비스로 진행 중 사례에서는 77,398건(28.7%), 사후관리 사례는 9,470건(23.1%)임.

▣ 2011년과 2011년 이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중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51,147회임.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1년 이전과 2011년에 신고 접수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19,472건(80.2%), 21,836건(81.3%)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의료서비스는 각각 2,708건(11.2%), 2,893건(10.8%)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의 종결 여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경우에서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35,992

건(82.1%), 5,316건(72.7%)를 나타냄. 의료서비스의 경우 진행 중 사례에서는 4,525건(10.3%),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1,076건(14.7%)을 나타냄.

▣ 2011년과 2011년 이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중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총 32,071회임.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1년 이전과 2011년에 신고 접수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부분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각각 12,733건(86.0%), 15,433건(89.4%)임.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진행 중 사례의 경우 24,434건(87.5%), 사후관리 사례의 경우 3,732건(89.8%)을 나타냄.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정결과는 신고의무자가 2,135건(79.0%), 비신고의무자가 3,923건(69.8%)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유치원 종사자 35건(87.5%),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39건(86.6%),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70건(85.4%), 교원 505건(85.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0건(83.3%)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만 10~12세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496건(23.2%)과 951건(24.2%)을 나타냄. 다음으로는 만 13~15세로 각각 481건(22.5%)과 836건(21.3%)을 차지함.

▷ 신고의무자를 직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원에 의한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연령이 만 13~15세인 경우가 167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은 피해아동이 만 1세 미만일 때 각각 3건(37.5%)과 22건(30.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 및 유치원 종사자에 의해 발견된 피해아동 연령은 만 4~6세로 각각 59건(45.4%)과 13건(37.1%)을 나타냄.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 피해아동 연령이 만 13~15세일 때가 13건(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분포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중 부모 1,767건(82.8%), 친인척 117건(5.5%), 타인 207건(9.7%)을 차지하였으며,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부모 3,272건(83.4%), 친인척 232건(5.9%), 타인 367건(9.4%)을 나타냄.

-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중 발생장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모두 가정 내가 1,834건(85.9%), 3,412건(87.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아동학대의 발생빈도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039건(48.7%), 1,585건(40.4%)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2~3일에 한 번 정도 발생한 경우가 각각 340건(15.9%), 714건(18.2%)임.

- 아동학대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중복학대가 874건(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방임 745건(34.9%), 정서학대 253건(11.9%)이었음.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중복학대가 1,747건(44.5%), 방임 1,038건(26.5%), 정서학대 656건(16.7%)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직군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군에서 중복학대의 발견율이 가장 높았음. 하지만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성매매 피해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 발견율이 각각 75.0%, 30.0%, 16.7%, 15.4%로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 모두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1,603건(75.1%), 2,859건(72.9%)임. 격리보호의 경우 신고의무자 519건(24.3%), 1,036건(26.4%)으로 높게 나타남.

-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속관찰을 취하는 사례가 각각 1,754건(82.2%), 3,304건(8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재학대 신고 사례

- 2011년에 접수된 재학대 신고 사례는 총 563건이며, 이는 전체 피해아동 대비 9.3%에 해당함. 실제 재학대를 경험한 아동 수는 총 559명임.
-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을 보면 남아 269건(47.8%), 여아 294건(52.2%)으로 비슷한 양상이나 여아가 남아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음.
-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만 13~15세가 167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160건(28.4%), 만 7~9세가 102건(18.1%)임.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116건(20.6%), 친부모가족 외 형태 406건(72.1%), 대리양육 33건(5.9%)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세부현황은 부자가정이 202건(35.9%), 모자가정과 재혼가정이 각각 99건(17.6%), 45건(8.0%)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 · 행동 부분이 655건(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 · 정신건강 또한 512건(34.3%)으로 높게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 · 행동 특성으로는 반항 · 충동 · 공격성이 97건(6.5%), 학교 부적응 90건(6.0%)이었으며, 정서 · 정신건강 특성으로는 불안 110건(7.3%), 주의산만이 89건(6.0%)으로 파악됨.
-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362건(64.3%), 여성 201건(35.7%)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8배 많음.
-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40대가 268건(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55건(27.5%), 50대 97건(17.2%)을 차지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167건(2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단순노무직 또한 114건(20.2%)으로 많았음.
-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5.4%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가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만 원 미만의 경우는 121건

(21.5%)이었음.

- 학대행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222건에 해당하는 39.4%의 학대행위자가 수급권 대상이었으며 323건(57.4%)은 비수급권 대상, 나머지 18건(3.2%)은 파악되지 않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679건(3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28건(20.5%), 중독문제 228건(10.9%)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482건(85.6%)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25건(4.4%), 타인 51건(9.1%)으로 파악됨.
-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부가 503건(89.3%)으로 가장 많았고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어린이집 등은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54건(4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3일에 한 번 108건(19.2%), 일주일에 한 번 83건(14.7%)임.
- 재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사례종결 후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며 전체 재학대 신고 사례의 131건(23.3%)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사례종결 후 3년 이상으로 129건(22.8%),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으로 116건(20.6%)임.
-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복학대가 274건(48.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은 방임으로 147건(26.1%)임. 중복학대 유형을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340건(3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방임 266건(29.5%), 신체학대 257건(28.5%)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388건(68.9%), 격리보호조치가 169건(30.0%), 타기관 의뢰 6건(1.1%)으로 파악됨. 최종조치결과의 경우 역시 원가정보호 조치가 326건(57.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격리보호 184건(32.7%), 가정복귀 48건(8.5%), 타기관 의뢰 4건(0.7%), 사망 1건(0.2%)임.
-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속관찰이었으며 477건(84.7%)임.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44건(7.9%)이었

고 고소 · 고발과 타기관 의뢰는 각각 21건(3.7%)임.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472건(8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38건(6.8%), 고소 · 고발 30건(5.3%), 타기관 의뢰 23건(4.1%)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총 6,058건 중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사례는 231건으로 약 3.8%를 차지함.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보호율은 1.53‰로 나타났고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인 0.63‰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가 130건(56.3%), 여아가 101건(43.7%)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서 많은 아동학대 발생함.
-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만 4~6세와 만 7~9세가 각각 52건(22.5%)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만 1~3세 46건(19.9%), 만 10~12세 40건(17.3%) 순으로 파악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에서는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130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친부모가족 형태 95건(41.1%)이었음.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자가정 51건(22.1%), 모자가정 38건(16.5%)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서 · 정신건강 부분이 261건(4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적응 · 행동 측면은 115건(21.8%), 발달 · 신체건강은 66건(12.5%)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 143건(61.9%), 여성 87건(37.7%)이었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는 1건(0.4%)임.
-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23건(53.2%)가 40대로 파악되었으며, 30대 44건(19.0%), 50대 31건(13.4%)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57건(24.7%)이었으며, 단순노무직 43건(18.6%), 농 · 어 · 축산업 28건(12.1%), 기타가 25건(10.8%)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대행위자의 소득은 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72.7%를 차지하였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는 40건(17.3%)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72.7%에 해당하는 168건이 비수급권에 해당하였으며, 수급 대상인 학대행위자는 54건(23.4%)인 것으로 나타남.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9건(3.9%)임.
-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었으며 248건(31.3%)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83건(23.1%), 부부 및 가족갈등 100건(12.6%)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가 202건(87.4%)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양상과 유사함.
- 다문화가족 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90.0%에 해당하는 208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다른 항목은 미비한 수준임.
- 발생빈도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거의 매일이었으며 91건(39.4%)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2~3일에 한 번 45건(19.5%), 일주일에 한 번 41건(17.7%) 순이었음.
- 다문화가족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복학대가 101건(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은 65건(28.1%)임. 중복학대 유형을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137건(39.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방임 113건(32.2%), 신체학대 89건(25.4%)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168건(72.7%), 격리보호조치가 63건(27.3%)으로 파악됨. 최종조치결과의 경우 역시 원가정보호 조치가 155건(67.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격리보호 65건(28.1%), 가정복귀 8건(3.5%), 타기관 의뢰 2건(0.9%), 사망 1건(0.4%)임.
-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속관찰이었으며 200건(86.6%)임.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15건(6.5%)이었고 타기관 의뢰 10건(4.3%), 고소 · 고발 6건(2.6%)임.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200건(8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12건(5.2%), 고소 · 고발 10건(4.3%), 타기관 의뢰 9건(3.9%)으로 나타남.

요 약

사망아동 사례

-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13건이며, 전체의 0.2%에 해당함.
- 총 13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남아는 7건(53.8%), 여아는 6건(46.2%)임.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이 각각 6건(46.2%), 7건(53.8%)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사망아동의 연령 중 만 1세 미만이 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만 3세와 5세는 각각 2건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20대 4건, 30대 5건, 40대 4건으로 파악됨.
  -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 각각 6명, 5명이었으며, 계모와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사례는 각각 1건임.
- 사망아동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 9건(69.2%), 병원 3건(23.1%), 기타가 1건(7.7%)이었음.
-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7건(53.8%), 일회성 3건(23.1%), 2~3일에 한 번 2건(15.4%), 1주일에 한 번 1건(7.7%)인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8건(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 3건(23.1%), 신체학대 2건(15.4%)이었음. 중복학대 중에서는 신체 및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2건(15.4%),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학대가 1건(7.7%)임.
-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9건(69.2%)에 해당하는 사례가 지속관찰 처리되었고 3건(23.1%)은 고소 · 고발, 1건(7.7%)은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영아대상 사례

-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영유아 즉, 만 0세에서 2세에 해당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는 708건으로 전체의 11.7%에 해당함.
- 피해아동이 영아인 경우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아 408건(57.6%), 300건(42.4%)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연령에 따라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음. 자세히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이 273건(38.6%), 만 2세 238건(33.6%), 만 1세 197건(27.8%)으로 파악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다음과 같음.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340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현황을 보면 미혼부 · 모가정 103건(14.5%), 모자가정 81건(11.4%), 동거(사실혼 포함) 59건(8.4%)임. 친부모가족 형태는 308건(43.5%),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는 37건(5.3%), 기타 13건(1.8%)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319건(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상이한 양상임. 이는 아동의 연령이 낮다는 점으로 일정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에서 기인되었다고 사료됨.
-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472건(66.7%), 남성 229건(32.3%)이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7건(1.0%)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연령 분포를 따져보면 30대가 292건(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02건(28.5%), 40대 127건(17.9%)으로 파악됨.
-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의 35.9%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주부인 경우는 124건(17.5%)으로 매우 높게 드러났음.
- 학대행위자의 소득 분포는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27건(3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00만 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 118건(16.7%),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은 117건(16.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501건(70.8%)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수급권 대상인 경우는 167건(23.6%), 대상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40건(5.6%)임.

-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777건(32.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604건(25.2%)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영아대상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가 612건(86.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타인 63건(8.9%), 친인척 19건(2.7%)으로 나타남.
- 영아대상 사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516건(72.9%)을 기록함.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56건(7.9%), 병원 44건(6.2%), 기타 39건(5.5%)인 것으로 파악됨.
- 영아대상 사례의 발생빈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거의 매일이었으며 353건(49.9%)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한 양상이라 볼 수 있음. 일회성 117건(16.5%), 2~3일에 한 번 89건(12.6%), 일주일에 한 번 82건(11.5%)으로 높게 나타남.
-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유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방임이 가장 많았으며 454건(48.1%)이었음.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는 각각 263건(27.9%), 162건(17.2%)으로 기록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464건(65.5%), 격리보호조치가 234건(33.1%), 타기관 의뢰가 10건(1.4%)으로 파악됨. 최종조치결과의 경우 역시 원가정보호 조치가 376건(53.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격리보호 272건(38.4%), 가정복귀 38건(5.4%), 타기관 의뢰 17건(2.4%), 사망 5건(0.7%)임.
-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속관찰이었으며 571건(80.6%)임.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55건(7.8%), 타기관 의뢰와 고소 · 고발이 각각 41건(5.8%)으로 나타남.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566건(7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소 · 고발 68건(9.6%),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45건(6.4%), 타기관 의뢰 29건(4.1%)으로 나타남.

시설 내 발생 사례

-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시설 즉,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270건으로 전체의 약 4.5%에 해당함.

▷ 시설 내 발생 사례를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3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 61건(22.8%), 전라북도 29건(10.7%), 강원도 28건(10.3%) 순으로 나타남.

▷ 시설 내 발생 사례를 기관 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1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23건(8.6%)인 것으로 파악됨.

▣ 피해아동의 성별을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남아 102건(64.2%), 여아 57건(35.8%)으로 남아에게서 많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복지시설은 남아 60건(54.1%), 여아 51건(45.9%)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은 만 1~6세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가 153건으로 전체의 96.2%를 차지하였음.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만 13~1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32건(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만 10~12세 30건(27.0%)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의 특성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정서 · 정신건강 상 특성을 지닌 아동이 9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특성이 없는 경우로 73건(36.2%)임. 복지시설의 경우 특성이 없는 경우가 61건(3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서 · 정신건강은 46건(28.4%)이었음.

▣ 시설 내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64건(23.7%), 여성 206건(76.3%)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이를 시설 유형별로 분류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남성 19건(11.9%), 여성 140건(88.1%)이었고, 복지시설은 남성 45건(40.5%), 여성 66건(59.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연령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지닌 항목은 30대로 70건(25.9%)을 기록함. 다음으로는 40대 61건(22.6%), 50대 54건(20.0%) 순임. 어린이집의 경우 40대가 45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60대는 각각 34건(21.4%), 33건(20.8%)으로 나타남. 복지시설은 50대에 많은 학대행위자가 분포하였고 42건(37.8%), 30대는 36건(32.4%)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271건(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분포와 유사함을 보임.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각각 185건(52.6%), 86건(3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성격 및 기질문제로 어린이집 58건(16.4%), 복지시설 49건(20.1%)임.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원 및 시설종사자가 포함된 타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231건(85.5%)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례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136건(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신체학대 66건(24.4%), 정서학대 40건(14.9%)으로 나타남.
  - ▷ 반면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71건(40.3%)을 기록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신체학대 137건(32.3%), 방임 89건(21.0%)으로 파악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모두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156건(98.1%), 86건(77.5%)이었음. 격리보호의 세부 현황을 시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의 경우 일시보호 조치가 2건(1.3%), 장기보호 1건(0.6%)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시설은 장기보호 15건(13.5%), 일시보호 6건(5.4%), 기타 4건(3.6%)으로 드러남.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모두 지속관찰이었고 각각 77건(48.4%), 52건(46.8%)으로 나타남. 최종조치의 다른 유형을 시설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고소 · 고발이 58건(36.5%)인 것으로 나타났고 타기관 의뢰와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는 각각 21건(13.2%), 3건(1.9%)이었음. 복지시설은 타기관 의뢰가 25건(22.5%)으로 높았으며, 고소 · 고발 22건(19.9%), 만나지 못함 12건(10.8%) 순으로 파악됨.

장애아동 사례

- 2011년 아동학대사례 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는 248건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였음. 장애아동 중 피해아동 보호율은 약 2.59‰로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인 0.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아동 대상 사례를 피해아동의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 172건(6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지닌

아동이 각각 19건(7.7%)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118건(47.6%), 여아 130건(52.4%)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서 비교적 많은 아동학대 발생하였음.
-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가장 많은 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항목은 만 13~15세로 68건(27.4%)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만 10~12세로 66건(26.6%)임.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하게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12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친부모가족 101건(40.8%), 대리양육 형태 14건(5.6%), 기타 5건(2.0%) 순임.
-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는 다음과 같음. 전체 특성 중 장애가 302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양상과 상이한 결과임. 다음으로는 적응 · 행동이 255건(25.4%), 정서 · 정신건강과 발달 · 신체건강이 각각 200건(20.0%), 기타와 특성이 없는 경우는 각각 44건(4.4%), 1건(0.1%)를 차지하였음.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에 의한 사례는 157건(63.3%)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89건(35.9%),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2건(0.8%)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40대가 101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66건(26.7%), 50대 54건(21.8%)으로 나타남. 이외의 연령은 3건에서 9건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인 경우가 73건으로 전체 장애아동 사례의 29.4%를 차지하였고 단순노무직은 38건(15.4%), 주부는 25건(10.2%)으로 나타남. 또한 전문직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3건으로 전체의 5.2%이고 준전문직은 2건(0.8%)으로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학대행위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59건(23.8%)이며, 100만 원 이상에서 150만 원 미만의 경우는 58건(23.5%)임. 50만 원 미만의 소득은 36건(14.5%)을 차지함.
-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는 114건(46.0%),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3건(45.5%)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음. 반면 수급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21건(8.5%)으로 파악됨.
-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258건(32.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186건(23.2%)으로 파악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99건(8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타인에 의한 사례는 30건(12.1%), 친인척 14건(5.6%), 마지막으로 기타는 5건(2.0%)에 해당함.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의 발생장소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건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분포와 매우 유사한 결과임.
-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119건으로 48.0%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3일에 한 번 발생한 사례 30건(12.1%), 1주일에 한 번 29건(11.7%)을 차지함.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의 유형 중 방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37건(36.8%)으로 분석됨.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106건(28.5%), 신체학대 91건(24.5%), 성학대 34건(9.1%), 그리고 유기는 4건(1.1%)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에 보호된 경우가 185건(74.6%)이었으며,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등의 격리보호 조치된 사례는 61건(24.5%)으로 분석됨.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속관찰로 200건(80.6%)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고소 · 고발 22건(8.9%), 만나지 못함 16건(6.5%), 타기관 의뢰 10건(4.0%)이었음.

교육 및 홍보사업

교육사업

- 2011년 한 해 동안 일반 국민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동학대예방교육은 787,997명에게 총 20,307회 실시된 것으로 파악됨.
- 먼저 일반인 대상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은 677,586명에게 18,438회 제공되었고, 신고의무자의 경우 106,196명에게 1,837회 제공됨.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신고의무자에 비해 일반인 대상의 교육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홍보사업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홍보는 총 13,336,719회 이루어졌으며,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물 홍보 1,143,844회, 언론 홍보 26,181회, 인터넷 홍보 1,078,026회, 캠페인 1,116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44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포함한 상담원 총 312명을 대상으로 파악함.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 지표로는 신고 접수 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 건수, 피해아동 원가정보호와 격리보호조치 건수, 타기관 의뢰 건수, 대상별 서비스제공 횟수,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횟수와 인원수를 선정함.
- 신고 접수된 신고 건수 10,143건 가운데 8,325건이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14,278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사례 당 평균 1.7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필요한 조치와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는 6,058건이었으며 이중 학대행위자를 고소 · 고발조치한 사례는 389건으로 집계되었음. 원가정에 보호한 사례가 4,462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한 사례 1,555건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피해아동에게 310,406회, 학대행위자에게 51,147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32,071회 실시되었고, 아동학대사례는 아니지만 일반상담과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에도 21,498회의 서비스가 제공됨.
-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총 785,532명에게 20,282회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인쇄물 · 언론 · 인터넷 · 캠페인 등을 통해 13,238,074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함.

요 약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인 312명으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분석함.
- 2011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상담지원사업 관련 업무량은 총 1,429.4회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11년 한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신고 접수 건수는 32.5건, 현장조사 횟수는 45.8회로 파악됨.
  - ▷ 2011년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고소 · 고발 조치를 취한 경우는 1.2회, 원가정 보호조치 14.3회, 격리보호 조치 5.0회, 타기관 의뢰 0.1회로 파악됨.
  - ▷ 상담원 1인당 서비스 대상자에게 총 1,330.5회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994.9회, 학대행위자에게는 163.9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102.8회, 아동학대 외 사례에 68.9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상담원 1인이 실시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횟수는 총 42,494.7회에 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11년 한 해 동안 총 65.0회의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홍보사업의 경우 42,429.7회가 실시되었음.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2001-2011년)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의 신고 건수는 10,146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0.3% 증가함.
- 2001년에는 20건이 재신고 되었으나 2011년에는 1,325건이 재신고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 비해 2011년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2,704건에 달하여 3.9배 높아졌으나 여전히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경로 유형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1577-1391로 신고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음. 특히 2011년에 1577-1391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의 93.3%로 2007년의 85.7%에 비해 약 1.1배 증가된 수치임을 알 수 있음.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지난 11년 동안 피해아동 보호 건수,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하여 개입한 사례의 건수는 약 2.9배 증가함. 이와 같은 증가는 2001년 17개소에 불과하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년 동안 27개소가 증설되어 44개소가 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장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현황

▣ 최근 3개년 간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는 2009년 581건에서 2010년 503건으로 78건 감소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 563건으로 다시 60건이 증가함. 재학대 사례의 아동 수는 2009년에 581명에서 2010년에는 494명으로 87명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1년에는 559명으로 증가함.

- 최근 3개년 간 재학대 신고 사례 유형은 2009년에는 방임 39.1%, 정서학대 32.2%, 신체학대 23.6%의 순이었고, 2010년에는 방임과 정서학대가 각각 35.6%, 35.2%이며 신체학대는 24.1%로 분석됨. 마지막으로 2011년의 경우, 정서학대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과 신체학대는 각각 29.5%, 28.5%임.
- 최근 3개년 간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시기는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사례 종결 후 3년 이상된 사례가 26.9%과 29.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사례 종결 후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사례가 전체의 23.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최근 3개년 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의 경우 2009년 66.7%에서 2010년 72.0%로 증가한 반면 2011년에는 68.9%로 감소함. 격리보호의 경우 2009년 33.3%에서 2010년 27.2%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30.0%로 다시 증가함.
- 최근 3개년 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 2009년 83.5%에서 2010년 81.7%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83.8%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현황

- 최근 3개년 간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181건에서 2010년에는 243건으로 62건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231건으로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최근 3개년 간 다문화가족 내 발생한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은 2009년에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각각 34.7%, 34.3%로 높게 나타났음. 2010년에는 방임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학대는 35.7%였으며, 2011년에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정서학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으로 32.2%의 분포를 보임.
- 최근 3개년 간 다문화가족 내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2009년에서 2011년 모두 원가정에 보호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09년 71.3%에서 2010년에는 72.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72.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격리보호의 경우 2009년 28.2%에서

2010년 25.5%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는 27.3%로 다시 증가함.

- 최근 3개년 간 다문화가족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중 지속관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음.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90.0%에서 2010년에는 87.7%, 2011년에는 86.6%로 감소함.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현황

- 최근 3개년 간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 264건, 2010년 227건, 2011년 270건이며 이를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 발생 사례의 경우 2009년 67건에서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2009년 197건, 2010년 127건, 2011년 111건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 최근 3개년 간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모두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009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유형 중 41.1%, 2010년 39.4%, 2011년 40.3%의 분포를 나타냄. 신체학대와 유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나 성학대와 방임은 감소 추세임.
- 최근 3개년 간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가장 많았으며, 2009년 79.5%, 2010년 59.5%, 2011년 47.8%로 점차 감소하였음. 반면 고소 · 고발 조치 및 타기관 의뢰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지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함. 또한 정서학대는 점차 증가한 반면, 신체학대와 유기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함.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살펴보면 연도별로 방임과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지난 11년 동안의 아동학대사례 중 약 80.0% 이상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파악됨. 또한 부모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신고의무자인 교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지난 11년 간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는 부자가정으로 평균 31.4%를 차지하였고, 모자가정은 약 14.4%를 차지함. 재혼가정의 경우 6.7%에서 11.3%의 수준이었으며,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었던 아동은 4.4%에서 8.9%로 나타남.
- 대리양육형태는 친부모가족이나 친부모가족 외 형태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가정위탁의 경우 0.1%에서 0.6%이었으며, 입양가정 형태도 이와 유사한 0.2%에서 0.6%로 나타남. 시설보호의 경우는 가정위탁과 입양가정에 비해 많았으며 0.4%에서 4.6%의 분포를 나타냄.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총 87명인 것으로 집계됨. 연도별 사망 아동 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서 2010년에는 3건에서 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1년에 13명으로 다시 증가함.
- 최근 3개년의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서 방임이 가장 많았으며 2009년 50.0%에서 2010년 66.7%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61.5%로 감소함. 이 외에 중복학대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9년 25.0%, 2010년 33.3%, 2011년 23.1%로 나타남.

▣ 최근 3개년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2009년에는 고소 · 고발이 75.0%로 가장 많았고 2010년에는 모든 사례의 학대행위자가 고소 · 고발 조치됨. 반면 2011년의 경우 지속관찰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 고발 23.1%,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7.7%에 해당함.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 지난 11년 동안의 교육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교육사업은 2001년보다 교육 횟수 약 12.7배, 교육인원 수 약 23.6배 정도 증가함.

▷ 2011년,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중 아동 및 부모 대상 교육은 2010년이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경찰 및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은 감소함.

▷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2011년에 실시한 교육의 경우,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은 2010년 대비 횟수와 인원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원이 2배 가까이 상승함.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 홍보사업은 연도에 따라 일관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나 2011년의 홍보사업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약 4배 상승함.

▷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 중 브로셔와 전단의 실적은 증가한 반면 포스터는 감소함. 또한 언론의 경우 방송과 신문을 통한 실적은 각각 1.4배, 1.8배 정도 상승하였으나 잡지는 감소함.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1 장

서 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아동학대예방사업은 2011년을 지나오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지난 10년 간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예방 관련 활발한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등의 다양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2011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2년 현재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44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인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운영 · 관리를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축적,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해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지난 1년 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내용을 분석하여 발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도 현황보고서에는 2011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기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현황보고서 내용구성

분 류	내 용
신고 접수 현황	• 신고 접수 • 신고자 유형 • 신고 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피해아동 보호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 재학대 신고 사례 • 다문화가족 사례 • 사망아동 사례 • 영아대상 사례 • 시설 내 발생 사례 • 장애아동 사례
교육 및 홍보사업	• 교육사업 • 홍보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현황 •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현황 • 연도별 시설 발생 내 발생 사례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3. 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후,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전산시스템 통계자료는 2012년 1월 11일자로 마감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결과를 집계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11년 간의 아동학대 관련 변화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았다.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2 장

신고 접수 현황

1. 신고 접수

1 신고 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과 129,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으며 위기개입을 위해 24시간 동안 대응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사례는 내용에 따라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와 중복신고, 그리고 일반상담으로 분류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되는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의미하며 중복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미 개입하고 있는 사례와 동일한 학대행위자와 학대유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재신고 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상담은 일반 자녀양육 및 아동의 문제에 대한 상담 등 아동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타 모든 사례를 의미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이전 신고여부에 따라 신규 사례와 재신고 사례로 구분되며, 재신고 사례는 사례개입이 종결되었다가 다시 신고되는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개입 중 기존과 다른 학대행위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다른 학대 유형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진행 중 재신고', 그리고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아닌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 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로 구분된다.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 접수 건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146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는 8,325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의 82.1%를 차지하였고 중복신고는 84건으로 0.8%였으며 일반상담은 1,737건으로 17.1%에 해당하였다.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신고내용의 응급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나뉜다.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958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 건수 중 9.5%를 차지하였고, 아동학대의심사례는 7,367건으로 전체의 72.6%에 해당하였다.

〈표 2-1〉 신고 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958 (9.5)	7,367 (72.6)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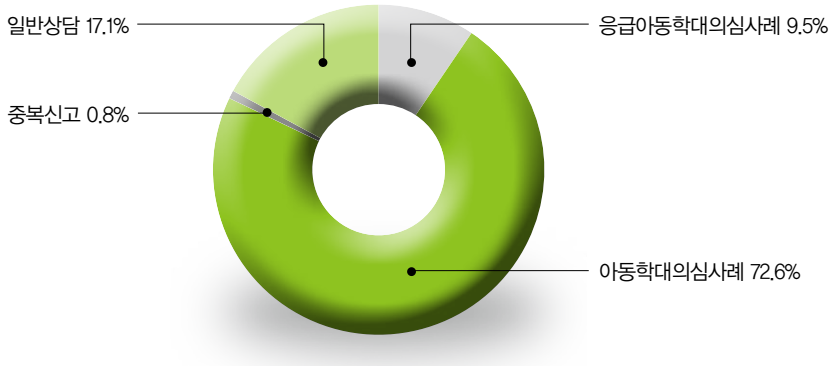

〈그림 2-1〉 신고 접수 건수

신고 접수된 10,146건 중 1,325건은 재신고 사례이며, 이는 전체의 1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8,821건은 2011년에 신규로 신고된 사례이며, 약 86.9%에 해당한다. 〈표 2-2〉를 통해 재신고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가 978건으로 전체 사례의 9.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는 154건으로 전체 사례의 1.6%,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193건으로 전체 사례의 1.9%로 집계되었다. '사례진행 중 재신고'는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진행하면서 상담원이 최초에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학대 사실을 발견하거나 상담원과 신뢰가 형성된 피해아동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보고하여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신고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처음 신고 당시에는 아동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신고 하는 경우와 신고 접수 당시 불분명한 주소지로 인해 현장조사 실시가 불가능하여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이후 재신고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 접수 건수

(단위 :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978 (9.6)	154 (1.6)	193 (1.9)	1,325 (13.1)	8,821 (86.9)	10,1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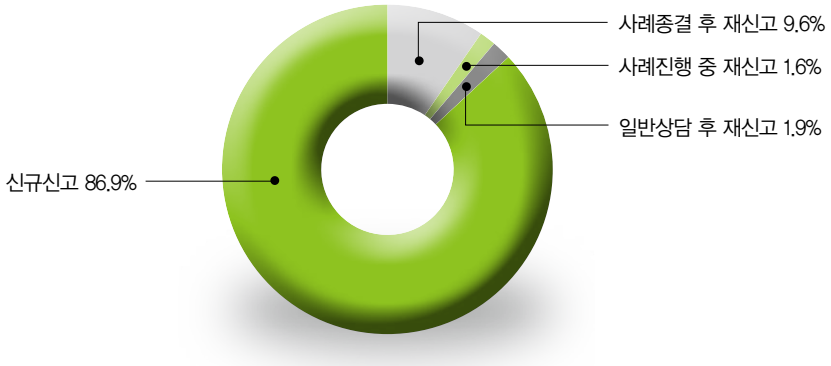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 접수 건수

2011년 월별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약 846건의 신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표 2-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6월로 1,152건(11.4%), 다음으로는 9월 951건(9.4%), 5월 929건(9.2%), 7월 923건(9.1%), 10월 882건(8.7%)의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5월부터 6월까지 비교적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월 가정의 달 및 어린이주간을 맞이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홍보가 활발히 진행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과 외부활동이 많은 학기 중과 여름 기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가 활발하지만, 방학기간인 8월과 12월, 그리고 옷차림이 두터워져 외관상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고 추운 날씨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동절기에는 신고 건수가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므로 신고 건수가 적은 방학기간에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3〉 월별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565 (5.6)	675 (6.7)	874 (8.6)	865 (8.4)	929 (9.2)	1,152 (11.4)	923 (9.1)	816 (8.0)	951 (9.4)	882 (8.7)	823 (8.1)	691 (6.8)	10,1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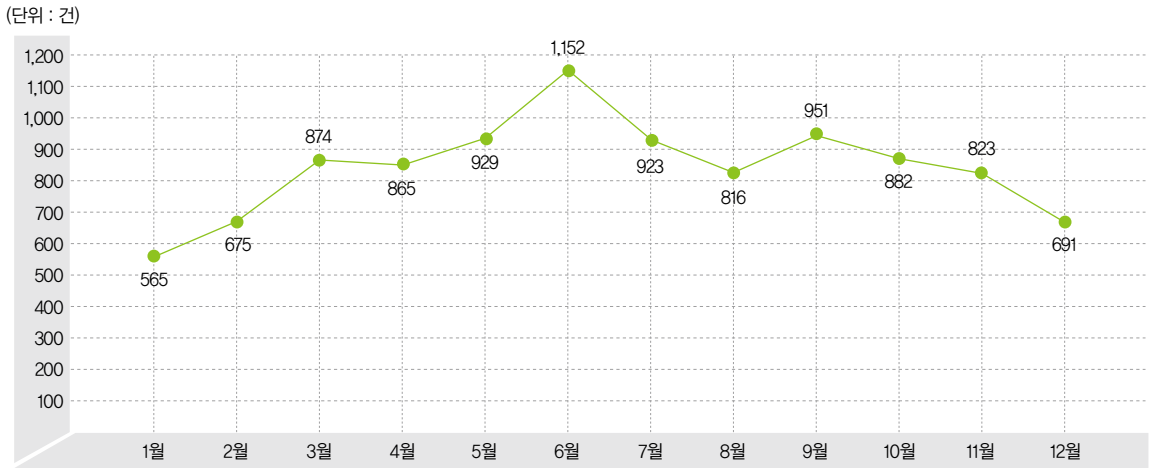

〈그림 2-3〉 월별 신고 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 접수

〈표 2-4〉에서와 같이 지역 및 기관별로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16개 시 · 도 중 경기도가 2,273건(22.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1,253건(12.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 · 경기 지역의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아동의 인구 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이 설치되어 학대 발견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별 신고 접수 건수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472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401건(4.0%),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399건(3.9%),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397건(3.9%),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351건(3.5%)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기관들의 신고 접수 건수가 많은 이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기간이 오래된 만큼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뿐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아동인구 밀도가 높은 점을 꼽아 볼 수 있겠다.

한편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심사례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충청남도 88.8%, 서울특별시 88.6%, 전라북도 87.3%, 경상남도 85.9%, 경기도 84.7%가 아동학대의심사례율이 높았다. 기관별로 비교해보면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97.4%,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이 96.1%,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93.8%,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9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기관별 신고 접수 건수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구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중앙*		0(0.0)	0(0.0)	0(0.0)	3 (100.0)	3 (100.0)
서울	서울특별시	2(0.6)	272(90.7)	0(0.0)	26 (8.7)	300 (100.0)
	서울특별시동부	35(15.0)	181(77.7)	3(1.3)	14 (6.0)	233 (100.0)
	서울강서	4(2.9)	110(80.9)	0(0.0)	22 (16.2)	136 (100.0)
	서울은평	13(7.0)	138(74.2)	6(3.2)	29 (15.6)	186 (100.0)
	서울영등포	11(8.2)	100(74.6)	0(0.0)	23 (17.2)	134 (100.0)
	서울성북	39(29.1)	83(61.9)	0(0.0)	12 (9.0)	134 (100.0)
	서울마포	5(3.8)	117(90.0)	0(0.0)	8 (6.2)	130 (100.0)
	소계	109(8.7)	1,001(79.9)	9(0.7)	134 (10.7)	1,253 (100.0)
부산	부산광역시	22(6.6)	231(69.6)	0(0.0)	79 (23.8)	332 (100.0)
	부산동부	7(3.0)	196(83.1)	1(0.4)	32 (13.6)	236 (100.0)
	소계	29(5.1)	427(75.2)	1(0.2)	111 (19.5)	568 (100.0)
대구	대구광역시	33(9.4)	199(56.7)	4(1.1)	115 (32.8)	351 (100.0)
인천	인천광역시	25(8.6)	164(56.6)	0(0.0)	101 (34.8)	290 (100.0)
	인천북부	31(20.1)	119(77.3)	0(0.0)	4 (2.6)	154 (100.0)
	소계	56(12.7)	283(63.7)	0(0.0)	105 (23.6)	444 (100.0)
광주	광주광역시	10(3.3)	185(61.1)	1(0.3)	107 (35.3)	303 (100.0)
대전	대전광역시	16(6.3)	198(77.0)	0(0.0)	43 (16.7)	257 (100.0)
울산	울산광역시	18(3.9)	374(79.2)	1(0.2)	79 (16.7)	472 (100.0)
경기	경기도	61(15.3)	268(67.2)	12(3.0)	58 (14.5)	399 (100.0)
	경기북부	13(5.6)	178(75.4)	6(2.5)	39 (16.5)	236 (100.0)
	경기성남	15(3.8)	296(74.6)	3(0.8)	83 (20.8)	397 (100.0)
	경기고양	11(5.3)	176(84.2)	0(0.0)	22 (10.5)	209 (100.0)
	경기부천	31(12.2)	214(83.9)	4(1.6)	6 (2.3)	255 (100.0)
	경기화성	48(16.4)	205(70.0)	0(0.0)	40 (13.6)	293 (100.0)
	경기남양주	39(15.9)	171(69.5)	10(4.1)	26 (10.6)	246 (100.0)
	안산시	27(11.3)	171(71.8)	1(0.4)	39 (16.5)	238 (100.0)
	소계	245(10.8)	1,679(73.9)	36(1.6)	313 (13.8)	2,273 (100.0)
강원	강원도	19(11.2)	120(70.6)	0(0.0)	31 (18.2)	170 (100.0)
	강원동부	7(5.0)	97(69.3)	1(0.7)	35 (25.0)	140 (100.0)
	원주시	5(3.7)	114(83.8)	3(2.2)	14 (10.3)	136 (100.0)
	소계	31(7.0)	331(74.2)	4(0.9)	80 (17.9)	446 (100.0)
충북	충청북도	42(14.7)	185(64.9)	2(0.7)	56 (19.7)	285 (100.0)
	충북북부	21(9.6)	162(74.3)	0(0.0)	35 (16.1)	218 (100.0)
	충북남부	9(7.4)	96(79.3)	2(1.7)	14 (11.6)	121 (100.0)
	소계	72(11.5)	443(71.0)	4(0.6)	105 (16.9)	624 (100.0)
충남	충청남도	42(13.0)	258(79.9)	1(0.3)	22 (6.8)	323 (100.0)
	충청남도남부	5(3.4)	111(76.6)	0(0.0)	29 (20.0)	145 (100.0)
	소계	47(10.0)	369(78.8)	1(0.2)	51 (11.0)	468 (100.0)
전북	전라북도	29(9.7)	238(79.9)	1(0.3)	30 (10.1)	298 (100.0)
	전라북도서부	15(7.2)	165(79.7)	0(0.0)	27 (13.1)	207 (100.0)
	전라북도동부	4(3.2)	99(79.2)	0(0.0)	22 (17.6)	125 (100.0)
	소계	48(7.6)	502(79.7)	1(0.2)	79 (12.5)	630 (100.0)
전남	전라남도	12(4.8)	204(82.3)	2(0.8)	30 (12.1)	248 (100.0)
	전남목포	11(5.4)	154(75.1)	4(2.0)	36 (17.6)	205 (100.0)
	소계	23(5.1)	358(79.0)	6(1.3)	66 (14.6)	453 (100.0)
경북	경상북도	32(19.6)	95(58.3)	3(1.8)	33 (20.3)	163 (100.0)
	경북안동	27(11.8)	125(54.6)	1(0.4)	76 (33.2)	229 (100.0)
	경북포항	18(9.9)	120(66.3)	4(2.2)	39 (21.6)	181 (100.0)
	구미	12(5.9)	152(74.9)	4(2.0)	35 (17.2)	203 (100.0)
	소계	89(11.5)	492(63.4)	12(1.5)	183 (23.6)	776 (100.0)
경남	경상남도	97(24.2)	268(66.8)	2(0.5)	34 (8.5)	401 (100.0)
	경남서부	12(7.5)	105(65.6)	2(1.3)	41 (25.6)	160 (100.0)
	소계	109(19.4)	373(66.5)	4(0.7)	75 (13.4)	561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7(12.2)	79(56.8)	0(0.0)	43 (31.0)	139 (100.0)
	서귀포시	6(4.8)	74(59.2)	0(0.0)	45 (36.0)	125 (100.0)
	소계	23(8.7)	153(58.0)	0(0.0)	88 (33.3)	264 (100.0)
계		958(9.4)	7,367(72.6)	84(0.8)	1,737 (17.2)	10,146 (100.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고 접수 전화에 한해서는 타기관 의뢰 또는 일반상담을 실시함.

2.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8,325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704건(32.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621건(67.5%)에 해당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전체 신고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법적 제도적 요인 미비, 신고 후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 및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감당하게 될 위험 부담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 건수가 1,169건(1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 594건(7.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38건(4.1%),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99건(2.4%), 보육시설 종사자 178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1,856건으로 전체 신고자의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모 1,411건(16.9%), 이웃 · 친구 991건(11.9%), 친인척 461건(5.5%), 경찰 314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는 135건(1.6%)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의 특성상 스스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르고 학대 피해가 반복되면 학대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게 되어 스스로 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5〉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교원	594 (7.1)	부모	1,411 (16.9)
의료인	88 (1.1)	이웃 · 친구	991 (11.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38 (4.1)	친인척	461 (5.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4 (0.3)	경찰	314 (3.8)
보육시설 종사자	178 (2.1)	종교인	53 (0.6)
유치원 종사자	40 (0.5)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856 (22.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6 (0.1)	낯선 사람	55 (0.7)
소방구급대원	10 (0.1)	아동 본인	135 (1.6)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45 (0.5)	형제 · 자매	47 (0.6)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13 (0.2)	익명	40 (0.5)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99 (2.4)	기타	258 (3.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69 (14.0)		
소계	2,704 (32.5)	소계	5,621 (67.5)
계	8,3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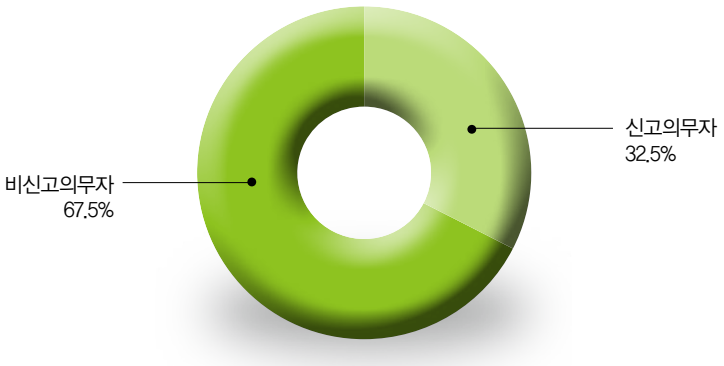

〈그림 2-4〉 신고자 유형

〈표 2-6〉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원	의료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 대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성매매 피해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4	10	4	0	0	3	0	3	0	0	0	2	26
	서울특별시동부	9	16	4	0	0	7	0	2	0	0	0	3	41
	서울강서	6	12	0	0	0	0	0	2	1	0	0	0	21
	서울은평	26	11	3	0	1	3	1	7	0	0	0	1	53
	서울영등포	26	8	2	0	0	10	0	0	0	2	0	0	48
	서울성북	36	12	1	0	0	4	0	1	1	0	0	0	55
	서울마포	22	4	0	0	0	1	0	2	0	2	0	7	38
	소 계	129	73	14	0	1	28	1	17	2	4	0	13	282
부산	부산광역시	24	13	2	0	0	11	0	6	0	3	1	5	65
	부산동부	28	12	3	0	0	7	0	4	0	4	1	4	63
	소 계	52	25	5	0	0	18	0	10	0	7	2	9	128
대구	대구광역시	29	18	2	2	0	1	0	1	0	3	0	3	59
인천	인천광역시	29	7	3	0	0	1	0	5	0	1	2	3	51
	인천북부	7	6	3	1	0	3	0	6	2	1	0	3	32
	소 계	36	13	6	1	0	4	0	11	2	2	2	6	83
광주	광주광역시	46	15	3	0	0	6	1	3	0	0	0	0	74
대전	대전광역시	20	8	2	0	0	17	0	6	1	2	0	4	60
울산	울산광역시	134	28	3	0	0	13	0	27	0	3	0	8	216
경기	경기도	23	28	5	0	2	4	0	9	1	2	0	4	78
	경기북부	32	10	2	1	0	3	0	6	0	1	0	3	58
	경기성남	61	43	5	0	0	5	0	4	3	0	0	5	126
	경기고양	22	20	2	0	0	3	0	1	1	0	0	1	50
	경기부천	9	19	0	1	1	6	12	1	1	0	0	5	55
	경기화성	28	13	0	0	0	7	0	16	1	4	1	1	71
	경기남양주	19	26	3	0	0	3	3	5	3	1	1	0	64
	안산시	17	13	2	0	0	5	0	3	0	0	0	0	40
	소 계	211	172	19	2	3	36	15	45	10	8	2	19	542
강원	강원도	16	10	2	0	0	7	1	0	1	0	1	3	41
	강원동부	18	4	2	0	1	6	0	0	0	1	0	9	41
	원주시	33	15	1	0	0	6	1	2	4	0	0	3	65
	소 계	67	29	5	0	1	19	2	2	5	1	1	15	147
충북	충청북도	39	17	3	0	0	13	0	0	0	0	2	17	91
	충북북부	20	14	0	0	0	4	1	3	0	0	0	14	56
	충북남부	7	16	1	0	0	15	0	3	0	4	0	0	46
	소 계	66	47	4	0	0	32	1	6	0	4	2	31	193
충남	충청남도	34	31	4	0	1	10	0	6	2	4	1	10	103
	충청남도남부	20	17	1	0	0	8	0	3	0	0	0	2	51
	소 계	54	48	5	0	1	18	0	9	2	4	1	12	154
전북	전라북도	32	11	4	0	2	26	0	4	0	0	0	8	87
	전라북도서부	38	4	0	1	2	3	0	6	0	0	0	3	57
	전라북도동부	13	12	0	0	0	2	1	7	1	0	0	0	36
	소 계	83	27	4	1	4	31	1	17	1	0	0	11	180
전남	전라남도	36	13	1	0	0	11	0	10	2	1	0	4	78
	전남목포	25	5	1	0	0	28	1	3	0	2	1	2	68
	소 계	61	18	2	0	0	39	1	13	2	3	1	6	146
경북	경상북도	23	4	1	0	0	14	1	1	1	2	0	3	50
	경북안동	10	4	0	0	0	13	0	0	1	0	0	16	44
	경북포항	18	12	1	0	0	8	0	1	1	0	1	2	44
	구 미	17	7	2	0	0	4	0	0	5	0	0	9	44
	소 계	68	27	4	0	0	39	1	2	8	2	1	30	182
경남	경상남도	62	20	5	0	0	10	1	3	6	0	1	20	128
	경남서부	15	13	3	0	0	6	0	1	1	2	0	6	47
	소 계	77	33	8	0	0	16	1	4	7	2	1	26	17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4	2	2	0	0	12	0	0	0	0	0	6	36
	서귀포시	22	11	0	0	0	9	0	5	0	0	0	0	47
	소 계	36	13	2	0	0	21	0	5	0	0	0	6	83
계		1,169 (14.0)	594 (7.1)	88 (1.1)	6 (0.1)	10 (0.1)	338 (4.1)	24 (0.3)	178 (2.1)	40 (0.5)	45 (0.5)	13 (0.2)	199 (2.3)	2,704 (32.5)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계
		부모	이웃 · 친구	친인척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아동 본인	익명	형제 · 자매	기타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127	30	25	8	4	43	1	6	0	3	1	248	274 (3.3)
	서울특별시동부	30	28	11	2	0	82	1	3	0	2	16	175	216 (2.6)
	서울강서	7	15	1	5	0	45	0	4	2	0	14	93	114 (1.4)
	서울은평	27	8	8	4	3	30	1	4	0	4	9	98	151 (1.8)
	서울영등포	20	13	10	1	0	8	0	1	0	2	8	63	111 (1.3)
	서울성북	15	17	2	4	0	24	1	1	0	0	3	67	122 (1.5)
	서울마포	19	26	2	5	1	25	0	2	0	2	2	84	122 (1.5)
	소 계	245	137	59	29	8	257	4	21	2	13	53	828	1110 (13.3)
부산	부산광역시	36	29	23	2	5	70	3	6	0	3	11	188	253 (3.0)
	부산동부	32	23	9	13	1	51	0	3	0	0	8	140	203 (2.4)
	소 계	68	52	32	15	6	121	3	9	0	3	19	328	456 (5.5)
대구	대구광역시	34	30	12	14	0	67	1	6	0	2	7	173	232 (2.8)
인천	인천광역시	23	41	13	11	2	41	0	0	0	0	7	138	189 (2.3)
	인천북부	33	31	12	9	0	22	2	0	0	0	9	118	150 (1.8)
	소 계	56	72	25	20	2	63	2	0	0	0	16	256	339 (4.1)
광주	광주광역시	37	31	17	4	0	22	2	6	0	0	2	121	195 (2.3)
대전	대전광역시	31	23	24	3	7	48	4	5	0	0	9	154	214 (2.6)
울산	울산광역시	54	69	12	8	0	18	1	7	0	0	7	176	392 (4.7)
경기	경기도	68	48	21	32	1	43	2	5	2	3	26	251	329 (4.0)
	경기북부	38	25	1	9	1	42	1	6	1	3	6	133	191 (2.3)
	경기성남	54	36	8	10	0	52	5	3	1	3	13	185	311 (3.7)
	경기고양	38	34	8	7	0	33	6	4	0	1	6	137	187 (2.2)
	경기부천	52	30	25	23	1	52	0	0	1	1	5	190	245 (2.9)
	경기화성	52	26	16	9	0	62	1	6	0	1	9	182	253 (3.0)
	경기남양주	44	15	9	11	0	62	1	4	0	0	0	146	210 (2.5)
	안산시	26	20	4	16	0	88	0	1	0	0	3	158	198 (2.4)
	소 계	372	234	92	117	3	434	16	29	5	12	68	1382	1924 (23.1)
강원	강원도	27	19	13	2	0	31	2	2	0	0	2	98	139 (1.7)
	강원동부	14	5	8	9	0	24	0	2	0	0	1	63	104 (1.2)
	원주시	13	10	4	4	1	16	2	1	1	0	2	54	119 (1.4)
	소 계	54	34	25	15	1	71	4	5	1	0	5	215	362 (4.3)
충북	충청북도	22	32	7	7	1	56	0	3	0	0	8	136	227 (2.7)
	충북북부	11	27	4	5	0	41	3	2	30	1	3	127	183 (2.2)
	충북남부	8	1	0	1	1	44	0	0	0	0	4	59	105 (1.3)
	소 계	41	60	11	13	2	141	3	5	30	1	15	322	515 (6.2)
충남	충청남도	57	53	22	5	1	46	4	0	1	0	8	197	300 (3.6)
	충청남도남부	20	10	3	3	3	24	0	1	0	0	1	65	116 (1.4)
	소 계	77	63	25	8	4	70	4	1	1	0	9	262	416 (5.0)
전북	전라북도	34	34	18	9	2	69	0	6	0	2	6	180	267 (3.2)
	전라북도서부	17	19	17	11	5	45	3	3	0	1	2	123	180 (2.2)
	전라북도동부	15	7	1	1	0	43	0	0	0	0	0	67	103 (1.2)
	소 계	66	60	36	21	7	157	3	9	0	3	8	370	550 (6.6)
전남	전라남도	35	17	9	7	0	58	0	4	0	2	6	138	216 (2.6)
	전남목포	36	11	5	2	2	33	2	1	1	3	1	97	165 (2.0)
	소 계	71	28	14	9	2	91	2	5	1	5	7	235	381 (4.6)
경북	경상북도	22	14	6	6	0	23	1	3	0	1	1	77	127 (1.5)
	경북안동	11	5	6	0	0	83	0	2	0	0	1	108	152 (1.8)
	경북포항	28	11	12	7	2	25	1	1	0	1	6	94	138 (1.7)
	구 미	22	15	4	8	5	47	0	9	0	3	7	120	164 (2.0)
	소 계	83	45	28	21	7	178	2	15	0	5	15	399	581 (7.0)
경남	경상남도	68	33	30	5	3	79	1	8	0	2	8	237	365 (4.4)
	경남서부	25	7	10	2	0	19	0	2	0	0	5	70	117 (1.4)
	소 계	93	40	40	7	3	98	1	10	0	2	13	307	482 (5.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3	7	5	4	1	10	3	2	0	1	4	60	96 (1.2)
	서귀포시	6	6	4	6	0	10	0	0	0	0	1	33	80 (1.0)
	소 계	29	13	9	10	1	20	3	2	0	1	5	93	176 (2.1)
계		1,411 (16.9)	991 (11.9)	461 (5.5)	314 (3.8)	53 (0.6)	1,856 (22.3)	55 (0.7)	135 (1.6)	40 (0.5)	47 (0.6)	258 (3.1)	5,651 (67.5)	8,325 (100.0)

3. 신고 접수 경로 유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 신고자가 직접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는 내방 항목으로 분류되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577-1391과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구분된다.

2011년 아동학대 신고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7-1391'로 신고 된 건수가 9,47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3.3%를 차지하였고, '129'로 신고 된 건수가 382건으로 3.8%, '내방' 신고가 194건으로 1.9%, '인터넷' 신고가 10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0%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가 1577-1391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577-1391 항목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등록된 1577-1391로 신고 된 경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 행정전화로 신고 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129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가 누수되지 않도록 129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표 2-7〉 신고 경로 유형

(단위 : 건, %)

1577-1391	129	인터넷	내 방	계
9,470 (93.3)	382 (3.8)	100 (1.0)	194 (1.9)	10,1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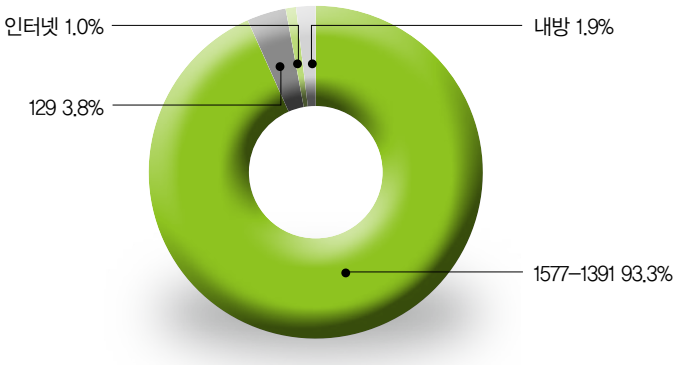

〈그림 2-5〉 신고 경로 유형

〈표 2-8〉 기관별 신고 경로 유형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신고 경로		1577-1391	129	인터넷	내 방	계
중 앙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서울	서울특별시	183 (61.0)	13 (4.3)	81 (27.0)	23 (7.7)	300 (100.0)
	서울특별시동부	218 (93.6)	14 (6.0)	0 (0.0)	1 (0.4)	233 (100.0)
	서울강서	125 (91.9)	9 (6.6)	0 (0.0)	2 (1.5)	136 (100.0)
	서울은평	177 (95.2)	8 (4.3)	0 (0.0)	1 (0.5)	186 (100.0)
	서울영등포	116 (86.6)	14 (10.4)	0 (0.0)	4 (3.0)	134 (100.0)
	서울성북	130 (97.0)	4 (3.0)	0 (0.0)	0 (0.0)	134 (100.0)
	서울마포	124 (95.4)	5 (3.8)	0 (0.0)	1 (0.8)	130 (100.0)
	소계	1,073 (85.6)	67 (5.3)	81 (6.5)	32 (2.6)	1,253 (100.0)
부산	부산광역시	310 (93.4)	15 (4.5)	1 (0.3)	6 (1.8)	332 (100.0)
	부산동부	221 (93.6)	11 (4.7)	1 (0.4)	3 (1.3)	236 (100.0)
	소계	531 (93.5)	26 (4.6)	2 (0.4)	9 (1.6)	568 (100.0)
대구	대구광역시	326 (92.9)	19 (5.4)	3 (0.9)	3 (0.9)	351 (100.0)
인천	인천광역시	279 (96.2)	9 (3.1)	1 (0.3)	1 (0.3)	290 (100.0)
	인천북부	147 (95.5)	5 (3.2)	0 (0.0)	2 (1.3)	154 (100.0)
	소계	426 (95.9)	14 (3.2)	1 (0.2)	3 (0.7)	444 (100.0)
광주	광주광역시	284 (93.7)	9 (3.0)	1 (0.3)	9 (3.0)	303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44 (94.9)	13 (5.1)	0 (0.0)	0 (0.0)	257 (100.0)
울산	울산광역시	443 (93.9)	11 (2.3)	0 (0.0)	18 (3.8)	472 (100.0)
경기	경기도	376 (94.2)	23 (5.8)	0 (0.0)	0 (0.0)	399 (100.0)
	경기북부	225 (95.3)	9 (3.8)	2 (0.8)	0 (0.0)	236 (100.0)
	경기성남	386 (97.2)	10 (2.5)	0 (0.0)	1 (0.3)	397 (100.0)
	경기고양	198 (94.7)	10 (4.8)	1 (0.5)	0 (0.0)	209 (100.0)
	경기부천	222 (87.1)	33 (12.9)	0 (0.0)	0 (0.0)	255 (100.0)
	경기화성	276 (94.2)	14 (4.8)	0 (0.0)	3 (1.0)	293 (100.0)
	경기남양주	228 (92.7)	13 (5.3)	1 (0.4)	4 (1.6)	246 (100.0)
	안산시	225 (94.5)	6 (2.5)	0 (0.0)	7 (2.9)	238 (100.0)
	소계	2,136 (94.0)	118 (5.2)	4 (0.2)	15 (0.7)	2,273 (100.0)
강원	강원도	164 (96.5)	3 (1.8)	0 (0.0)	3 (1.8)	170 (100.0)
	강원동부	138 (98.6)	2 (1.4)	0 (0.0)	0 (0.0)	140 (100.0)
	원주시	114 (83.8)	3 (2.2)	0 (0.0)	19 (14.0)	136 (100.0)
	소계	416 (93.3)	8 (1.8)	0 (0.0)	22 (4.9)	446 (100.0)
충북	충청북도	282 (98.9)	3 (1.1)	0 (0.0)	0 (0.0)	285 (100.0)
	충북북부	217 (99.5)	0 (0.0)	0 (0.0)	1 (0.5)	218 (100.0)
	충북남부	119 (98.3)	1 (0.8)	0 (0.0)	1 (0.8)	121 (100.0)
	소계	618 (99.0)	4 (0.6)	0 (0.0)	2 (0.3)	624 (100.0)
충남	충청남도	289 (89.5)	28 (8.7)	1 (0.3)	5 (1.5)	323 (100.0)
	충청남도남부	145 (100.0)	0 (0.0)	0 (0.0)	0 (0.0)	145 (100.0)
	소계	434 (92.7)	28 (6.0)	1 (0.2)	5 (1.1)	468 (100.0)
전북	전라북도	274 (91.9)	10 (3.4)	0 (0.0)	14 (4.7)	298 (100.0)
	전라북도서부	197 (95.2)	6 (2.9)	0 (0.0)	4 (1.9)	207 (100.0)
	전라북도동부	107 (85.6)	2 (1.6)	0 (0.0)	16 (12.8)	125 (100.0)
	소계	578 (91.7)	18 (2.9)	0 (0.0)	34 (5.4)	630 (100.0)
전남	전라남도	225 (90.7)	8 (3.2)	0 (0.0)	15 (6.0)	248 (100.0)
	전남목포	194 (94.6)	2 (1.0)	0 (0.0)	9 (4.4)	205 (100.0)
	소계	419 (92.5)	10 (2.2)	0 (0.0)	24 (5.3)	453 (100.0)
경북	경상북도	155 (95.1)	5 (3.1)	1 (0.6)	2 (1.2)	163 (100.0)
	경북안동	223 (97.4)	0 (0.0)	0 (0.0)	6 (2.6)	229 (100.0)
	경북포항	180 (99.4)	0 (0.0)	0 (0.0)	1 (0.6)	181 (100.0)
	구미	196 (96.6)	5 (2.5)	0 (0.0)	2 (1.0)	203 (100.0)
	소계	754 (97.2)	10 (1.3)	1 (0.1)	11 (1.4)	776 (100.0)
경남	경상남도	373 (93.0)	19 (4.7)	6 (1.5)	3 (0.7)	401 (100.0)
	경남서부	149 (93.1)	7 (4.4)	0 (0.0)	4 (2.5)	160 (100.0)
	소계	522 (93.0)	26 (4.6)	6 (1.1)	7 (1.2)	561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38 (99.3)	1 (0.7)	0 (0.0)	0 (0.0)	139 (100.0)
	서귀포시	125 (100.0)	0 (0.0)	0 (0.0)	0 (0.0)	125 (100.0)
	소계	263 (99.6)	1 (0.4)	0 (0.0)	0 (0.0)	264 (100.0)
계		9,470 (93.3)	382 (3.8)	100 (1.0)	194 (1.9)	10,146 (100.0)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3 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등을 직접 대면 후 학대 여부 및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사례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1회 또는 그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평균적으로 1.7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3-1〉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8,325	14,278	1.7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기관별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횟수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평균 2.3회로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2.1회, 2.0회, 2.2회로 나타나 2.0회 이상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기관별 현장조사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서 울	서울특별시	274	305	1.1
	서울특별시동부	216	476	2.2
	서울강서	114	224	2.0
	서울은평	151	268	1.8
	서울영등포	111	171	1.5
	서울성북	122	231	1.9
	서울마포	122	175	1.4
	소 계	1,110	1,850	1.7
부 산	부산광역시	253	361	1.4
	부산동부	203	333	1.6
	소 계	456	694	1.5
대 구	대구광역시	232	364	1.6
인 천	인천광역시	189	388	2.1
	인천북부	150	267	1.8
	소 계	339	655	1.9
광 주	광주광역시	195	362	1.9
대 전	대전광역시	214	338	1.6
울 산	울산광역시	392	726	1.9
경 기	경기도	329	611	1.9
	경기북부	191	282	1.5
	경기성남	311	418	1.3
	경기고양	187	345	1.8
	경기부천	245	446	1.8
	경기화성	253	501	2.0
	경기남양주	210	312	1.5
	안산시	198	326	1.6
	소 계	1,924	3,241	1.7
강 원	강원도	139	235	1.7
	강원동부	104	203	2.0
	원주시	119	176	1.5
	소 계	362	614	1.7
충 북	충청북도	227	431	1.9
	충북북부	183	270	1.5
	충북남부	105	130	1.2
	소 계	515	831	1.6
충 남	충청남도	300	488	1.6
	충청남도남부	116	147	1.3
	소 계	416	635	1.5
전 북	전라북도	267	488	1.8
	전라북도서부	180	215	1.2
	전라북도동부	103	142	1.4
	소 계	550	845	1.5
전 남	전라남도	216	441	2.0
	전남목포	165	303	1.8
	소 계	381	744	2.0
경 북	경상북도	127	220	1.7
	경북안동	152	247	1.6
	경북포항	138	263	1.9
	구 미	164	299	1.8
	소 계	581	1,029	1.8
경 남	경상남도	365	841	2.3
	경남서부	117	193	1.6
	소 계	482	1,034	2.1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96	214	2.2
	서귀포시	80	102	1.3
	소 계	176	316	1.8
계		8,325	14,278	1.7

2. 사례판정

1 사례판정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아동학대 사정척도를 사용하거나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정된다. 아동학대사례란 학대의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아동학대로 판단할 근거 또는 증거가 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잠재위험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이다. 〈표 3-3〉에서 전체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인 8,325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총 6,05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2.8%를 차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는 745건(8.9%), 일반사례는 1,522건(18.3%)으로 나타났다.

〈표 3-3〉 사례판정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6,058 (72.8)	745 (8.9)	1,522 (18.3)	8,3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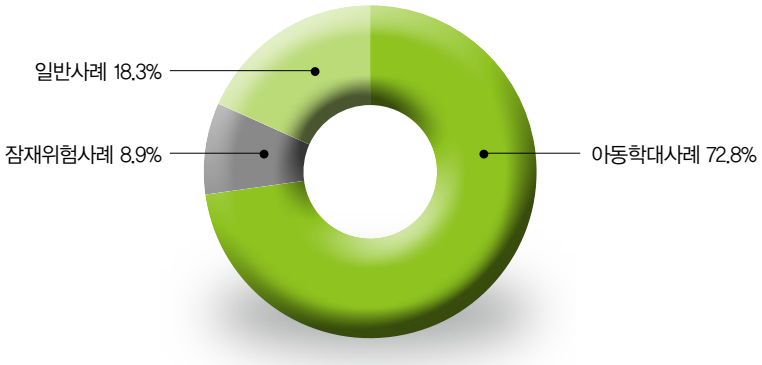

〈그림 3-1〉 사례판정 결과

2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3-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가 392건(4.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365건(4.4%),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329건(4.0%),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0건(3.6%),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274건(3.3%)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267건(3.2%),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253건(3.0%), 232건(2.8%)으로 나타났다. 〈표 2-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많은 기관은 신고 접수 건수가 높은 기관이며,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을수록 실제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표 3-4〉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서 울	서울특별시	215 (78.5)	11 (4.0)	48 (17.5)	274 (100.0)
	서울특별시동부	134 (62.0)	33 (15.3)	49 (22.7)	216 (100.0)
	서울강서	82 (71.9)	9 (7.9)	23 (20.2)	114 (100.0)
	서울은평	120 (79.5)	3 (2.0)	28 (18.5)	151 (100.0)
	서울영등포	83 (74.8)	3 (2.7)	25 (22.5)	111 (100.0)
	서울성북	95 (77.9)	5 (4.1)	22 (18.0)	122 (100.0)
	서울마포	111 (91.0)	0 (0.0)	11 (9.0)	122 (100.0)
	소 계	840 (75.6)	64 (5.8)	206 (18.6)	1,110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143 (56.5)	40 (15.8)	70 (27.7)	253 (100.0)
	부산동부	148 (72.9)	5 (2.5)	50 (24.6)	203 (100.0)
	소 계	291 (63.8)	45 (9.9)	120 (26.3)	456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136 (58.6)	50 (21.6)	46 (19.8)	232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148 (78.3)	13 (6.9)	28 (14.8)	189 (100.0)
	인천북부	93 (62.0)	31 (20.7)	26 (17.3)	150 (100.0)
	소 계	241 (71.1)	44 (13.0)	54 (15.9)	339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134 (68.7)	7 (3.6)	54 (27.7)	195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169 (79.0)	12 (5.6)	33 (15.4)	214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210 (53.6)	97 (24.7)	85 (21.7)	392 (100.0)
경 기	경기도	221 (67.1)	38 (11.6)	70 (21.3)	329 (100.0)
	경기북부	129 (67.6)	9 (4.7)	53 (27.7)	191 (100.0)
	경기성남	213 (68.5)	36 (11.6)	62 (19.9)	311 (100.0)
	경기고양	159 (85.0)	0 (0.0)	28 (15.0)	187 (100.0)
	경기부천	170 (69.4)	17 (6.9)	58 (23.7)	245 (100.0)
	경기화성	184 (72.7)	28 (11.1)	41 (16.2)	253 (100.0)
	경기남양주	173 (82.4)	1 (0.5)	36 (17.1)	210 (100.0)
	안산시	175 (88.4)	5 (2.5)	18 (9.1)	198 (100.0)
	소 계	1,424 (74.0)	134 (7.0)	366 (19.0)	1,924 (100.0)
강 원	강원도	118 (84.9)	2 (1.4)	19 (13.7)	139 (100.0)
	강원동부	75 (72.2)	12 (11.5)	17 (16.3)	104 (100.0)
	원주시	105 (88.3)	1 (0.8)	13 (10.9)	119 (100.0)
	소 계	298 (82.4)	15 (4.1)	49 (13.5)	362 (100.0)
충 북	충청북도	204 (89.9)	11 (4.8)	12 (5.3)	227 (100.0)
	충북북부	139 (76.0)	0 (0.0)	44 (24.0)	183 (100.0)
	충북남부	66 (62.9)	8 (7.6)	31 (29.5)	105 (100.0)
	소 계	409 (79.4)	19 (3.7)	87 (16.9)	515 (100.0)
충 남	충청남도	217 (72.3)	3 (1.0)	80 (26.7)	300 (100.0)
	충청남도남부	92 (79.3)	3 (2.6)	21 (18.1)	116 (100.0)
	소 계	309 (74.3)	6 (1.4)	101 (24.3)	416 (100.0)
전 북	전라북도	145 (54.3)	46 (17.2)	76 (28.5)	267 (100.0)
	전라북도서부	125 (69.5)	24 (13.3)	31 (17.2)	180 (100.0)
	전라북도동부	97 (94.1)	5 (4.9)	1 (1.0)	103 (100.0)
	소 계	367 (66.8)	75 (13.6)	108 (19.6)	550 (100.0)
전 남	전라남도	162 (75.0)	26 (12.0)	28 (13.0)	216 (100.0)
	전남목포	136 (82.4)	11 (6.7)	18 (10.9)	165 (100.0)
	소 계	298 (78.2)	37 (9.7)	46 (12.1)	381 (100.0)
경 북	경상북도	83 (65.3)	25 (19.7)	19 (15.0)	127 (100.0)
	경북안동	137 (90.1)	14 (9.2)	1 (0.7)	152 (100.0)
	경북포항	112 (81.2)	9 (6.5)	17 (12.3)	138 (100.0)
	구 미	123 (75.0)	20 (12.2)	21 (12.8)	164 (100.0)
	소 계	455 (78.3)	68 (11.7)	58 (10.0)	581 (100.0)
경 남	경상남도	262 (71.8)	25 (6.8)	78 (21.4)	365 (100.0)
	경남서부	61 (52.2)	46 (39.3)	10 (8.5)	117 (100.0)
	소 계	323 (67.0)	71 (14.7)	88 (18.3)	482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77 (80.2)	1 (1.0)	18 (18.8)	96 (100.0)
	서귀포시	77 (96.2)	0 (0.0)	3 (3.8)	80 (100.0)
	소 계	154 (87.5)	1 (0.6)	21 (11.9)	176 (100.0)
계		6,058 (72.8)	745 (8.9)	1,522 (18.3)	8,325 (100.0)

3 피해아동 보호 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058건이었으나,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해 아동 수는 5,963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6,058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5〉 피해아동 보호 수

(단위 : 건, 명)

피해아동보호 건수	피해아동보호 명수
6,058	5,963

3. 피해아동 보호율

〈표 3-6〉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1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수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피해아동 보호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사례를 근거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지 않은 사례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평균 0.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1.38‰, 제주특별자치도가 1.24‰, 전라북도가 1.12‰, 강원도가 1.0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광역시는 피해아동 보호율이 0.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인구 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인구 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게 설치되어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아동 수를 고려하여 시 · 군 · 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 지역은 신고 접수 건수와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보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0.56‰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은 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인구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추계아동인구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수를 살펴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당 담당 아동 수는 평균 220,190명으로 산출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477,934명으로 확인되어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담당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333,831명, 대전광역시는 327,569명, 경상남도는 322,212명, 경기도는 320,078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기관 당 담당 아동수가 적게 나타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약 62,151명이며, 강원도의 경우 3개 기관 평균 90,881명으로 나타났다.

〈표 3-6〉 피해아동 보호율

(단위 : 명, 개소,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수	피해아동 보호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785,782	7	255,112	840	0.47
부산광역시	584,126	2	292,063	291	0.50
대구광역시	477,934	1	477,934	136	0.28
인천광역시	541,024	2	270,512	241	0.45
광주광역시	333,831	1	333,831	134	0.40
대전광역시	327,569	1	327,569	169	0.52
울산광역시	237,711	1	237,711	210	0.88
경 기 도	2,560,622	8	320,078	1,424	0.56
강 원 도	272,643	3	90,881	298	1.09
충청북도	295,728	3	98,576	409	1.38
충청남도	387,774	2	193,887	309	0.80
전라북도	326,841	3	108,947	367	1.12
전라남도	325,617	2	162,809	298	0.92
경상북도	462,450	4	115,613	455	0.98
경상남도	644,423	2	322,212	323	0.50
제주특별자치도	124,301	2	62,151	154	1.24
계	9,688,376	44	220,190	6,058	0.63

* 통계청(www.kosis.kr), 2011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4 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가. 피해아동 성별

2011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6,058건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은 〈표 4-1〉과 같이 남아가 3,069건(50.7%), 여아가 2,989건(49.3%)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남	여	계
3,069 (50.7)	2,989 (49.3)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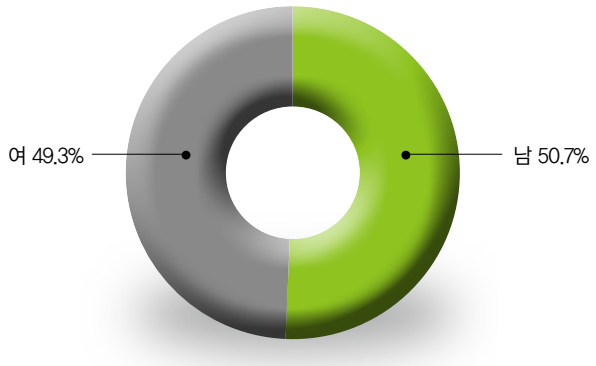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표 4-2〉를 통해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1,44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1,317건(21.7%)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장에 제시된 〈표 5-3〉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의 연령 내용을 살펴보면 만 13~15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보다 높았으며, 〈표 5-1〉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보다 더 정확하게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9세가 1,105건(18.3%)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기에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 등과 같은 부모 교육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학령기 이전 단계의 아동 즉 만 6세 미만이 1,714건(28.3%)으로 전체 피해아동의 약 1/4 정도로 나타났다. 이 연령의 아동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외부 활동이 적고 학대 피해를 받았음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기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 발생에 대해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연령 분포에서 만 1세 미만이 273건(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점이며, 5장의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중 영아대상 사례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만 1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 발견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학대에 따른 후유증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개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273 (4.5)
1세	197 (3.3)
2세	238 (3.9)
3세	235 (3.9)
소계	670 (11.1)
4세	256 (4.2)
5세	251 (4.1)
6세	264 (4.4)
소계	771 (12.7)
7세	308 (5.1)
8세	405 (6.7)
9세	392 (6.5)
소계	1,105 (18.3)
10세	450 (7.4)
11세	481 (7.9)
12세	516 (8.5)
소계	1,447 (23.8)
13세	451 (7.4)
14세	471 (7.8)
15세	395 (6.5)
소계	1,317 (21.7)
16세	276 (4.6)
17세	199 (3.3)
소계	475 (7.9)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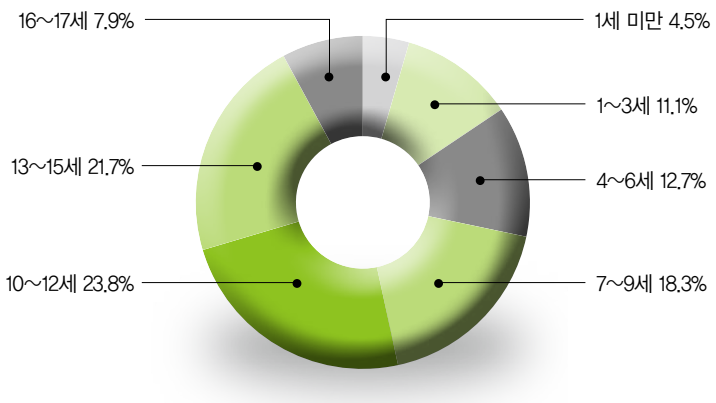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3〉과 같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친부모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모 · 부자가정, 미혼부 · 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가정,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형태(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중에는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3,688건(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부모가족 1,988건(32.8%), 대리양육형태 213건(3.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1,988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1,559건(25.7%), 927건(15.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 · 모가정을 합하면 2,666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44.0%가 한부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011년 전체 추계 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약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한부모가족에서 과반수 가량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친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인해 홀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자녀양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및 정서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 대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와 같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 형태에서도 213건(3.5%)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이미 부모와의 격리를 경험하고 대리 양육된 상태에서 학대를 경험할 경우 아동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리양육 형태의 가정 및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 ·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10). 가구구성/가구원수별 추계가구-전국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 · 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1,988 (32.8)	1,559 (25.7)	927 (15.3)	180 (3.0)	441 (7.3)	266 (4.4)	294 (4.9)	21 (0.3)	3,688 (60.9)	28 (0.4)	30 (0.5)	155 (2.6)	213 (3.5)	67 (1.1)	102 (1.7)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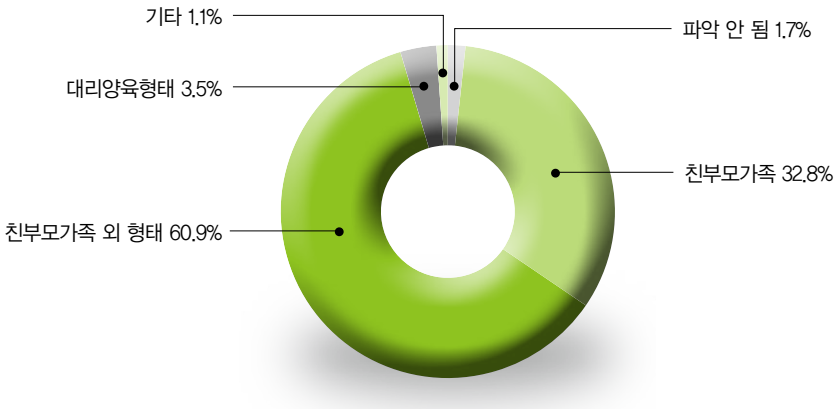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표 4-4〉에서 살펴보면, 전체 피해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아동은 1,881건으로 전체의 31.0%에 해당하였고,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4,166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였다.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1,881 (31.0)
비수급권 대상	4,166 (68.8)
파악 안 됨	11 (0.2)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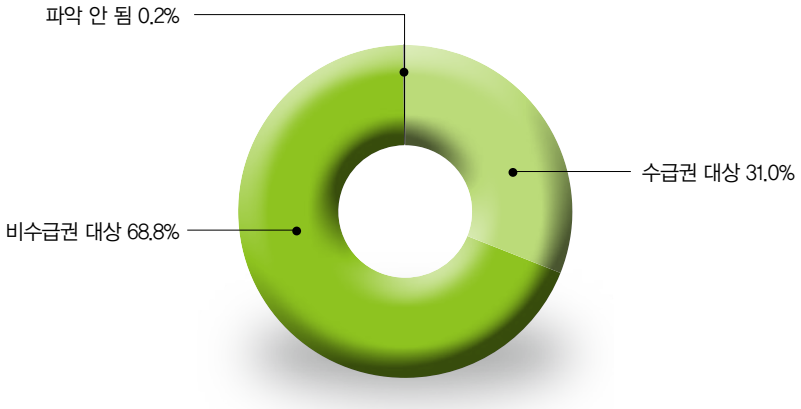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표 4-5〉에서와 같이 피해아동들은 학습문제, 주의산만, 학교 부적응, 가출, 반항 · 충동 · 공격성과 같은 특성을 빈번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피해아동이 본래 지니고 있는 특성이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일 수도 있어 〈표 4-5〉에서 보여주는 특성이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직접 요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특성은 반항 · 충동 ·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 · 행동 특성으로 5,348건(37.4%)이며, 다음으로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오락중독 등과 같은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5,085건(35.6%)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적응 · 행동 특성에서는 반항 · 충동 · 공격성이 787건(5.5%), 학습문제가 761건(5.3%), 학교 부적응이 759건(5.3%), 가출이 614건(4.3%)로 높게 나타났고, 정서 · 정신건강 특성에서는 불안이 1,167건(8.2%), 주의산만이 780건(5.5%), 낮은 자아존중감이 595건(4.2%)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생문제 505건(3.6%), 언어문제 372건(2.6%), 신체발달지연 188건(1.3%) 등 발달 · 신체건강 특성이 1,400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특성 중 9.8%를 차지하였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 특성이 248건으로 전체의 1.7%에 해당하였다.

〈표 4-5〉와 같이 아무런 특성을 보이지 않는 피해아동은 전체의 10.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미한 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아동의 연령이 너무 낮아 두드러진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특성과 학대와의 인과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사전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본다.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체계 내에서 정서 · 정신건강 및 적응 행동 문제 해결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이 지원 · 활성화되는 것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피해아동의 특성이 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피해아동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치료 인력 확충 및 질 높은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피해아동 특성

특성		건수 (비율)
장 애	시각장애	2 (0.0)
	청각장애	5 (0.0)
	지체장애	19 (0.1)
	지적장애	172 (1.3)
	자폐성장애	16 (0.1)
	언어장애	10 (0.1)
	뇌병변장애	19 (0.1)
	기타장애	5 (0.0)
	소계	248 (1.7)
정서 · 정신건강	주의산만	780 (5.5)
	과잉행동	335 (2.3)
	오락중독	106 (0.7)
	인터넷중독	161 (1.1)
	정서문제	0 (0.0)
	불안	1,167 (8.2)
	애착문제	547 (3.8)
	무력감	470 (3.3)
	우울	488 (3.4)
	낮은 자아존중감	595 (4.2)
	성격 및 기질 문제	297 (2.1)
	탐식 및 결식	139 (1.0)
	소계	5,085 (35.6)
적응 · 행동	반항 · 충동 · 공격성	787 (5.5)
	거짓말	581 (4.1)
	도벽	434 (3.0)
	가출	614 (4.3)
	약물 · 흡연 · 음주	446 (3.1)
	성문제	165 (1.2)
	학교 부적응	759 (5.3)
	사회성 문제	0 (0.0)
	잦은 결석	423 (3.0)
	늦은 귀가	378 (2.6)
	학습문제	761 (5.3)
	소계	5,348 (37.4)
발달 · 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188 (1.3)
	언어문제	372 (2.6)
	급만성질병	91 (0.6)
	영양결핍	128 (0.9)
	대소변문제	116 (0.8)
	위생문제	505 (3.6)
	소계	1,400 (9.8)
특성 없음		1,436 (10.0)
기타		773 (5.5)
계		14,290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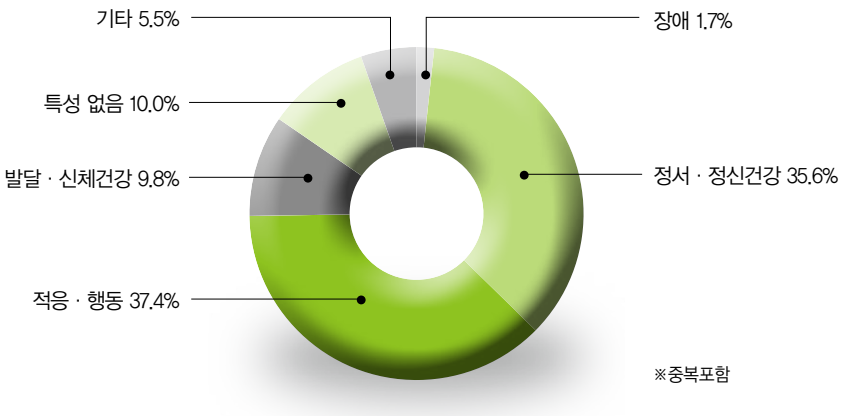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1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6,058건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는 남성 3,442건(56.8%), 여성 2,606건(43.0%)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았다.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남	여	파악 안 됨	계
3,442 (56.8)	2,606 (43.0)	10 (0.2)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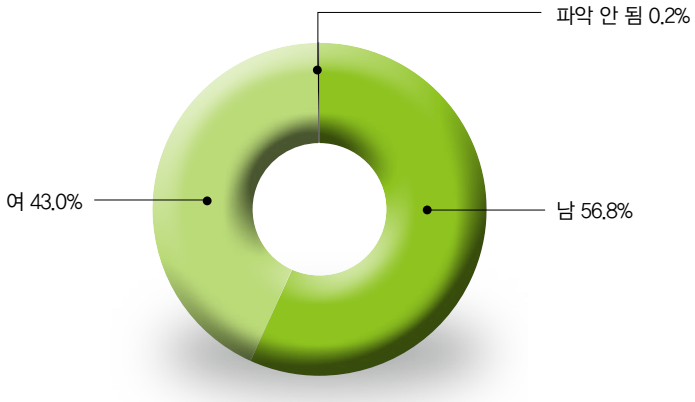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대행위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2,560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1,920건(31.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40대의 연령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74.0%를 차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아동학대가 대체로 학령기 아동의 부모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표 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피해가 많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38 (0.6)
20~29세	501 (8.3)
30~39세	1,920 (31.7)
40~49세	2,560 (42.3)
50~59세	706 (11.6)
60~69세	173 (2.9)
70세 이상	86 (1.4)
파악 안 됨	74 (1.2)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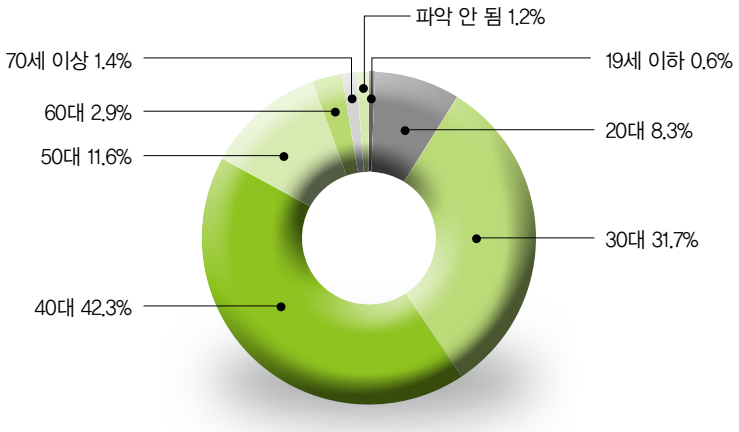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표 4-8〉에서와 같이 부모, 친인척, 타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039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였고, 타인이 574건으로 9.5%, 친인척이 349건으로 5.8%, 기타가 95건으로 1.6%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아동의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가 2,855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1,963건(32.4%)으로 많았다. 결국,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총 4,818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였다.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시설종사자가 265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이 131건(2.2%), 친조모가 84건(1.4%)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타인의 신고 없이는 발견이 어려운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전환이 근본적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및 부모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이 집중적으로 뒷받침되고 강화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위탁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가 13건(0.2%)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아동보호체계의 안전망의 실태를 재점검하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 계		건 수 (비 율)
부모	친부	2,855 (47.1)
	친모	1,963 (32.4)
	계부	62 (1.0)
	계모	129 (2.1)
	양부	11 (0.2)
	양모	19 (0.3)
	소계	5,039 (83.1)
친인척	친조부	58 (1.0)
	친조모	84 (1.4)
	외조부	15 (0.2)
	외조모	37 (0.6)
	친인척	131 (2.2)
	형제,자매	24 (0.4)
	소계	349 (5.8)
타인	부,모의 동거인	89 (1.5)
	교원	85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0 (0.5)
	시설종사자	265 (4.4)
	이웃	60 (1.0)
	낯선 사람	32 (0.5)
	위탁부	5 (0.1)
	위탁모	8 (0.1)
	소계	574 (9.5)
기타		95 (1.6)
파악 안 됨		1 (0.0)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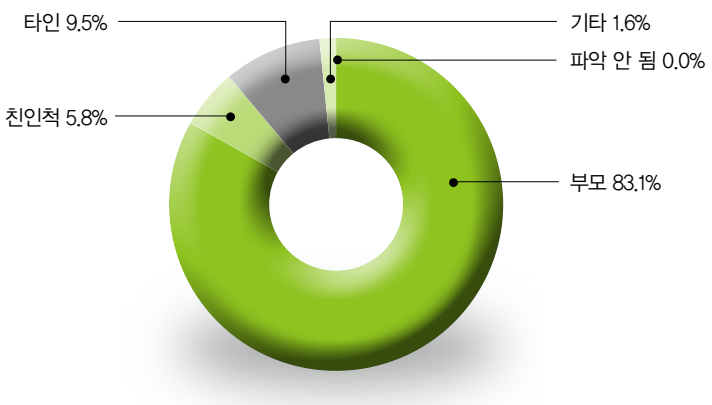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표 4-9〉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동거하는 사례는 4,739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였으며, 비동거 사례는 1,319건으로 전체의 21.8%에 해당하였다.

〈표 4-10〉에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별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9.8%, 59.4%로 가장 높았다. 앞서 분석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여부를 떠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으므로 아동학대 문제 접근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단위 : 건, %)

동거	비동거	계
4,739 (78.2)	1,319 (21.8)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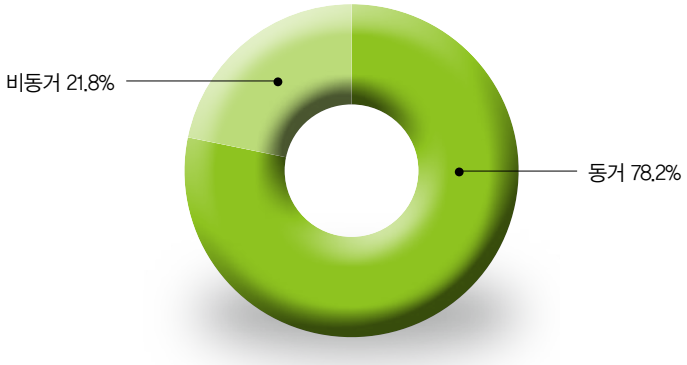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별 동거여부

(단위 : 건, %)

관 계		동 거	비 동 거
부모	친부	2,389 (50.4)	466 (35.3)
	친모	1,681 (35.4)	282 (21.3)
	계부	52 (1.1)	10 (0.8)
	계모	108 (2.3)	21 (1.6)
	양부	9 (0.2)	2 (0.2)
	양모	17 (0.4)	2 (0.2)
	소계	4,256 (89.8)	783 (59.4)
친인척	친조부	52 (1.1)	6 (0.5)
	친조모	79 (1.7)	5 (0.4)
	외조부	12 (0.3)	3 (0.2)
	외조모	31 (0.7)	6 (0.5)
	친인척	85 (1.8)	46 (3.4)
	형제 · 자매	14 (0.2)	10 (0.8)
	소계	273 (5.8)	76 (5.8)
타인	부,모의 동거인	70 (1.5)	19 (1.4)
	교사	1 (0.0)	84 (6.4)
	학원강사	0 (0.0)	30 (2.3)
	시설종사자	79 (1.7)	186 (14.1)
	이웃	8 (0.2)	52 (3.9)
	낯선 사람	1 (0.0)	31 (2.4)
	위탁부	5 (0.1)	0 (0.0)
	위탁모	5 (0.1)	3 (0.2)
	소계	169 (3.6)	405 (30.7)
파악 안 됨		40 (0.8)	55 (4.1)
기타		1 (0.0)	0 (0.0)
계		4,739 (100.0)	1,319 (100.0)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분포는 〈표 4-11〉과 같이 무직이 1,503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단순노무직이 829건으로 13.7%, 전업주부가 692건으로 11.4%, 서비스 및 판매직이 456건(7.5%), 비정규직이 424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직업유형이 무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이 전체의 45.5%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상당수가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리직을 포함한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의 경우도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를 차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단지 빈곤한 상황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한 집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다양한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학대행위자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11〉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비율)
입법공무원,관리직	36 (0.6)
전문직	294 (4.9)
준전문직	96 (1.6)
사무직	91 (1.5)
서비스,판매직	456 (7.5)
농 · 어 · 축산업	163 (2.7)
기능직	241 (4.0)
기계장치조작원	95 (1.6)
단순노무직	829 (13.7)
소규모 자영업	312 (5.2)
전업주부	692 (11.4)
학생	23 (0.4)
비정규직	424 (7.0)
무직	1,503 (24.8)
기타	499 (8.2)
파악 안 됨	304 (4.9)
계	6,058 (100.0)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표 4-12〉에서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파악한 결과, 수급권 대상이 1,483건(24.5%), 비수급권 대상이 4,305건(71.1%)으로 학대행위자 중 비수급권 대상이 수급권 대상보다 약 2.9배 많았다.

그러나 앞서 〈표 4-11〉을 통해 학대행위자 직업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대행위자 중 소득수준이 낮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과반수 가량을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비수급권 대상 중 상당수가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2〉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1,483 (24.5)
비수급권 대상	4,305 (71.1)
파악 안 됨	270 (4.4)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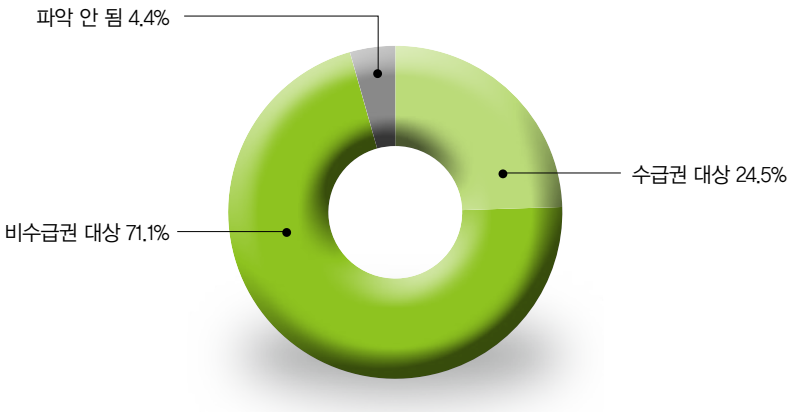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4-13〉에서와 같이 15개의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31.8%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2.9%, 부부 및 가족 갈등이 10.3%, 그리고 성격 및 기질문제가 9.1%로 높게 파악되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특성 중 54.7%, 즉 과반수를 차지하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대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 및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자녀양육 기술 및 방법을 제공해주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망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특성 가운데 중독, 질환문제도 13.6%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례 개입 시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인 임상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릴 적 학대경험 및 폭력성이 전체 학대행위자 특성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 유추하건대 어릴 적 학대경험 및 폭력성에 대한 후유증 치료, 양육자의 긍정적 태도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학대 유발의 고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후유증 치료와 함께 비가해 가족의 기능강화는 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표 4-13〉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 성	건수(비율)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6,515 (31.8)
중독문제	1,630 (8.0)
질환문제	1,149 (5.6)
성격 및 기질문제	1,856 (9.1)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680 (22.9)
어릴 적 학대경험	395 (1.9)
폭력성	855 (4.2)
전과력	126 (0.6)
성문제	171 (0.8)
원치 않는 아동	246 (1.2)
부부 및 가족 갈등	2,115 (10.3)
종교문제	84 (0.4)
특성없음	141 (0.7)
기타	243 (1.2)
파악 안 됨	261 (1.3)
계	20,467 (100.0)

※중복포함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와 아동학대의 사례 유형별 통계,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결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아동학대 발생장소

〈표 4-14〉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86.6%)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이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가정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아동학대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고립된 환경에서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 예방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집이 159건(2.6%), 집근처 또는 길가가 150건(2.5%), 복지시설이 111건(1.8%), 학교 67건(1.1%), 병원 53건(0.9%), 친척집 46건(0.8%), 이웃집 33건(0.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가정 다음으로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육 교 · 직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인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0세에서 만 5세인데 반해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아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어린이집에서 더욱 많은 아동학대가 발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부모가 병원에 신생아를 방치한 채 도피하거나,

보호자가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표 4-14〉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5,246 (86.6)
집근처 또는 길가	150 (2.5)
친척집	46 (0.8)
이웃집	33 (0.5)
어린이집	159 (2.6)
유치원	3 (0.0)
학교	67 (1.1)
학원	27 (0.5)
병원	53 (0.9)
복지시설	111 (1.8)
기타	159 (2.6)
파악 안 됨	4 (0.1)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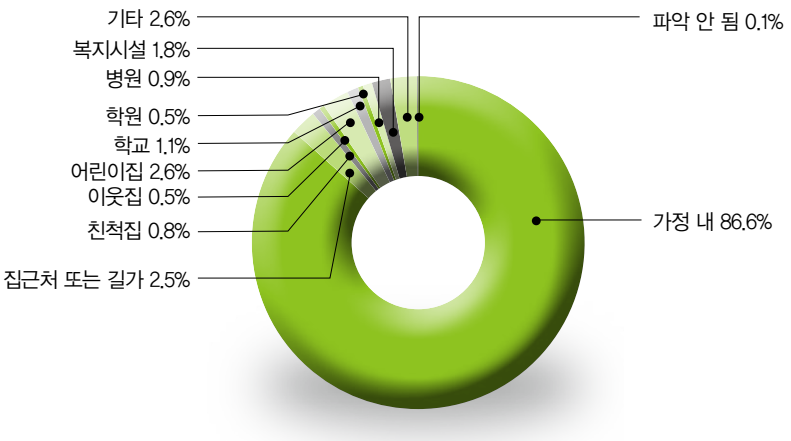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장소

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발생빈도는 다음 〈표 4-15〉와 같이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624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고,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054건으로 17.4%에 해당하였다.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사례 중에 60.7%에 해당되며 이는 피해아동 중 과반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2,624 (43.3)
2~3일에 한 번	1,054 (17.4)
일주일에 한 번	785 (13.0)
2주일에 한 번	286 (4.7)
1개월에 한 번	376 (6.2)
2~3개월에 한 번	233 (3.8)
6개월에 한 번	101 (1.7)
1년에 한 번	58 (1.0)
일회성	541 (8.9)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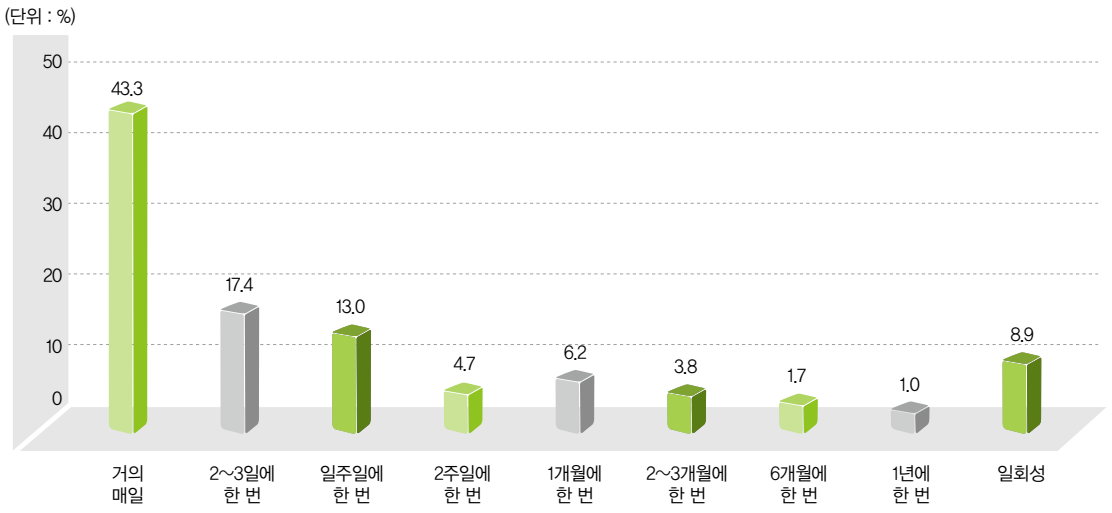

〈그림 4-12〉 아동학대 발생빈도

3. 아동학대사례 유형

이 장에서는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아동복지법 제2조의 아동학대 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한 가지의 학대 유형만 단순히 발생하기보다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중복학대로 정의하였으며,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표 4-16〉에서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아동학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중복학대가 2,621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이 1,783건(29.4%)으로 많았으며, 정서학대가 909건(15.0%), 신체학대가 466건(7.7%), 성학대가 226건(3.7%), 유기가 53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에서 중복학대가 전체 사례의 43.3%에 해당하여 10명 중 4명 이상의 아동은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유 형		건 수 (비 율)
신체학대		466 (7.7)
정서학대		909 (15.0)
성학대		226 (3.7)
방임		1,783 (29.4)
유기		53 (0.9)
중복학대	신체학대 · 정서학대	1,380 (22.9)
	신체학대 · 성학대	20 (0.3)
	신체학대 · 방임	140 (2.3)
	신체학대 · 유기	3 (0.0)
	정서학대 · 성학대	25 (0.4)
	정서학대 · 방임	545 (9.1)
	정서학대 · 유기	1 (0.0)
	성학대 · 방임	26 (0.4)
	방임 · 유기	24 (0.4)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55 (0.9)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382 (6.3)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유기	1 (0.0)
	신체학대 · 성학대 · 방임	5 (0.1)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1 (0.0)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10 (0.2)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 유기	3 (0.0)
	소계	2,621 (43.3)
계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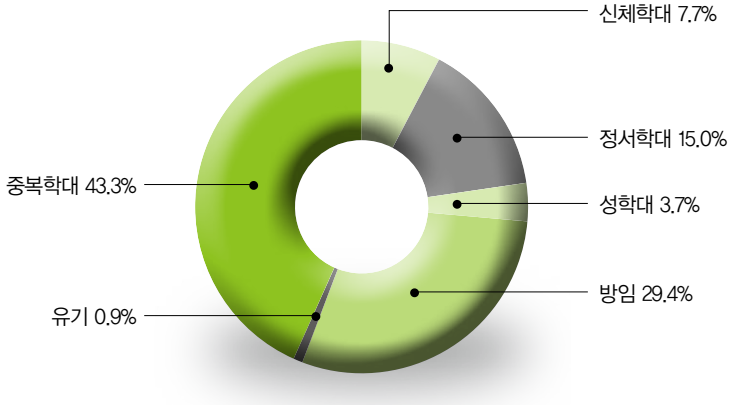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표 4-17〉에서는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누계는 9,14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서학대가 3,312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방임이 2,919건(31.9%)으로 많았으며, 신체학대 2,464건(27.0%), 성학대 368건(4.0%), 유기 85건(0.9%)의 순으로 드러났다.

방임은 중복학대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할 때와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살펴볼 때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임의 경우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는 피해 양상이 적어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 낮을 경우 방임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성격장애, 발달지체,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4-16〉과 〈표 4-17〉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복학대 유형의 각 항목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 중복학대를 별도 분류했을 때 비율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각각 2,464건(27.0%), 3,312건(36.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신체학대나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중복적으로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성학대는 아동학대사례 유형 Ⅰ과 Ⅱ에서 각각 3.7%, 4.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학대 비율이 낮은 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성학대의 폐쇄적 특성과 함께 성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 수 (비 율)
신체학대	2,464 (27.0)
정서학대	3,312 (36.2)
성학대	368 (4.0)
방임	2,919 (31.9)
유기	85 (0.9)
계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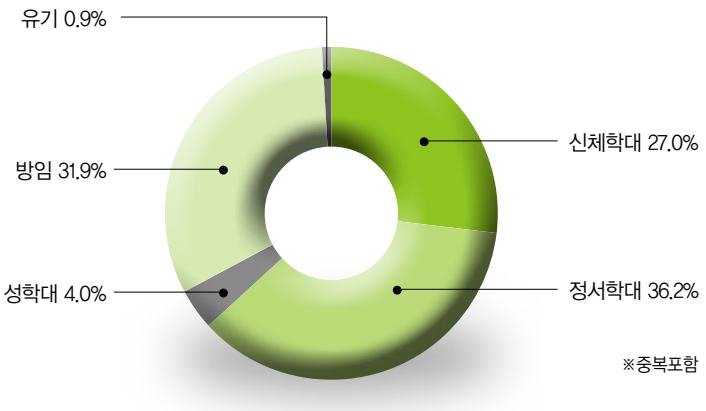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이 절에서는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표 4-18〉에서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하고는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학대의 경우, 여아가 322건으로 87.5%를 차지하였고 남아는 46건(12.5%)을 차지하여 7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아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011년 9월,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법률 개정 이전에는 관련 법안 제7조 제1항에서 강간 객체를 여자 아동 · 청소년만 인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강간 객체를 모든 아동 · 청소년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남아 대상 성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남	1,281 (52.0)	1,712 (51.7)	46 (12.5)	1,549 (53.1)	55 (64.7)	4,643 (50.8)
여	1,183 (48.0)	1,600 (48.3)	322 (87.5)	1,370 (46.9)	30 (35.3)	4,505 (49.2)
계	2,464 (100.0)	3,312 (100.0)	368 (100.0)	2,919 (100.0)	85 (100.0)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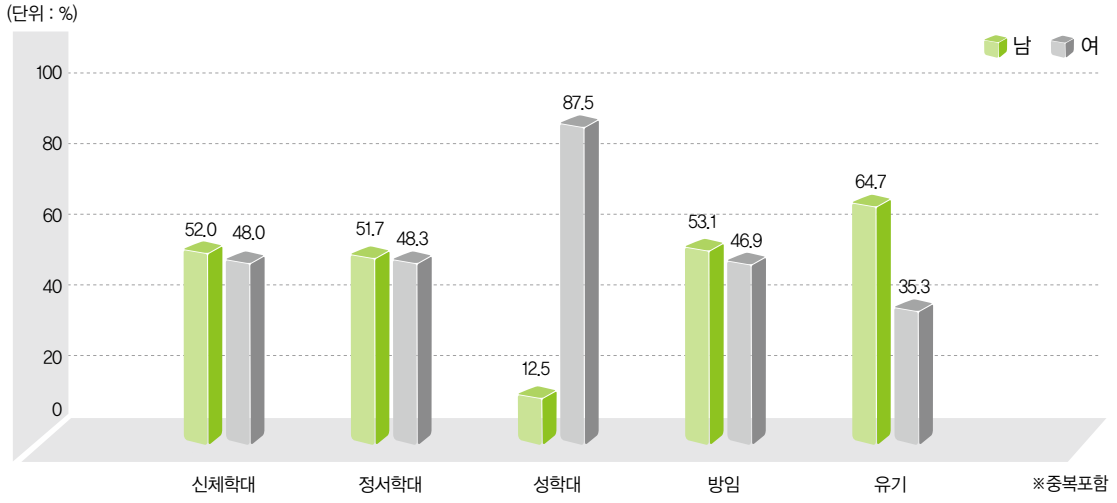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은 유기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만 7~12세가 전체 피해아동 사례의 43%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 연령대에서 학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미취학 아동들에 비해서 학대 발생 여부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만 16~18세 미만의 아동에 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자기 보호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기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전체 유기 아동 중 54.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학대행위자가 자녀를 출산하자마자 병원 또는 시설, 기타 장소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0~12세 미만의 아동에게서도 적은 비중이지만 전체 유기 아동의 7.1%의 비율을 보였으며 주로 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집에 두고 가출했거나 아동에 대한 시설 입소 조치 후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학대의 경우에는 전체 성학대 아동의 35.3%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만 13~1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1세 미만	40 (1.6)	62 (1.9)	2 (0.5)	189 (6.5)	46 (54.1)	339 (3.7)
1~3세	189 (7.7)	325 (9.8)	9 (2.4)	399 (13.7)	13 (15.3)	935 (10.2)
4~6세	300 (12.2)	405 (12.2)	21 (5.7)	376 (12.9)	12 (14.1)	1,114 (12.2)
7~9세	438 (17.8)	620 (18.7)	57 (15.5)	539 (18.5)	8 (9.4)	1,662 (18.2)
10~12세	634 (25.7)	820 (24.8)	102 (27.7)	697 (23.8)	6 (7.1)	2,259 (24.7)
13~15세	642 (26.0)	783 (23.6)	130 (35.3)	535 (18.3)	0 (0.0)	2,090 (22.8)
16~18세	221 (9.0)	297 (9.0)	47 (12.9)	184 (6.3)	0 (0.0)	749 (8.2)
계	2,464 (100.0)	3,312 (100.0)	368 (100.0)	2,919 (100.0)	85 (100.0)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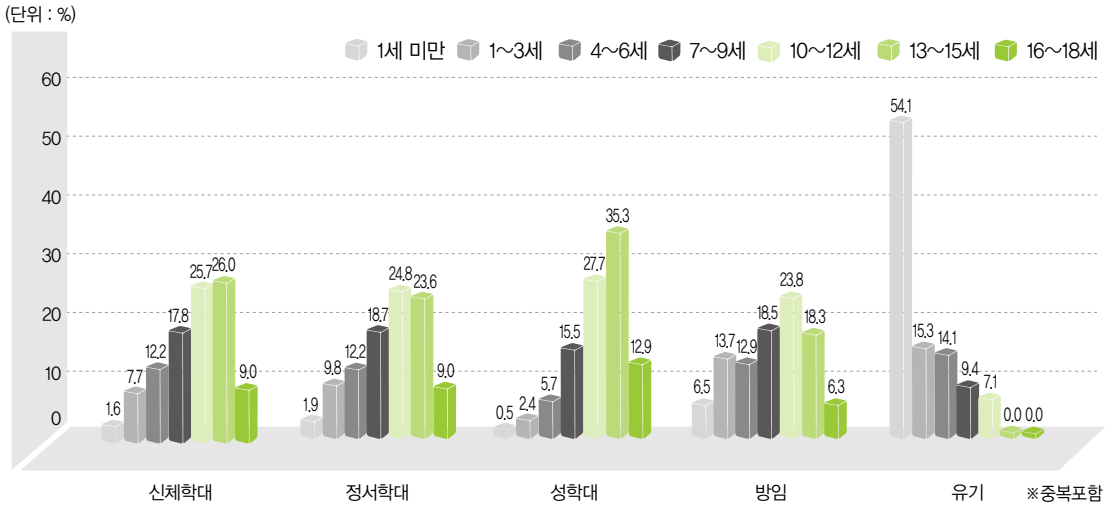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4-20〉과 같이 정서학대와 유기를 제외한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에서 모두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 · 행동 특성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와 유기에서는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신체학대의 경우 적응 · 행동 특성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전체의 43.7%를 차지한 가운데 반항 · 충동 · 공격성이 7.2%, 가출이 5.9%, 거짓말이 5.7%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39.3%로 나타났고, 이 중 불안이 9.6%, 주의산만이 5.6%로 나타났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도 43.8%가 적응 ·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중 성문제 특성이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다른 학대 유형에서 성문제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 8배 정도 높았다. 방임은 적응 · 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이 전체 방임 아동 중 35.7%를 차지하였고, 학습문제 6.7%, 학교 부적응 5.8%에 해당하였다.

이 외에도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은 학대 유형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학대 피해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대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아동들에게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치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임과 유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발달 · 신체 건강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으며, 세부적 특성으로 방임 아동들은 위생 문제가, 유기 아동들은 신체발달지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임 및 유기 아동들은 다른 유형의 피해아동보다도 발달 · 신체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기 아동의 경우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 특성 중에서 40.9%로 매우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표 4-19〉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만 1세 미만의 영아 비율(54.1%)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아동의 특성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할 만큼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 및 환경적인 특성 등이 더욱 큰 문제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관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장애	시각장애	0 (0.0)	0 (0.0)	0 (0.0)	2 (0.0)	0 (0.0)	2 (0.0)
	청각장애	0 (0.0)	1 (0.0)	1 (0.1)	4 (0.1)	0 (0.0)	6 (0.0)
	지체장애	6 (0.1)	7 (0.1)	0 (0.0)	13 (0.2)	0 (0.0)	26 (0.1)
	지적장애	62 (1.0)	76 (1.0)	30 (3.4)	95 (1.2)	0 (0.0)	263 (1.2)
	자폐성장애	9 (0.1)	9 (0.1)	0 (0.0)	5 (0.1)	1 (0.9)	24 (0.1)
	언어장애	3 (0.1)	4 (0.0)	1 (0.1)	6 (0.1)	0 (0.0)	14 (0.1)
	뇌병변장애	9 (0.1)	8 (0.1)	2 (0.2)	8 (0.1)	1 (0.9)	28 (0.1)
	기타장애	2 (0.0)	1 (0.0)	0 (0.0)	4 (0.1)	2 (1.8)	9 (0.0)
	소계	91 (1.4)	106 (1.3)	34 (3.8)	137 (1.9)	4 (3.6)	372 (1.6)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355 (5.6)	452 (5.6)	26 (2.9)	400 (5.5)	4 (3.6)	1,237 (5.5)
	과잉행동	167 (2.6)	206 (2.6)	16 (1.8)	165 (2.3)	0 (0.0)	554 (2.4)
	오락중독	35 (0.6)	56 (0.7)	1 (0.1)	70 (1.0)	0 (0.0)	162 (0.7)
	인터넷중독	53 (0.8)	82 (1.0)	2 (0.2)	104 (1.4)	0 (0.0)	241 (1.1)
	불안	551 (8.7)	772 (9.6)	79 (8.9)	480 (6.5)	4 (3.6)	1,886 (8.3)
	애착문제	220 (3.5)	323 (4.0)	30 (3.4)	296 (4.1)	6 (5.6)	875 (3.9)
	무력감	202 (3.2)	292 (3.6)	25 (2.8)	233 (3.2)	1 (0.9)	753 (3.3)
	우울	225 (3.5)	329 (4.1)	51 (5.7)	193 (2.7)	1 (0.9)	799 (3.5)
	낮은 자아존중감	268 (4.2)	396 (4.9)	33 (3.7)	269 (3.7)	0 (0.0)	966 (4.3)
	성격 및 기질문제	164 (2.6)	200 (2.5)	9 (1.0)	120 (1.7)	1 (0.9)	494 (2.2)
	탐식 및 결식	45 (0.7)	58 (0.7)	7 (0.8)	104 (1.4)	0 (0.0)	214 (0.9)
	소계	2,285 (36.0)	3,166 (39.3)	279 (31.3)	2,434 (33.5)	17 (15.5)	8,181 (36.1)
적응·행동	거짓말	363 (5.7)	367 (4.6)	31 (3.5)	225 (3.1)	1 (0.9)	987 (4.4)
	반항 · 충동 · 공격성	457 (7.2)	525 (6.5)	34 (3.8)	296 (4.1)	0 (0.0)	1,312 (5.8)
	도벽	272 (4.3)	258 (3.2)	23 (2.6)	194 (2.7)	1 (0.9)	748 (3.3)
	가출	373 (5.9)	383 (4.8)	55 (6.2)	257 (3.5)	0 (0.0)	1,068 (4.7)
	약물 · 흡연 · 음주	245 (3.9)	257 (3.2)	49 (5.5)	171 (2.4)	0 (0.0)	722 (3.2)
	성문제	51 (0.8)	67 (0.8)	75 (8.4)	70 (1.0)	0 (0.0)	263 (1.2)
	학교 부적응	320 (5.0)	407 (5.0)	44 (4.9)	426 (5.8)	0 (0.0)	1,197 (5.3)
	잦은 결석	164 (2.6)	196 (2.4)	22 (2.5)	285 (3.9)	0 (0.0)	667 (2.9)
	늦은 귀가	225 (3.5)	245 (3.0)	20 (2.1)	182 (2.5)	0 (0.0)	672 (3.0)
	학습문제	306 (4.8)	376 (4.7)	38 (4.3)	488 (6.7)	3 (2.7)	1,211 (5.2)
	소계	2,776 (43.7)	3,081 (38.2)	391 (43.8)	2,594 (35.7)	5 (4.5)	8,847 (39.0)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71 (1.1)	78 (1.0)	6 (0.7)	130 (1.8)	5 (4.5)	290 (1.3)
	언어문제	133 (2.2)	180 (2.2)	9 (1.0)	239 (3.3)	3 (2.7)	564 (2.5)
	급만성질병	21 (0.3)	34 (0.4)	4 (0.4)	65 (0.9)	2 (1.9)	126 (0.6)
	영양결핍	25 (0.4)	33 (0.4)	4 (0.4)	120 (1.7)	4 (3.6)	186 (0.8)
	대소변문제	52 (0.8)	53 (0.7)	2 (0.2)	71 (1.0)	0 (0.0)	178 (0.7)
	위생문제	104 (1.6)	155 (1.9)	25 (2.9)	467 (6.3)	0 (0.0)	751 (3.3)
	소계	406 (6.4)	533 (6.6)	50 (5.6)	1,092 (15.0)	14 (12.7)	2,095 (9.2)
특성 없음		527 (8.3)	763 (9.5)	95 (10.7)	612 (8.4)	45 (40.9)	2,042 (9.0)
기타		268 (4.2)	412 (5.1)	43 (4.8)	398 (5.5)	25 (22.8)	1,146 (5.1)
계		6,353 (100.0)	8,061 (100.0)	892 (100.0)	7,267 (100.0)	110 (100.0)	22,683 (100.0)

※중복포함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중복학대를 각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시켜 집계된 총 9,148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7,590건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하였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기의 경우 부모가 차지한 비율이 90.6%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발생될 수 있는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 사례와 달리 타인에 의한 발생률이 33.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기의 경우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1.2%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 1세 미만의 아동들에게서 유기 발생률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부 모	1,991 (80.8)	2,741 (82.8)	177 (48.1)	2,604 (89.2)	77 (90.6)	7,590 (83.0)
친인척	141 (5.7)	185 (5.6)	36 (9.8)	163 (5.6)	3 (3.5)	528 (5.8)
타 인	278 (11.3)	339 (10.2)	123 (33.4)	125 (4.3)	0 (0.0)	865 (9.4)
기 타	54 (2.2)	47 (1.4)	32 (8.7)	27 (0.9)	4 (4.7)	164 (1.8)
파악 안 됨	0 (0.0)	0 (0.0)	0 (0.0)	0 (0.0)	1 (1.2)	1 (0.0)
계	2,464 (100.0)	3,312 (100.0)	368 (100.0)	2,919 (100.0)	85 (100.0)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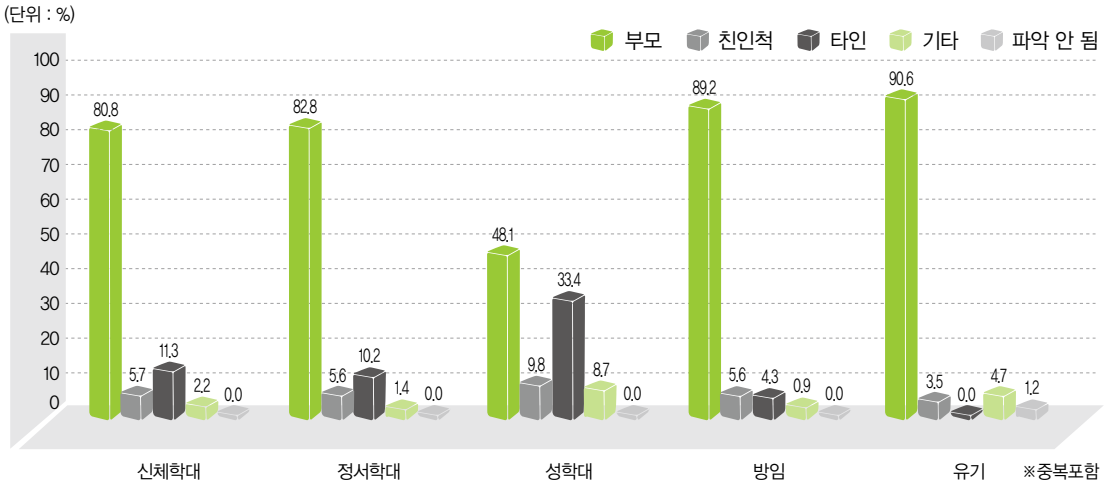

〈그림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크게 1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가 학대행위자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사회관계망 형성, 경제적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의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학대의 경우 성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가 12.4%로 다른 학대 유형보다 월등히 높았고, 유기는 원치 않는 아동 요인이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신체학대, 정서학대의 경우 어릴 적 학대경험 및 폭력성 요인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폭력의 세습화가 신체 · 정서학대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방임 및 유기의 경우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약 10% 내외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방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 지어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2 (33.4)	3,971 (31.1)	206 (22.8)	3,313 (33.3)	53 (25.9)	10,585 (32.1)
중독문제	819 (9.0)	1,204 (9.4)	76 (8.4)	655 (6.6)	12 (5.9)	2,766 (8.4)
질환문제	417 (4.6)	630 (4.9)	31 (3.4)	711 (7.1)	2 (1.0)	1,791 (5.4)
성격 및 기질문제	1,008 (11.1)	1,419 (11.1)	82 (9.1)	647 (6.5)	6 (2.9)	3,162 (9.6)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768 (19.4)	2,614 (20.4)	119 (13.2)	2,729 (27.4)	50 (24.3)	7,280 (22.1)
어릴 적 학대경험	234 (2.6)	282 (2.2)	15 (1.7)	146 (1.5)	3 (1.5)	680 (2.1)
폭력성	492 (5.4)	693 (5.4)	46 (5.1)	253 (2.5)	4 (2.0)	1,488 (4.5)
전과력	59 (0.6)	72 (0.6)	14 (1.6)	51 (0.5)	0 (0.0)	196 (0.6)
성문제	51 (0.6)	57 (0.4)	112 (12.4)	45 (0.5)	3 (1.5)	268 (0.8)
원치 않는 아동	84 (0.9)	133 (1.0)	5 (0.6)	145 (1.5)	25 (12.1)	392 (1.2)
부부 및 가족 갈등	889 (9.8)	1,432 (11.2)	71 (7.9)	939 (9.4)	14 (6.8)	3,345 (10.2)
종교문제	22 (0.2)	33 (0.3)	2 (0.2)	52 (0.5)	0 (0.0)	109 (0.3)
특성 없음	71 (0.8)	47 (0.4)	29 (3.2)	26 (0.3)	3 (1.5)	176 (0.5)
기타	92 (1.0)	125 (1.0)	13 (1.4)	135 (1.4)	5 (2.4)	370 (1.2)
파악 안 됨	52 (0.6)	76 (0.6)	81 (9.0)	99 (1.0)	25 (12.2)	333 (1.0)
계	9,100 (100.0)	12,788 (100.0)	902 (100.0)	9,946 (100.0)	205 (100.0)	32,941 (100.0)

※중복포함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판정하고,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11년에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초기조치결과는 〈표 4-23〉과 같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에서 원가정에 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4,462건(73.7%)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된 아동의 경우는 1,555건(25.6%)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초기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1건(0.0%),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타기관으로 사례를 의뢰한 경우가 40건(0.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피해아동을 원가정 보호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가족 보존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비록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대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 재발 위험이 낮은 경우 학대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시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반면 격리보호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격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격리보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시보호가 946건(1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족(친인척)보호가 270건(4.4%), 기타 170건(2.8%), 장기보호조치가 165건(2.7%), 가정위탁 4건(0.1%)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격리보호 된 아동 가운데 친족(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4.4%이고, 위탁가정 보호조치 된 경우는 0.1%로 대리 양육체계로의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영역의 인프라 구축 확대가 시급하다.

〈표 4-23〉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계
	친족(친인척)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위탁	기타	소계			
4,462 (73.7)	270 (4.4)	946 (15.6)	165 (2.7)	4 (0.1)	170 (2.8)	1,555 (25.6)	1 (0.0)	40 (0.7)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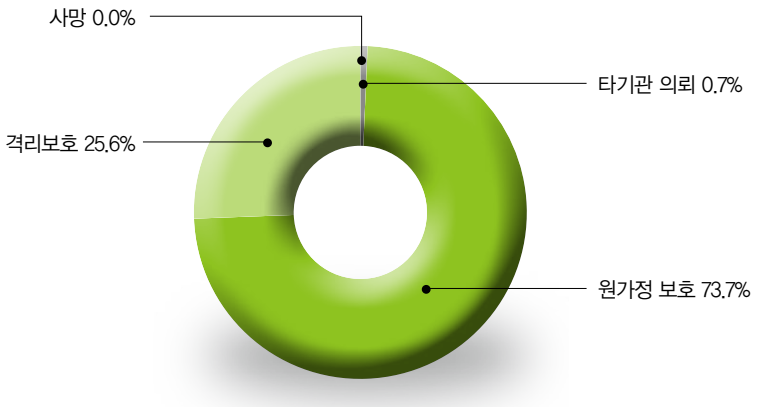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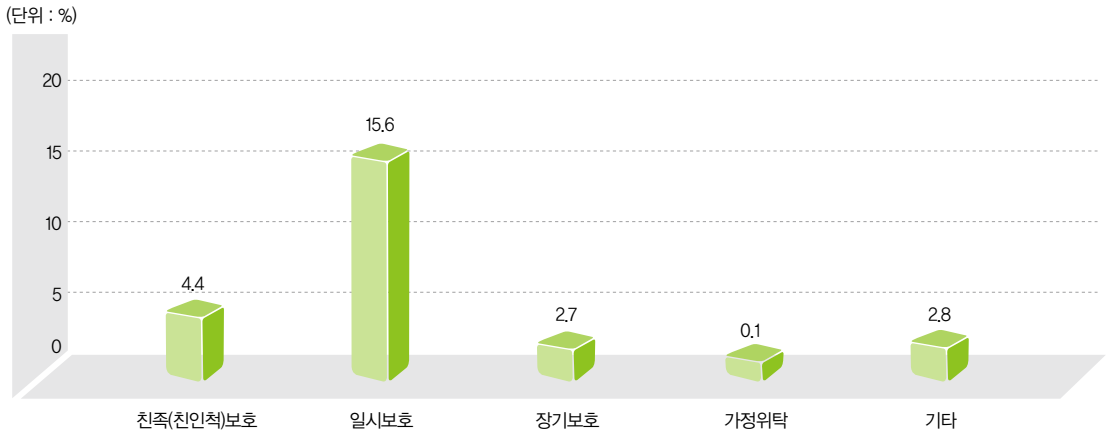

〈그림 4-19〉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 격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한편 2011년에 신고되어 초기에 격리보호조치 된 1,555건 가운데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표 4-24〉와 같이 413건(26.6%)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격리보호사례의 73.4%는 원가정으로 복귀되지 못하고 격리보호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낮은 원인은 여전히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잔존해 있으며 학대

행위자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기능강화사업을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사후에 개입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위험군 가정 대상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

〈표 4-24〉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단위 : 건, %)

초기 격리보호 전체 건수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격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1,555 (100.0)	413 (26.6)	1,142 (73.4)

〈표 4-25〉는 2011년에 신고되어 초기에 격리보호조치 된 1,555건 가운데 가정으로 복귀된 41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가정 복귀된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초기 격리보호 후 1개월 미만이 265건으로 64.1%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초기 격리보호 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94건으로 22.8%, 초기 격리보호 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35건으로 8.5%, 초기 격리보호 후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19건으로 4.6%에 해당하였다. 초기에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한 후 1개월 이내에 가정복귀한 사례들은 학대행위자가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 및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도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격리보호한 후 아동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가족에게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표 4-25〉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단위 : 건, %)

복귀시기	건수 (비율)
초기 격리보호 후 1개월 미만	265 (64.1)
초기 격리보호 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94 (22.8)
초기 격리보호 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5 (8.5)
초기 격리보호 후 6개월 이상~1년 미만	19 (4.6)
계	4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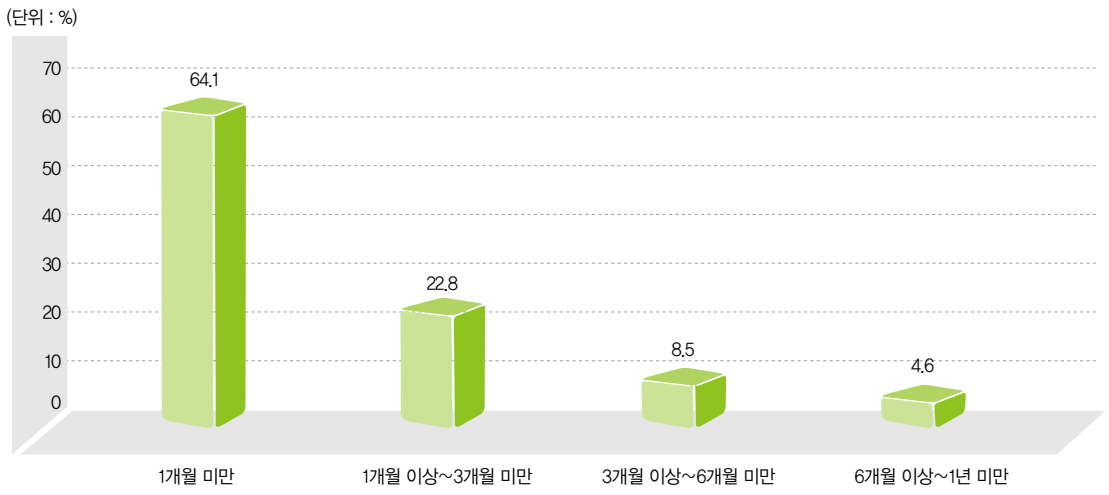

〈그림 4-20〉 초기 격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표 4-26〉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을 정리한 것이다. 초기 격리보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41.1%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39.7%, 인천광역시 3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격리보호율이 높은 지역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피해아동 보호율, 즉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에 있어서는 각각 0.47‰, 0.28‰, 0.45‰로 낮은 수치를 보여 그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체로 초기 격리보호율이 높은 곳은 피해아동 보호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아동 보호율이 낮은 지역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후에 신고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들은 적게 신고되는 경향으로 인해 격리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95.9%로 원가정보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90.4%,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89.4%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반면에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7.7%로 원가정보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격리보호율을 보면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81.4%,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9.7%,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39.0%,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35.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4.1%,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9.1%,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9.6%,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10.1%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6〉 피해아동 보호율과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 비교

(단위 : ‰, %)

지 역	피해아동 보호율(인구 천명당)	피해아동 초기 격리보호율
서울특별시	0.47	41.1
부산광역시	0.50	29.6
대구광역시	0.28	39.7
인천광역시	0.45	30.3
광주광역시	0.40	23.1
대전광역시	0.52	13.6
울산광역시	0.88	16.2
경 기 도	0.56	23.5
강 원 도	1.09	19.8
충청북도	1.38	20.8
충청남도	0.80	22.7
전라북도	1.12	15.0
전라남도	0.92	25.8
경상북도	0.98	21.8
경상남도	0.50	27.2
제주특별자치도	1.24	27.3

〈표 4-27〉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 망	타기관 의뢰	계
서 울	서울특별시	38 (17.7)	175 (81.4)	0 (0.0)	2 (0.9)	215 (100.0)
	서울특별시동부	90 (67.2)	43 (32.1)	1 (0.7)	0 (0.0)	134 (100.0)
	서울강서	65 (79.3)	17 (20.7)	0 (0.0)	0 (0.0)	82 (100.0)
	서울은평	76 (63.3)	40 (33.3)	0 (0.0)	4 (3.3)	120 (100.0)
	서울영등포	71 (85.5)	12 (14.5)	0 (0.0)	0 (0.0)	83 (100.0)
	서울성북	74 (77.9)	21 (22.1)	0 (0.0)	0 (0.0)	95 (100.0)
	서울마포	73 (65.8)	37 (33.3)	0 (0.0)	1 (0.9)	111 (100.0)
	소 계	487 (58.0)	345 (41.1)	1 (0.1)	7 (0.8)	840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97 (67.8)	42 (29.4)	0 (0.0)	4 (2.8)	143 (100.0)
	부산동부	101 (68.2)	44 (29.7)	0 (0.0)	3 (2.0)	148 (100.0)
	소 계	198 (68.0)	86 (29.6)	0 (0.0)	7 (2.4)	291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79 (58.1)	54 (39.7)	0 (0.0)	3 (2.2)	136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107 (72.3)	40 (27.0)	0 (0.0)	1 (0.7)	148 (100.0)
	인천북부	60 (64.5)	33 (35.5)	0 (0.0)	0 (0.0)	93 (100.0)
	소 계	167 (69.3)	73 (30.3)	0 (0.0)	1 (0.4)	241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102 (76.1)	31 (23.1)	0 (0.0)	1 (0.7)	134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145 (85.8)	23 (13.6)	0 (0.0)	1 (0.6)	169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176 (83.8)	34 (16.2)	0 (0.0)	0 (0.0)	210 (100.0)
경 기	경기도	153 (69.2)	68 (30.8)	0 (0.0)	0 (0.0)	221 (100.0)
	경기북부	91 (70.5)	36 (27.9)	0 (0.0)	2 (1.6)	129 (100.0)
	경기성남	139 (65.3)	74 (34.7)	0 (0.0)	0 (0.0)	213 (100.0)
	경기고양	141 (88.7)	16 (10.1)	0 (0.0)	2 (1.3)	159 (100.0)
	경기부천	140 (82.4)	30 (17.6)	0 (0.0)	0 (0.0)	170 (100.0)
	경기화성	131 (71.2)	53 (28.8)	0 (0.0)	0 (0.0)	184 (100.0)
	경기남양주	145 (83.8)	28 (16.2)	0 (0.0)	0 (0.0)	173 (100.0)
	안산시	146 (83.4)	29 (16.6)	0 (0.0)	0 (0.0)	175 (100.0)
	소 계	1,086 (76.3)	334 (23.5)	0 (0.0)	4 (0.3)	1,424 (100.0)
강 원	강원도	93 (78.8)	25 (21.2)	0 (0.0)	0 (0.0)	118 (100.0)
	강원동부	57 (76.0)	18 (24.0)	0 (0.0)	0 (0.0)	75 (100.0)
	원주시	89 (84.8)	16 (15.2)	0 (0.0)	0 (0.0)	105 (100.0)
	소 계	239 (80.2)	59 (19.8)	0 (0.0)	0 (0.0)	298 (100.0)
충 북	충청북도	157 (77.0)	44 (21.6)	0 (0.0)	3 (1.5)	204 (100.0)
	충북북부	104 (74.8)	35 (25.2)	0 (0.0)	0 (0.0)	139 (100.0)
	충북남부	59 (89.4)	6 (9.1)	0 (0.0)	1 (1.5)	66 (100.0)
	소 계	320 (78.2)	85 (20.8)	0 (0.0)	4 (1.0)	409 (100.0)
충 남	충청남도	170 (78.3)	44 (20.3)	0 (0.0)	3 (1.4)	217 (100.0)
	충청남도남부	66 (71.7)	26 (28.3)	0 (0.0)	0 (0.0)	92 (100.0)
	소 계	236 (76.4)	70 (22.7)	0 (0.0)	3 (1.0)	309 (100.0)
전 북	전라북도	103 (71.0)	39 (26.9)	0 (0.0)	3 (2.1)	145 (100.0)
	전라북도서부	113 (90.4)	12 (9.6)	0 (0.0)	0 (0.0)	125 (100.0)
	전라북도동부	93 (95.9)	4 (4.1)	0 (0.0)	0 (0.0)	97 (100.0)
	소 계	309 (84.2)	55 (15.0)	0 (0.0)	3 (0.8)	367 (100.0)
전 남	전라남도	103 (63.6)	57 (35.2)	0 (0.0)	2 (1.2)	162 (100.0)
	전남목포	116 (85.3)	20 (14.7)	0 (0.0)	0 (0.0)	136 (100.0)
	소 계	219 (73.5)	77 (25.8)	0 (0.0)	2 (0.7)	298 (100.0)
경 북	경상북도	55 (66.3)	28 (33.7)	0 (0.0)	0 (0.0)	83 (100.0)
	경북안동	122 (89.1)	15 (10.9)	0 (0.0)	0 (0.0)	137 (100.0)
	경북포항	92 (82.1)	19 (17.0)	0 (0.0)	1 (0.9)	112 (100.0)
	구 미	86 (69.9)	37 (30.1)	0 (0.0)	0 (0.0)	123 (100.0)
	소 계	355 (78.0)	99 (21.8)	0 (0.0)	1 (0.2)	455 (100.0)
경 남	경상남도	187 (71.4	73 (27.9)	0 (0.0)	2 (0.8)	262 (100.0)
	경남서부	46 (75.4)	15 (24.6)	0 (0.0)	0 (0.0)	61 (100.0)
	소 계	233 (72.1)	88 (27.2)	0 (0.0)	2 (0.6)	323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46 (59.7)	30 (39.0)	0 (0.0)	1 (1.3)	77 (100.0)
	서귀포시	65 (84.4)	12 (15.6)	0 (0.0)	0 (0.0)	77 (100.0)
	소계	111 (72.1)	42 (27.3)	0 (0.0)	1 (0.6)	154 (100.0)
계		4,462 (73.7)	1,555 (25.7)	1 (0.0)	40 (0.7)	6,058 (100.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 4-28〉과 같이 성학대와 유기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원가정보호 조치 비율이 전체 사례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학대 사례도 원가정 보호율이 50% 이상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학대행위자가 타인이거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학대행위자가 즉각적으로 고소 · 고발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학대가 발생한 가정일지라도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이 보장될 경우 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격리보호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기의 경우 일시보호 44.7%, 장기보호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유형 특성상 시설에 보호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4-2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원가정보호		1,773 (72.0)	2,520 (76.1)	208 (56.5)	2,069 (70.9)	17 (20.0)	6,587 (72.0)
격리보호	친족보호	164 (6.7)	179 (5.4)	26 (7.1)	105 (3.6)	4 (4.8)	478 (5.2)
	가정위탁	0 (0.0)	0 (0.0)	1 (0.3)	3 (0.1)	0 (0.0)	4 (0.0)
	일시보호	366 (14.8)	431 (13.0)	103 (28.0)	533 (18.3)	38 (44.7)	1,471 (16.2)
	장기보호	61 (2.5)	73 (2.2)	8 (2.2)	115 (3.9)	12 (14.1)	269 (2.9)
	기 타	81 (3.3)	95 (2.9)	17 (4.5)	78 (2.7)	11 (12.9)	282 (3.1)
	소계	672 (27.3)	778 (23.5)	155 (42.1)	834 (28.6)	65 (76.5)	2,504 (27.4)
타기관 의뢰		18 (0.7)	14 (0.4)	5 (1.4)	16 (0.5)	3 (3.5)	56 (0.6)
사 망		1 (0.0)	0 (0.0)	0 (0.0)	0 (0.0)	0 (0.0)	1 (0.0)
계		2,464 (100.0)	3,312 (100.0)	368 (100.0)	2,919 (100.0)	85 (100.0)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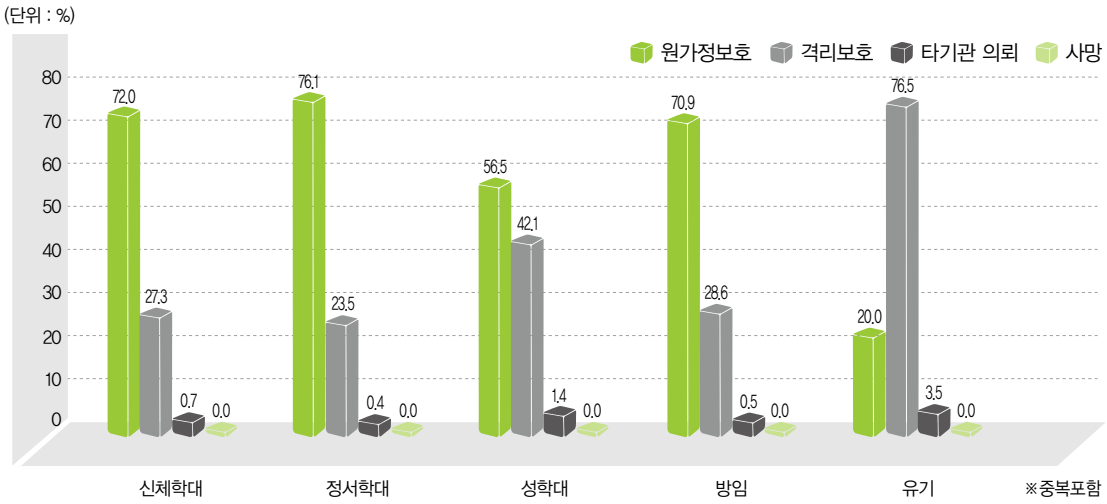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란 2011년에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당해 연도에 취하게 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의미한다.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을 살펴보면 〈표 4-29〉와 같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6,058건 중에서 2011년에 사례가 종결된 경우는 1,672건(27.6%)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례는 4,386건(72.4%)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대행위자 대상 치료 및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행위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학대 발생 위험 요인이 단기간에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결 사례 비율이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체 사례의 50% 이상을 종결시켜 타 기관에 비해 종결 사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서 울	서울특별시	38 (17.7)	177 (82.3)	215 (100.0)
	서울특별시동부	20 (14.9)	114 (85.1)	134 (100.0)
	서울강서	47 (57.3)	35 (42.7)	82 (100.0)
	서울은평	54 (45.0)	66 (55.0)	120 (100.0)
	서울영등포	14 (16.9)	69 (83.1)	83 (100.0)
	서울성북	38 (40.0)	57 (60.0)	95 (100.0)
	서울마포	25 (22.5)	86 (77.5)	111 (100.0)
	소 계	236 (28.1)	604 (71.9)	840 (100.0)
부 산	부산광역시	13 (9.1)	130 (90.9)	143 (100.0)
	부산동부	17 (11.5)	131 (88.5)	148 (100.0)
	소 계	30 (10.3)	261 (89.7)	291 (100.0)
대 구	대구광역시	57 (41.9)	79 (58.1)	136 (100.0)
인 천	인천광역시	33 (22.3)	115 (77.7)	148 (100.0)
	인천북부	15 (16.1)	78 (83.9)	93 (100.0)
	소 계	48 (19.9)	193 (80.1)	241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72 (53.7)	62 (46.3)	134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30 (17.8)	139 (82.2)	169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54 (25.7)	156 (74.3)	210 (100.0)
경 기	경기도	32 (14.5)	189 (85.5)	221 (100.0)
	경기북부	48 (37.2)	81 (62.8)	129 (100.0)
	경기성남	20 (9.4)	193 (90.6)	213 (100.0)
	경기고양	9 (5.7)	150 (94.3)	159 (100.0)
	경기부천	5 (2.9)	165 (97.1)	170 (100.0)
	경기화성	98 (53.3)	86 (46.7)	184 (100.0)
	경기남양주	35 (20.2)	138 (79.8)	173 (100.0)
	안산시	43 (24.6)	132 (75.4)	175 (100.0)
	소 계	290 (20.4)	1,134 (79.6)	1,424 (100.0)
강 원	강원도	52 (44.1)	66 (55.9)	118 (100.0)
	강원동부	39 (52.0)	36 (48.0)	75 (100.0)
	원주시	2 (1.9)	103 (98.1)	105 (100.0)
	소 계	93 (31.2)	205 (68.8)	298 (100.0)
충 북	충청북도	43 (21.1)	161 (78.9)	204 (100.0)
	충북북부	54 (38.8)	85 (61.2)	139 (100.0)
	충북남부	8 (12.1)	58 (87.9)	66 (100.0)
	소 계	105 (25.7)	304 (74.3)	409 (100.0)
충 남	충청남도	41 (18.9)	176 (81.1)	217 (100.0)
	충청남도남부	53 (57.6)	39 (42.4)	92 (100.0)
	소 계	94 (30.4)	215 (69.6)	309 (100.0)
전 북	전라북도	99 (68.3)	46 (31.7)	145 (100.0)
	전라북도서부	30 (24.0)	95 (76.0)	125 (100.0)
	전라북도동부	6 (6.2)	91 (93.8)	97 (100.0)
	소 계	135 (36.8)	232 (63.2)	367 (100.0)
전 남	전라남도	100 (61.7)	62 (38.3)	162 (100.0)
	전남목포	37 (27.2)	99 (72.8)	136 (100.0)
	소 계	137 (46.0)	161 (54.0)	298 (100.0)
경 북	경상북도	30 (36.1)	53 (63.9)	83 (100.0)
	경북안동	15 (10.9)	122 (89.1)	137 (100.0)
	경북포항	51 (45.5)	61 (54.5)	112 (100.0)
	구 미	62 (50.4)	61 (49.6)	123 (100.0)
	소 계	158 (34.7)	297 (65.3)	455 (100.0)
경 남	경상남도	68 (26.0)	194 (74.0)	262 (100.0)
	경남서부	52 (85.2)	9 (14.8)	61 (100.0)
	소 계	120 (37.2)	203 (62.8)	323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2 (15.6)	65 (84.4)	77 (100.0)
	서귀포시	1 (1.3)	76 (98.7)	77 (100.0)
	소 계	13 (8.4)	141 (91.6)	154 (100.0)
계		1,672 (27.6)	4,386 (72.4)	6,058 (100.0)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6,058건을 바탕으로 하여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2011년 진행 중 사례와 종결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진행 중 사례와 종결 사례를 종합한 최종조치결과의 피해아동 원가정보호가 3,956(65.3%), 격리보호 1,585건(26.2%), 가정 복귀 사례 413건(6.8%), 타기관 의뢰 91건(1.5%), 사망 13건(0.2%)으로 파악되었다. 격리보호조치 된 아동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호 668건(11.0%), 일시보호 471건(7.8%), 친족(친인척)보호 305건(5.0%), 입원조치 등 기타조치 119건(2.0%), 가정위탁 22건(0.4%)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보호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3,164건(72.1%)을 차지하는 반면, 종결사례의 경우 792건(47.4%)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고, 격리보호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955건(21.8%)이나 종결사례의 경우 630건(37.7%)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복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진행 중 사례는 236건(5.4%)이며 종결사례는 177건(10.5%)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위험요인이 감소하지 않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기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결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이후 위험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초기개입 시 사망사례는 1건이었으나 최종조치에서는 1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타기관 의뢰 비율도 초기개입 시 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건이 증가한 것은 이미 신고 당시 병원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격리보호 조치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5.8%에 불과하나 종결 사례의 경우 24.8%에 해당한다. 일시보호와 친족보호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친족보호 비율은 3.8%이나 종결사례의 경우 8.2%로 나타났고, 일시보호 비율은 진행 중 사례의 경우 10.3%이나 종결사례의 경우 1.1%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가정위탁은 진행 중 사례 0.1%, 종결사례 1.0%로 나타났고, 기타는 진행 중 사례 1.6%, 종결사례 2.6%로 나타났다.

〈표 4-3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종결여부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가정 복귀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위탁	기타	소계				
진행 중 사례	3,164 (72.1)	168 (3.8)	453 (10.3)	254 (5.8)	5 (0.1)	75 (1.6)	955 (21.8)	3 (0.1)	28 (0.6)	236 (5.4)	4,386 (100.0)
종결 사례	792 (47.4)	137 (8.2)	18 (1.1)	414 (24.8)	17 (1.0)	44 (2.6)	630 (37.7)	10 (0.6)	63 (3.8)	177 (10.5)	1,672 (100.0)
계	3,956 (65.3)	305 (5.0)	471 (7.8)	668 (11.0)	22 (0.4)	119 (2.0)	1,585 (26.2)	13 (0.2)	91 (1.5)	413 (6.8)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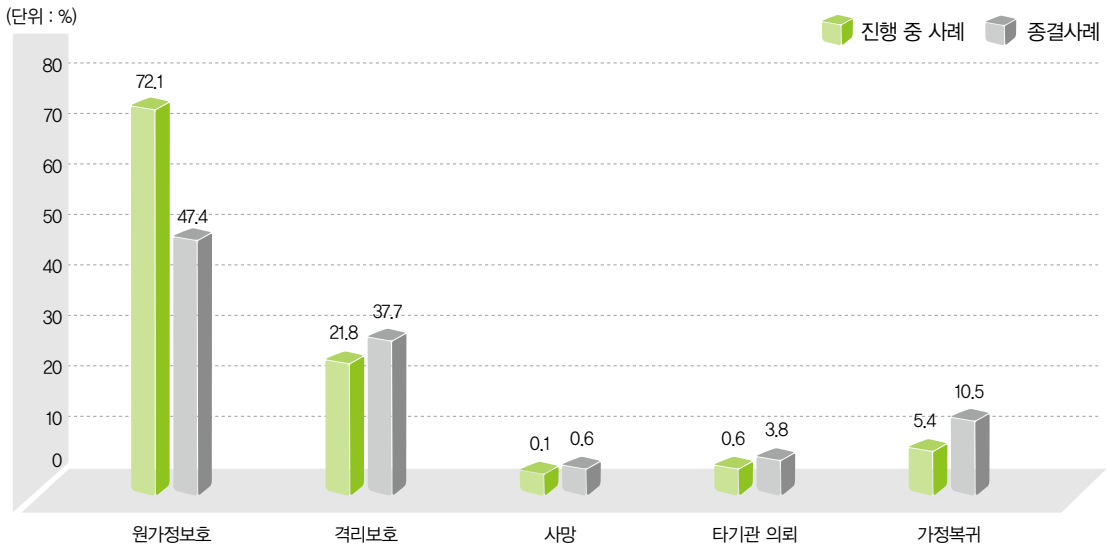

〈그림 4-22〉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표 4-31〉은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초기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유기를 제외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드러냈다.

사례유형 특성상 유기사례는 초기조치결과와 같이 격리보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격리보호조치 중에서도 장기보호조치가 47.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3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원가정보호		1,587 (64.4)	2,268 (68.5)	187 (50.8)	1,736 (59.5)	6 (7.1)	5,784 (63.2)
격리보호	친족보호	177 (7.3)	210 (6.3)	32 (8.7)	127 (4.4)	3 (3.5)	549 (6.0)
	가정위탁	6 (0.2)	4 (0.1)	1 (0.3)	18 (0.6)	0 (0.0)	29 (0.3)
	일시보호	160 (6.5)	168 (5.1)	41 (11.1)	304 (10.4)	20 (23.5)	693 (7.6)
	장기보호	232 (9.4)	301 (9.1)	50 (13.6)	458 (15.6)	40 (47.1)	1,081 (11.8)
	기 타	55 (2.2)	70 (2.1)	9 (2.4)	60 (2.1)	5 (5.9)	199 (2.2)
	소계	630 (25.6)	753 (22.7)	133 (36.1)	967 (33.1)	68 (80.0)	2,551 (27.9)
타기관의뢰		39 (1.6)	36 (1.1)	10 (2.7)	40 (1.4)	5 (5.9)	130 (1.4)
사 망		5 (0.2)	2 (0.1)	0 (0.0)	9 (0.3)	0 (0.0)	16 (0.2)
가정복귀		203 (8.2)	253 (7.6)	38 (10.4)	167 (5.7)	6 (7.0)	667 (7.3)
계		2,464 (100.0)	3,312 (100.0)	368 (100.0)	2,919 (100.0)	85 (100.0)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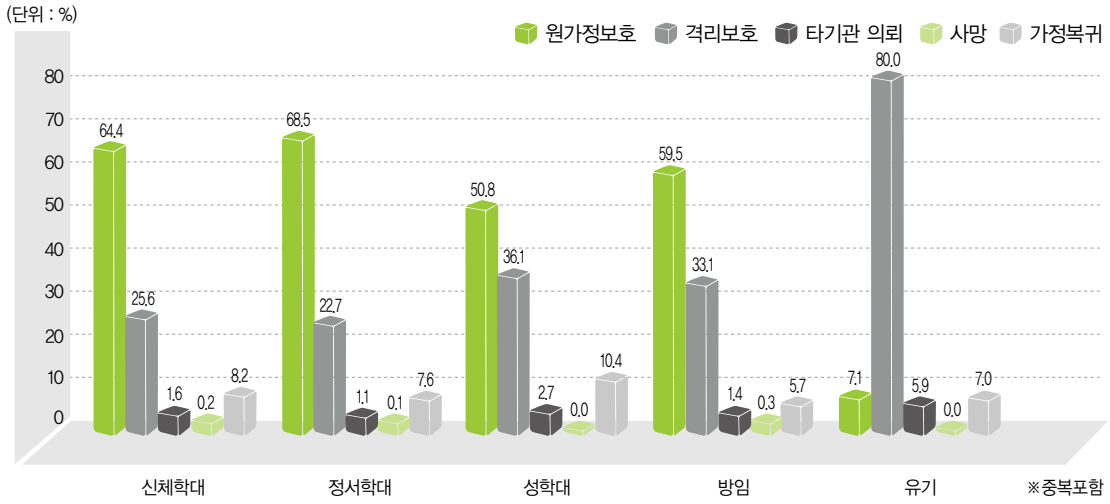

〈그림 4-2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가장 마지막인 결과를 〈표 4-32〉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에서 지속관찰이 5,058건(8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속관찰 조치를 취한 학대행위자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재학대 발생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지속관찰 조치가 많은 이유는 학대행위자의 주된 특성 중 하나가 자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라는 점과 연관지을 수 있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367건(6.1%)을 차지하였는데,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인해 만나지 못한 경우, 학대행위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동거하지 않고 가출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유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학대행위자 거주지에 출입하거나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대행위자가 강하게 저항 · 거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임검 또는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부여하거나 학대행위자 소재 파악 및 출두 요구에 관한 행정 · 사법적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 조치는 389건으로 전체의 6.4%로 파악되었다. 이는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가족 보존의 입장에서 법적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동학대사례를 고소 · 고발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거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표 4-32〉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5,058 (83.5)	389 (6.4)	244 (4.0)	367 (6.1)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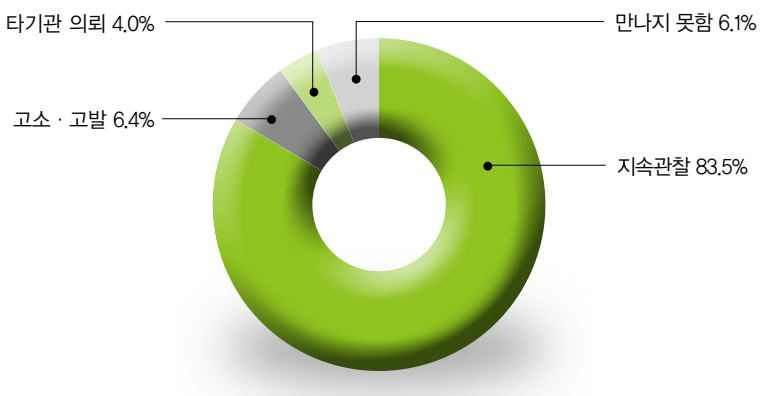

〈그림 4-2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표 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사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지속관찰이 80.0% 이상인 반면 성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 · 고발이 44.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성학대가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성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성학대 행위자는 또 다른 아동에게도 성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성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적극적으로 고소 ·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기는 특성상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지속관찰	2,065 (83.8)	2,801 (84.6)	154 (41.7)	2,515 (86.2)	35 (41.2)	7,570 (82.8)
고소 · 고발	148 (6.0)	185 (5.6)	162 (44.0)	126 (4.3)	20 (23.5)	641 (7.0)
타기관 의뢰	112 (4.6)	143 (4.3)	6 (1.7)	114 (3.9)	5 (5.9)	380 (4.2)
만나지 못함	139 (5.6)	183 (5.5)	46 (12.6)	164 (5.6)	25 (29.4)	557 (6.0)
계	2,464 (100.0)	3,312 (100.0)	368 (100.0)	2,919 (100.0)	85 (100.0)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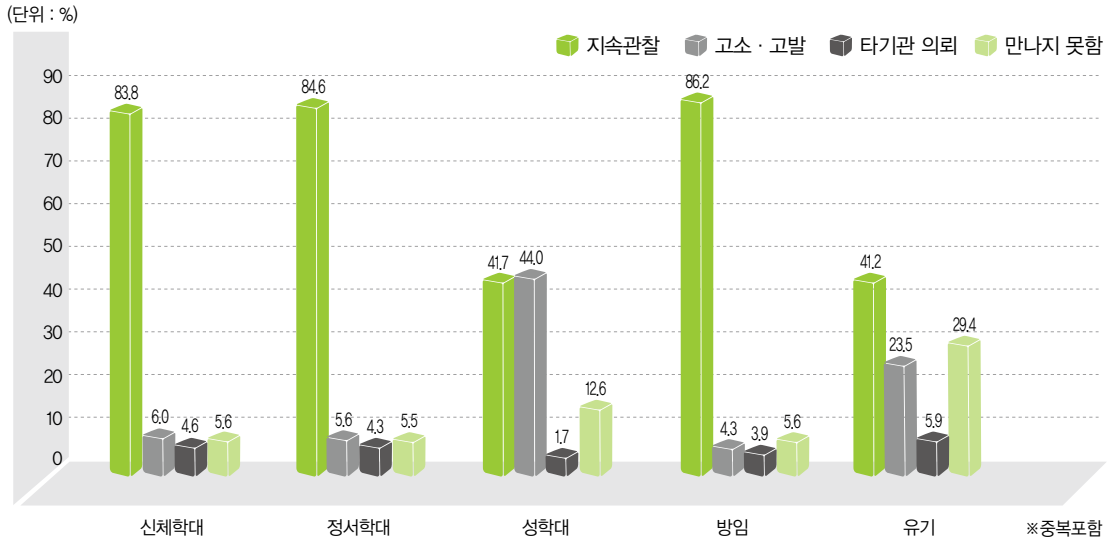

〈그림 4-2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나.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 · 고발 조치를 취한 389건의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 · 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 및 판결 결과에 대해 〈표 4-34〉에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를 고소 · 고발한 389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199건(51.2%)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례는 161건(41.4%), 내사종결된 사례는 38건(9.8%)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찰수사 중인 사례는 총 92건(23.6%)이었으며, 이 중에서 수사 중인 사례는 57건(14.7%), 불기소 26건(6.7%), 기소 9건(2.2%)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검찰수사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총 98건(25.2%)으로 조사되었고, 공판진행 중인 사례는 36건(9.2%), 법원판결을 받아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62건(16.0%)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처분은 13건(3.4%), 형사처분은 49건(12.6%)으로 나타나 고소 · 고발된 아동학대사례가 법원판결을 받을 경우 대부분 형사처분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법원판결로 보호처분을 받은 13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3건(0.8%), 수강명령이 3건(0.8%), 치료감호가 3건(0.8%),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처분 받은 사례가 2건(0.5%),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처분 받은 사례가 2건(0.5%)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형사처분을 받은 49건의 사례는 무죄선고가 4건(1.0%), 선고유예가 1건(0.3%), 벌금이 8건(2.1%), 징역 32건(8.2%), 집행유예와 징역을 함께 받은 사례가 4건(1.0%)이었다.

이처럼 형사처분에 비해 보호처분 판결이 현격히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아동복지법 상에서 학대행위자에 관하여 보호관찰, 상담수강명령과 같은 보호처분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현행 법 내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방임, 정서학대 유형과 같은 아동학대사례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참여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사법부의 인식 또한 아동학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의 판결보다는 학대행위에 대하여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

또한 〈표 4-34〉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인 사례가 총 253건으로 전체의 65.2%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고소 · 고발되어 1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최종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학대행위자는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동의 행동과 진술을 왜곡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의 변화가 시급하다.

〈표 4-34〉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단위 : 건, %)

고소 · 고발 결과			건수(비율)
경찰수사	수사중		161 (41.4)
	내사종결		38 (9.8)
	소계		199 (51.2)
검찰수사	수사중		57 (14.7)
	불기소		26 (6.7)
	기소		9 (2.2)
	소계		92 (23.6)
법원공판 및 판결	공판진행 중	1심 진행	27 (6.8)
		항소심 진행	8 (2.1)
		상고심 진행	1 (0.3)
	보호처분	보호관찰	3 (0.8)
		수강명령	3 (0.8)
		보호관찰+수강명령	2 (0.5)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2 (0.5)
		치료감호	3 (0.8)
	형사처분	무죄	4 (1.0)
		선고유예	1 (0.3)
		벌금	8 (2.1)
		징역	32 (8.2)
		집행유예+징역	4 (1.0)
	소계		98 (25.2)
계			389 (100.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5〉와 같다. 고소 · 고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였으며, 총 194건(49.9%)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성학대 123건(31.6%), 신체학대 24건(6.2%), 유기 18건(4.6%), 방임 16건(4.1%) 정서학대 15건(3.9%) 순이었다. 중복

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55건(14.1%)으로 중복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51건(13.1%)이었다. 신체 및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37건(9.5%), 신체 및 정서학대와 성학대는 18건(4.6%)이었으며, 고소 · 고발 결과 중 다른 유형의 중복학대 발생 건수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표 4-3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 · 고발 결과

(단위 : 건, %)

유형 \ 고소 · 고발 결과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판결 및 공판				계
				공판진행중	보호처분	형사처분	소 계	
신체학대		12 (50.0)	5 (20.8)	2 (8.3)	2 (8.3)	3 (12.6)	7 (29.2)	24 (100.0)
정서학대		5 (33.3)	7 (46.7)	0 (0.0)	1 (6.7)	2 (13.3)	3 (20.0)	15 (100.0)
성학대		48 (39.0)	22 (17.9)	21 (17.9)	7 (5.7)	24 (19.5)	52 (43.1)	123 (100.0)
방 임		9 (56.3)	4 (25.0)	1 (6.3)	0 (0.0)	2 (12.4)	3 (18.7)	16 (100.0)
유 기		15 (83.3)	2 (11.1)	0 (0.0)	0 (0.0)	1 (5.6)	1 (5.6)	18 (100.0)
중복학대	신체 · 정서	26 (51.0)	19 (37.2)	3 (5.9)	3 (5.9)	0 (0.0)	6 (11.8)	51 (100.0)
	신체 · 성	6 (85.7)	1 (14.3)	0 (0.0)	0 (0.0)	0 (0.0)	0 (0.0)	7 (100.0)
	신체 · 방임	1 (16.7)	0 (0.0)	1 (16.7)	0 (0.0)	4 (66.6)	5 (83.3)	6 (100.0)
	신체 · 유기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정서 · 성	2 (28.6)	1 (14.3)	3 (42.9)	0 (0.0)	1 (14.2)	4 (57.1)	7 (100.0)
	정서 · 방임	54 (98.2)	0 (0.0)	1 (1.8)	0 (0.0)	0 (0.0)	1 (1.8)	55 (100.0)
	성 · 방임	3 (33.3)	4 (44.5)	1 (11.1)	0 (0.0)	1 (11.1)	2 (22.2)	9 (100.0)
	방임 · 유기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신체 · 정서 · 성	8 (44.4)	2 (11.1)	3 (16.7)	0 (0.0)	5 (27.8)	8 (44.5)	18 (100.0)
	신체 · 정서 · 방임	8 (21.6)	24 (64.9)	0 (0.0)	0 (0.0)	5 (13.5)	5 (13.5)	37 (100.0)
	신체 · 성 · 방임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신체 · 정서 · 성 · 방임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1 (100.0)
	소계	110 (56.7)	52 (26.8)	12 (6.2)	3 (1.5)	17 (8.8)	32 (16.5)	194 (100.0)
계		199 (51.0)	92 (23.6)	36 (9.5)	13 (3.3)	49 (12.6)	98 (25.4)	389 (100.0)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교육,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1년 이전 신고사례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1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1년 신고사례, 그리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I

2011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310,406회이다. 〈표 4-36〉에서 2011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59,792회이며, 2011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50,614회로 집계되었다. 2011년 신고된 사례의 피해아동 보다 2011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피해아동에게 9,178회의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전과 당해 연도 사례에서 상담서비스가 각각 61,253건(38.3%), 63,337건(4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일시보호서비스가 각각 43,176건(27.0%), 43,692건(29.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아동에게 일시보호서비스가 많이 제공된 것은 피해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장기보호조치하기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는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1년 이전 신고사례는 개별상담 29,458건(18.4%), 기관상담 26,068건(16.3%)이 제공되었으며, 2011년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기관상담 34,082건(22.6%),

개별상담 25,390건(16.9%)이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전 신고사례보다는 2011년 신고사례에서 피해아동들에게 기관상담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당시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 그리고 피해아동의 생활환경 요인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11년 이전과 당해 연도에 모두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협력 및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도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6〉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단위 : 회, %)

서비스 \ 신고시점		2011년 이전 신고사례	2011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9,458 (18.4)	25,390 (16.9)
	집단상담	4,288 (2.7)	2,327 (1.5)
	기관상담	26,068 (16.3)	34,082 (22.6)
	주변인상담	1,439 (0.9)	1,538 (1.1)
	소계	61,253 (38.3)	63,337 (42.1)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2,845 (1.8)	3,651 (2.4)
	통원치료	1,451 (0.9)	1,435 (1.0)
	소계	4,296 (2.7)	5,086 (3.4)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639 (0.4)	1,301 (0.9)
	놀이치료	5,784 (3.6)	2,744 (1.8)
	미술치료	3,594 (2.2)	3,146 (2.1)
	가족치료	151 (0.1)	157 (0.1)
	기타치료	3,466 (2.2)	1,713 (1.1)
	소계	13,634 (8.5)	9,061 (6.0)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6,421 (4.0)	6,218 (4.1)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088 (0.7)	649 (0.4)
	공적지원연결	400 (0.3)	156 (0.1)
	소계	7,909 (5.0)	7,023 (4.6)
학대예방교육		1,091 (0.8)	2,760 (1.8)
학습지원		23,997 (15.0)	13,332 (8.9)
일시보호서비스		43,176 (27.0)	43,692 (29.0)
고소 · 고발지원서비스		60 (0.0)	180 (0.1)
기타		4,376 (2.7)	6,143 (4.1)
계		159,792 (100.0)	150,614 (100.0)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II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총 서비스 310,406회 중에서 〈표 4-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진행 중 제공한 서비스는 269,330회로 나타났고, 사례종결 후 제공한 서비스는 41,076회로, 사례진행 중에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사후관리사례 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보다 약 6배 정도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39.9%,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시보호서비스가 각각 28.7%, 2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료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신고접수 시기에 따른 피해아동 서비스 제공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 및 정서적 안정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세팅 및 지원에 더 많이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소한 차이지만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사후관리 아동에게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7〉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II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44,917 (16.7)	9,931 (24.2)
	집단상담	5,896 (2.2)	719 (1.8)
	기관상담	53,880 (20.0)	6,270 (15.2)
	주변인상담	2,582 (1.0)	395 (1.0)
	소계	107,275 (39.9)	17,315 (42.2)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6,129 (2.2)	367 (0.9)
	통원치료	2,584 (1.0)	302 (0.7)
	소계	8,713 (3.2)	669 (1.6)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830 (0.7)	110 (0.3)
	놀이치료	6,961 (2.6)	1,567 (3.8)
	미술치료	5,507 (2.0)	1,233 (3.0)
	가족치료	298 (0.1)	10 (0.0)
	기타치료	4,518 (1.7)	661 (1.6)
	소계	19,114 (7.1)	3,581 (8.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0,986 (4.1)	1,653 (4.0)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307 (0.4)	430 (1.0)
	공적지원연결	197 (0.1)	359 (0.9)
	소계	12,490 (4.6)	2,442 (5.9)
학대예방교육		3,652 (1.4)	199 (0.5)
학습지원		30,377 (11.3)	6,952 (16.9)
일시보호서비스		77,398 (28.7)	9,470 (23.1)
고소 · 고발지원서비스		224 (0.1)	16 (0.0)
기타		10,087 (3.7)	432 (1.1)
계		269,330 (100.0)	41,076 (100.0)

※중복포함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I

2011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51,147회로 집계되었다. 2011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24,27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1년 신고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26,87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였으며, 2011년 이전에는 80.2%, 당해 연도에는 81.3%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도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을 합한 수치가 각각 2011년도 이전에는 78.2%, 당해 연도에는 79.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가 2011년 이전 신고사례에서는 11.2%, 당해 연도 사례에서 10.8%를 차지하였으며, 심리치료서비스는 2011년 이전과 당해 연도에 각각 3.7%, 3.5%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11년 이전 사례에 2.9%, 당해 연도에 2.4% 실시되었으며, 학대예방교육서비스는 2011년 이전 사례에 1.5%, 2011년 신고사례에 1.1% 제공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별상담서비스에 편중되어 있고 학대행위자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학대예방교육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등은 미비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행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학대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서비스 참여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8〉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I

(단위 : 회, %)

서비스		2011년 이전 신고사례	2011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16,387 (67.5)	17,158 (63.9)
	집단상담	344 (1.4)	226 (0.8)
	기관상담	2,607 (10.7)	4,233 (15.8)
	주변인상담	134 (0.6)	219 (0.8)
	소계	19,472 (80.2)	21,836 (81.3)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2,583 (10.6)	2,714 (10.1)
	통원치료	125 (0.6)	179 (0.7)
	소계	2,708 (11.2)	2,893 (10.8)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59 (0.2)	168 (0.6)
	미술치료	195 (0.8)	175 (0.7)
	가족치료	292 (1.3)	181 (0.7)
	기타치료	348 (1.4)	415 (1.5)
	소계	894 (3.7)	939 (3.5)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510 (2.1)	501 (1.9)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95 (0.8)	120 (0.4)
	공직지원연결	6 (0.0)	34 (0.1)
	소계	711 (2.9)	655 (2.4)
학대예방교육		362 (1.5)	292 (1.1)
고소 · 고발지원		0 (0.0)	4 (0.0)
기타		129 (0.5)	252 (0.9)
계		24,276 (100.0)	26,871 (100.0)

※중복포함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II

다음 〈표 4-39〉는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례진행 중인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43,831회였으며, 사후관리 중인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7,316회로, 진행 중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6배 정도 많았다.

항목별 서비스 제공률을 살펴보면, 사례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에서 개별상담이 66.6%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관상담이었으며,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에서 각각 13.8%, 11.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의 경우, 통원치료에 비해 입원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진행 중 사례 9.7%, 사후관리 사례 14.2%의 분포를 보였다.

〈표 4-39〉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II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9,197 (66.6)	4,348 (59.4)
	집단상담	442 (1.0)	128 (1.7)
	기관상담	6,040 (13.8)	800 (11.0)
	주변인상담	313 (0.7)	40 (0.6)
	소계	35,992 (82.1)	5,316 (72.7)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4,254 (9.7)	1,043 (14.2)
	통원치료	271 (0.6)	33 (0.5)
	소계	4,525 (10.3)	1,076 (14.7)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213 (0.5)	14 (0.2)
	미술치료	255 (0.6)	115 (1.6)
	가족치료	404 (0.9)	69 (0.9)
	기타치료	647 (1.5)	116 (1.6)
	소계	1,519 (3.5)	314 (4.3)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852 (1.9)	159 (2.2)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40 (0.3)	175 (2.4)
	공적지원연결	37 (0.1)	3 (0.0)
	소계	1,029 (2.3)	337 (4.6)
학대예방교육		430 (1.0)	224 (3.0)
고소 · 고발지원		4 (0.0)	0 (0.0)
기타		332 (0.8)	49 (0.7)
계		43,831 (100.0)	7,316 (100.0)

※중복포함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은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 부모들도 죄책감 및 무력감, 비관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발생 위험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의 가족과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I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서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40〉에서 보듯이 2011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14,810회였고, 2011년 신고된 사례는 17,261회로 나타나 2011년 한 해 동안 총 32,071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2011년에 이전 신고사례는 86.0%, 2011년 신고사례는 89.4%로 집계되었으며,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각각 4.6%, 4.8%로 파악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개별상담서비스와 기관상담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이전 사례에서는 개별상담서비스가 74.7%, 기관상담서비스가 8.1%의 순으로 나타났고, 2011년 신고사례에서는 개별상담서비스가 74.7%로 기관상담서비스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Ⅰ

(단위 : 회, %)

서비스		2011년 이전 신고사례	2011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11,070 (74.7)	12,888 (74.7)
	집단상담	147 (1.0)	153 (0.9)
	기관상담	1,199 (8.1)	2,026 (11.7)
	주변인상담	317 (2.2)	366 (2.1)
	소계	12,733 (86.0)	15,433 (89.4)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38 (0.9)	108 (0.6)
	통원치료	35 (0.3)	81 (0.5)
	소계	173 (1.2)	189 (1.1)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37 (0.2)	117 (0.7)
	놀이치료	76 (0.5)	13 (0.1)
	미술치료	16 (0.1)	113 (0.7)
	가족치료	46 (0.4)	108 (0.6)
	기타치료	387 (2.6)	177 (1.0)
	소계	562 (3.8)	528 (3.1)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632 (4.3)	751 (4.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7 (0.3)	72 (0.4)
	공적지원연결	6 (0.0)	8 (0.0)
	소계	685 (4.6)	831 (4.8)
학대예방교육		502 (3.4)	117 (0.7)
학습지원		48 (0.3)	48 (0.3)
고소 · 고발지원		0 (0.0)	3 (0.0)
기타		107 (0.7)	112 (0.6)
계		14,810 (100.0)	17,261 (100.0)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Ⅱ

다음으로 〈표 4-41〉에서 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입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27,913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4,158회로 나타났다. 사례진행 중인 부모 또는 가족에게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7배 정도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는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24,434회로 87.5%를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347회로 4.8%, 심리치료서비스 935회로 3.3%, 학대예방교육의 경우는 556회로 2.0%에 해당하였다.

사례를 종결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에는 상담서비스가 3,732회(89.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진행 중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족기능강화서비스였으며, 169회(4.1%)를 나타내었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는 155회로 3.7%였으며, 학대예방교육은 63회로 1.5%였다. 이는 진행 중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41〉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II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20,712 (74.2)	3,246 (78.1)
	집단상담	195 (0.7)	105 (2.5)
	기관상담	2,945 (10.5)	280 (6.7)
	주변인상담	582 (2.1)	101 (2.5)
	소계	24,434 (87.5)	3,732 (89.8)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246 (0.9)	0 (0.0)
	통원치료	108 (0.4)	8 (0.2)
	소계	354 (1.3)	8 (0.2)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52 (0.5)	2 (0.0)
	놀이치료	82 (0.3)	7 (0.2)
	미술치료	111 (0.4)	18 (0.4)
	가족치료	149 (0.5)	5 (0.1)
	기타치료	441 (1.6)	123 (3.0)
	소계	935 (3.3)	155 (3.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240 (4.5)	143 (3.5)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95 (0.3)	24 (0.6)
	공적지원연결	12 (0.0)	2 (0.0)
	소계	1,347 (4.8)	169 (4.1)
학대예방교육		556 (2.0)	63 (1.5)
학습지원		90 (0.4)	6 (0.1)
고소 · 고발 지원		3 (0.0)	0 (0.0)
기타		194 (0.7)	25 (0.6)
계		27,913 (100.0)	4,158 (100.0)

※중복포함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5 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1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판정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5-1〉은 아동학대사례 판정결과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은 79.0%에 해당하고, 비신고의무자는 69.8%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더 높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단위 : 건, %)

판정결과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2,135 (79.0)	222 (8.2)	347 (12.8)	2,704 (100.0)
비신고의무자	3,923 (69.8)	523 (9.3)	1,175 (20.9)	5,621 (100.0)
계	6,058 (72.8)	745 (8.9)	1,522 (18.3)	8,3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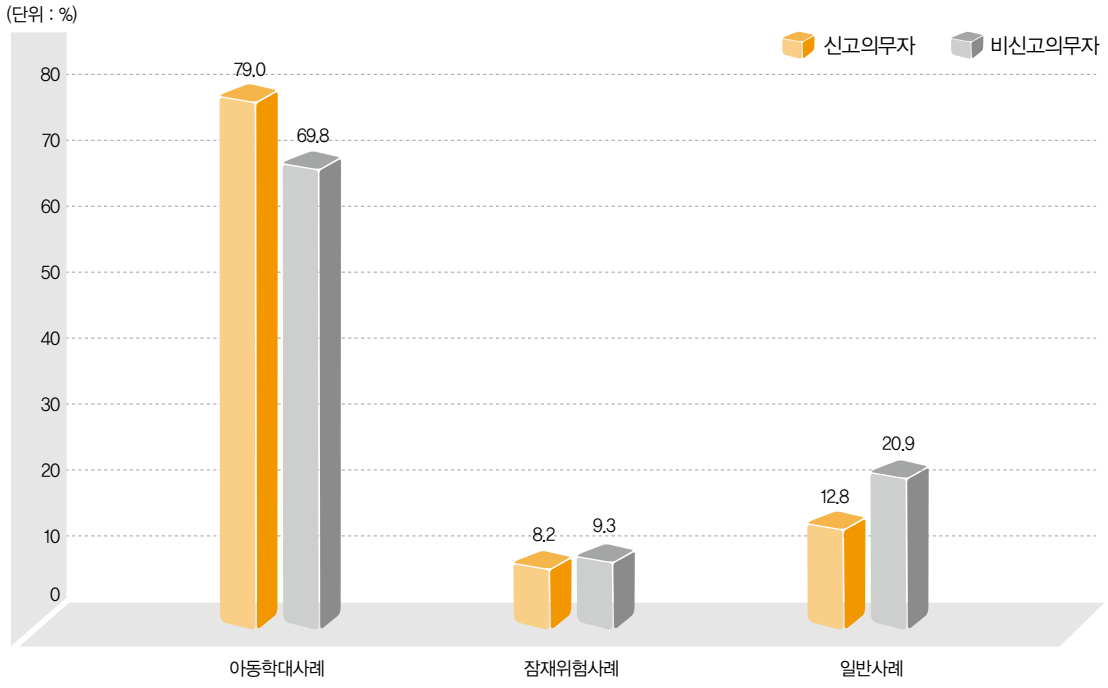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사례 판정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 사례 중 유치원 종사자 87.5%,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86.6%,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85.4%, 교원 85.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3.3%, 소방구급대원 80.0%가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비신고의무자 사례 판정 비율인 69.8%에 비하면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에게서 아동학대사례 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과 아동 발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 판정결과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유형 \ 판정결과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교원	505 (85.0)	39 (6.6)	50 (8.4)	594 (100.0)
의료인	72 (81.8)	7 (8.0)	9 (10.2)	88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60 (76.9)	27 (8.0)	51 (15.1)	338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0 (83.3)	0 (0.0)	4 (16.7)	24 (100.0)
보육시설 종사자	130 (73.0)	14 (7.9)	34 (19.1)	178 (100.0)
유치원 종사자	35 (87.5)	0 (0.0)	5 (12.5)	40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4 (66.6)	1 (16.7)	1 (16.7)	6 (100.0)
소방구급대원	8 (80.0)	1 (10.0)	1 (10.0)	10 (100.0)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39 (86.6)	3 (6.7)	3 (6.7)	45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8 (61.5)	1 (7.7)	4 (30.8)	13 (1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70 (85.4)	19 (9.5)	10 (5.1)	199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84 (75.6)	110 (9.4)	175 (15.0)	1,169 (100.0)
계	2,135 (79.0)	222 (8.2)	347 (12.8)	2,704 (100.0)

2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만 0세~3세까지의 피해아동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16.7%,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14.9%로 신고의무자가 다소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 피해아동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40.2%,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43.1%,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18세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7.8%,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7.9%로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 신고의무자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계
신고의무자	112 (5.2)	245 (11.5)	272 (12.8)	363 (17.0)	496 (23.2)	481 (22.5)	166 (7.8)	2,135 (100.0)
비신고의무자	161 (4.1)	425 (10.8)	499 (12.8)	742 (18.9)	951 (24.2)	836 (21.3)	309 (7.9)	3,923 (100.0)
계	273 (4.5)	670 (11.1)	771 (12.8)	1,105 (18.2)	1,447 (23.9)	1,317 (21.7)	475 (7.8)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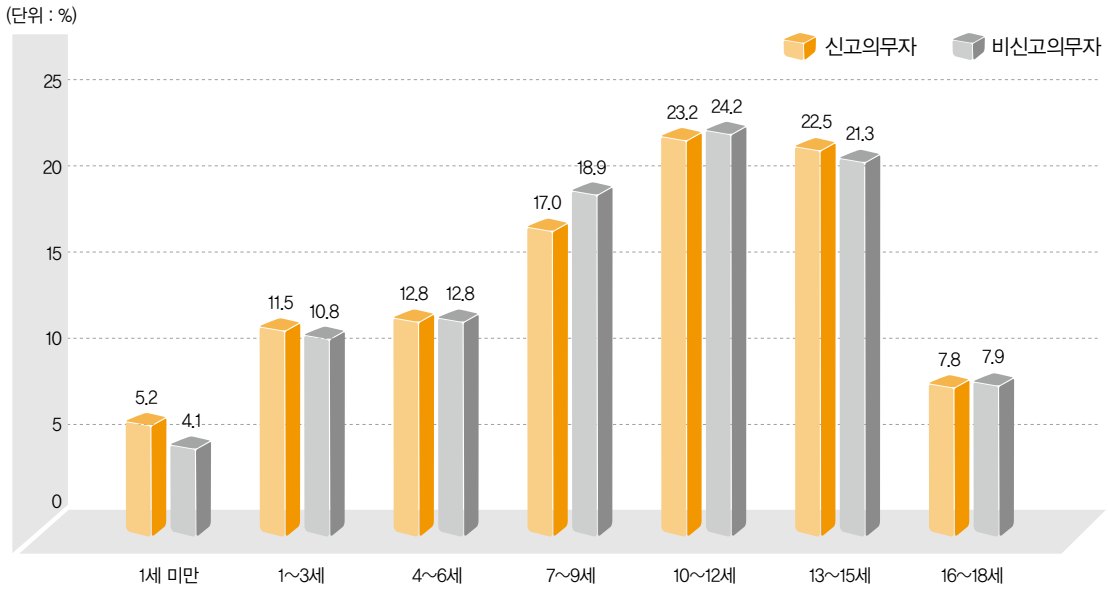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표 5-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에 의한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연령은 만 13~15세가 33.1%로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의 경우 만 1세 미만에서 각각 37.5%, 30.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학대 행위를 가했을 때 영아의 경우 비교적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며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부모는 병원을 찾게 되어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가 신생아를 병원에 유기한 채 도망가거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견해를 무시하고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보육시설 및 유치원 종사자에 의해 발견된 피해아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만 4~6세로 각각 전체의 45.4%, 37.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 피해아동 연령 중 만 13~15세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앞서 〈표 4-19〉를 통해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았듯이 전체 성학대 피해아동의 35.3%가 만 13~15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유형 \ 연령(만)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계
교원	3 (0.6)	9 (1.8)	23 (4.5)	88 (17.4)	163 (32.3)	167 (33.1)	52 (10.3)	505 (100.0)
의료인	22 (30.6)	8 (11.1)	11 (15.3)	7 (9.7)	8 (11.1)	11 (15.3)	5 (6.9)	72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4 (5.3)	16 (6.2)	28 (10.8)	68 (26.2)	65 (25.0)	55 (21.2)	14 (5.3)	260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 (5.0)	1 (5.0)	1 (5.0)	3 (15.0)	5 (25.0)	9 (45.0)	0 (0.0)	20 (100.0)
보육시설 종사자	4 (3.1)	45 (34.6)	59 (45.4)	8 (6.2)	9 (6.9)	3 (2.3)	2 (1.5)	130 (100.0)
유치원 종사자	0 (0.0)	4 (11.4)	13 (37.1)	5 (14.3)	5 (14.3)	8 (22.9)	0 (0.0)	35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 (0.0)	0 (0.0)	0 (0.0)	2 (50.0)	0 (0.0)	1 (25.0)	1 (25.0)	4 (100.0)
소방구급대원	3 (37.5)	0 (0.0)	0 (0.0)	1 (12.5)	1 (12.5)	3 (37.5)	0 (0.0)	8 (100.0)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2.6)	1 (2.6)	3 (7.6)	4 (10.3)	11 (28.2)	13 (33.3)	6 (15.4)	39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3 (37.5)	1 (12.5)	0 (0.0)	2 (25.0)	1 (12.5)	1 (12.5)	0 (0.0)	8 (1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6 (3.5)	14 (8.2)	24 (14.1)	23 (13.5)	42 (24.7)	46 (27.1)	15 (8.9)	170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5 (6.3)	146 (16.5)	110 (12.4)	152 (17.2)	186 (21.0)	164 (18.6)	71 (8.0)	884 (100.0)
계	112 (5.2)	245 (11.5)	272 (12.7)	363 (17.0)	496 (23.2)	481 (22.5)	166 (7.9)	2,135 (100.0)

3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라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분포를 비교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경우 부모 82.8%, 친인척 5.5%, 타인 9.7%였으며, 비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경우 부모 83.4%, 친인척 5.9%, 타인 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높으나 비신고의무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부 또는 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다른 한 명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부모	친부	1,019 (47.7)	1,836 (46.8)
	친모	685 (32.1)	1,278 (32.6)
	계부	21 (1.0)	41 (1.0)
	계모	30 (1.4)	99 (2.5)
	양부	4 (0.2)	7 (0.2)
	양모	8 (0.4)	11 (0.3)
	소계	1,767 (82.8)	3,272 (83.4)
친인척	친조부	20 (0.9)	38 (1.0)
	친조모	31 (1.5)	53 (1.4)
	외조부	4 (0.2)	11 (0.3)
	외조모	5 (0.2)	32 (0.8)
	친인척	49 (2.3)	82 (2.1)
	형제,자매	8 (0.4)	16 (0.4)
	소계	117 (5.5)	232 (5.9)
타인	부,모의 동거인	38 (1.8)	51 (1.3)
	교원	4 (0.2)	81 (2.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 (0.1)	28 (0.7)
	시설종사자	131 (6.1)	134 (3.4)
	이웃	13 (0.6)	47 (1.2)
	낯선 사람	12 (0.6)	20 (0.5)
	위탁부	3 (0.1)	2 (0.1)
	위탁모	4 (0.2)	4 (0.1)
	소계	207 (9.7)	367 (9.4)
기타		43 (2.0)	52 (1.3)
파악 안 됨		1 (0.0)	0 (0.0)
계		2,135 (100.0)	3,9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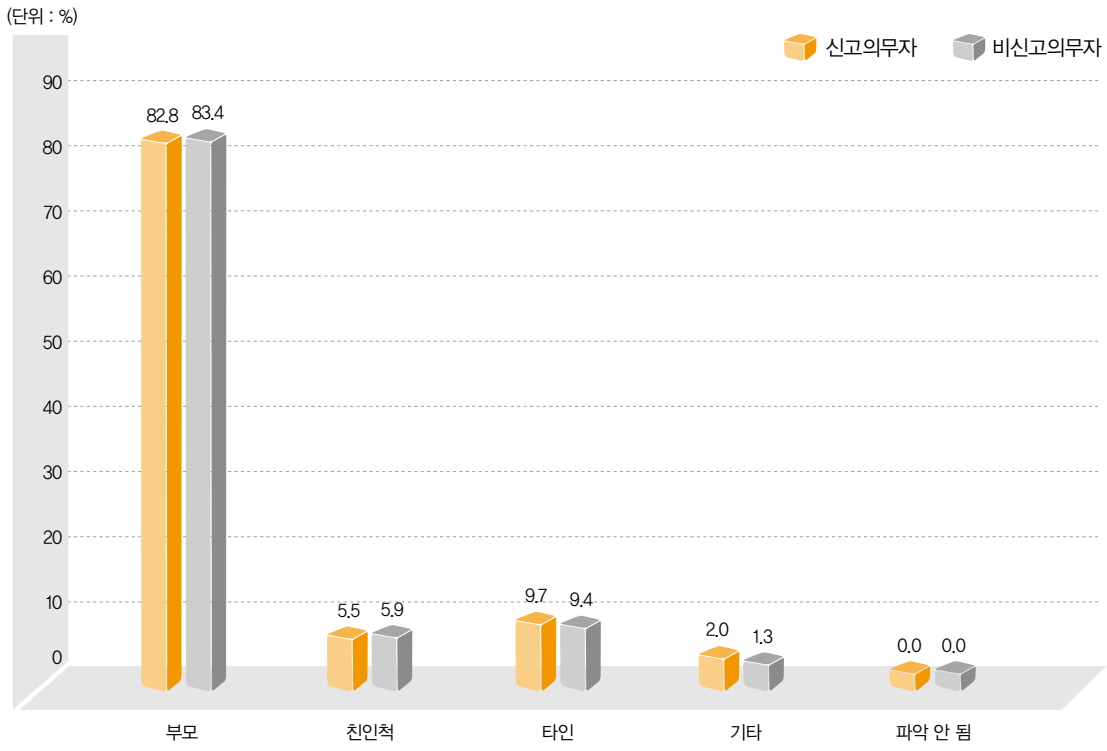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신고의무자 직군에 의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이 7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 사례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에 비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5.0%로 다소 낮은 반면 시설 종사자는 40.0%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시설 내 발생한 아동학대의 발견은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보육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가 시설종사자인 비율이 각각 12.3%, 2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설 내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법 및 제도 안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5-6〉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신고의무자 유형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관련 종사자	한부모 관련 종사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부모	친부	284	30	129	6	44	8	2	2	23	3	124	364
		(56.2)	(41.6)	(49.6)	(30.0)	(33.8)	(22.9)	(50.0)	(25.0)	(58.8)	(37.5)	(72.9)	(41.2)
	친모	146	35	75	4	61	20	1	4	6	5	27	301
		(28.9)	(48.6)	(28.9)	(20.0)	(46.9)	(57.1)	(25.0)	(50.0)	(15.4)	(62.5)	(15.9)	(34.0)
	계부	9	0	4	0	0	0	0	0	1	0	3	4
		(1.8)	(0.0)	(1.5)	(0.0)	(0.0)	(0.0)	(0.0)	(0.0)	(2.6)	(0.0)	(1.8)	(0.5)
	계모	13	1	11	0	4	0	0	0	0	0	0	1
		(2.6)	(1.4)	(4.2)	(0.0)	(3.1)	(0.0)	(0.0)	(0.0)	(0.0)	(0.0)	(0.0)	(0.1)
	양부	0	0	2	1	0	0	0	0	0	0	0	1
		(0.0)	(0.0)	(0.8)	(5.0)	(0.0)	(0.0)	(0.0)	(0.0)	(0.0)	(0.0)	(0.0)	(0.1)
	양모	1	0	2	0	0	0	0	0	1	0	0	4
		(0.2)	(0.0)	(0.8)	(0.0)	(0.0)	(0.0)	(0.0)	(0.0)	(2.6)	(0.0)	(0.0)	(0.5)
	소계	453	66	223	11	109	28	3	6	31	8	154	675
		(89.7)	(91.6)	(85.8)	(55.0)	(83.8)	(80.0)	(75.0)	(75.0)	(79.4)	(100.0)	(90.6)	(76.4)
친인척	친조부	3	0	4	0	0	1	0	1	1	0	0	10
		(0.6)	(0.0)	(1.5)	(0.0)	(0.0)	(2.9)	(0.0)	(12.5)	(2.6)	(0.0)	(0.0)	(1.2)
	친조모	7	0	8	0	0	0	0	0	0	0	0	16
		(1.4)	(0.0)	(3.1)	(0.0)	(0.0)	(0.0)	(0.0)	(0.0)	(0.0)	(0.0)	(0.0)	(1.8)
	외조부	1	0	0	0	0	2	0	0	1	0	0	0
		(0.2)	(0.0)	(0.0)	(0.0)	(0.0)	(5.7)	(0.0)	(0.0)	(2.6)	(0.0)	(0.0)	(0.0)
	외조모	1	1	0	0	0	0	0	0	0	0	2	1
		(0.2)	(1.4)	(0.0)	(0.0)	(0.0)	(0.0)	(0.0)	(0.0)	(0.0)	(0.0)	(1.2)	(0.1)
	친인척	8	1	6	1	1	0	1	0	2	0	4	25
		(1.6)	(1.4)	(2.3)	(5.0)	(0.8)	(0.0)	(25.0)	(0.0)	(5.1)	(0.0)	(2.4)	(2.8)
	형제,자매	5	0	1	0	0	0	0	0	0	0	0	2
		(1.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0.2)
	소계	25	2	19	1	1	3	1	1	4	0	6	54
		(5.0)	(2.8)	(7.3)	(5.0)	(0.8)	(8.6)	(25.0)	(12.5)	(10.3)	(0.0)	(3.6)	(6.1)
타인	부,모의 동거인	13	1	2	0	0	1	0	0	1	0	2	18
		(2.6)	(1.4)	(0.8)	(0.0)	(0.0)	(2.9)	(0.0)	(0.0)	(2.6)	(0.0)	(1.2)	(2.0)
	교원	1	0	0	0	0	0	0	0	0	0	0	3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	0	1	0	0	0	0	0	0	0	1	0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6)	(0.0)
	시설종사자	1	0	1	8	16	0	0	0	0	0	0	105
		(0.2)	(0.0)	(0.4)	(40.0)	(12.3)	(0.0)	(0.0)	(0.0)	(0.0)	(0.0)	(0.0)	(12.0)
	이웃	3	0	5	0	2	1	0	0	1	0	1	0
		(0.6)	(0.0)	(1.9)	(0.0)	(1.5)	(2.9)	(0.0)	(0.0)	(2.6)	(0.0)	(0.6)	(0.0)
	낯선 사람	4	0	5	0	0	0	0	0	2	0	0	1
		(0.8)	(0.0)	(1.9)	(0.0)	(0.0)	(0.0)	(0.0)	(0.0)	(5.1)	(0.0)	(0.0)	(0.1)
	위탁부	0	0	0	0	0	0	0	0	0	0	1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0.2)
	위탁모	0	1	2	0	0	1	0	0	0	0	0	0
		(0.0)	(1.4)	(0.8)	(0.0)	(0.0)	(2.9)	(0.0)	(0.0)	(0.0)	(0.0)	(0.0)	(0.0)
	소계	22	2	16	8	18	3	0	0	4	0	5	129
		(4.4)	(2.8)	(6.2)	(40.0)	(13.8)	(8.6)	(0.0)	(0.0)	(10.3)	(0.0)	(2.9)	(14.6)
기타		5	2	2	0	2	1	0	0	0	0	5	26
		(0.9)	(2.8)	(0.7)	(0.0)	(1.6)	(2.8)	(0.0)	(0.0)	(0.0)	(0.0)	(2.9)	(2.9)
파악 안 됨		0	0	0	0	0	0	0	1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12.5)	(0.0)	(0.0)	(0.0)	(0.0)
계		505	72	260	20	130	35	4	8	39	8	170	8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발생현황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7〉에서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에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 발생장소	가정 내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파악 안 됨	기타	계
신고의무자	1,834	37	15	16	87	0	6	1	17	61	3	58	2,135
	(85.9)	(1.7)	(0.7)	(0.7)	(4.1)	(0.0)	(0.3)	(0.1)	(0.8)	(2.9)	(0.1)	(2.7)	(100.0)
비신고의무자	3,412	113	31	17	72	3	61	26	36	50	1	101	3,923
	(87.0)	(2.9)	(0.8)	(0.4)	(1.7)	(0.1)	(1.6)	(0.7)	(0.9)	(1.3)	(0.0)	(2.6)	(100.0)
계	5,246	150	46	33	159	3	67	27	53	111	4	159	6,058
	(86.6)	(2.5)	(0.8)	(0.5)	(2.7)	(0.0)	(1.1)	(0.4)	(0.9)	(1.8)	(0.1)	(2.6)	(100.0)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표 5-8〉과 같다. 신고의무자 직군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사례가 9건(45.0%), 보육시설 종사자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사례가 20건(15.4%)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의 책임이 있는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가 직접 신고할 만큼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관련 시설과 교육기관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표 5-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 신고의무자 유형	가정 내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파악 안 됨	기타	계
교원	471	5	7	3	0	0	4	0	0	1	2	12	505
	(93.3)	(0.9)	(1.4)	(0.6)	(0.0)	(0.0)	(0.8)	(0.0)	(0.0)	(0.2)	(0.4)	(2.4)	(100.0)
의료인	56	4	0	1	0	0	0	0	9	0	0	2	72
	(77.8)	(5.6)	(0.0)	(1.4)	(0.0)	(0.0)	(0.0)	(0.0)	(12.4)	(0.0)	(0.0)	(2.8)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24	8	3	5	0	0	0	1	0	5	1	13	260
	(86.2)	(3.1)	(1.2)	(1.9)	(0.0)	(0.0)	(0.0)	(0.4)	(0.0)	(1.9)	(0.4)	(4.9)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1	0	0	0	0	0	0	0	0	9	0	0	20
	(55.0)	(0.0)	(0.0)	(0.0)	(0.0)	(0.0)	(0.0)	(0.0)	(0.0)	(45.0)	(0.0)	(0.0)	(100.0)
보육시설 종사자	105	2	0	0	20	0	0	0	0	0	0	3	130
	(80.8)	(1.5)	(0.0)	(0.0)	(15.4)	(0.0)	(0.0)	(0.0)	(0.0)	(0.0)	(0.0)	(2.3)	(100.0)
유치원 종사자	34	0	0	1	0	0	0	0	0	0	0	0	35
	(97.1)	(0.0)	(0.0)	(2.9)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	0	0	1	0	0	0	0	0	0	0	0	4
	(75.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소방구급대원	4	3	1	0	0	0	0	0	0	0	0	0	8
	(50.0)	(37.5)	(1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34	0	1	1	0	0	1	0	0	0	0	2	39
	(87.2)	(0.0)	(2.6)	(2.6)	(0.0)	(0.0)	(2.6)	(0.0)	(0.0)	(0.0)	(0.0)	(5.0)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5	1	0	0	0	0	0	0	1	1	0	0	8
	(62.5)	(12.5)	(0.0)	(0.0)	(0.0)	(0.0)	(0.0)	(0.0)	(12.5)	(12.5)	(0.0)	(0.0)	(1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61	1	1	1	0	0	0	0	0	5	0	1	170
	(94.7)	(0.6)	(0.6)	(0.6)	(0.0)	(0.0)	(0.0)	(0.0)	(0.0)	(2.9)	(0.0)	(0.6)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6	13	2	3	67	0	1	0	7	40	0	25	884
	(82.1)	(1.5)	(0.2)	(0.3)	(7.6)	(0.0)	(0.1)	(0.0)	(0.8)	(4.5)	(0.0)	(2.9)	(100.0)
계	1,834	37	15	16	87	0	6	1	17	61	3	58	2,135
	(85.9)	(1.7)	(0.7)	(0.7)	(4.1)	(0.0)	(0.3)	(0.0)	(0.8)	(2.9)	(0.1)	(2.8)	(100.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표 5-9〉에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발견한 사례에서 모두 거의 매일 아동학대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신고의무자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된 경우가 40.4%이고, 2~3일에 한 번은 18.2%에 해당하여 총 58.6%로 나타났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의 경우 거의 매일이 48.7%, 2~3일에 한 번이 15.9%로 총 64.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아동학대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9〉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 발생빈도	거의 매일	2~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039	340	286	87	105	82	35	17	144	2,135
	(48.7)	(15.9)	(13.4)	(4.1)	(5.0)	(3.8)	(1.6)	(0.8)	(6.7)	(100.0)
비신고의무자	1,585	714	499	199	271	151	66	41	397	3,923
	(40.4)	(18.2)	(12.7)	(5.1)	(7.0)	(3.8)	(1.7)	(1.0)	(10.1)	(100.0)
계	2,624	1,054	785	286	376	233	101	58	541	6,058
	(43.3)	(17.4)	(13.0)	(4.7)	(6.2)	(3.8)	(1.7)	(1.0)	(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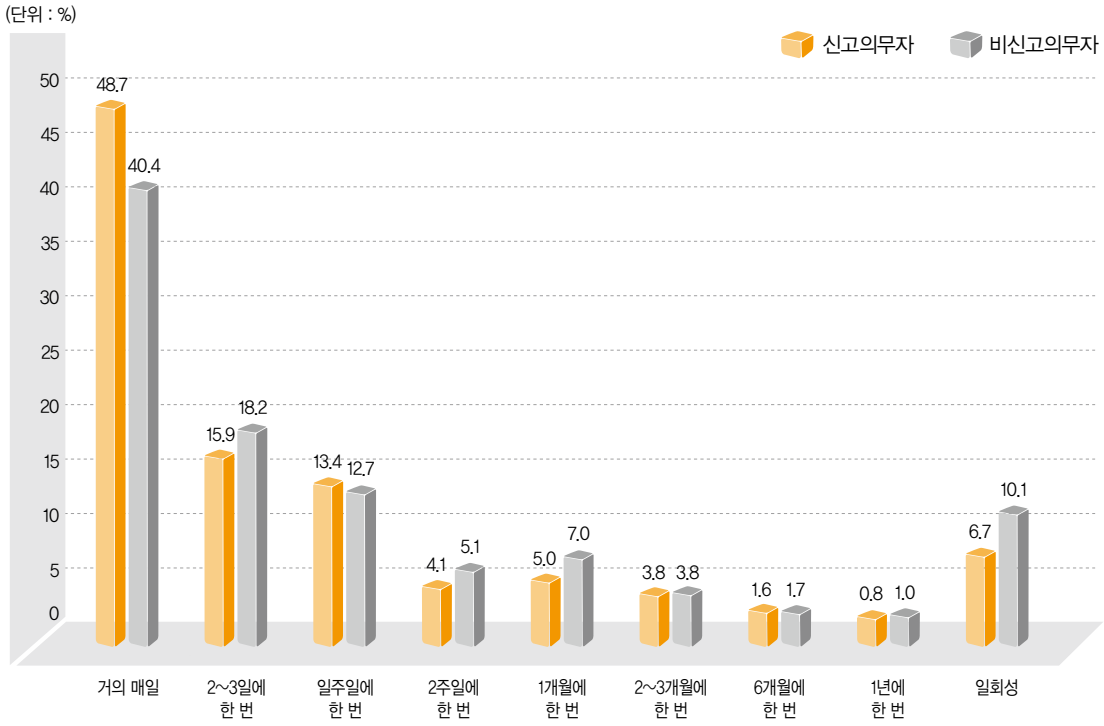

〈그림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 직군 중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비율이 높은 직군은 보육시설 종사자(60.8%), 사회복지전담공무원(58.0%), 유치원 종사자(5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44.6%), 교원(4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아동관련 분야에 근무하거나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군으로 파악된다.

〈표 5-10〉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유형 \ 발생빈도	거의 매일	2~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회성	계
교원	212	88	61	28	40	35	13	3	25	505
	(42.0)	(17.4)	(12.1)	(5.5)	(7.9)	(6.9)	(2.6)	(0.6)	(5.0)	(100.0)
의료인	24	9	11	1	2	4	0	0	21	72
	(33.3)	(12.5)	(15.3)	(1.4)	(2.8)	(5.6)	(0.0)	(0.0)	(29.1)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6	46	42	14	8	13	4	0	17	260
	(44.6)	(17.7)	(16.2)	(5.4)	(3.1)	(5.0)	(1.5)	(0.0)	(6.5)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	2	3	1	2	3	0	1	0	20
	(40.0)	(10.0)	(15.0)	(5.0)	(10.0)	(15.0)	(0.0)	(5.0)	(0.0)	(100.0)
보육시설 종사자	79	19	13	6	2	2	2	0	7	130
	(60.8)	(14.6)	(10.0)	(4.7)	(1.5)	(1.5)	(1.5)	(0.0)	(5.4)	(100.0)
유치원 종사자	18	4	6	2	1	0	2	1	1	35
	(51.4)	(11.4)	(17.1)	(5.7)	(2.9)	(0.0)	(5.7)	(2.9)	(2.9)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	0	1	0	1	0	0	1	4
	(25.0)	(0.0)	(0.0)	(25.0)	(0.0)	(25.0)	(0.0)	(0.0)	(25.0)	(100.0)
소방구급대원	2	0	1	0	0	1	1	0	3	8
	(25.0)	(0.0)	(12.5)	(0.0)	(0.0)	(12.5)	(12.5)	(0.0)	(37.5)	(100.0)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8	5	9	4	4	2	3	0	4	39
	(20.5)	(12.8)	(23.1)	(10.3)	(10.3)	(5.0)	(7.7)	(0.0)	(10.3)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3	1	0	1	0	1	0	0	2	8
	(37.5)	(12.5)	(0.0)	(12.5)	(0.0)	(12.5)	(0.0)	(0.0)	(25.0)	(1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55	40	28	8	12	7	3	5	12	170
	(32.4)	(23.5)	(16.5)	(4.7)	(7.1)	(4.1)	(1.7)	(2.9)	(7.1)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13	126	112	21	34	13	7	7	51	884
	(58.0)	(14.3)	(12.7)	(2.4)	(3.8)	(1.5)	(0.8)	(0.8)	(5.7)	(100.0)
계	1,039	340	286	87	105	82	35	17	144	2,135
	(48.7)	(15.9)	(13.4)	(4.1)	(4.9)	(3.8)	(1.6)	(0.9)	(6.7)	(100.0)

5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중복학대가 각각 874건(40.9%), 1,747건(44.5%)으로 다른 아동학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복학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 신고의무자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신고의무자	148 (6.9)	253 (11.9)	88 (4.1)	745 (34.9)	27 (1.3)	874 (40.9)	2,135 (100.0)
비신고의무자	318 (8.1)	656 (16.7)	138 (3.5)	1,038 (26.5)	26 (0.7)	1,747 (44.5)	3,923 (100.0)
계	466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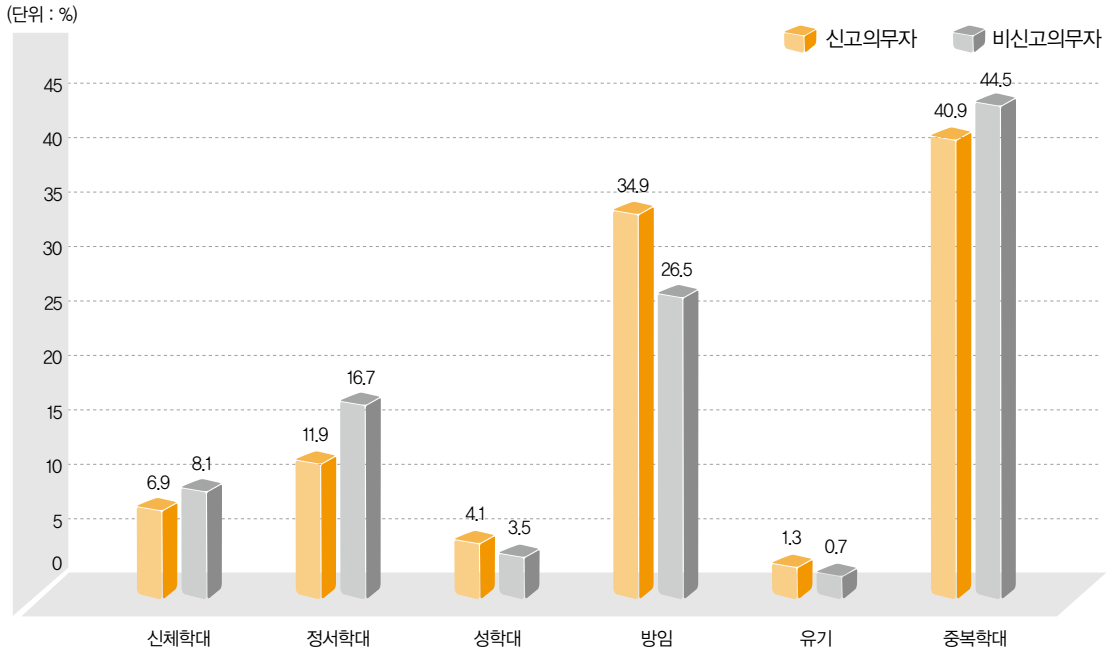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다음은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학대의 발견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에서 높은 발견율을 보였다. 특히 의료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신체학대 발견율이 각각 16.7%, 30.0%, 75.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정서학대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29.4%, 교원 13.1%의 발견율을 보였다.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 성학대 발견율이 25.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기에 있어서는 소방구급대원에 의한 발견율이 25.0%로 높게 발견되었다.

〈표 5-1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 신고의무자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교원	41 (8.1)	66 (13.1)	31 (6.1)	162 (32.1)	1 (0.2)	204 (40.4)	505 (100.0)
의료인	12 (16.7)	9 (12.5)	0 (0.0)	20 (27.8)	4 (5.5)	27 (37.5)	72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 (3.1)	35 (13.5)	26 (10.0)	88 (33.8)	2 (0.8)	101 (38.8)	260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6 (30.0)	2 (10.0)	0 (0.0)	4 (20.0)	1 (5.0)	7 (35.0)	20 (100.0)
보육시설 종사자	15 (11.5)	14 (10.8)	4 (3.1)	53 (40.8)	0 (0.0)	44 (33.8)	130 (100.0)
유치원 종사자	4 (11.4)	2 (5.7)	2 (5.7)	15 (42.9)	0 (0.0)	12 (34.3)	35 (10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 (75.0)	0 (0.0)	0 (0.0)	1 (25.0)	0 (0.0)	0 (0.0)	4 (100.0)
소방구급대원	0 (0.0)	2 (25.0)	0 (0.0)	2 (25.0)	2 (25.0)	2 (25.0)	8 (100.0)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6 (15.4)	1 (2.6)	10 (25.6)	6 (15.4)	0 (0.0)	16 (41.0)	39 (100.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1 (12.5)	0 (0.0)	0 (0.0)	2 (25.0)	1 (12.5)	4 (50.0)	8 (1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9 (5.3)	50 (29.4)	6 (3.5)	14 (8.3)	1 (0.6)	90 (52.9)	170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 (4.9)	72 (8.1)	9 (1.0)	378 (42.8)	15 (1.7)	367 (41.5)	884 (100.0)
계	148 (6.9)	253 (11.9)	88 (4.1)	745 (34.9)	27 (1.3)	874 (40.9)	2,135 (100.0)

6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표 5-13〉에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가 75.1%로 높은 반면 비신고의무자 신고 사례에서는 원가정보호가 72.9%로 나타나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가 원가정에 보호되는 비율이 2.2%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함에 따라 격리보호를 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5-1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신고의무자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계
신고의무자	1,603 (75.1)	519 (24.3)	0 (0.0)	13 (0.6)	2,135 (100.0)
비신고의무자	2,859 (72.9)	1,036 (26.4)	1 (0.0)	27 (0.7)	3,923 (100.0)
계	4,462 (73.6)	1,555 (25.7)	1 (0.0)	40 (0.7)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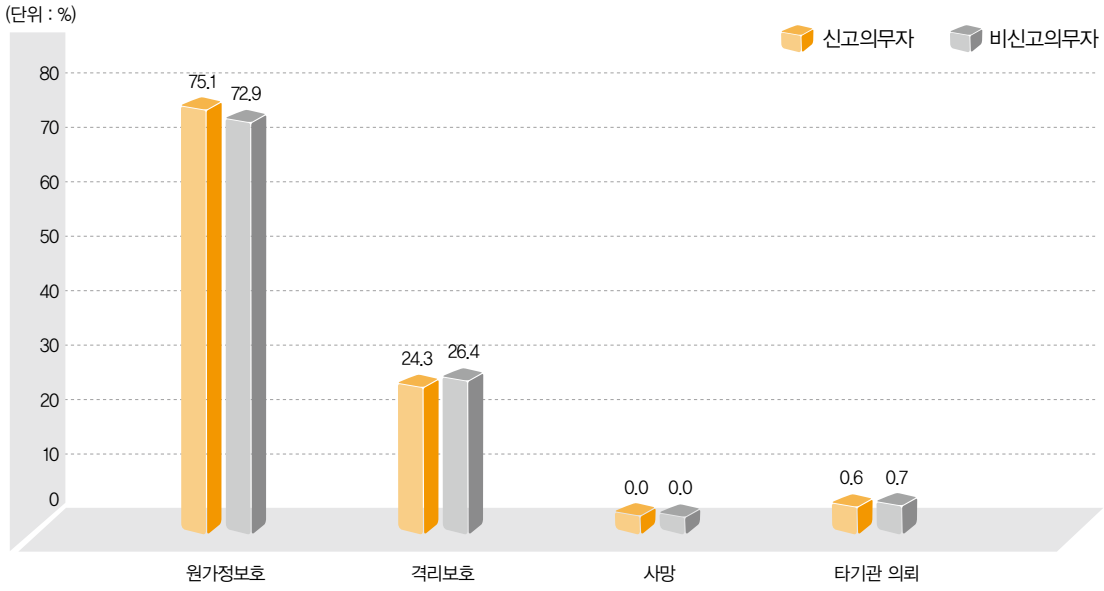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5-14〉를 통해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라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신고의무자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신고의무자	1,754 (82.2)	162 (7.6)	97 (4.5)	122 (5.7)	2,135 (100.0)
비신고의무자	3,304 (84.2)	227 (5.8)	147 (3.8)	245 (6.2)	3,923 (100.0)
계	5,058 (83.5)	389 (6.4)	244 (4.0)	367 (6.1)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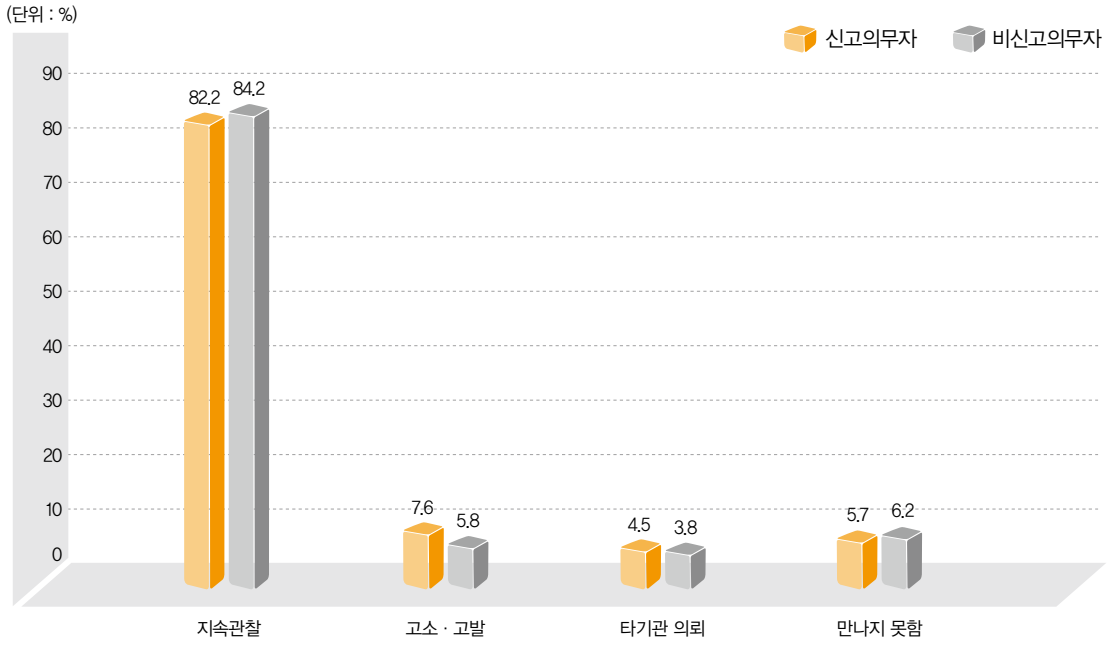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 재학대 신고 사례

본 장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개입을 진행하다가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재학대 신고 사례의 현황

2011년 재학대 신고 사례 현황은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63건이며, 재학대 사례 아동 수는 559명이다.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와 아동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한 아동이 2회 이상 재신고 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대비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는 563건으로 약 9.3%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5〉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건수

(단위 : 건, %)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신고 사례 비율
563	9.3

2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아 294건(52.2%), 남아 269건(47.8%)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4.4%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5-16〉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 수(비율)
남	269 (47.8)
여	294 (52.2)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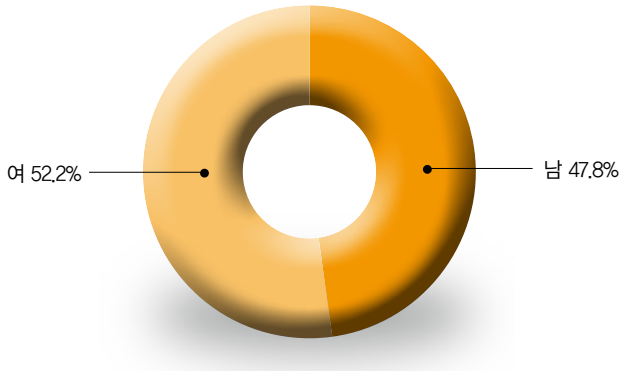

〈그림 5-8〉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표 5-17〉과 같이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3~15세가 167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 160건(28.4%), 만 7~9세 102건(18.1%)으로 많았으며, 이를 통해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와 동일하게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재학대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17〉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 령(만)	건 수 (비율)
1세 미만	1 (0.2)
1~3세	22 (3.9)
4~6세	55 (9.8)
7~9세	102 (18.1)
10~12세	160 (28.4)
13~15세	167 (29.7)
16~18세	56 (9.9)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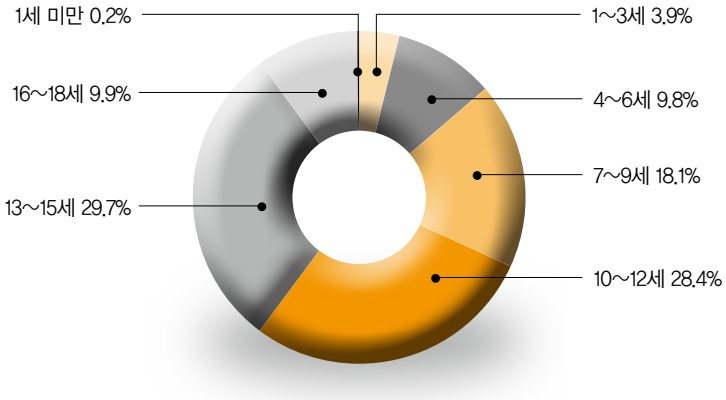

〈그림 5-9〉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표 5-18〉과 같이 친부모가족이 116건(20.6%),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406건(72.1%), 대리양육형태가 33건(5.9%)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자가정이 20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친부모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116건(20.6%), 99건(17.6%)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와 같은 대리양육형태에서 33건(5.9%)의 재학대가 발생하였다. 이미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환경에서 또 다시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며 대리양육형태에 대한 법 · 제도적 규제 및 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8〉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 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116	202	99	11	45	17	27	5	406	5	1	27	33	6	2	563
(20.6)	(35.9)	(17.6)	(2.0)	(8.0)	(3.0)	(4.8)	(0.8)	(72.1)	(0.9)	(0.2)	(4.8)	(5.9)	(1.1)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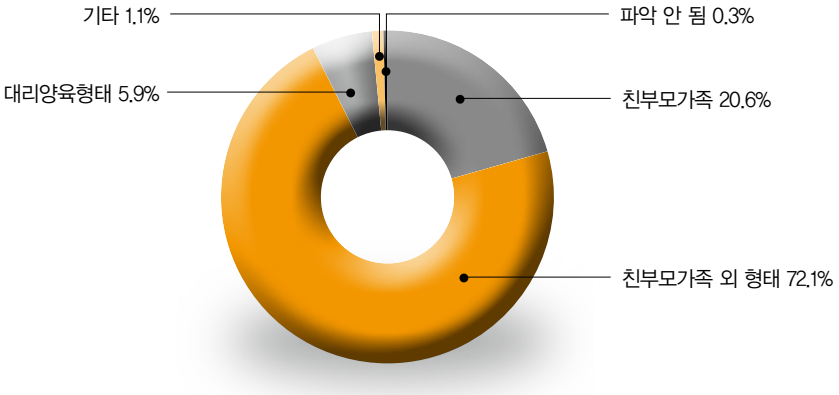

〈그림 5-10〉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을 〈표 5-19〉에서 살펴보면, 적응·행동 특성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34.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행동 특성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6.5%, 학교 부적응이 6.0%로 나타났으며 정서·정신건강 특성으로는 불안 7.3%, 주의산만 6.0%로 파악되었다.

〈표 5-19〉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장 애	지체장애	2 (0.1)
	지적장애	28 (1.9)
	자폐성장애	3 (0.2)
	언어장애	3 (0.2)
	뇌병변장애	1 (0.1)
	소계	37 (2.5)
정서 · 정신건강	주의산만	89 (6.0)
	과잉행동	46 (3.1)
	오락중독	9 (0.6)
	인터넷중독	12 (0.8)
	불안	110 (7.3)
	애착문제	46 (3.1)
	무력감	48 (3.2)
	우울	45 (3.0)
	낮은 자아존중감	71 (4.8)
	성격 및 기질문제	27 (1.8)
	탐식 및 결식	9 (0.6)
	소계	512 (34.3)
적응 · 행동	반항 · 충동 · 공격성	97 (6.5)
	거짓말	76 (5.2)
	도벽	69 (4.6)
	가출	64 (4.3)
	흡연	28 (1.9)
	음주	14 (0.9)
	성문제	24 (1.6)
	학교 부적응	90 (6.0)
	잦은 결석	63 (4.2)
	늦은 귀가	45 (3.0)
	학습문제	85 (5.7)
	소계	655 (43.9)
발달 · 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15 (1.0)
	언어문제	36 (2.4)
	급만성질병	7 (0.5)
	영양결핍	5 (0.4)
	대소변문제	17 (1.1)
	위생문제	44 (2.9)
	소계	124 (8.3)
특성 없음		91 (6.1)
기타		73 (4.9)
계		1,492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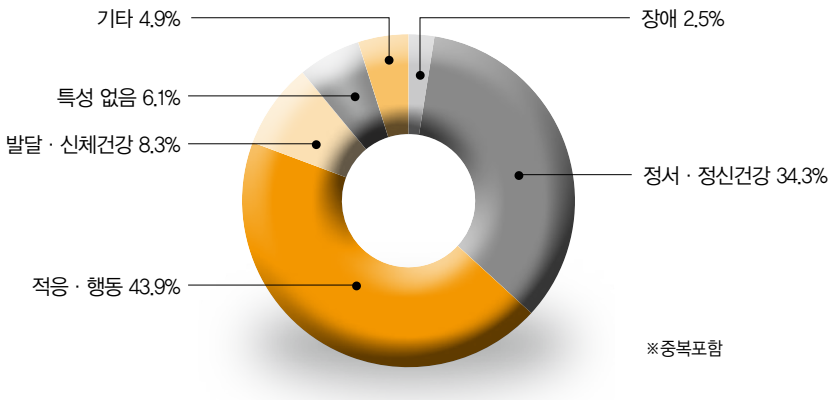

〈그림 5-11〉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본 절에서는 재학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직업 유형, 소득 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 특성 등 다양한 학대행위자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대행위자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는 〈표 5-20〉과 같이 남성은 362건(64.3%), 여성은 201건(35.7%)으로 조사되었다.

〈표 5-20〉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 수(비율)
남	362 (64.3)
여	201 (35.7)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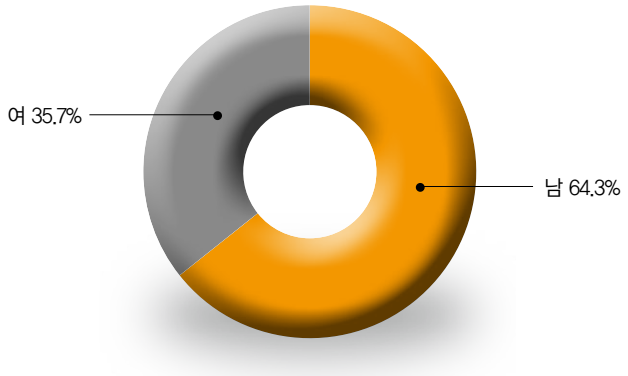

〈그림 5-12〉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에 있어서는 40대가 268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55건(27.5%)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행위자 연령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재학대 신고 사례에서도 학대행위자의 2/3 이상이 30~40대(75.1%)임을 알 수 있다.

〈표 5-21〉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 령 (만)	건 수 (비율)
19세 이하	0 (0.0)
20~29세	27 (4.8)
30~39세	155 (27.5)
40~49세	268 (47.6)
50~59세	97 (17.2)
60~69세	5 (0.9)
70세 이상	7 (1.2)
파악 안 됨	4 (0.8)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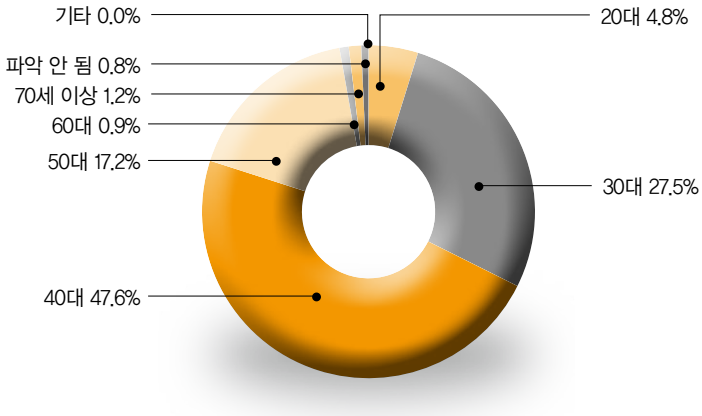

〈그림 5-13〉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군 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이 167건(29.7%)으로 전체 직업 유형 중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이 114(20.2%), 전업주부 56건(9.9%), 비정규직 55건(9.8%)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무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경우가 59.7%를 차지하여 10명 중 6명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2〉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 업	건 수 (비율)
전문직	5 (0.9)
준전문직	13 (2.3)
사무직	5 (0.9)
서비스 · 판매직	28 (5.0)
농 · 어 · 축산업	12 (2.1)
기능직	12 (2.1)
기계장치조작원	10 (1.8)
단순노무직	114 (20.2)
소규모 자영업	18 (3.2)
전업주부	56 (9.9)
학생	6 (1.0)
비정규직	55 (9.8)
무직	167 (29.7)
기타	42 (7.5)
파악 안 됨	20 (3.6)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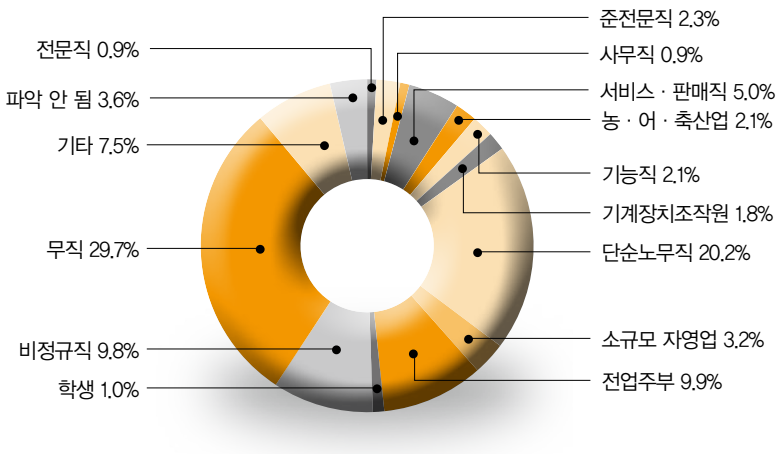

〈그림 5-14〉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표 5-23〉에서 살펴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143건(25.4%), 50만 원 미만이 121건(21.5%)으로 파악되었으나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0건(1.7%)으로 집계되어 학대행위자 가운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23〉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 득	건 수 (비율)
50만 원 미만	121 (21.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43 (25.4)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09 (19.4)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51 (9.1)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24 (4.3)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2 (3.9)
300만 원 이상	10 (1.7)
파악 안 됨	83 (14.7)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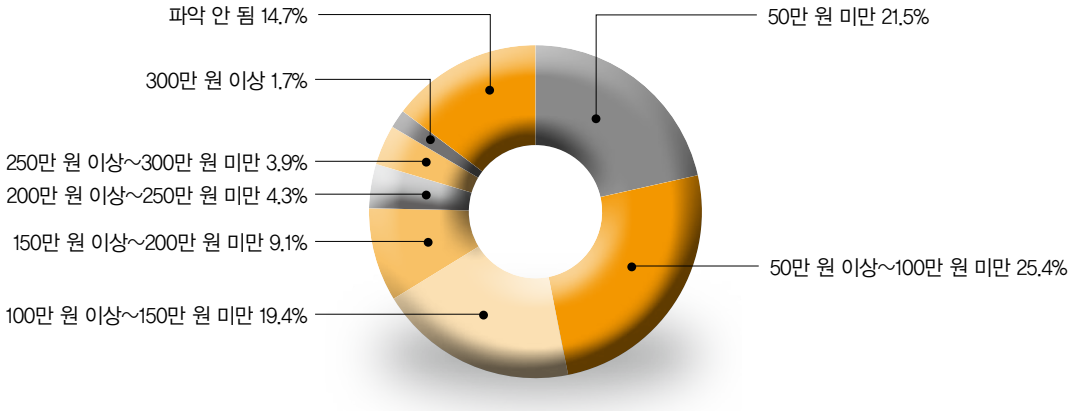

〈그림 5-15〉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마.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표 5-24〉는 재학대 신고 사례 중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수급권 대상자는 323건(57.4%), 수급권 대상자는 222건(39.4%)으로 파악되어 수급권자보다 비수급권자가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대상	건 수 (비율)
수급권 대상	222 (39.4)
비수급권 대상	323 (57.4)
파악 안 됨	18 (3.2)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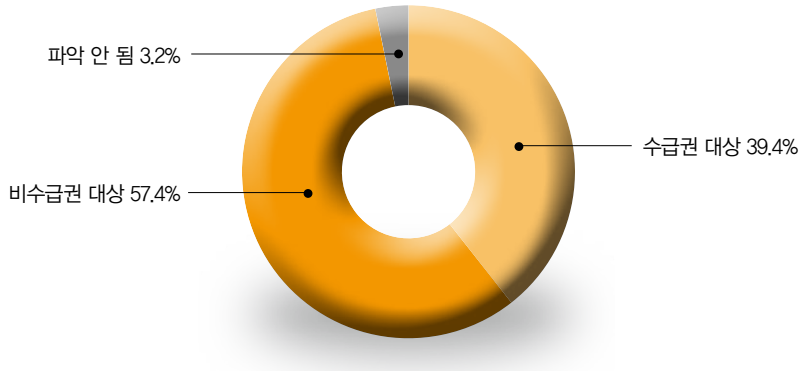

〈그림 5-16〉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마지막으로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25〉와 같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679건(32.5%)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428건(20.5%), 중독 및 질환문제가 350건(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5〉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 성	건 수 (비율)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679 (32.5)
중독문제	228 (10.9)
질환문제	122 (5.8)
성격 및 기질문제	196 (9.4)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28 (20.5)
어릴 적 학대경험	53 (2.5)
폭력성	88 (4.2)
전과력	19 (0.9)
성문제	23 (1.1)
원치 않은 아동	15 (0.7)
부부 및 가족 갈등	186 (8.9)
종교문제	5 (0.3)
특성 없음	11 (0.5)
기타	23 (1.1)
파악 안 됨	14 (0.7)
계	2,0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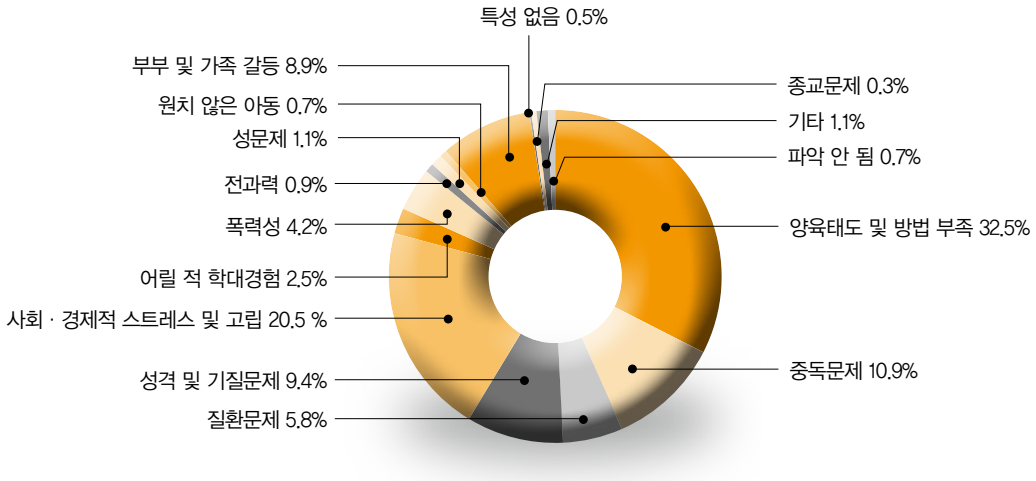

〈그림 5-17〉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주로 30~40대 남성으로 무직 상태이거나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 고용이 불안정하며 소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녀 양육 태도 및 방법이 부족하거나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의 특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인 소외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반복적인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표 5-26〉과 같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482건(85.6%)으로 매우 높게 파악되었고,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5건(4.4%), 타인에 의한 학대가 51건(9.1%)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의한 학대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5건(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종사자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가 법적인 틀 안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26〉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부모	친부	303 (53.8)
	친모	154 (27.4)
	계부	7 (1.2)
	계모	17 (3.0)
	양모	1 (0.2)
	소계	482 (85.6)
친인척	친조부	5 (0.9)
	친조모	6 (1.1)
	외조부	2 (0.4)
	친인척	8 (1.4)
	형제 · 자매	4 (0.6)
	소계	25 (4.4)
타인	부모의 동거인	16 (2.8)
	교원	2 (0.4)
	시설종사자	25 (4.4)
	이웃	3 (0.5)
	낯선 사람	2 (0.4)
	위탁부	1 (0.2)
	위탁모	2 (0.4)
	소계	51 (9.1)
기타		5 (0.9)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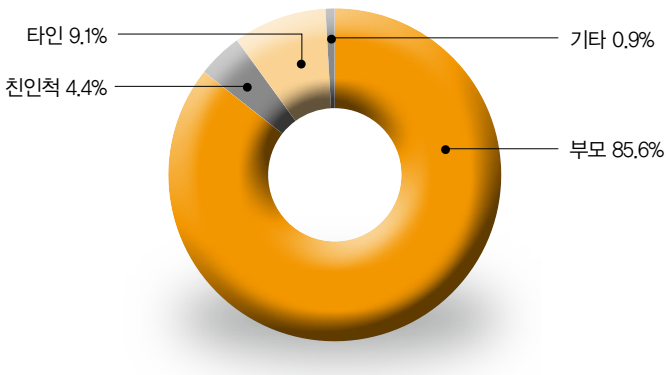

〈그림 5-18〉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현황

가.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503건(8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10건 당 9건이 가정 내에서 다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7〉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 수 (비율)
가정 내	503 (89.3)
집근처 또는 길가	13 (2.3)
친척집	2 (0.4)
어린이집	1 (0.2)
학교	3 (0.5)
병원	3 (0.5)
복지시설	18 (3.2)
기타	20 (3.6)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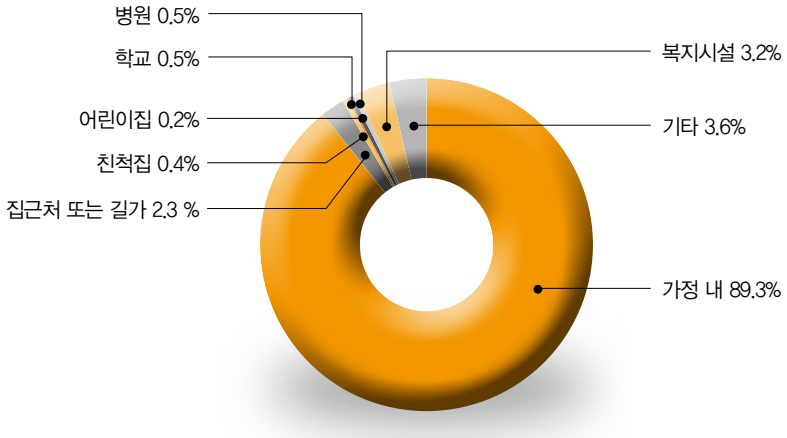

〈그림 5-19〉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장소

나.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표 5-28〉에서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254건(45.1%)으로 나타났으며 2~3일에 한 번 일어난 학대는 108건(19.2%), 일주일

에 한 번은 83건(14.7%)으로 잦은 빈도를 보이는 비율이 79.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28〉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 수 (비율)
거의 매일	254 (45.1)
2~3일에 한 번	108 (19.2)
일주일에 한 번	83 (14.7)
2주일에 한 번	24 (4.3)
1개월에 한 번	31 (5.5)
2~3개월에 한 번	26 (4.6)
6개월에 한 번	15 (2.7)
1년에 한 번	1 (0.2)
일회성	21 (3.7)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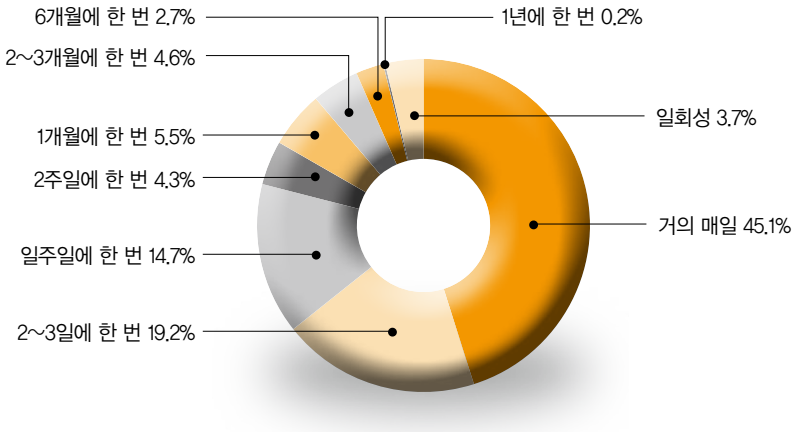

〈그림 5-20〉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빈도

다.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 시기를 다음의 〈표 5-29〉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례종결 후 1년에서 2년 미만의 시점에서 131건(2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례종결 후 3년 이상이 129건(22.8%), 사례종결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116건(20.6%), 사례종결 후 2년에서 3년 미만이 87건(15.5%)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기간에서는 사례종결 후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55건(9.8%), 사례종결 후 1

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26건(4.6%), 사례종결 후 1개월 미만이 19건(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학대가 사례종결 후 6개월 이내에서 발생한 빈도는 17.8%에 불과하지만 종결 6개월 이후에는 전체의 82.2%를 차지할 만큼 재학대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종결 6개월 이내에서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기간 동안 학대행위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주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의 모니터링 등의 사례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례종결 후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9〉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건 수 (비율)
사례종결 후 1개월 미만	19 (3.4)
사례종결 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6 (4.6)
사례종결 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5 (9.8)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1년 미만	116 (20.6)
사례종결 후 1년 이상~2년 미만	131 (23.3)
사례종결 후 2년 이상~3년 미만	87 (15.5)
사례종결 후 3년 이상	129 (22.8)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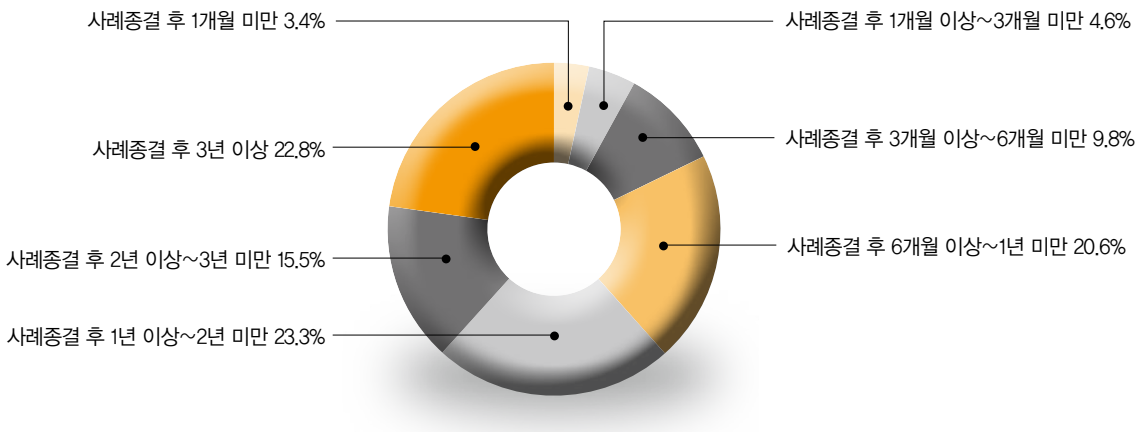

〈그림 5-21〉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6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5-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학대가 274건(48.7%), 방임이 147건(26.1%), 정서학대가 83건(1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0〉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 수 (비율)
신체학대	40 (7.1)
정서학대	83 (14.7)
성 학 대	18 (3.2)
방 임	147 (26.1)
유 기	1 (0.2)
중복학대	274 (48.7)
계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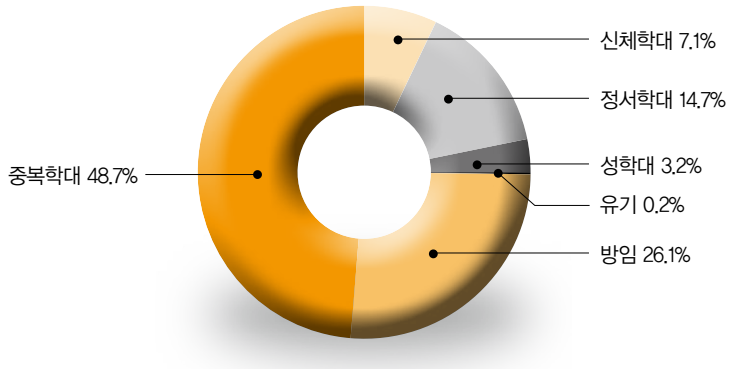

〈그림 5-22〉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표 5-31〉에서 재학대 사례 건수는 총 563건이지만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이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총 903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정서학대로 340건(37.7%)이며, 방임 266건(29.5%), 신체학대 257건(28.5%)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가 재학대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언어적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를 동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서학대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학대로 인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5-31〉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 수 (비율)
신체학대	257 (28.5)
정서학대	340 (37.7)
성 학 대	39 (4.2)
방 임	266 (29.5)
유 기	1 (0.1)
계	903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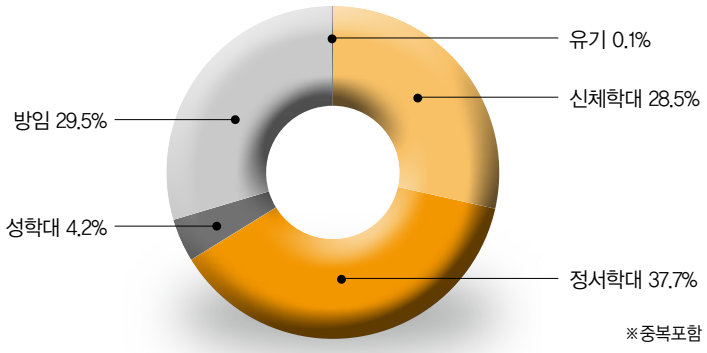

〈그림 5-23〉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7 재학대 신고 사례의 조치결과

가.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표 5-32〉를 통해 재학대 사례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388건(68.9%), 격리보호 169건(30.0%), 타기관 의뢰 6건(1.1%) 순이었으며, 〈표 4-23〉을 볼 때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타기관 의뢰	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기타	소계		
388 (68.9)	21 (3.7)	110 (19.5)	18 (3.2)	20 (3.6)	169 (30.0)	6 (1.1)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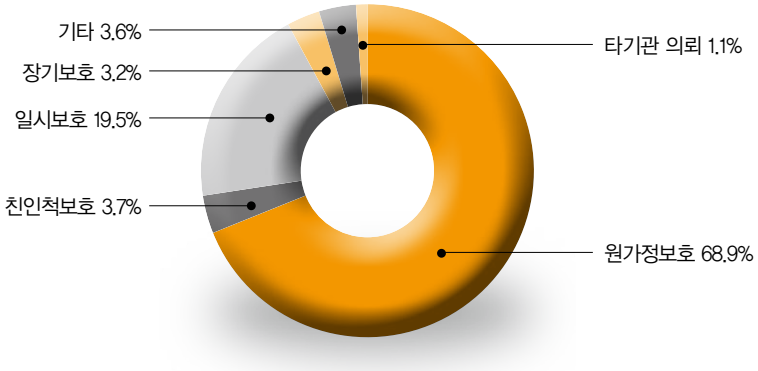

〈그림 5-24〉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11년에 발생한 재학대 신고 사례 563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326건(57.9%), 격리보호 184건(32.7%)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격리보호 되었던 피해아동들이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48건(8.5%), 타기관 의뢰가 4건(0.7%), 사망 사례가 1건(0.2%)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11년 전체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와 비교하면,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 시 원가정 보호율은 57.9%로, 전체 피해아동 최종조치 시 원가정 보호율인 65.3%에 비

해 약 7.4% 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학대로 신고된 만큼 가족체계에 학대 위험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학대 재발의 가능성이 잔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33〉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가정 복귀	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	기타	소계				
326 (57.9)	24 (4.3)	48 (8.5)	93 (16.5)	2 (0.4)	17 (3.0)	184 (32.7)	1 (0.2)	4 (0.7)	48 (8.5)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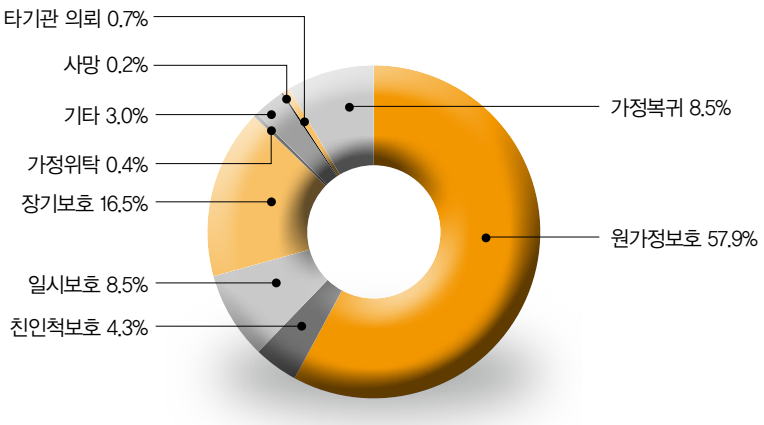

〈그림 5-25〉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477건(84.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44건(7.9%), 고소 · 고발 21건(3.7%), 타기관 의뢰 21건(3.7%)으로 나타났다.

〈표 5-34〉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477 (84.7)	21 (3.7)	21 (3.7)	44 (7.9)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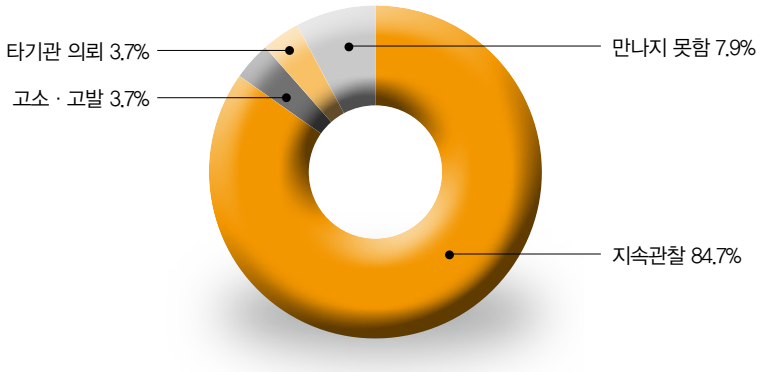

〈그림 5-26〉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라.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472건(83.8%),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38건(6.8%), 고소 · 고발 30건(5.3%), 타기관 의뢰 23건(4.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와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35〉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472 (83.8)	30 (5.3)	23 (4.1)	38 (6.8)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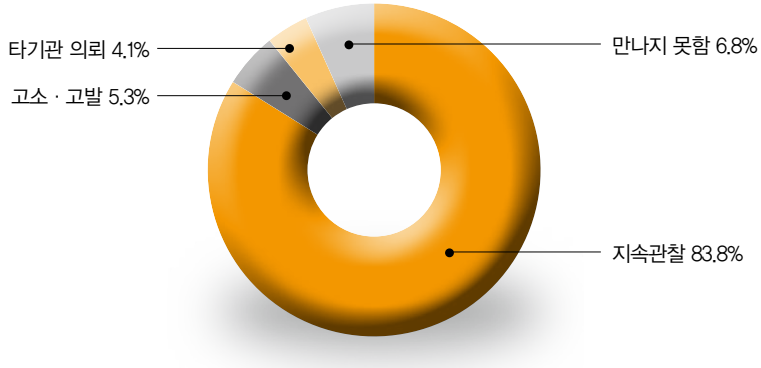

〈그림 5-27〉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3.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1 다문화가족 사례의 현황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총 6,058건 중 다문화가족의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표 5-36〉과 같이 231건으로 전체 사례의 3.8%에 해당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보호율은 1.53‰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인 0.63‰에 비해 약 2.4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피해아동의 보호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11년 다문화가족의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총 아동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5-36〉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보호율

(단위 : 명, 건, ‰)

다문화가족 아동 총 인구 수* (만 0~17세)	다문화가족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보호율
151,154	231	1.53

* 행정안전부(2011). 외국인주민조사현황

2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가.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다문화 가족 내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231건 중 피해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율은 〈표 5-37〉과 같이 남아가 130건으로 56.3%를 차지하였고, 여아가 101건으로 43.7%에 해당하여 남아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37〉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 별	건 수 (비율)
남	130 (56.3)
여	101 (43.7)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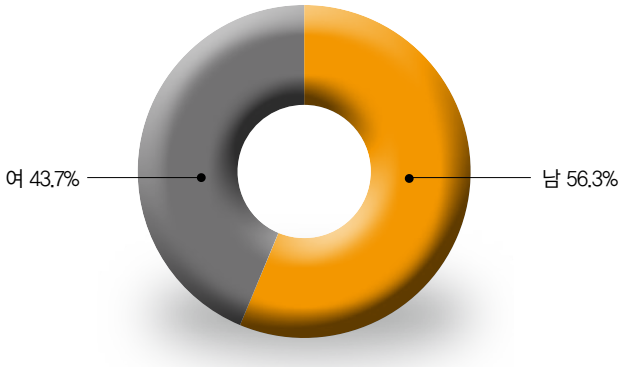

〈그림 5-28〉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별 분포는 〈표 5-38〉과 같이 만 4~6세와 만 7~9세가 각각 52건(2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만 1~3세가 46건(19.9%), 만 10~12세가 40건(17.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는 학령기 아동이 54.6%, 만 6세 미만이 45.4%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만 6세 미만의 아동 비율은 전체 피해아동 중 만 6세 미만의 아동 비율인 28.3%에 비해 17.1% 정도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것과 점차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낮은 연령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38〉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 령(만)	건 수 (비율)
1세 미만	7 (3.0)
1~3세	46 (19.9)
4~6세	52 (22.5)
7~9세	52 (22.5)
10~12세	40 (17.3)
13~15세	26 (11.3)
16~18세	8 (3.5)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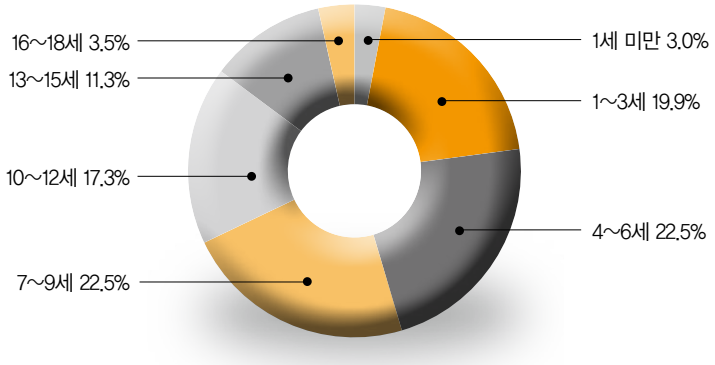

〈그림 5-29〉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다문화가족 사례 중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표 5-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부모가족 유형이 95건(41.1%), 친부모가족 외 형태 130건(56.4%), 대리양육형태 1건(0.4%)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친부모가족은 32.8%로 다문화가족 사례에서 피해아동 가족 유형이 8.3% 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39〉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계	시설 보호	소계			
95 (41.1)	51 (22.1)	38 (16.5)	2 (0.9)	33 (14.3)	1 (0.4)	5 (2.2)	130 (56.4)	1 (0.4)	1 (0.4)	1 (0.4)	4 (1.7)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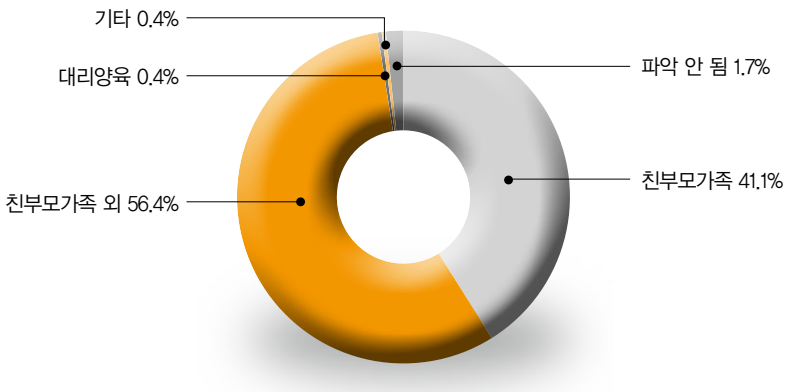

〈그림 5-30〉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다음 〈표 5-40〉에서 학대를 경험한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적응 · 행동 특성이 21.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 정신건강 특성에서는 불안이 11.7%, 주의산만이 9.3%, 애착문제가 6.1%로 나타났고, 적응 · 행동 특성 중에서는 학습문제가 4.5%, 학교 부적응 4.5%, 반항 · 충동 · 공격성이 3.6%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발달 · 신체건강 특성이 12.5%로 조사되었고, 이 중 언어문제가 5.3%를 차지하였다.

〈표 5-40〉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장 애	청각장애	1 (0.2)
	지체장애	1 (0.2)
	지적장애	3 (0.5)
	자폐성장애	1 (0.2)
	언어장애	0 (0.0)
	뇌병변장애	1 (0.2)
	소계	7 (1.3)
정서 · 정신건강	주의산만	49 (9.3)
	과잉행동	20 (3.8)
	오락중독	5 (0.9)
	인터넷중독	7 (1.3)
	불안	62 (11.7)
	애착문제	32 (6.1)
	무력감	21 (4.0)
	우울	24 (4.5)
	낮은 자아존중감	23 (4.4)
	성격 및 기질문제	11 (2.1)
	탐식 및 결식	7 (1.3)
	소계	261 (49.4)
적응 · 행동	반항 · 충동 · 공격성	19 (3.6)
	거짓말	8 (1.5)
	도벽	13 (2.5)
	가출	6 (1.1)
	흡연 · 음주	4 (0.8)
	성문제	5 (0.9)
	학교 부적응	23 (4.5)
	잦은 결석	5 (0.9)
	늦은 귀가	8 (1.5)
	학습문제	24 (4.5)
	소계	115 (21.8)
발달 · 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6 (1.1)
	언어문제	28 (5.3)
	급만성질병	7 (1.3)
	영양결핍	3 (0.6)
	대소변문제	8 (1.5)
	위생문제	14 (2.7)
	소계	66 (12.5)
특성 없음		50 (9.5)
기타		29 (5.5)
계		52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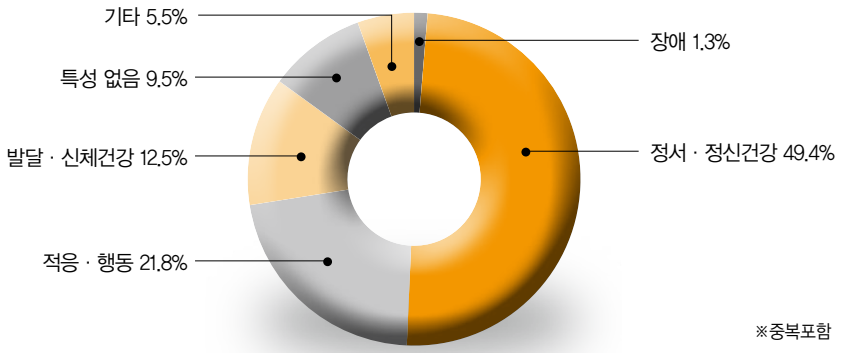

※중복포함

〈그림 5-31〉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먼저 〈표 5-41〉에서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학대사례 231건 중 143건(61.9%)이 남성이었고 87건(37.7%)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표 5-41〉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 별	건수 (비율)
남	143 (61.9)
여	87 (37.7)
파악 안 됨	1 (0.4)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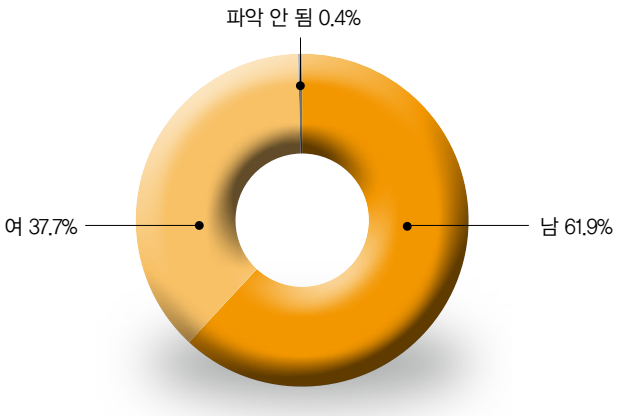

〈그림 5-32〉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 연령에 있어서는 〈표 5-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가 123건(53.2%)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44건(19.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행위자 연령 분포와 유사하며,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의 2/3 이상이 30~40대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20대가 17건(7.4%), 50대가 31건(13.4%), 60대가 12건(5.2%), 파악 안 됨이 1건(0.5%)으로 집계되었다.

〈표 5-42〉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 령(만)	건수 (비율)
19세 이하	0 (0.0)
20~29세	17 (7.4)
30~39세	44 (19.0)
40~49세	123 (53.2)
50~59세	31 (13.4)
60~69세	12 (5.2)
70세 이상	3 (1.3)
파악 안 됨	1 (0.5)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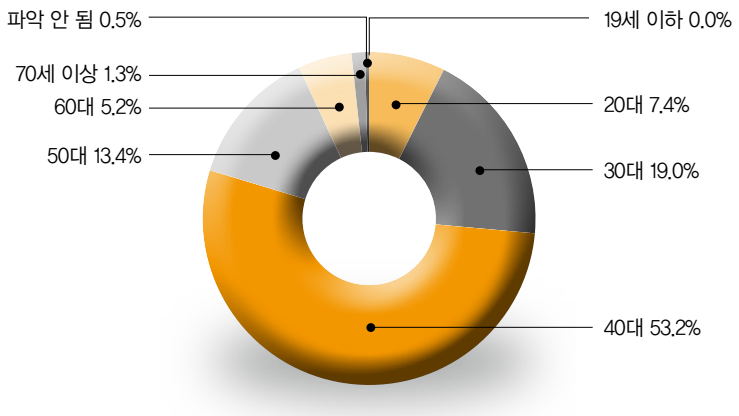

〈그림 5-33〉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군 분포는 무직이 57건(2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이 43건(18.6%), 농 · 어 · 축산업이 28건(12.1%), 기타 25건(10.8%), 비정규직 24건(10.4%), 서비스 · 판매직 17건(7.4%)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가족 학대행위자의 직업으로 무직, 단순노무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행위자 직업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농 · 어 · 축산업의 경우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행위자 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 (비율)
전문직	5 (2.2)
사무직	1 (0.3)
서비스, 판매직	17 (7.4)
농 · 어 · 축산업	28 (12.1)
기능직	6 (2.6)
기계장치조작원	2 (0.9)
단순노무직	43 (18.6)
자영업	5 (2.2)
주부	9 (3.9)
비정규직	24 (10.4)
무직	57 (24.7)
기타	25 (10.8)
파악 안 됨	9 (3.9)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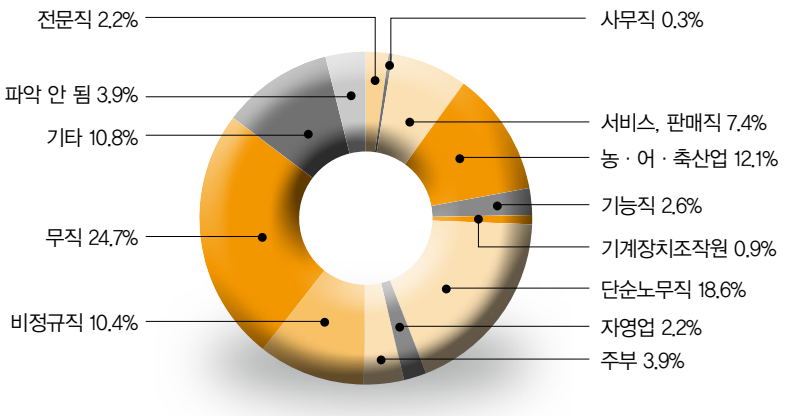

〈그림 5-34〉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 47건(20.3%),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45건(19.5%), 50만 원 미만이 43건(18.6%)으로 집계되어 학대행위자 가운데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였다.

〈표 5-44〉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 득	건 수 (비율)
50만 원 미만	43 (18.6)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47 (20.3)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45 (19.5)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33 (14.3)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4 (1.7)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 (1.7)
300만 원 이상	15 (6.6)
파악 안 됨	40 (17.3)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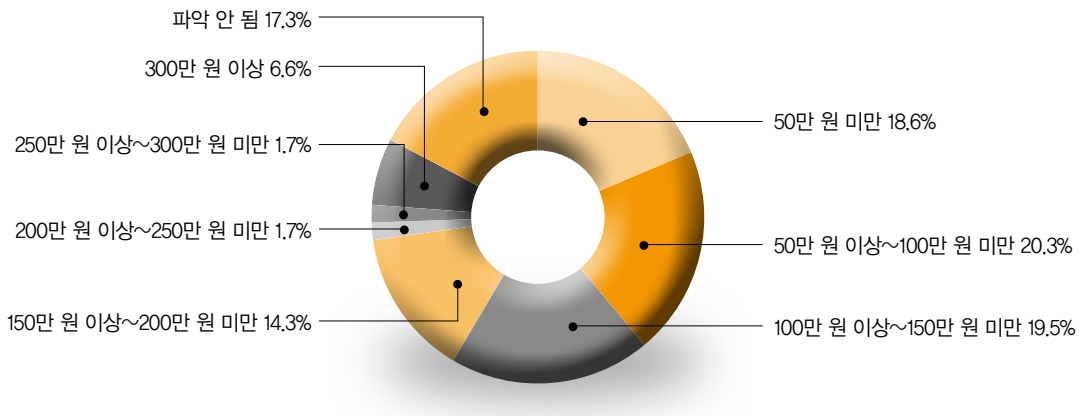

〈그림 5-3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마.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다문화가족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는 〈표 5-45〉에서 알 수 있듯이, 수급권인 경우가 54건(23.4%), 비수급권 대상이 168건(72.7%),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9건(3.9%)으로 비수급권자가 수급권자보다 약 3.1배 높았다.

〈표 5-4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대상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54 (23.4)
비수급권 대상	168 (72.7)
파악 안 됨	9 (3.9)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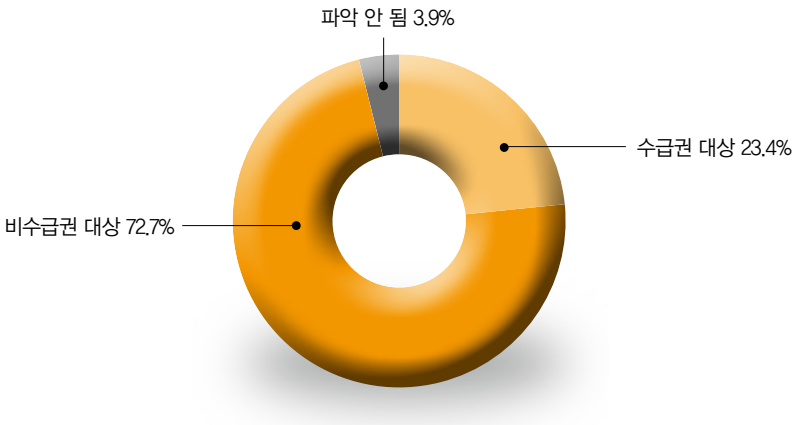

〈그림 5-36〉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바.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경우가 248건(31.3%)로 가장 많았고,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183건(23.1%), 중독 및 질환문제가 106건(13.3%), 부부 및 가족갈등이 100건(1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6〉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 성	건수 (비율)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248 (31.3)
중독문제	70 (8.8)
질환문제	36 (4.5)
성격 및 기질문제	74 (9.3)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83 (23.1)
어릴 적 학대경험	11 (1.4)
폭력성	40 (5.0)
전과력	1 (0.1)
성문제	2 (0.3)
원치 않는 아동	2 (0.3)
부부 및 가족갈등	100 (12.6)
종교문제	3 (0.4)
특성 없음	4 (0.5)
기타	10 (1.3)
파악 안 됨	9 (1.1)
계	793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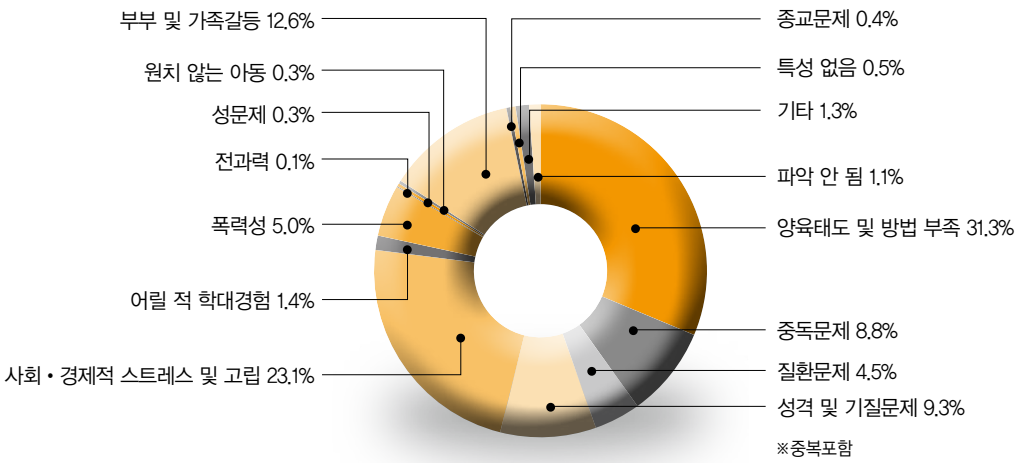

〈그림 5-37〉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4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5-47〉은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2건(87.4%)으로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83.1%로 다문화가족 사례에서 부모에 의한 비율이 4.3%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대상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가족특성과 부모요인에 중점을 둔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7〉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 수 (비율)
부모	친부	132(57.1)
	친모	65(28.1)
	계모	5(2.2)
	소계	202(87.4)
친인척	친조부	2(0.9)
	친조모	4(1.7)
	친인척	3(1.3)
	소계	9(3.9)
타인	부,모의 동거인	2(0.9)
	교원	3(1.3)
	시설종사자	11(4.8)
	이웃	1(0.4)
	낯선 사람	1(0.4)
	소계	18(7.8)
기타		2(0.9)
계		23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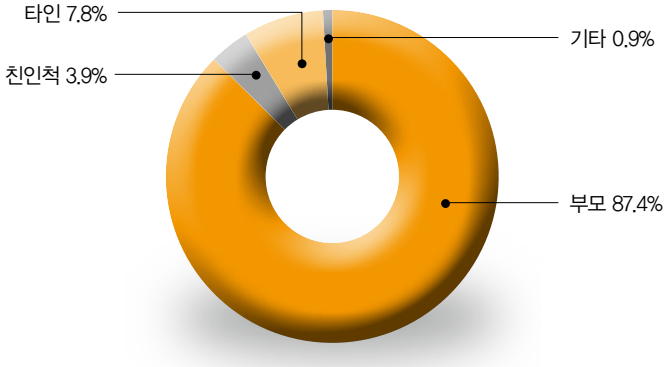

〈그림 5-38〉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다문화가족 사례의 발생현황

가.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48〉에서 살펴보면 총 231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08건(90.0%)으로 다문화가족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48〉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 수 (비율)
가정 내	208 (90.0)
집근처 또는 길가	7 (3.0)
친척집	1 (0.4)
어린이집	8 (3.5)
학교	1 (0.4)
병원	2 (1.0)
복지시설	1 (0.4)
기타	3 (1.3)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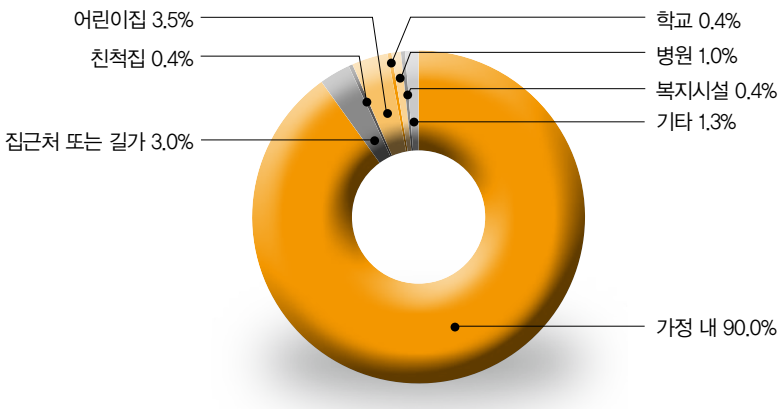

〈그림 5-39〉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장소

나.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다문화가족 사례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91건(39.4%), 2~3일에 한 번이 45건(19.5%), 일주일에 한 번이 41건(17.7%)으로 파악되어 학대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가 전체 다문화가족 사례의 76.6%를 차지하였다.

〈표 5-49〉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 수 (비율)
거의 매일	91 (39.4)
2~3일에 한 번	45 (19.5)
일주일에 한 번	41 (17.7)
2주일에 한 번	15 (6.5)
1개월에 한 번	11 (4.8)
2~3개월에 한 번	3 (1.3)
6개월에 한 번	4 (1.7)
1년에 한 번	3 (1.3)
일회성	18 (7.8)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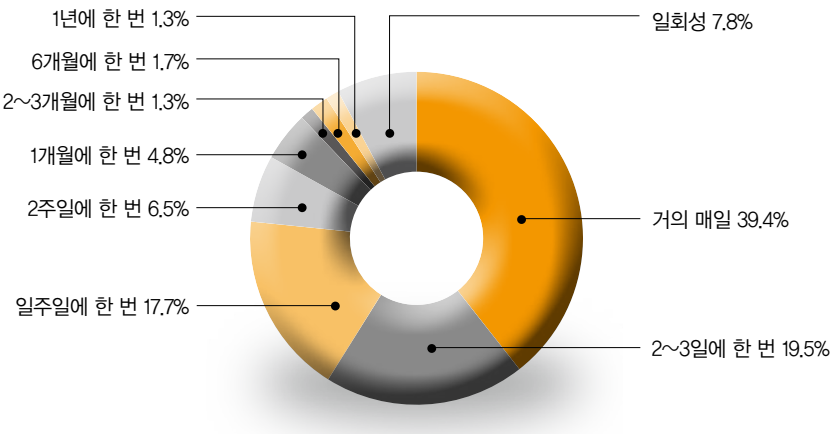

〈그림 5-40〉 다문화가족 사례 발생빈도

6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다문화가족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5-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학대가 101건(43.7%), 방임이 65건(28.1%), 정서학대 41건(17.7%), 신체학대 17건(7.4%), 성학대 5건(2.2%), 유기 2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0〉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 수 (비율)
신체학대	17 (7.4)
정서학대	41 (17.7)
성 학 대	5 (2.2)
방 임	65 (28.1)
유 기	2 (0.9)
중복학대	101 (43.7)
계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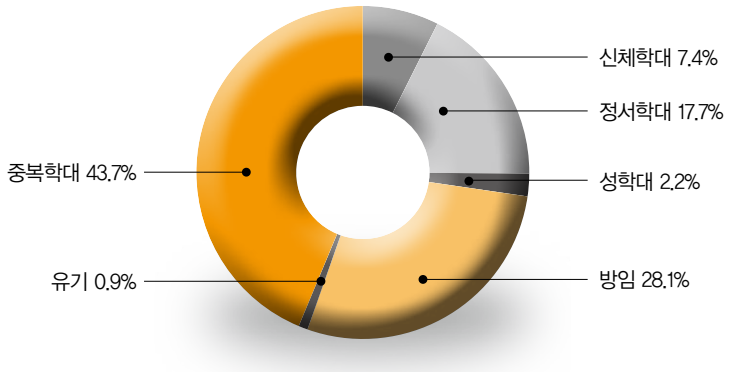

〈그림 5-41〉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표 5-51〉은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 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본 결과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정서학대가 137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13건(32.2%)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외에도 신체학대가 89건(25.4%), 성학대 9건(2.6%), 유기가 3건(0.8%)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사례 건수는 총 231건이지만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이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총 351건으로 집계되었다.

다문화가족에서 정서학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정서학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언어소통의 문제, 생활습관 및 양육방식의 차이 등이 정서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5-51〉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 수 (비율)
신체학대	89 (25.4)
정서학대	137 (39.0)
성 학 대	9 (2.6)
방 임	113 (32.2)
유 기	3 (0.8)
계	351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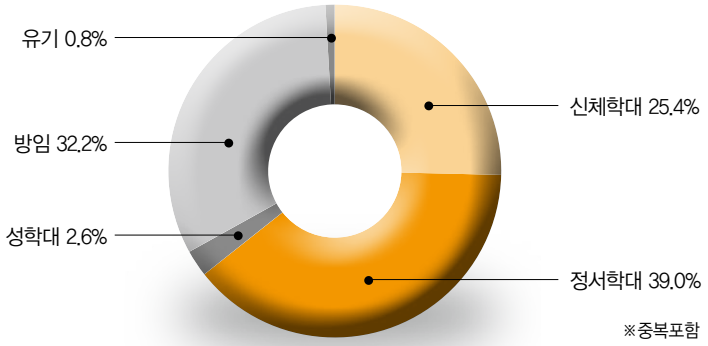

〈그림 5-42〉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7 다문화가족 사례의 조치결과

가.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를 〈표 5-52〉를 통해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조치가 168건(72.7%)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 조치는 63건(27.3%)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타기관으로 의뢰 조치한 사례는 없었으며, 아동의 사망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52〉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계
	일시보호	장기보호	친인척보호	기타	소계	
168 (72.7)	43 (18.6)	7 (3.0)	6 (2.7)	7 (3.0)	63 (27.3)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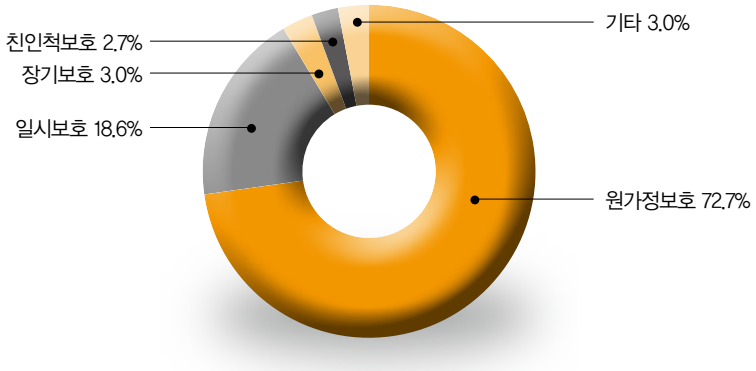

〈그림 5-43〉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표 5-53〉에 의하면 피해아동 초기개입부터 최종조치결과까지 원가정보호된 사례는 155건으로 전체의 67.1%로 파악되었고, 격리보호 조치는 65건으로 28.1%에 해당하였다. 한편 초기개입 시 격리 보호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 복귀된 사례는 8건으로 3.5%에 해당하였다. 결국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된 사례는 163건으로 약 70.6%임을 알 수 있다.

〈표 5-53〉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가정 복귀	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기타	소계				
155 (67.1)	9 (3.9)	28 (12.1)	27 (11.7)	1 (0.4)	65 (28.1)	1 (0.4)	2 (0.9)	8 (3.5)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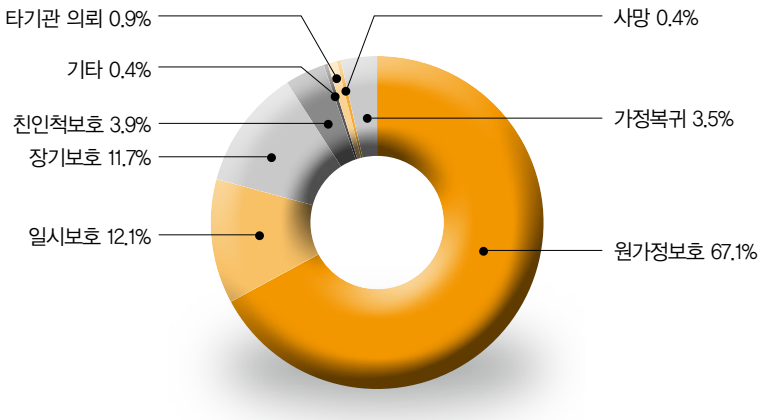

〈그림 5-44〉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200건(86.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15건(6.5%), 타기관 의뢰 10건(4.3%), 고소 · 고발 6건(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4〉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200 (86.6)	6 (2.6)	10 (4.3)	15 (6.5)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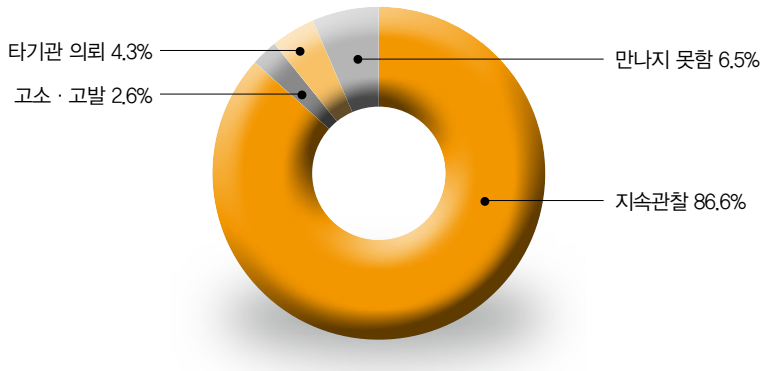

〈그림 5-4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라.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200건(86.6%)으로 초기조치결과와 동일하게 파악되었고,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12건(5.2%), 고소 · 고발과 타기관 의뢰가 각각 10건(4.3%), 9건(3.9%)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결과와는 다르게 고소 · 고발 건수가 4건(2.7%) 증가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아동학대사례 행위자 최종조치 시 고소 · 고발률이 6.4%인데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이고, 주로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학대 원인으로 꼽을 수 있기에 고소 · 고발 조치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모니터링을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5〉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200 (86.6)	10 (4.3)	9 (3.9)	12 (5.2)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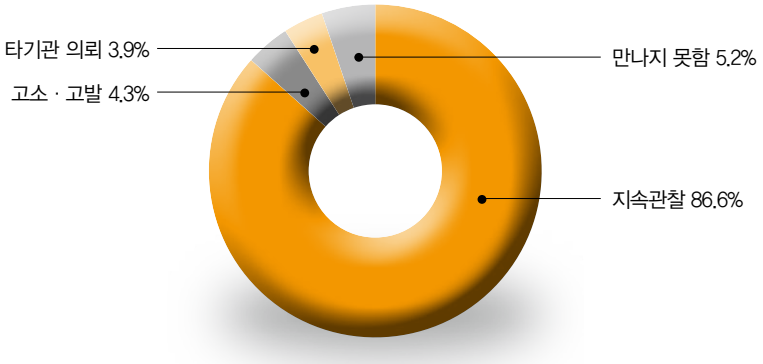

〈그림 5-46〉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4. 사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1년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 피해아동 6,058명 가운데 총 1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 된 아동학대사례에 한해서 집계된 수치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경찰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5-56〉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 비율
13	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다음 〈표 5-57〉에서 사망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사망한 아동 중 남아가 7건(53.8%), 여아가 6건(46.2%)으로 나타났다.

〈표 5-5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 별	건 수 (비율)
남	7 (53.8)
여	6 (46.2)
계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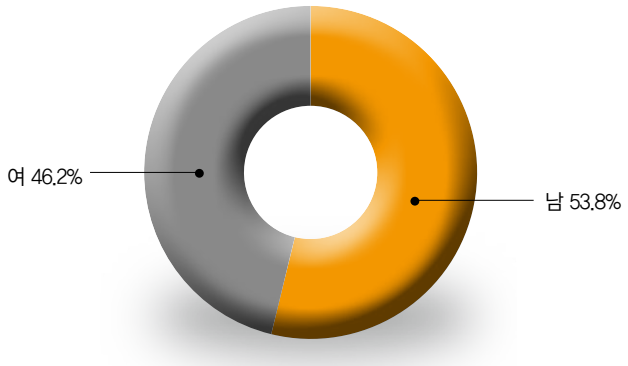

〈그림 5-4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음 〈표 5-58〉에서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7건(53.8%), 남성이 6건(46.2%)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의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높은데 반해 사망아동 사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5-5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 별	건 수 (비율)
남	6 (46.2)
여	7 (53.8)
계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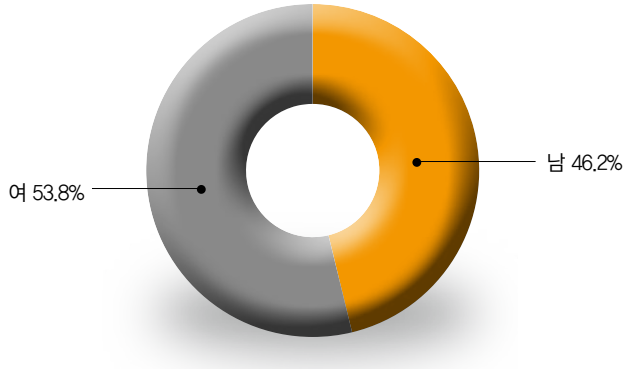

〈그림 5-4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5-59〉에서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아동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 3세와 5세는 각각 2명, 나머지 만 2세, 4세, 12세, 13세 및 17세의 아동은 각각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 사망아동의 77%를 차지하여 학령기 전의 아동들이 학대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보호능력이 없으며 학대 피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들이 치명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20대, 30대 그리고 40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대에 해당하는 연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는 각각 4건이었다. 앞서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연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 및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학대행위자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59〉에 제시되었듯이 친부가 6건, 친모가 5건, 계모와 부모의 동거인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나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사례가 대부분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약 75.0%가 20~30대의 친모에게 발생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 전환되는 시점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심각한 경우 낮은 결혼 만족도와 부적절하고 강압적인 양육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30대의 친모로부터 발생한 사망아동 사례의 경우,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낮은 연령의 친모가 부모로 전환되는 시기에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교육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부모가 되기 이전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자녀 양육 스트레스 관련 대처 교육 또한 필요하다.

〈표 5-5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친부				친모				계모	부모의 동거인	계
	20대	30대	40대	소계	20대	30대	40대	소계	20대	30대	
1세 미만	1	0	0	1	1	2	0	3	0	0	4
	(25.0)	–	–	(25.0)	(25.0)	(50.0)	–	(75.0)	–	–	(100.0)
2세	0	0	0	0	0	0	0	0	1	0	1
	–	–	–	–	–	–	–	–	(100.0)	–	(100.0)
3세	0	2	0	2	0	0	0	0	0	0	2
	–	(100.0)	–	(100.0)	–	–	–	–	–	–	(100.0)
4세	0	0	0	0	1	0	0	1	0	0	1
	–	–	–	–	(100.0)	–	–	(100.0)	–	–	(100.0)
5세	0	0	1	1	0	0	0	0	0	1	2
	–	–	(50.0)	(50.0)	–	–	–	–	–	(50.0)	(100.0)
12세	0	0	0	0	0	0	1	1	0	0	1
	–	–	–	–	–	–	(100.0)	(100.0)	–	–	(100.0)
13세	0	0	1	1	0	0	0	0	0	0	1
	–	–	(100.0)	(100.0)	–	–	–	–	–	–	(100.0)
17세	0	0	1	1	0	0	0	0	0	0	1
	–	–	(100.0)	(100.0)	–	–	–	–	–	–	(100.0)
계	1	2	3	6	2	2	1	5	1	1	13
	(7.7)	(15.4)	(23.0)	(46.1)	(15.4)	(15.4)	(7.7)	(38.5)	(7.7)	(7.7)	(100.0)

* 박정희 · 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정윤주(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표 5-60〉에서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인 경우가 9건(69.2%), 병원이 3건(23.1%), 그 밖에 기타가 1건(7.7%)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선천성 질병으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의 경우 피해아동 부모의 동거인 집으로 파악되었으며, 동거인의 자녀가 피해아동을 심하게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0〉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 수 (비율)
가정 내	9 (69.2)
병원	3 (23.1)
기타	1 (7.7)
계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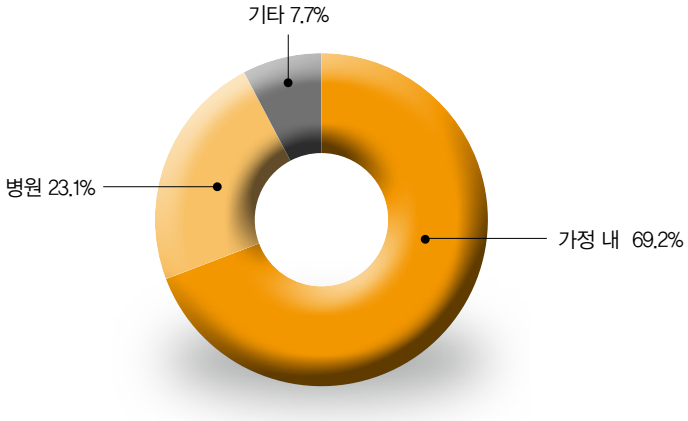

〈그림 5-4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의 경우가 7건(53.8%), 2~3일에 한 번이 2건(15.4%), 일회성이 3건(23.1%), 1주일에 한 번이 1건(7.7%)으로 집계되어 일회성을 제외하고는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3건(23.1%)의 사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폭행 등의 아동학대가 한 번 이루어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은 아동학대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표 5-61〉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 수 (비율)
거의 매일	7 (53.8)
2~3일에 한 번	2 (15.4)
1주일에 한 번	1 (7.7)
일회성	3 (23.1)
계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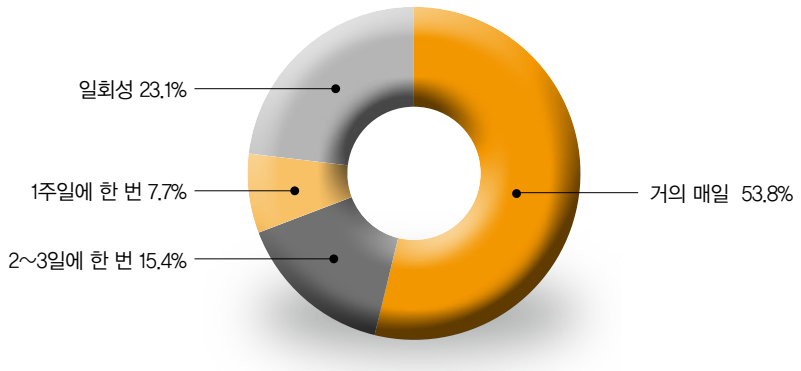

〈그림 5-5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사망아동의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표 5-62〉에서 알 수 있듯이 방임이 8건(61.5%)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신체학대가 2건(15.4%)이었다.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발생한 경우가 2건(15.4%), 신체학대와 방임은 1건(7.7%)이었다.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자녀가 질병을 가졌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방임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5-62〉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 수 (비율)
신체학대		2 (15.4)
정서학대		0 (0.0)
성학대		0 (0.0)
방임		8 (61.5)
유기		0 (0.0)
중복학대	신체학대 · 정서학대	2 (15.4)
	신체학대 · 방임	1 (7.7)
	소계	3 (23.1)
계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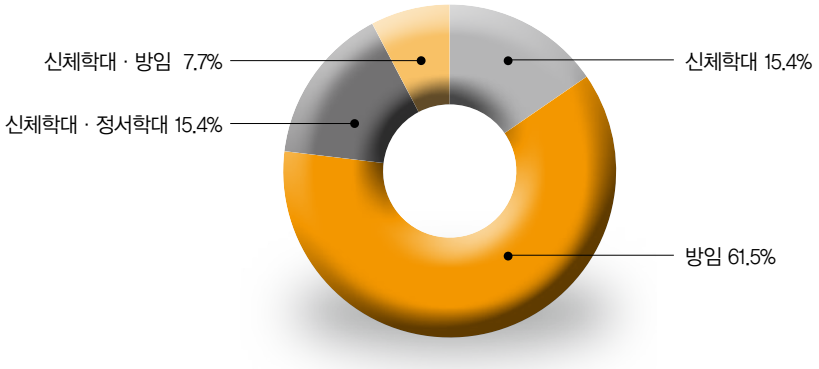

〈그림 5-5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에 관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표 5-63〉에서 보이듯이 지속관찰이 9건(69.2%), 고소 · 고발이 3건(23.1%),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1건(7.7%)으로 나타났다. 지속관찰의 사례는 방임 및 정서학대의 사례로 아동의 사망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소 · 고발에 해당하는 3건 모두 신체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받은 사례이며 이 중 1건은 검찰 수사 중, 나머지 2건은 법원공판 진행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공조에 있어 일정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사례의 경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로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신고 접수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어 수사 진행 중인 사례에 해당하였다. 검찰 수사 중인 사망 사례는 2011년 초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친부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의 경우도 5년 징역을 확정 받는 매우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속관찰 처리되었으며(69.2%), 고소 ·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23.1%에 그친다.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하게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표 5-63〉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만나지 못함	계
9 (69.2)	3 (23.1)	1 (7.7)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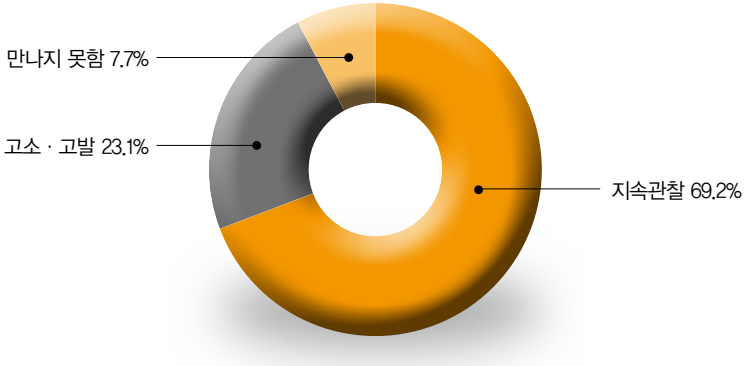

〈그림 5-5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5. 영아대상 사례

1 영아대상 사례의 현황

본 장에서는 2011년 전체 피해아동 6,058건 중에 특별히 아동학대에 취약하고 발견이 어려운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 총 708건(11.7%)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64〉 영아대상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

영아 대상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영아 비율
708	11.7

2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가.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피해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아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본 결과, 남아는 408건(57.6%), 여아는 300건(42.4%)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15.2%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65〉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남	여	계
건수(비율)	408 (57.6)	300 (42.4)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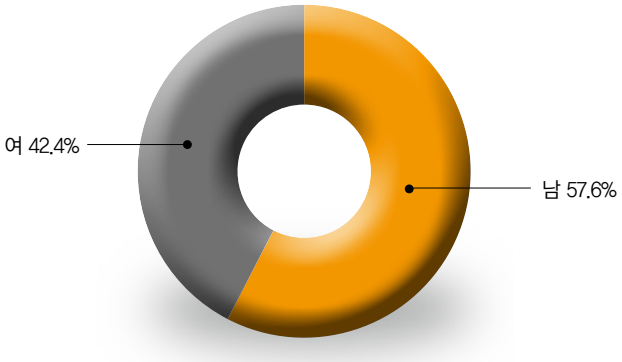

〈그림 5-53〉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은 〈표 5-66〉과 같이 만 1세 미만이 273건(38.6%), 만 1세 197건(27.8%), 만 2세 238건(33.6%)으로 파악되었다.

〈표 5-66〉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1세 미만	1세	2세	계
건수(비율)	273 (38.6)	197 (27.8)	238 (33.6)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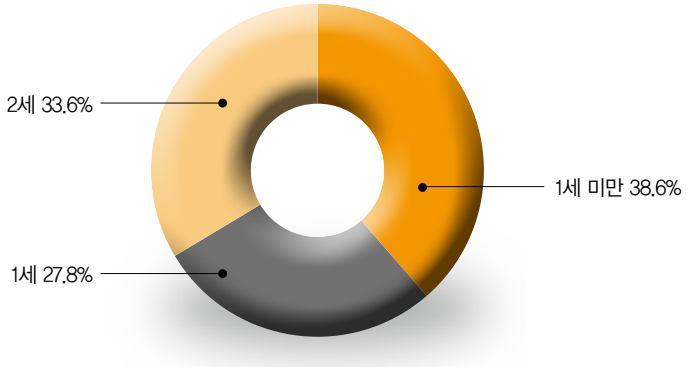

〈그림 5-54〉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표 5-67〉과 같이 친부모가족이 308건(43.5%),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340건(48.0%), 대리양육형태가 10건(1.4%)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308건(4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혼부 · 모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103건(14.5%), 81건(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과 비교했을 때 미혼부 · 모가정의 비율이 14.5%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미혼부 · 모가정의 비율인 3.0%에 비해 11.5%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는 부자가정이 모자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영아대상 사례에서는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5.2%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 자녀를 둔 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미혼부 · 모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또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5-67〉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 · 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308 (43.5)	44 (6.2)	81 (11.4)	103 (14.5)	35 (4.9)	18 (2.6)	59 (8.4)	340 (48.0)	4 (0.6)	3 (0.4)	3 (0.4)	10 (1.4)	13 (1.8)	37 (5.3)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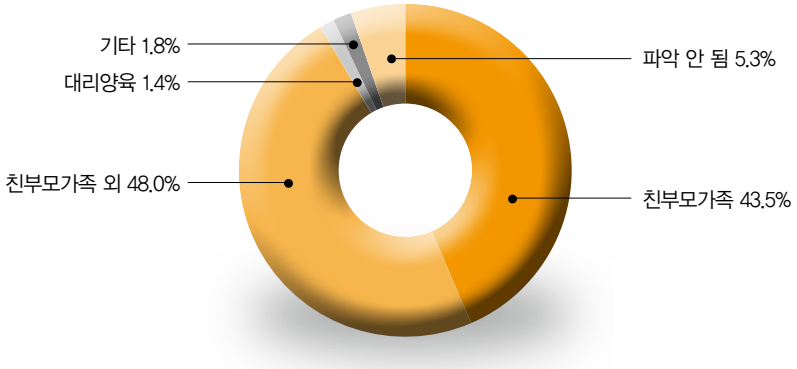

〈그림 5-55〉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영아대상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68〉에서 보듯이 일정 특성이 없는 경우가 319건(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연령 분포에서 만 1세 미만의 아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 볼 수 있다. 만 1세 미만의 경우 연령으로 인해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226건(24.1%), 발달 · 신체건강이 223건(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 정신건강 특성 중에는 불안 9.3%, 애착문제 5.3%, 주의산만 4.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달 · 신체건강 특성으로는 위생문제 6.7%, 신체발달지연 5.4%, 언어문제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아동의 특성과 비교하였을 때 발달 · 신체건강의 경우 전체 피해아동 특성에서 보이는 발달 · 신체건강 비율보다 14.0% 높게 나타나 영아기에 두드러지는 발달 단계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표 5-68〉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 수 (비율)
장 애	청각장애	1 (0.1)
	지체장애	1 (0.1)
	지적장애	1 (0.1)
	뇌병변장애	4 (0.5)
	기타장애	1 (0.1)
	소계	8 (0.9)
정서 · 정신건강	주의산만	46 (4.9)
	과잉행동	10 (1.1)
	불안	87 (9.3)
	애착문제	50 (5.3)
	무력감	1 (0.1)
	우울	2 (0.2)
	낮은 자아존중감	6 (0.6)
	성격 및 기질문제	17 (1.8)
	탐식 및 결식	7 (0.8)
	소계	226 (24.1)
적응 · 행동	반항 · 충동 · 공격성	14 (1.5)
	가출	2 (0.2)
	성문제	4 (0.4)
	학교 부적응	3 (0.3)
	잦은 결석	1 (0.1)
	늦은 귀가	1 (0.1)
	학습문제	16 (1.8)
	소계	41 (4.4)
발달 · 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51 (5.4)
	언어문제	47 (5.0)
	급만성 질병	21 (2.2)
	영양결핍	29 (3.1)
	대소변문제	13 (1.4)
	위생문제	62 (6.7)
	소계	223 (23.8)
특성 없음		319 (34.0)
기타		120 (12.8)
계		937 (1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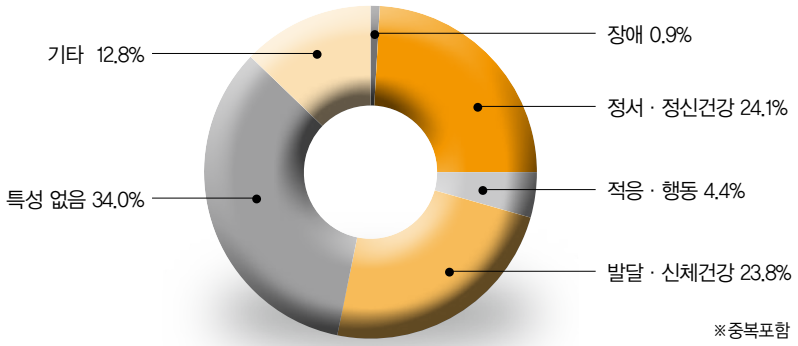

〈그림 5-56〉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표 5-69〉에서 살펴보면 전체 708건 중 여성이 472건(66.7%), 남성이 229건(32.3%)으로 나타나 영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여성이 2/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 유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발생 비율이 높은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 5-69〉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별	남	여	파악 안 됨	계
건수(비율)	229 (32.3)	472 (66.7)	7 (1.0)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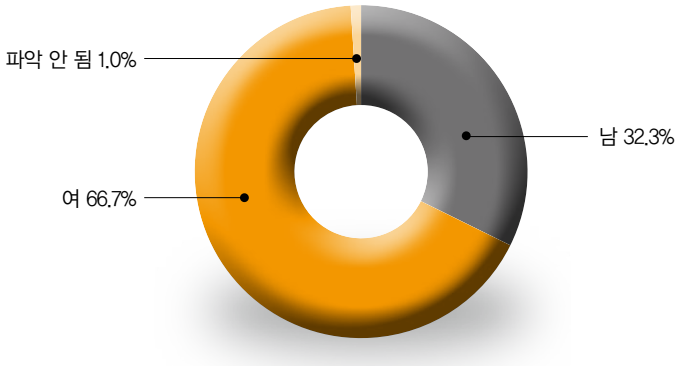

〈그림 5-57〉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나.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292건(41.2%)으로 가장 많으며, 20대 202건(28.5%), 40대 127건(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와는 다소 상의하게 20~30대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영아의 자녀를 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70〉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 령(만)	건수 (비율)
19세 이하	36 (5.1)
20~29세	202 (28.5)
30~39세	292 (41.2)
40~49세	127 (17.9)
50~59세	17 (2.4)
60~69세	21 (3.0)
70세 이상	2 (0.3)
파악 안 됨	11 (1.6)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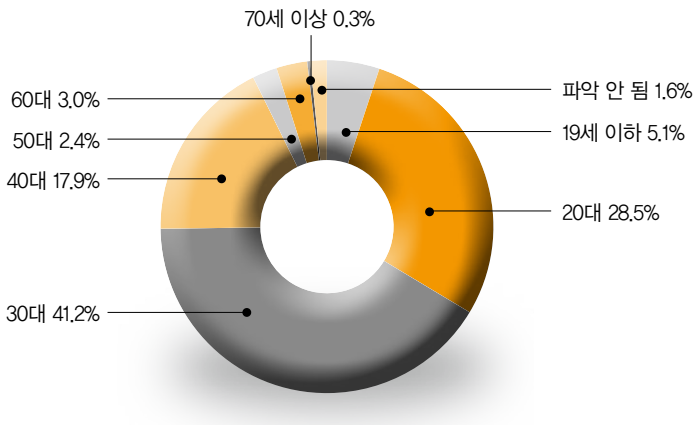

〈그림 5-58〉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다.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은 〈표 5-71〉과 같다. 학대행위자 직업으로는 무직이 254건(35.9%), 전업주부 124건(17.5%), 단순노무직 62건(8.8%)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가 가정 내에서 상주하는 시간과 학대 발생 가능성이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71〉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 (비율)
입법공무원	3 (0.4)
전문직	37 (5.2)
준전문직	6 (0.8)
사무직	10 (1.4)
서비스 · 판매직	42 (5.9)
농 · 어 · 축산업	12 (1.7)
기능직	13 (1.8)
기계장치조작원	7 (1.1)
단순노무직	62 (8.8)
자영업	12 (1.7)
전업주부	124 (17.5)
학생	9 (1.3)
비정규직	35 (4.9)
무직	254 (35.9)
기타	41 (5.8)
파악 안 됨	41 (5.8)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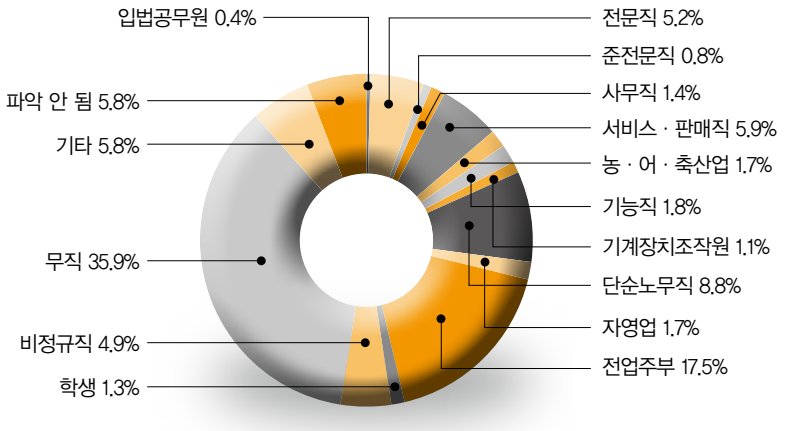

〈그림 5-59〉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라.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은 50만원 미만이 227건(32.1%)으로 가장 높으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이 118건(16.7%),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은 117건(16.5%)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저소득가정에서 학대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72〉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 득	건수 (비율)
50만 원 미만	227 (32.1)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17 (16.5)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18 (16.7)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62 (8.8)
200만 원 미만~250만 원 미만	19 (2.6)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4 (3.4)
300만 원 이상	24 (3.4)
파악 안 됨	117 (16.5)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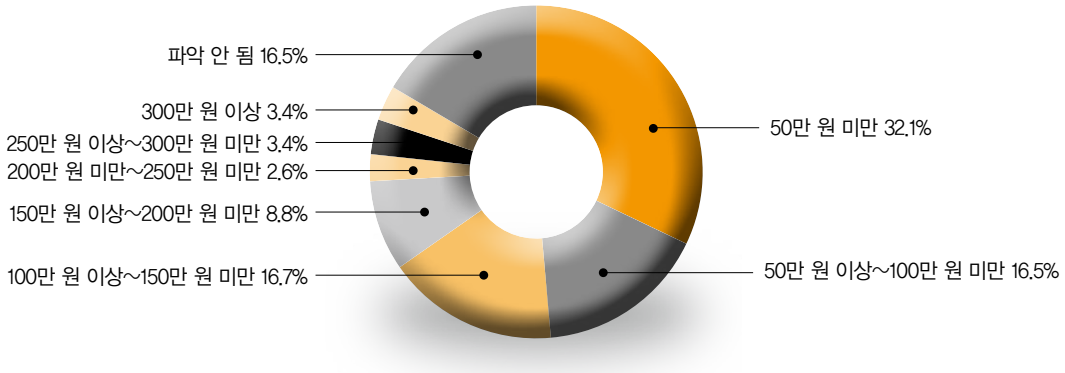

〈그림 5-60〉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마.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표 5-73〉은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수급권 대상자는 501건(70.8%), 수급권 대상자는 167건(23.6%)으로 파악되어 비수급권 대상이 수급권 대상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와 큰 차이가 없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73〉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대상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167 (23.6)
비수급권 대상	501 (70.8)
파악 안 됨	40 (5.6)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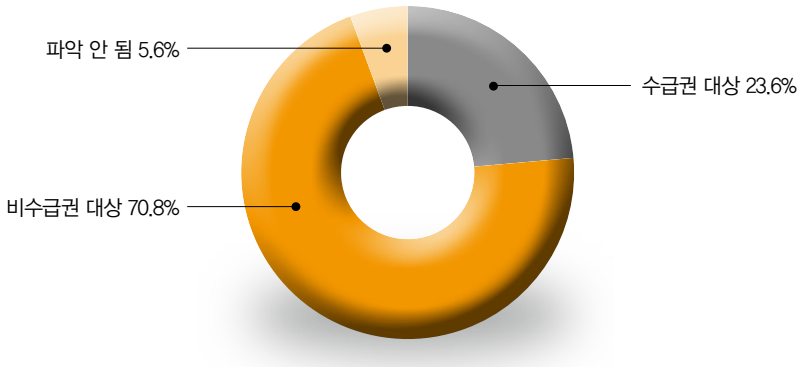

〈그림 5-61〉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777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604건(25.2%)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영아의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외부 활동이 어렵고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 상담과 양육기술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학대행위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74〉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777 (32.4)
중독문제	138 (5.7)
질환문제	131 (5.4)
성격 및 기질문제	168 (7.0)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04 (25.2)
어릴 적 학대경험	66 (2.8)
폭력성	86 (3.5)
전과력	7 (0.3)
성문제	16 (0.7)
원치 않는 아동	95 (4.0)
부부 및 가족갈등	235 (9.8)
종교문제	6 (0.3)
특성 없음	14 (0.6)
기타	23 (1.0)
파악 안 됨	32 (1.3)
계	2,3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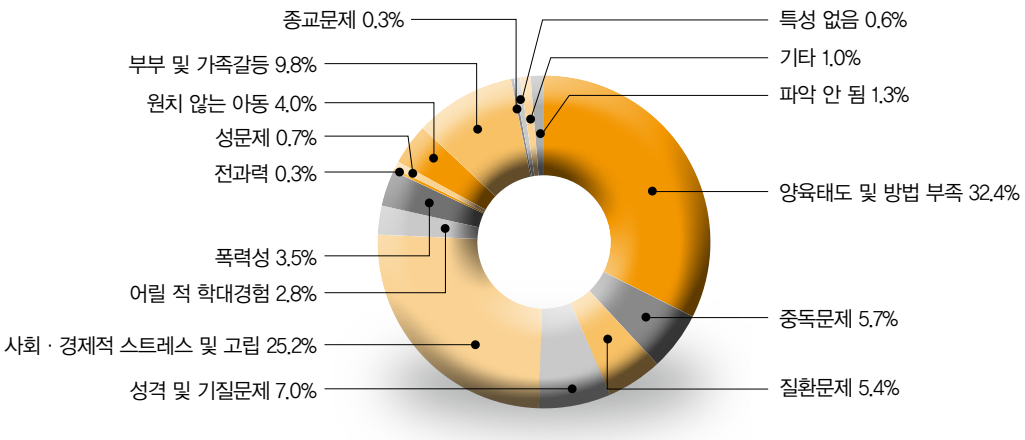

〈그림 5-62〉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영아대상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612건(86.4%)으로 나타났고, 타인 63건(8.9%), 친인척 19건(2.7%)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타인에 의한 유형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영아대상 학대가 전체 사례의 7.3%를 차지하였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육아를 전담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아 아동학대사례 발견율도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아동학대 사례가 수차례 보도되면서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5-75〉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 수 (비율)
부모	친부	212 (29.9)
	친모	395 (55.8)
	계모	2 (0.3)
	양부	2 (0.3)
	양모	1 (0.1)
	소계	612 (86.4)
친인척	친조부	4 (0.6)
	친조모	3 (0.5)
	외조모	6 (0.8)
	친인척	6 (0.8)
	소계	19 (2.7)
타인	부,모의 동거인	3 (0.4)
	교원	2 (0.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1)
	시설종사자	51 (7.3)
	이웃	2 (0.3)
	위탁부	1 (0.1)
	위탁모	3 (0.4)
	소계	63 (8.9)
기타		13 (1.9)
파악 안 됨		1 (0.1)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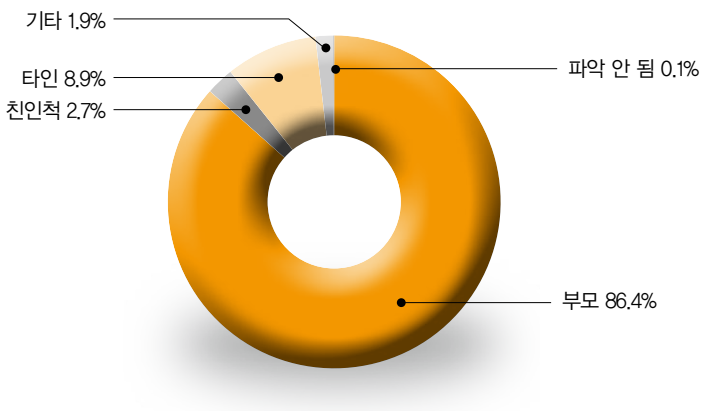

〈그림 5-63〉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영아대상 사례의 발생현황

가.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영아대상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76〉에서 살펴보면, 영아대상 사례 총 708건 중 516건(72.9%)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어린이집에서 56건(7.9%), 병원에서 44건(6.2%)이 발생하였다. 영아대상 사례의 발생장소 중 어린이집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 부모 외에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표 5-76〉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 수 (비율)
가정 내	516 (72.9)
집근처 또는 길가	27 (3.8)
친척집	10 (1.4)
이웃집	2 (0.3)
어린이집	56 (7.9)
유치원	0 (0.0)
학교	0 (0.0)
학원	2 (0.3)
병원	44 (6.2)
복지시설	12 (1.7)
파악 안 됨	0 (0.0)
기타	39 (5.5)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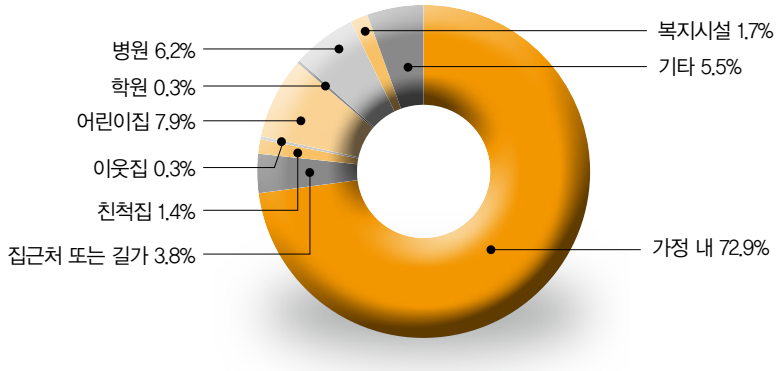

〈그림 5-64〉 영아대상 사례 발생장소

나.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영아대상 아동학대사례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353건(4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회성은 117건(16.5%), 2~3일에 한 번은 89건(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7〉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 수 (비율)
거의 매일	353 (49.9)
2~3일에 한 번	89 (12.6)
일주일에 한 번	82 (11.5)
2주일에 한 번	22 (3.1)
1개월에 한 번	26 (3.7)
2~3개월에 한 번	11 (1.6)
6개월에 한 번	5 (0.7)
1년에 한 번	3 (0.4)
일회성	117 (16.5)
계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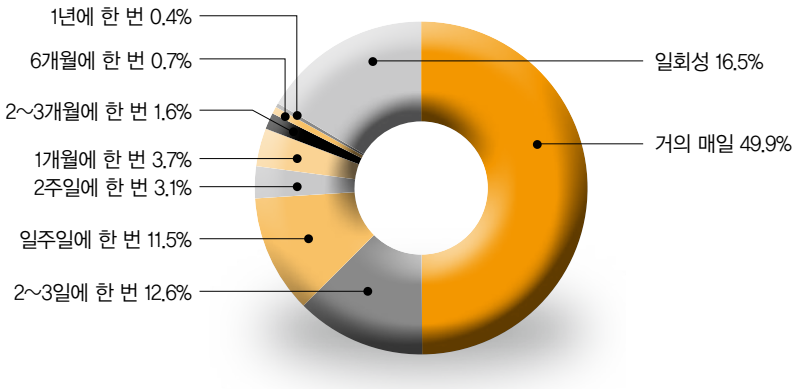

〈그림 5-65〉 영아대상 사례 발생빈도

6 영아대상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영아대상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5-78〉에서 살펴본 바로는 방임이 454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가 263건(27.9%), 신체학대 162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대상 아동학대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이 방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아동학대 유형 분포와는 달리 방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방임은 영유아기에 있어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5-78〉 영아대상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162 (17.2)
정서학대	263 (27.9)
성학대	7 (0.8)
방임	454 (48.1)
유기	57 (6.0)
계	943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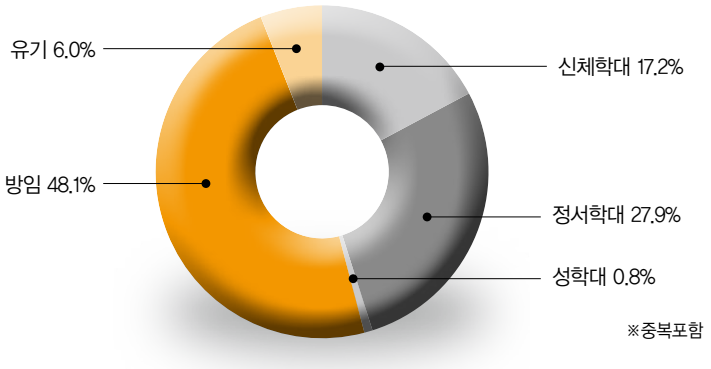

〈그림 5-66〉 영아대상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7 영아대상 사례의 조치결과

가.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영아대상 사례에게 취해진 초기조치결과를 〈표 5-79〉와 같이 분석하면 원가정보호 조치 464건(65.5%), 격리보호 234건(33.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시 격리보호율인 25.6%에 비해 약 7.5%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신고접수 당시 영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로 의심될 경우 응급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만큼 영아는 학대 상황에 매우 취약하고 학대를 당할 경우 피해에 대한 후유증이 전 생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기조치 격리보호율이 전체 피해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5-79〉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타기관 의뢰	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	기타	소계		
464 (65.5)	20 (2.9)	134 (18.9)	44 (6.3)	1 (0.1)	35 (4.9)	234 (33.1)	10 (1.4)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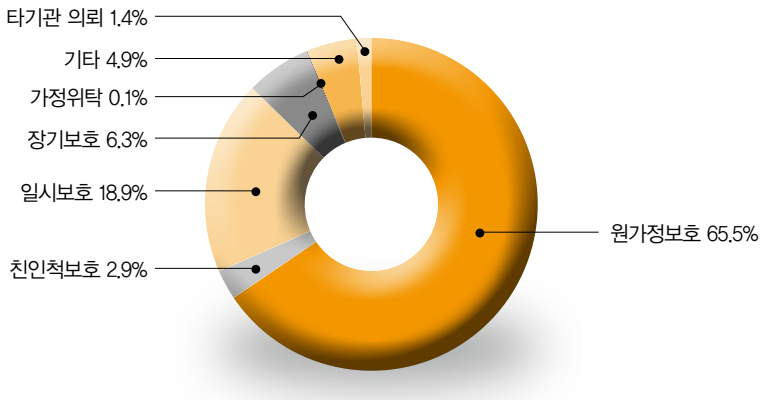

〈그림 5-67〉 영아 대상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영아대상 사례 총 708건에 대한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376건(53.1%), 격리보호 272건(38.4%), 가정복귀된 사례는 38건(5.4%), 타기관 의뢰가 17건(2.4%), 사망은 5건(0.7%)으로 파악되었다. 격리보호 조치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호 141건(19.9%), 일시보호 85건(12.0%), 친인척보호 19건(2.7%), 기타조치 19건(2.7%), 가정위탁 8건(1.1%)으로 나타났다. 영아대상 사례의 초기조치와 마찬가지로 전체 피해아동사례의 최종조치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피해아동사례의 최종조치결과로 격리보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26.2%였으나 영아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 격리보호율은 38.4%로 나타나 영아대상 사례에서 피해아동이 격리보호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망은 초기개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종조치에서는 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신고 당시 학대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와 선천성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사망한 경우로 파악되었다.

〈표 5-80〉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타기관 의뢰	사망	가정 복귀	계
	친인척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위탁	기타	소계				
376 (53.1)	19 (2.7)	85 (12.0)	141 (19.9)	8 (1.1)	19 (2.7)	272 (38.4)	17 (2.4)	5 (0.7)	38 (5.4)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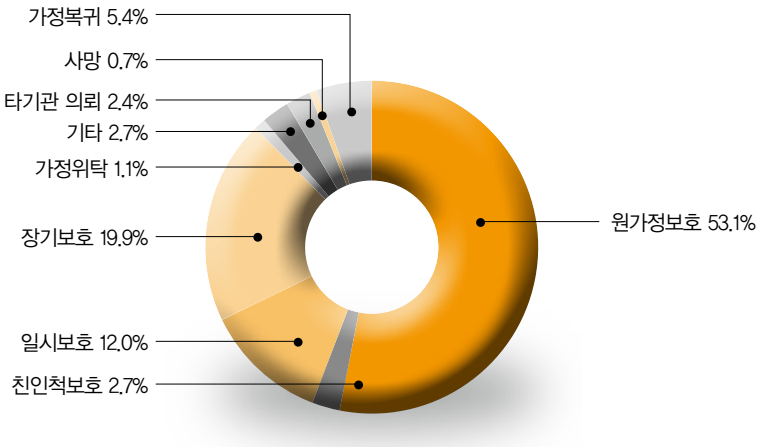

〈그림 5-68〉 영아대상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로는 지속관찰이 571건(80.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55건(7.8%), 고소 · 고발과 타기관 의뢰가 모두 41건(5.8%)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이유로는 영아를 유기함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영아대상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유기가 57건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만나지 못함의 건수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81〉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571 (80.6)	41 (5.8)	41 (5.8)	55 (7.8)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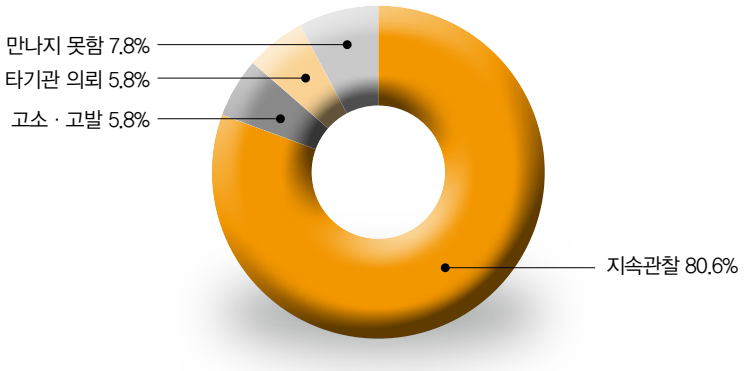

〈그림 5-69〉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라.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566건(79.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고소 · 고발 68건(9.6%),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가 45건(6.4%), 타기관 의뢰 29건(4.1%)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와 비교해 보면 고소 · 고발 조치가 6.4%에 반해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9.6%로 약 3.2%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중 영아 대상 분포가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82〉 영아 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 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566 (79.9)	68 (9.6)	29 (4.1)	45 (6.4)	7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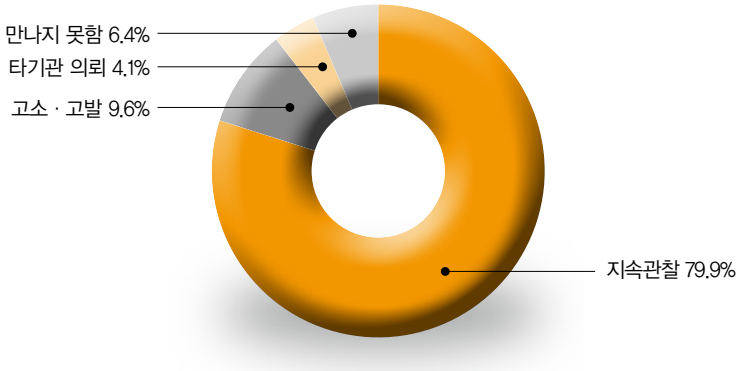

〈그림 5-70〉 영아대상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 내 발생 사례

1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본 장에서는 시설 즉,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83〉에서 지역별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93건(34.5%)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가 61건(22.8%), 전라북도가 29건(10.7%), 강원도가 28건(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이 설치되었으며,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기간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동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아동학대의 발견율이 높다는 점을 꼽아 볼 수 있다. 그 외에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표 3-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해아동 보호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 내 발생 사례를 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18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10건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복지시설은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9건,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17건,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14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83〉 시설 내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서울	서울특별시동부	1 (0.6)	0 (0.0)	1 (0.4)
	서울은평	1 (0.6)	0 (0.0)	1 (0.4)
	서울영등포	6 (3.8)	0 (0.0)	6 (2.2)
	서울성북	1 (0.6)	0 (0.0)	1 (0.4)
	서울마포	2 (1.3)	0 (0.0)	2 (0.7)
	소 계	11 (6.9)	0 (0.0)	11 (4.1)
부산	부산광역시	0 (0.0)	2 (1.8)	2 (0.7)
	부산동부	0 (0.0)	2 (1.8)	2 (0.7)
	소 계	0 (0.0)	4 (3.6)	4 (1.4)
인천	인천광역시	2 (1.3)	0 (0.0)	2 (0.7)
울산	울산광역시	61 (38.4)	0 (0.0)	61 (22.8)
경기	경 기 도	10 (6.2)	1 (0.9)	11 (4.1)
	경기북부	0 (0.0)	11 (9.9)	11 (4.1)
	경기성남	18 (11.3)	5 (4.5)	23 (8.6)
	경기고양	9 (5.7)	0 (0.0)	9 (3.3)
	경기부천	2 (1.3)	8 (7.2)	10 (3.7)
	경기화성	7 (4.4)	2 (1.8)	9 (3.3)
	경기남양주	2 (1.3)	8 (7.2)	10 (3.7)
	안 산 시	8 (5.0)	2 (1.8)	10 (3.7)
	소계	56 (35.2)	37 (33.3)	93 (34.5)
강원	강 원 도	1 (0.6)	1 (0.9)	2 (0.7)
	강원동부	5 (3.2)	1 (0.9)	6 (2.2)
	원 주 시	1 (0.6)	19 (17.1)	20 (7.4)
	소 계	7 (4.4)	21 (18.9)	28 (10.3)
충북	충북북부	0 (0.0)	14 (13.7)	14 (5.3)
	충북남부	1 (0.6)	0 (0.0)	1 (0.4)
	소계	1 (0.6)	14 (13.7)	15 (5.7)
충남	충청남도	4 (2.5)	2 (1.8)	6 (2.2)
전북	전라북도	9 (5.7)	0 (0.0)	9 (3.3)
	전라북도서부	3 (1.9)	17 (15.3)	20 (7.4)
	소계	12 (7.6)	17 (15.3)	29 (10.7)
전남	전남목포	1 (0.6)	1 (0.9)	2 (0.7)
경북	경상북도	0 (0.0)	2 (1.8)	2 (0.7)
	경북안동	0 (0.0)	3 (2.7)	3 (1.1)
	구 미	0 (0.0)	1 (0.9)	1 (0.4)
	소계	0 (0.0)	6 (5.4)	6 (2.2)
경 남	경상남도	3 (1.9)	5 (4.5)	8 (2.9)
	경남서부	0 (0.0)	1 (0.9)	1 (0.4)
	소계	3 (1.9)	6 (5.4)	9 (3.3)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0 (0.0)	2 (1.8)	2 (0.7)
	서귀포시	1 (0.6)	1 (0.9)	2 (0.7)
	소계	1 (0.6)	3 (2.7)	4 (1.4)
계		159 (100.0)	111 (100.0)	270 (100.0)

2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가.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시설 내 발생 사례 270건 중 사례의 피해아동의 성별은 〈표 5-84〉와 같이 남아가 162건(60.0%), 여아가 108건(40.0%)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각각의 시설 유형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84〉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시설유형 \ 성별	남	여	계
어린이집	102 (64.2)	57 (35.8)	159 (100.0)
복지시설	60 (54.1)	51 (45.9)	111 (100.0)
계	162 (60.0)	108 (40.0)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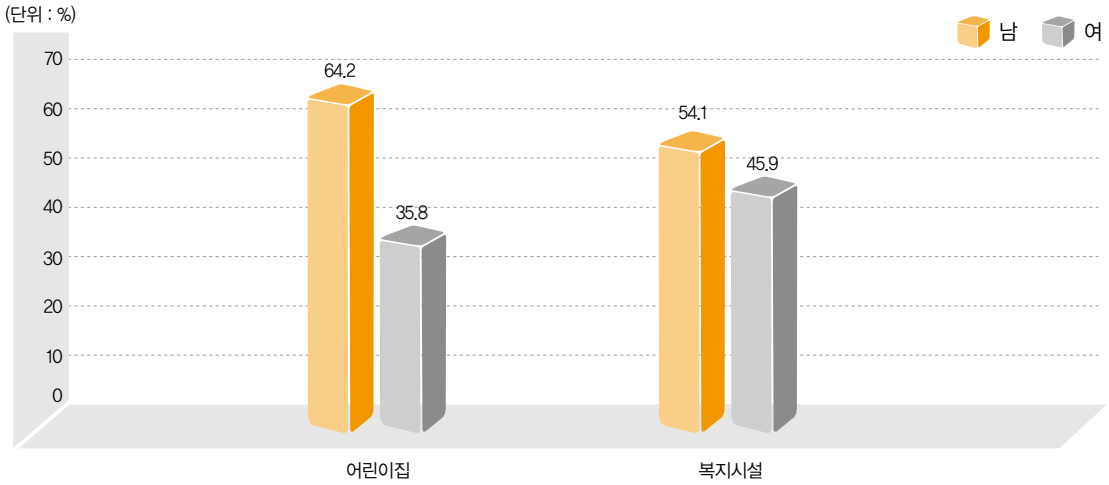

〈그림 5-71〉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1~3세가 84건(52.8%), 만 4~6세가 69건(43.4%)으로 전체의 96.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연령대와 일맥상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복지시설 내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별 분포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32건(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30건(27.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23건(20.7%) 순으로 나타나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표 5-85〉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1세 미만	4 (2.5)	8 (7.2)	12 (4.4)
1~3세	84 (52.8)	4 (3.6)	88 (32.6)
4~6세	69 (43.4)	3 (2.7)	72 (26.7)
7~9세	2 (1.3)	23 (20.7)	25 (9.3)
10~12세	0 (0.0)	30 (27.0)	30 (11.1)
13~15세	0 (0.0)	32 (28.9)	32 (11.9)
16~18세	0 (0.0)	11 (9.9)	11 (4.0)
계	159 (100.0)	111 (100.0)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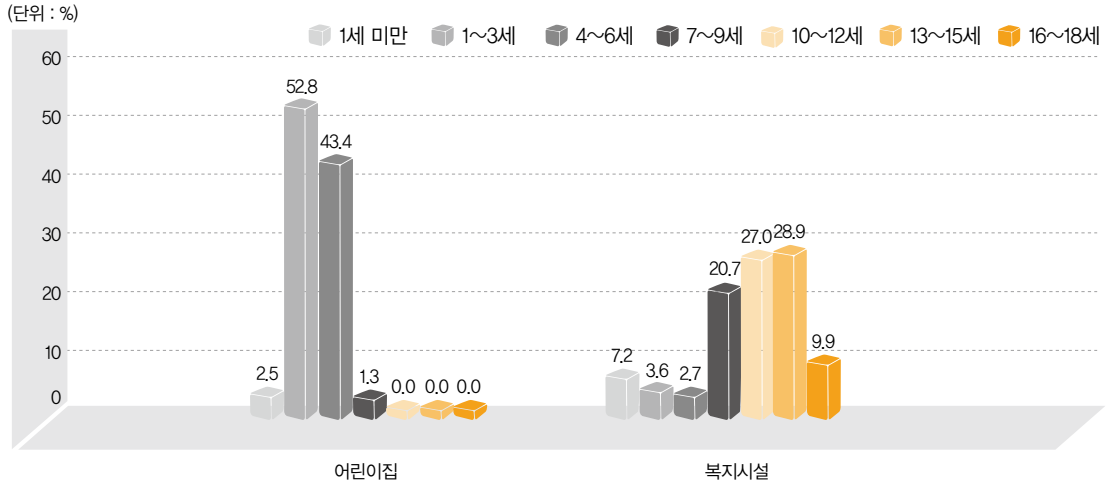

〈그림 5-72〉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다음 〈표 5-86〉에서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정서 · 정신건강 특성이 37.7%로 높게 나타났고, 적응 · 행동 특성이 13.2%의 비율을 보였다.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 정신건강 특성에서는 주의산만이 68건(18.6%), 불안 30건(8.3%)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응 · 행동 특성에서는 반항 · 충동 · 공격성이 24건(6.5%), 학교 부적응이 7건(1.9%)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피해아동의 특성과 비교하였을 때 적응 · 행동 특성이 정서 · 정신건강 특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특성의 경우 정서 · 건강 특성이 적응 · 행동 특성보다 24.5%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내 아동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된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치료서비스와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86〉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장애유형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장애	지적장애	1 (0.5)	5 (3.1)	6 (1.7)
	자폐성장애	2 (1.0)	1 (0.6)	3 (0.8)
	언어장애	1 (0.5)	0 (0.0)	1 (0.3)
	뇌병변장애	0 (0.0)	2 (1.2)	2 (0.6)
	소계	4 (2.0)	8 (4.9)	12 (3.4)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52 (25.8)	16 (9.9)	68 (18.6)
	과잉행동	8 (4.0)	1 (0.6)	9 (2.5)
	불안	17 (8.5)	13 (8.0)	30 (8.3)
	애착문제	7 (3.5)	2 (1.2)	9 (2.5)
	무력감	0 (0.0)	3 (1.9)	3 (0.8)
	우울	1 (0.5)	3 (1.9)	4 (1.1)
	낮은 자아존중감	3 (1.5)	2 (1.2)	5 (1.4)
	성격 및 기질문제	2 (1.0)	6 (3.7)	8 (2.2)
	탐식 및 결식	1 (0.5)	0 (0.0)	1 (0.3)
	소계	91 (45.3)	46 (28.4)	137 (37.7)
적응 행동	반항 · 충동 · 공격성	9 (4.5)	15 (9.3)	24 (6.5)
	거짓말	0 (0.0)	2 (1.2)	2 (0.6)
	도벽	0 (0.0)	5 (3.1)	5 (1.4)
	약물 · 흡연 · 음주	0 (0.0)	3 (1.9)	3 (0.8)
	성문제	0 (0.0)	1 (0.6)	1 (0.3)
	학교 부적응	3 (1.5)	4 (2.5)	7 (1.9)
	늦은 귀가	0 (0.0)	1 (0.6)	1 (0.3)
	학습문제	3 (1.5)	2 (1.2)	5 (1.4)
	소계	15 (7.5)	33 (20.4)	48 (13.2)
발달 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2 (1.0)	3 (1.9)	5 (1.4)
	언어문제	3 (1.5)	3 (1.9)	6 (1.7)
	급만성 질병	2 (1.0)	0 (0.0)	2 (0.6)
	영양결핍	1 (0.5)	0 (0.0)	1 (0.3)
	대소변문제	1 (0.5)	1 (0.6)	2 (0.6)
	소계	9 (4.5)	7 (4.4)	16 (4.6)
특성 없음		73 (36.2)	61 (37.6)	134 (36.7)
기타		9 (4.5)	7 (4.3)	16 (4.4)
계		201 (100.0)	162 (100.0)	3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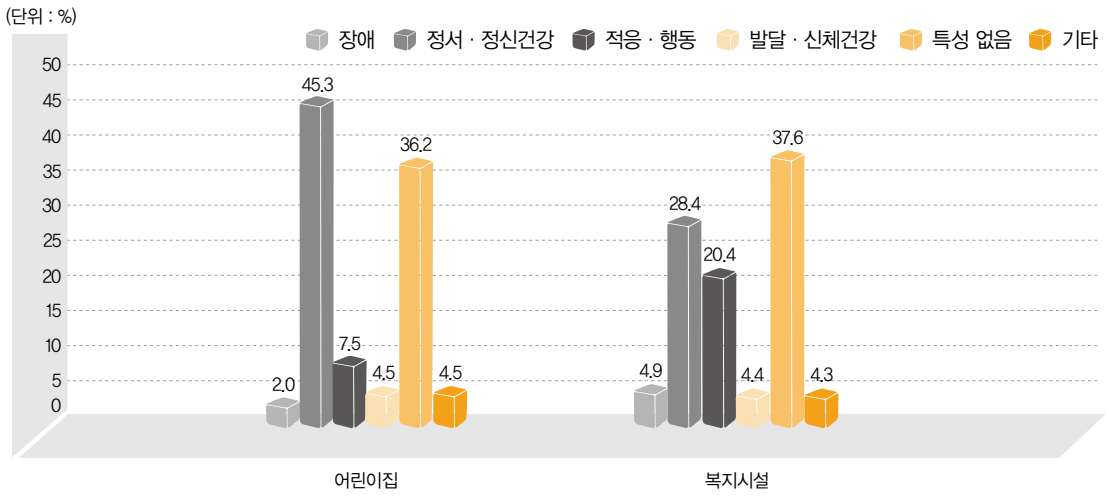

〈그림 5-73〉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3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87〉에서 살펴보면,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3.2배 많았고, 특히 어린이집 사례의 경우 여성이 140건(88.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87〉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시설유형 \ 성별	남	여	계
어린이집	19 (11.9)	140 (88.1)	159 (100.0)
복지시설	45 (40.5)	66 (59.5)	111 (100.0)
계	64 (23.7)	206 (76.3)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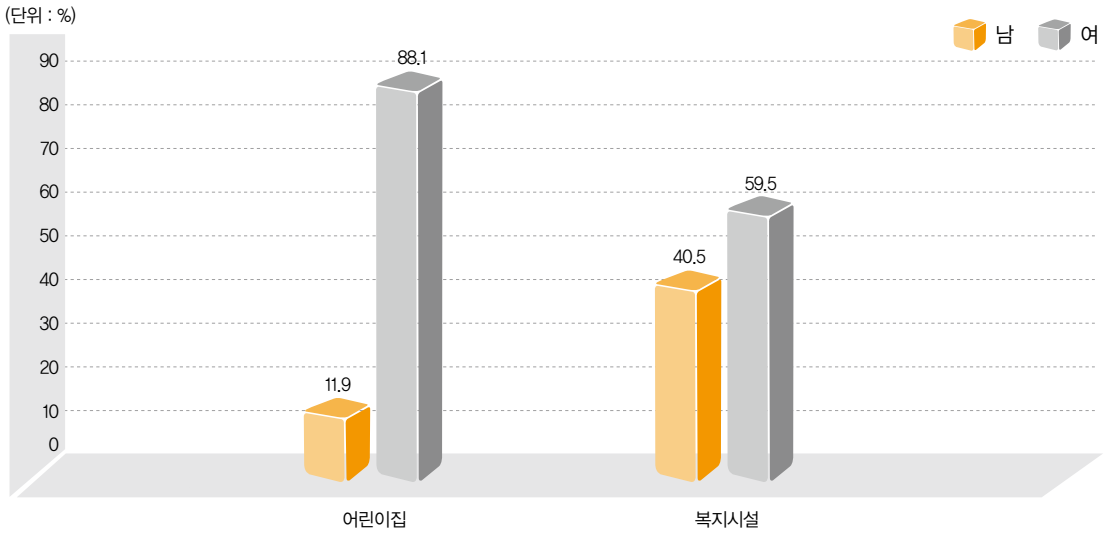

〈그림 5-74〉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은 〈표 5-88〉과 같이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0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20대가 7.2%, 50~60대가 14.3%인데 반해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는 20대 17.0%, 50~60대 32.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20대인 시설종사자와 50~60대의 연령대인 시설장에 의한 학대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88〉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19세 이하	0 (0.0)	1 (0.9)	1 (0.4)
20~29세	31 (19.5)	15 (13.5)	46 (17.0)
30~39세	34 (21.4)	36 (32.4)	70 (25.9)
40~49세	45 (28.3)	16 (14.5)	61 (22.6)
50~59세	12 (7.5)	42 (37.8)	54 (20.0)
60~69세	33 (20.8)	0 (0.0)	33 (12.2)
70세 이상	0 (0.0)	0 (0.0)	0 (0.0)
파악 안 됨	4 (2.5)	1 (0.9)	5 (1.9)
계	159 (100.0)	111 (100.0)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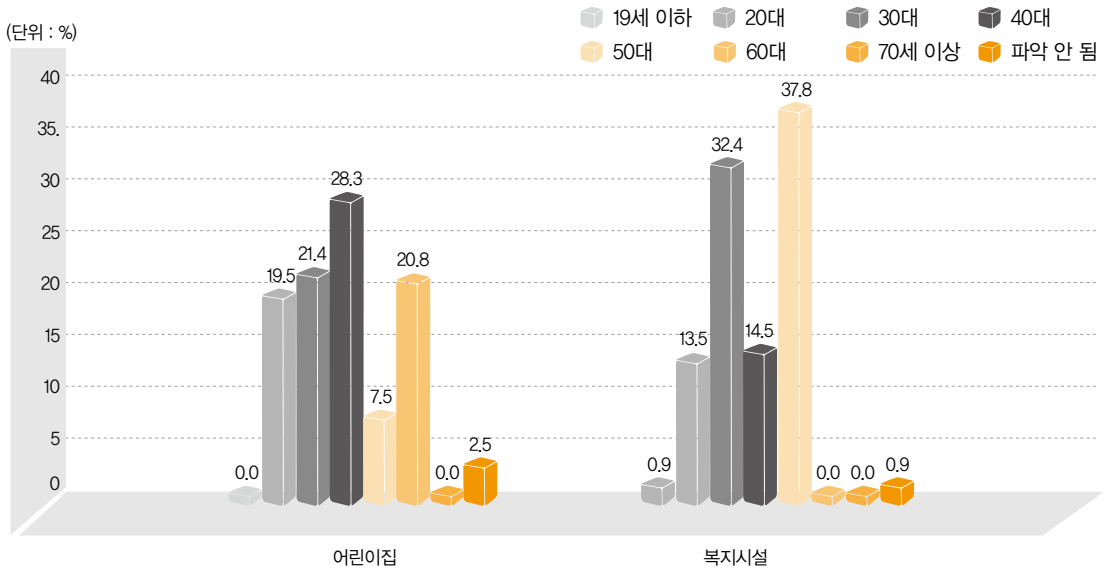

〈그림 5-75〉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271건(45.4%)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성격 및 기질문제가 107건(1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설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관련 보수교육 및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문적인 양육 기술을 갖춘 시설종사자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엄격화해야 할 것이다.

〈표 5-89〉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85 (52.6)	86 (35.1)	271 (45.4)
중독문제	3 (0.9)	7 (2.9)	10 (1.7)
질환문제	0 (0.0)	3 (1.2)	3 (0.5)
성격 및 기질문제	58 (16.4)	49 (20.1)	107 (17.9)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50 (14.1)	38 (15.5)	88 (14.8)
어릴 적 학대경험	2 (0.6)	7 (2.9)	9 (1.5)
폭력성	3 (0.9)	5 (2.0)	8 (1.3)
전과력	0 (0.0)	1 (0.4)	1 (0.2)
성문제	0 (0.0)	1 (0.4)	1 (0.2)
원치 않는 아동	2 (0.6)	4 (1.6)	6 (1.0)
부부 및 가족갈등	6 (1.7)	12 (4.9)	18 (3.0)
종교문제	0 (0.0)	2 (0.8)	2 (0.3)
특성 없음	31 (8.8)	18 (7.3)	49 (8.2)
기타	4 (1.1)	2 (0.8)	6 (1.0)
파악 안 됨	8 (2.3)	10 (4.1)	18 (3.0)
계	352 (100.0)	245 (100.0)	5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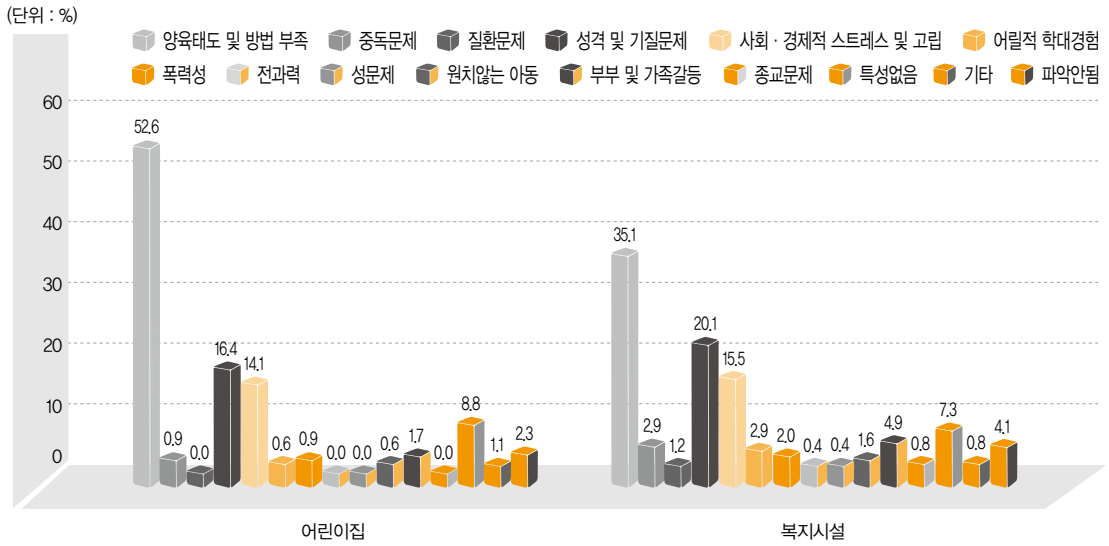

〈그림 5-76〉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4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90〉과 같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모두에서 부모보다 타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전체 270건 중 28건

(10.4%)인 반면, 타인의 경우 231건(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발생 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는 125건(78.6%)이며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94건(84.7%)의 사례는 모두 시설종사자에 의해 일어났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건수는 12건(7.5%), 복지시설의 경우는 16건(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아동의 친부 또는 친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겨둔 뒤,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유기 사례에 해당하였다. 또한 복지시설에 발생한 사례 중 약 68.7%에 해당하는 11건은 어린이집 사례와 유사하게 자녀를 복지시설에 장기간 방치하여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2.3%에 해당하는 5건의 경우, 아동과 친모가 복지시설에 함께 입소된 상태에서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사례에 해당한다.

〈표 5-90〉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특성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부모	친부	8 (5.0)	2 (1.8)	10 (3.7)
	친모	4 (2.5)	14 (12.6)	18 (6.7)
	소계	12 (7.5)	16 (14.4)	28 (10.4)
타인	교원	12 (7.6)	0 (0.0)	12 (4.4)
	시설종사자	125 (78.6)	94 (84.7)	219 (81.1)
	소계	137 (86.2)	94 (84.7)	231 (85.5)
기타		10 (6.3)	1 (0.9)	11 (4.1)
계		159 (100.0)	111 (100.0)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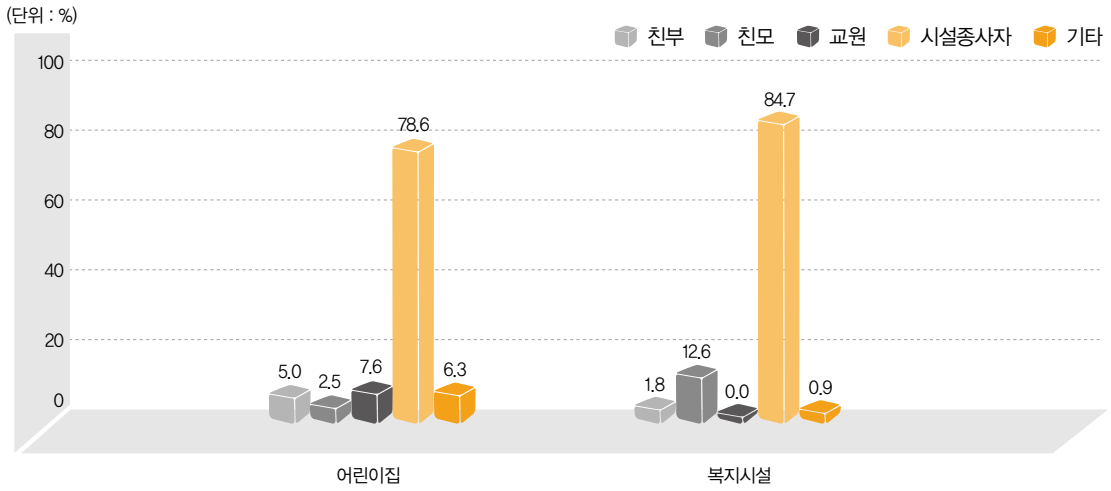

〈그림 5-77〉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표 5-91〉에 따르면 중복학대가 136건(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신체학대 66건(24.4%), 정서학대 40건(14.9%), 방임 13건(4.8%), 유기 10건(3.7%), 성학대 5건(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인 〈표 4-16〉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방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신체학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과 함께 시설 내 아동학대사례 학대행위자의 주된 특성인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된 결과라 추측할 수 있다.

〈표 5-91〉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신체학대		45 (28.3)	21 (18.9)	66 (24.4)
정서학대		25 (15.7)	15 (13.5)	40 (14.9)
성 학 대		4 (2.5)	1 (0.9)	5 (1.9)
방 임		7 (4.4)	6 (5.4)	13 (4.8)
유 기		5 (3.2)	5 (4.5)	10 (3.7)
중복학대	신체학대 · 정서학대	26 (16.4)	23 (20.7)	49 (18.1)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4 (2.5)	9 (8.1)	13 (4.8)
	정서학대 · 방임	38 (23.9)	20 (18.1)	58 (21.4)
	신체학대 · 방임	4 (2.5)	0 (0.0)	4 (1.5)
	방임 · 유기	1 (0.6)	0 (0.0)	1 (0.4)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0 (0.0)	5 (4.5)	5 (1.9)
	정서학대 · 성학대	0 (0.0)	6 (5.4)	6 (2.2)
	소계	73 (45.9)	63 (56.8)	136 (50.3)
계		159 (100.0)	111 (100.0)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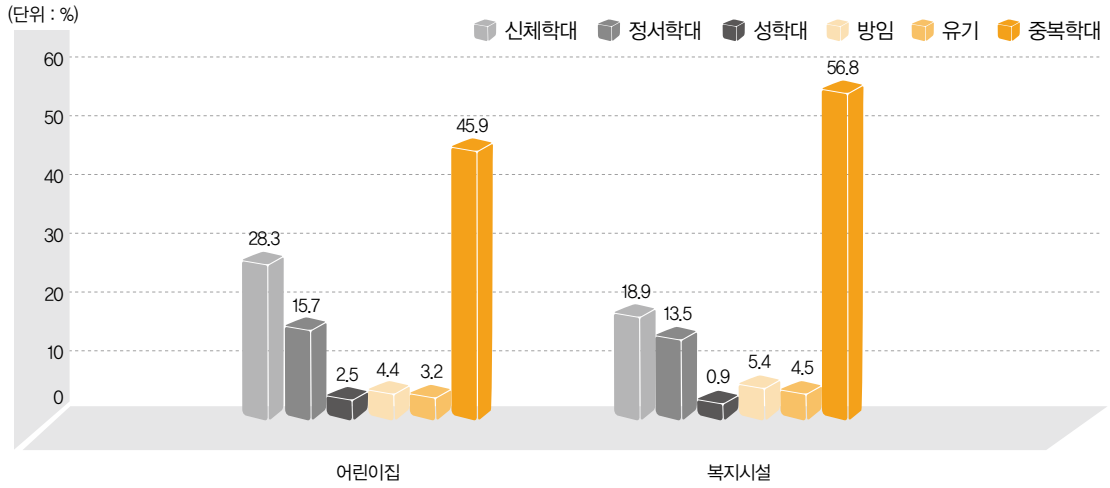

〈그림 5-78〉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본 결과, 〈표 5-92〉와 같이 정서학대가 171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137건(32.3%), 방임 89건(21.0%), 성학대 16건(3.8%), 유기 11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복학대 유형의 각 항목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 중복학대를 별도 분류했을 때의 비율보다 정서학대와 방임이 각각 40.3%, 2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다른 학대유형보다 더 많이 중복적으로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표 5-92〉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시설유형	어린이집	복지시설	계
신체학대	79 (33.5)	58 (30.9)	137 (32.3)
정서학대	93 (39.4)	78 (41.5)	171 (40.3)
성 학 대	4 (1.7)	12 (6.4)	16 (3.8)
방 임	54 (22.9)	35 (18.6)	89 (21.0)
유 기	6 (2.5)	5 (2.6)	11 (2.6)
계	236 (100.0)	188 (100.0)	424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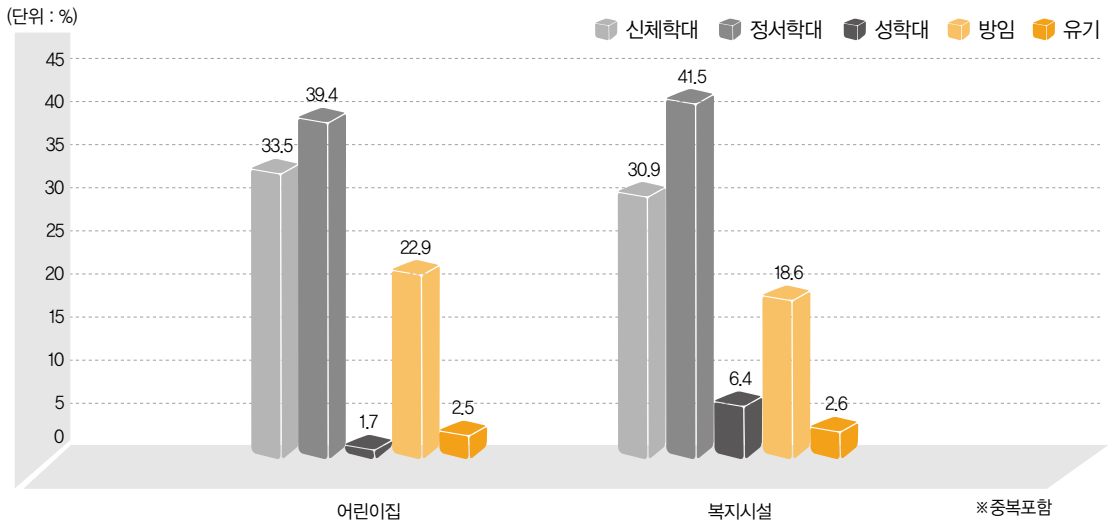

〈그림 5-79〉 시설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6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는 〈표 5-93〉과 같이 원가정보호가 242건(89.6%)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보호는 28건(10.4%)을 차지하였다. 원가정 보호율이 약 90% 정도 나타나는 이유는 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해 발생되는 학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아동에게 원가정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복지시설 내 발생사례의 피해아동 조치결과 중 격리보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보호가 15건(13.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미 피해아동이 가정 내 학대로 한 차례 이상 분리되었거나 유기 등의 이유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다른 장기시설 등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93〉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시설유형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계
		일시보호	장기보호	기타	소계	
어린이집	156 (98.1)	2 (1.3)	1 (0.6)	0 (0.0)	3 (1.9)	159 (100.0)
복지시설	86 (77.5)	6 (5.4)	15 (13.5)	4 (3.6)	25 (22.5)	111 (100.0)
계	242 (89.6)	8 (3.0)	16 (5.9)	4 (1.5)	28 (10.4)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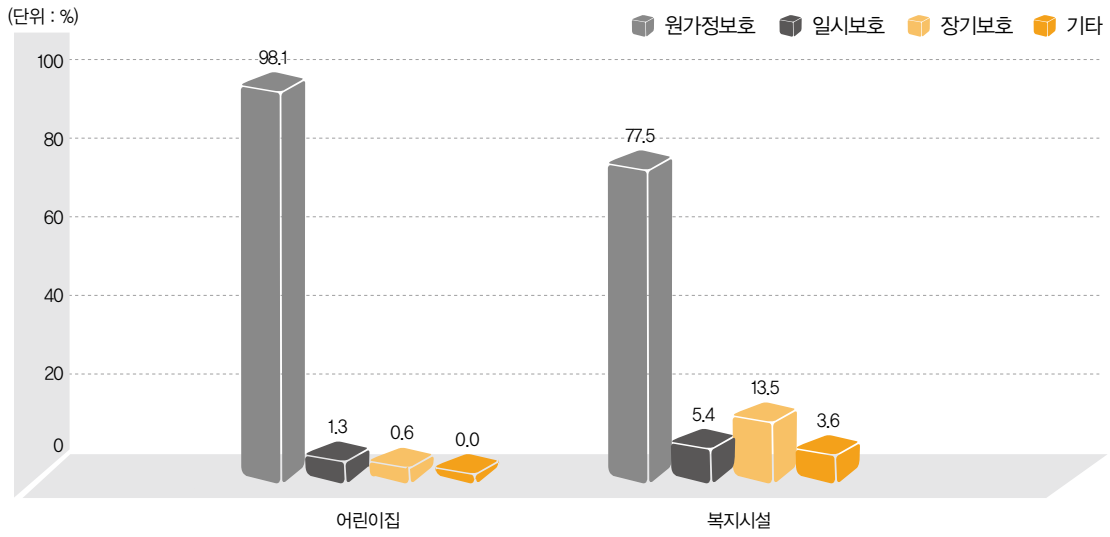

〈그림 5-80〉 시설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5-94〉는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취해진 조치는 지속관찰로 129건(47.8%)이며 그 뒤를 이어 고소·고발이 80건(29.7%)을 차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는 고소·고발 비율이 전체의 6.4%에 그쳤으나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조치는 29.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타인 즉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시설 내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94〉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시설유형	지속관찰	고소·고발	타기관 의뢰	만나지 못함	계
어린이집	77 (48.4)	58 (36.5)	21 (13.2)	3 (1.9)	159 (100.0)
복지시설	52 (46.8)	22 (19.9)	25 (22.5)	12 (10.8)	111 (100.0)
계	129 (47.8)	80 (29.7)	46 (17.0)	15 (5.6)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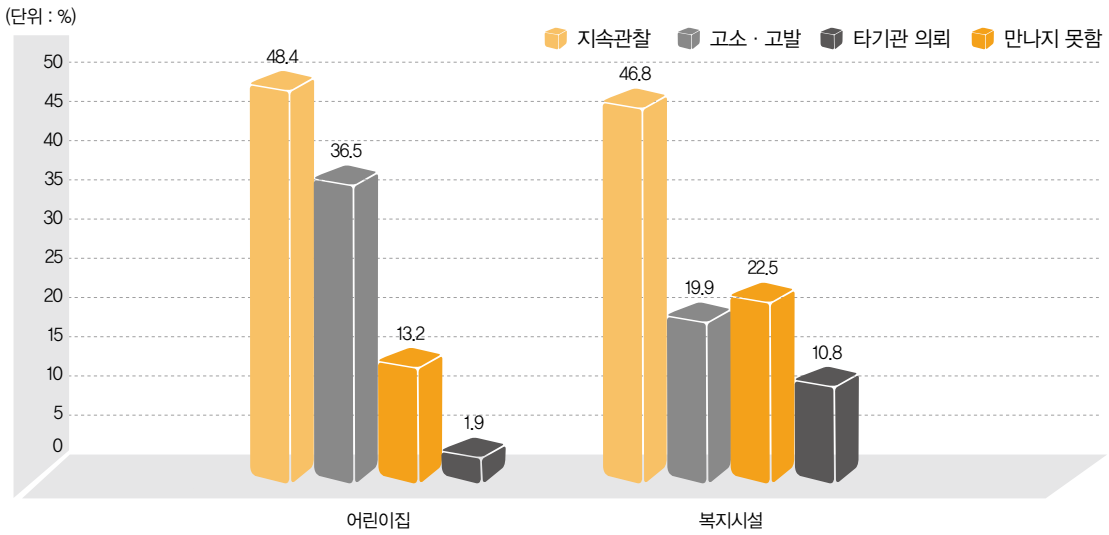

〈그림 5-81〉 시설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7. 장애아동 사례

1 장애아동 사례의 현황

2011년 전체 피해아동인 6,058건 중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있어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장애아동 대상 사례 총 248건(4.1%)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총 2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6,058건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장애아동 중 피해아동 보호율은 약 2.59‰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인 0.6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이 172건(6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갖고 있는 피해아동이 각각 19건(7.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집계된 장애인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아동 95,938명 중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아동은 44,476명(46.4%)이었는데, 아동학대를 경험한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 2011 장애인통계.

이유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많은 것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표 5-95〉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단위 : 건,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2	5	19	172	16	10	19	5	248
(0.7)	(2.0)	(7.7)	(69.4)	(6.5)	(4.0)	(7.7)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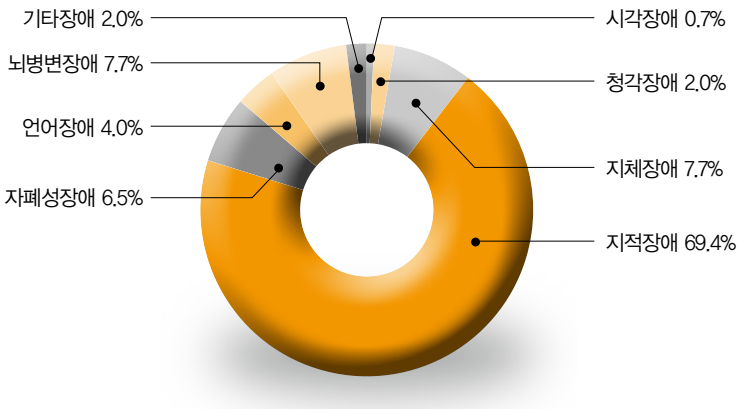

〈그림 5-82〉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2 장애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가.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96〉과 같다. 남아 118건(47.6%), 여아 130건(52.4%)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서 비교적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여아에 비해 남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더욱 많다는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아가 장애를 지닐 경우 학대 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비롯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는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서 더욱 많이 발생하여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전반적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언어장애의 경우 남아와 여아에서 각 5건(50.0%)으로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며, 그 밖의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는 남아에게서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96〉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장애유형 \ 성별	남	여	계
시각장애	0 (0.0)	2 (100.0)	2 (100.0)
청각장애	2 (40.0)	3 (60.0)	5 (100.0)
지체장애	5 (26.3)	14 (73.7)	19 (100.0)
지적장애	81 (47.1)	91 (52.9)	172 (100.0)
자폐성장애	11 (68.8)	5 (31.2)	16 (100.0)
언어장애	5 (50.0)	5 (50.0)	10 (100.0)
뇌병변장애	11 (57.9)	8 (42.1)	19 (100.0)
기타장애	3 (60.0)	2 (40.0)	5 (100.0)
계	118 (47.6)	130 (52.4)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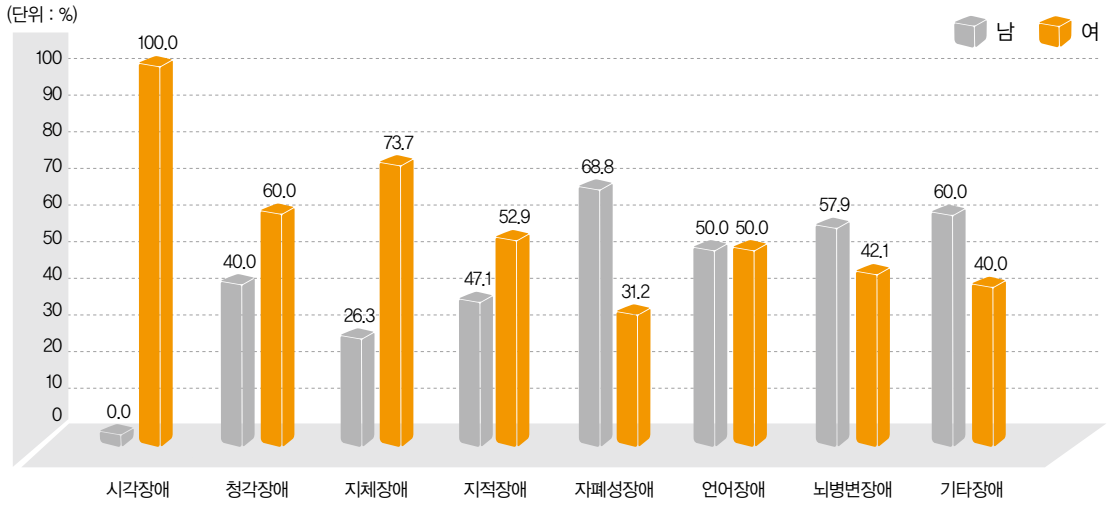

〈그림 5-83〉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장애아동 대상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97〉과 같다. 만 13~15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68건(2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만 10~12세의 경우는 66건(26.6%)이었다. 만 0~15세까지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볼 때, 연령이 증가될수록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이와 비례하여 함께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될수록 가정 내에서만 보호되기보다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비례하여 교사 등에 의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및 시설 등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표 5-97〉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 장애유형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	계
시각장애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청각장애	0 (0.0)	2 (40.0)	0 (0.0)	1 (20.0)	2 (40.0)	0 (0.0)	0 (0.0)	5 (100.0)
지체장애	0 (0.0)	2 (10.5)	2 (10.5)	3 (15.8)	3 (15.8)	6 (31.6)	3 (15.8)	19 (100.0)
지적장애	0 (0.0)	3 (1.7)	11 (6.4)	32 (18.6)	51 (29.7)	55 (32.0)	20 (11.6)	172 (100.0)
자폐성장애	0 (0.0)	0 (0.0)	6 (37.5)	4 (25.0)	3 (18.8)	1 (6.2)	2 (12.5)	16 (100.0)
언어장애	0 (0.0)	1 (10.0)	3 (30.0)	0 (0.0)	4 (40.0)	1 (10.0)	1 (10.0)	10 (100.0)
뇌병변장애	1 (5.3)	5 (26.3)	3 (15.8)	3 (15.8)	2 (10.5)	4 (21.0)	1 (5.3)	19 (100.0)
기타장애	0 (0.0)	1 (20.0)	1 (20.0)	0 (0.0)	1 (20.0)	1 (20.0)	1 (20.0)	5 (100.0)
계	1 (0.4)	15 (6.0)	27 (11.0)	43 (17.3)	66 (26.6)	68 (27.4)	28 (11.3)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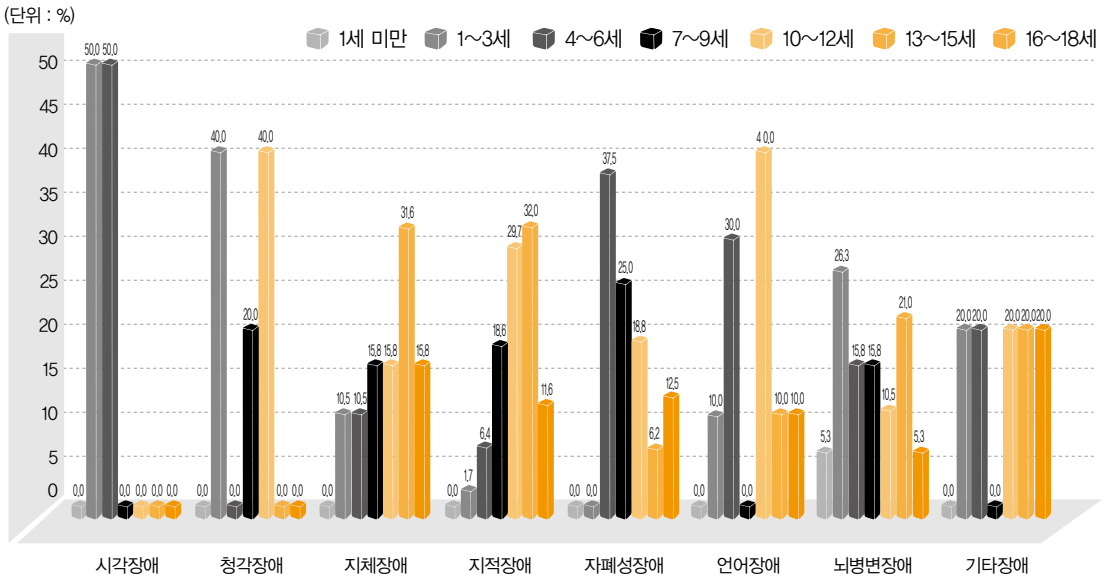

〈그림 5-84〉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표 5-98〉과 같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128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부모가족 형태 101건(40.8%), 대리양육형태 14건(5.6%), 기타 5건(2.0%) 순이었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및

미혼부 · 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104건(42.0%)으로 전체 가족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44.0%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가구 중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비율이 7.3%인 것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사례의 학대행위자가 부모는 아니지만 장애아동 사례 중 약 80% 정도 사례의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것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지닌 장애라는 특성에 한부모가족 형태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 및 정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가지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표 5-98〉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가족유형 \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친부모가족		2 (100.0)	3 (60.0)	6 (31.6)	70 (40.6)	7 (43.7)	4 (40.0)	7 (36.8)	2 (40.0)	101 (40.8)
친부모 가족 외 형태	부자가정	0 (0.0)	0 (0.0)	6 (31.6)	49 (28.4)	3 (18.8)	3 (31.5)	6 (31.5)	1 (20.0)	68 (27.5)
	모자가정	0 (0.0)	1 (20.0)	3 (15.6)	23 (13.4)	3 (18.8)	2 (20.0)	1 (5.3)	0 (0.0)	33 (13.3)
	미혼부 · 모가정	0 (0.0)	0 (0.0)	1 (5.3)	1 (0.6)	0 (0.0)	0 (0.0)	1 (5.3)	0 (0.0)	3 (1.2)
	재혼가정	0 (0.0)	1 (20.0)	0 (0.0)	2 (1.2)	2 (12.4)	0 (0.0)	0 (0.0)	0 (0.0)	5 (2.0)
	친인척보호	0 (0.0)	0 (0.0)	1 (5.3)	7 (4.1)	0 (0.0)	0 (0.0)	1 (5.3)	0 (0.0)	9 (3.6)
	동거(사실혼포함)	0 (0.0)	0 (0.0)	1 (5.3)	8 (4.7)	0 (0.0)	1 (10.0)	0 (0.0)	0 (0.0)	10 (4.0)
	소계	0 (0.0)	2 (40.0)	12 (63.1)	90 (52.4)	8 (50.0)	6 (60.0)	9 (47.4)	1 (20.0)	128 (51.6)
대리 양육 형태	가정위탁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입양가정	0 (0.0)	0 (0.0)	1 (5.3)	1 (0.6)	0 (0.0)	0 (0.0)	1 (5.3)	0 (0.0)	3 (1.2)
	시설보호	0 (0.0)	0 (0.0)	0 (0.0)	7 (4.1)	1 (6.3)	0 (0.0)	2 (10.5)	0 (0.0)	10 (4.0)
	소계	0 (0.0)	0 (0.0)	1 (5.3)	9 (5.3)	1 (6.3)	0 (0.0)	3 (15.8)	0 (0.0)	14 (5.6)
기 타		0 (0.0)	0 (0.0)	0 (0.0)	3 (1.7)	0 (0.0)	0 (0.0)	0 (0.0)	2 (40.0)	5 (2.0)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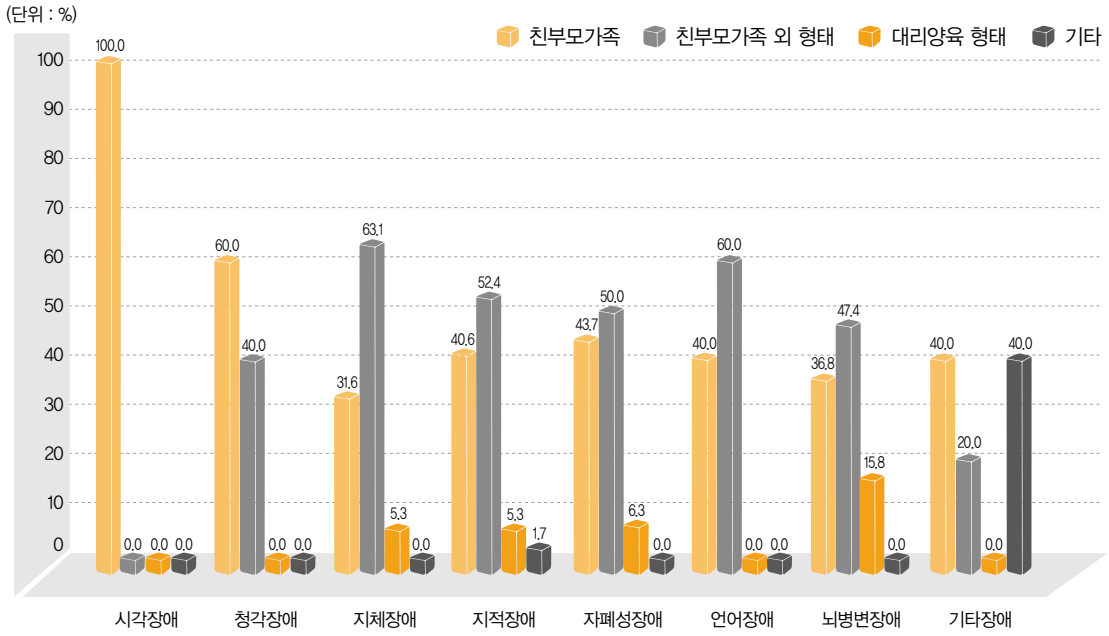

〈그림 5-85〉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장애아동 대상 아동학대사례 중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99〉와 같다. 장애 특성이 302건(3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적응 · 행동이 255건(25.4%), 정서 · 정신건강과 발달 · 신체건강이 각각 200건(20.0%), 기타와 특성 없음은 44건(4.4%), 1건(0.1%)을 차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의 경우, 장애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그치는데 반해 장애아동의 경우, 30.2%에 달하였으며, 발달 · 신체건강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는 9.8%에 그치는 반면 장애아동은 20.0%에 달하였다. 이와 반대로 정서 · 정신건강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는 35.6%로 나타났으나 장애아동의 경우, 20.0%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적응 · 행동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에서는 37.4%이나 장애아동은 25.4%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서 · 정신건강 및 적응 · 행동 측면에서의 문제보다 신체발달지연, 언어문제, 급만성 질병 등의 발달 및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99〉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장애	시각장애	2 (22.2)	1 (5.3)	1 (1.2)	1 (0.1)	0 (0.0)	0 (0.0)	1 (1.7)	0 (0.0)	6 (0.6)
	청각장애	1 (11.1)	5 (26.3)	1 (1.2)	1 (0.1)	0 (0.0)	1 (2.3)	1 (1.7)	0 (0.0)	10 (1.0)
	지체장애	1 (11.1)	1 (5.3)	19 (23.0)	5 (0.7)	1 (1.5)	0 (0.0)	1 (1.7)	0 (0.0)	28 (2.8)
	지적장애	1 (11.1)	1 (5.3)	5 (6.1)	172 (24.7)	1 (1.5)	4 (9.1)	3 (5.2)	1 (4.3)	188 (18.8)
	자폐성장애	0 (0.0)	0 (0.0)	1 (1.2)	1 (0.1)	16 (24.6)	3 (6.8)	0 (0.0)	0 (0.0)	21 (2.1)
	언어장애	0 (0.0)	1 (5.3)	0 (0.0)	4 (0.6)	3 (4.6)	10 (22.7)	0 (0.0)	0 (0.0)	18 (1.8)
	뇌병변장애	1 (11.1)	1 (5.3)	1 (1.2)	3 (0.4)	0 (0.0)	0 (0.0)	19 (32.8)	0 (0.0)	25 (2.5)
	기타장애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5 (21.7)	6 (0.6)
	소계	6 (66.7)	10 (52.4)	28 (39.1)	188 (26.8)	21 (32.3)	18 (40.9)	25 (43.1)	6 (26.1)	302 (30.2)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0 (0.0)	0 (0.0)	3 (3.9)	37 (5.3)	5 (7.7)	1 (2.3)	2 (3.5)	1 (4.3)	49 (4.9)
	과잉행동	0 (0.0)	0 (0.0)	2 (2.4)	27 (3.8)	5 (7.7)	1 (2.3)	1 (1.7)	1 (4.3)	37 (3.7)
	오락중독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1 (0.1)
	인터넷중독	0 (0.0)	0 (0.0)	0 (0.0)	4 (0.6)	0 (0.0)	0 (0.0)	0 (0.0)	0 (0.0)	4 (0.4)
	불안	0 (0.0)	1 (5.3)	0 (0.0)	21 (3.0)	3 (4.6)	1 (2.3)	1 (1.7)	0 (0.0)	27 (2.7)
	애착문제	0 (0.0)	0 (0.0)	1 (1.2)	13 (1.9)	2 (3.1)	2 (4.5)	0 (0.0)	0 (0.0)	18 (1.8)
	무력감	0 (0.0)	1 (5.3)	2 (2.4)	8 (1.1)	2 (3.1)	0 (0.0)	1 (1.7)	0 (0.0)	14 (1.4)
	우울	0 (0.0)	0 (0.0)	1 (1.2)	9 (1.3)	0 (0.0)	0 (0.0)	1 (1.7)	0 (0.0)	11 (1.1)
	낮은 자아존중감	0 (0.0)	0 (0.0)	1 (1.2)	10 (1.4)	2 (3.1)	1 (2.3)	0 (0.0)	0 (0.0)	14 (1.4)
	성격 및 기질문제	1 (11.1)	0 (0.0)	2 (2.4)	6 (0.9)	0 (0.0)	0 (0.0)	0 (0.0)	1 (4.3)	10 (1.0)
	탐식 및 결식	0 (0.0)	1 (5.3)	1 (1.2)	10 (1.4)	2 (3.1)	1 (2.3)	0 (0.0)	0 (0.0)	15 (1.5)
	소계	1 (11.1)	3 (15.9)	13 (15.9)	146 (20.8)	21 (32.3)	7 (16.0)	6 (10.3)	3 (13.0)	200 (20.0)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0 (0.0)	0 (0.0)	2 (2.4)	28 (4.0)	3 (4.6)	1 (2.3)	0 (0.0)	1 (4.3)	35 (3.5)
	거짓말	0 (0.0)	1 (5.3)	0 (0.0)	16 (2.2)	0 (0.0)	0 (0.0)	0 (0.0)	0 (0.0)	17 (1.7)
	도벽	0 (0.0)	0 (0.0)	2 (2.4)	15 (2.1)	1 (1.5)	0 (0.0)	1 (1.7)	0 (0.0)	19 (1.8)
	가출	0 (0.0)	0 (0.0)	2 (2.4)	9 (1.3)	0 (0.0)	0 (0.0)	1 (1.7)	0 (0.0)	12 (1.2)
	약물·흡연·음주	0 (0.0)	0 (0.0)	0 (0.0)	4 (0.6)	0 (0.0)	0 (0.0)	0 (0.0)	0 (0.0)	4 (0.4)
	성문제	0 (0.0)	0 (0.0)	0 (0.0)	18 (2.6)	0 (0.0)	0 (0.0)	0 (0.0)	0 (0.0)	18 (1.8)
	학교부적응	0 (0.0)	0 (0.0)	5 (6.1)	28 (4.0)	0 (0.0)	1 (2.3)	0 (0.0)	1 (4.3)	35 (3.5)
	잦은 결석	0 (0.0)	0 (0.0)	2 (2.4)	12 (1.7)	0 (0.0)	1 (2.3)	0 (0.0)	1 (4.3)	16 (1.6)
	늦은 귀가	0 (0.0)	0 (0.0)	0 (0.0)	9 (1.3)	0 (0.0)	0 (0.0)	1 (1.7)	0 (0.0)	10 (1.0)
	학습문제	1 (11.1)	1 (5.3)	8 (9.9)	69 (9.8)	5 (7.7)	2 (4.5)	2 (3.5)	1 (4.3)	89 (8.9)
	소계	1 (11.1)	2 (10.6)	21 (25.6)	208 (29.6)	9 (13.8)	5 (11.4)	5 (8.6)	4 (17.4)	255 (25.4)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1 (11.1)	1 (5.3)	5 (6.1)	12 (1.7)	2 (3.1)	0 (0.0)	5 (8.6)	1 (4.3)	27 (2.7)
	언어문제	0 (0.0)	2 (10.5)	5 (6.1)	55 (7.8)	6 (9.2)	9 (20.4)	7 (12.2)	3 (13.0)	87 (8.7)
	급만성질병	0 (0.0)	0 (0.0)	0 (0.0)	5 (0.7)	0 (0.0)	0 (0.0)	2 (3.5)	1 (4.3)	8 (0.8)
	영양결핍	0 (0.0)	0 (0.0)	0 (0.0)	4 (0.6)	1 (1.5)	0 (0.0)	0 (0.0)	1 (4.3)	6 (0.6)
	대소변문제	0 (0.0)	0 (0.0)	2 (2.4)	19 (2.7)	2 (3.1)	1 (2.3)	6 (10.3)	0 (0.0)	30 (3.0)
	위생문제	0 (0.0)	0 (0.0)	3 (3.9)	35 (5.0)	0 (0.0)	3 (6.8)	1 (1.7)	0 (0.0)	42 (4.2)
	소계	1 (11.1)	3 (15.8)	15 (18.5)	130 (18.5)	11 (16.9)	13 (29.5)	21 (36.3)	6 (26.1)	200 (20.0)
특성 없음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1 (0.1)
기타		0 (0.0)	1 (5.3)	5 (6.1)	29 (4.2)	3 (4.6)	1 (2.3)	1 (1.7)	4 (17.4)	44 (4.4)
계		9 (100.0)	19 (100.0)	82 (100.0)	702 (100.0)	65 (100.0)	44 (100.0)	58 (100.0)	23 (100.0)	1,0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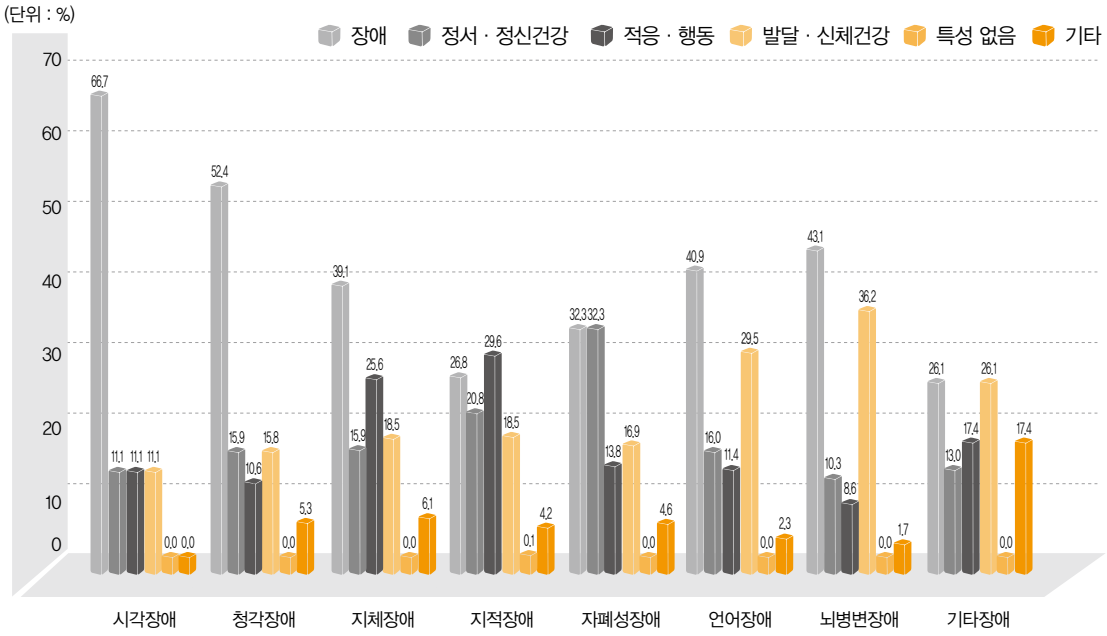

〈그림 5-86〉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3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장애아동 대상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57건(63.3%)이며, 여성의 경우는 89건(35.9%), 그리고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는 2건(0.8%)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100〉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장애유형 \ 성별	남	여	파악 안 됨	계
시각장애	2 (100.0)	0 (0.0)	0 (0.0)	2 (100.0)
청각장애	3 (60.0)	2 (40.0)	0 (0.0)	5 (100.0)
지체장애	10 (52.6)	9 (47.4)	0 (0.0)	19 (100.0)
지적장애	115 (66.9)	56 (32.6)	1 (0.5)	172 (100.0)
자폐성장애	8 (50.0)	8 (50.0)	0 (0.0)	16 (100.0)
언어장애	5 (50.0)	5 (50.0)	0 (0.0)	10 (100.0)
뇌병변장애	12 (63.2)	7 (36.8)	0 (0.0)	19 (100.0)
기타장애	2 (40.0)	2 (40.0)	1 (20.0)	5 (100.0)
계	157 (63.3)	89 (35.9)	2 (0.8)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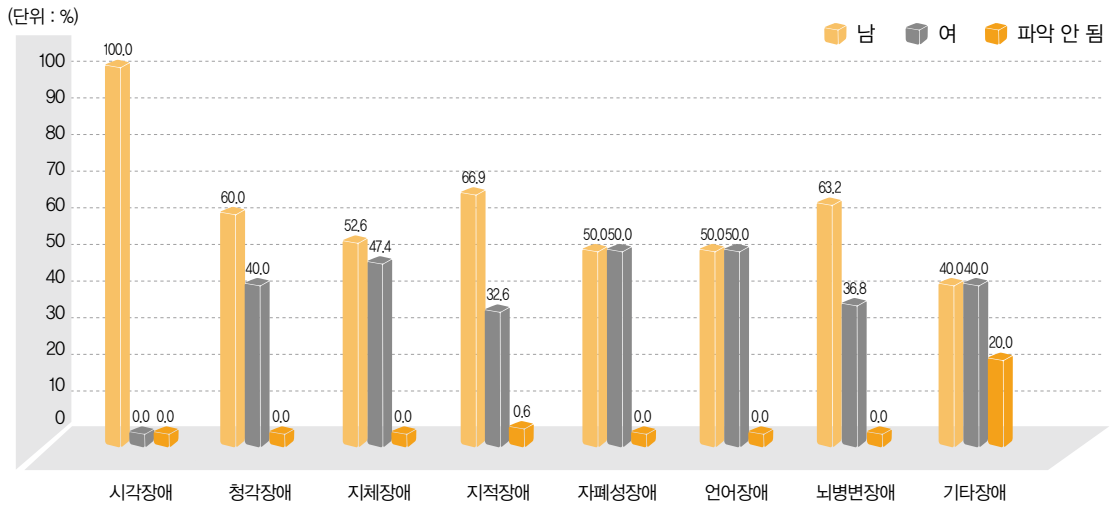

〈그림 5-87〉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나.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101건(4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는 66건(26.7%), 50대는 54건(21.8%)으로 나타났다. 기타 연령의 경우에는 3건에서 9건으로 매우 미비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3%, 31.7%인 반면, 장애아동 대상 사례는 20대 3.6%, 30대 26.7%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반대로 50대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11.7%, 장애아동 대상 사례는 2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에 비해 높은 연령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10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에 의한 장애아동 대상 사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부모 연령은 전체 피해아동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101〉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장애유형 \ 연령(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파악 안 됨	계
시각장애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청각장애	0 (0.0)	2 (40.0)	2 (40.0)	0 (0.0)	0 (0.0)	0 (0.0)	1 (20.0)	5 (100.0)
지체장애	0 (0.0)	8 (42.1)	6 (31.6)	4 (21.1)	1 (5.2)	0 (0.0)	0 (0.0)	19 (100.0)
지적장애	5 (2.9)	43 (25.0)	74 (43.0)	38 (22.1)	6 (3.5)	2 (1.2)	4 (2.3)	172 (100.0)
자폐성장애	2 (12.5)	3 (18.8)	5 (31.2)	5 (31.2)	0 (0.0)	1 (6.3)	0 (0.0)	16 (100.0)
언어장애	1 (10.0)	1 (10.0)	5 (50.0)	2 (20.0)	0 (0.0)	0 (0.0)	1 (10.0)	10 (100.0)
뇌병변장애	1 (5.3)	6 (31.5)	7 (36.8)	4 (21.1)	0 (0.0)	0 (0.0)	1 (5.3)	19 (100.0)
기타장애	0 (0.0)	2 (40.0)	1 (20.0)	1 (20.0)	0 (0.0)	0 (0.0)	1 (20.0)	5 (100.0)
계	9 (3.6)	66 (26.7)	101 (40.8)	54 (21.8)	7 (2.8)	3 (1.2)	8 (3.1)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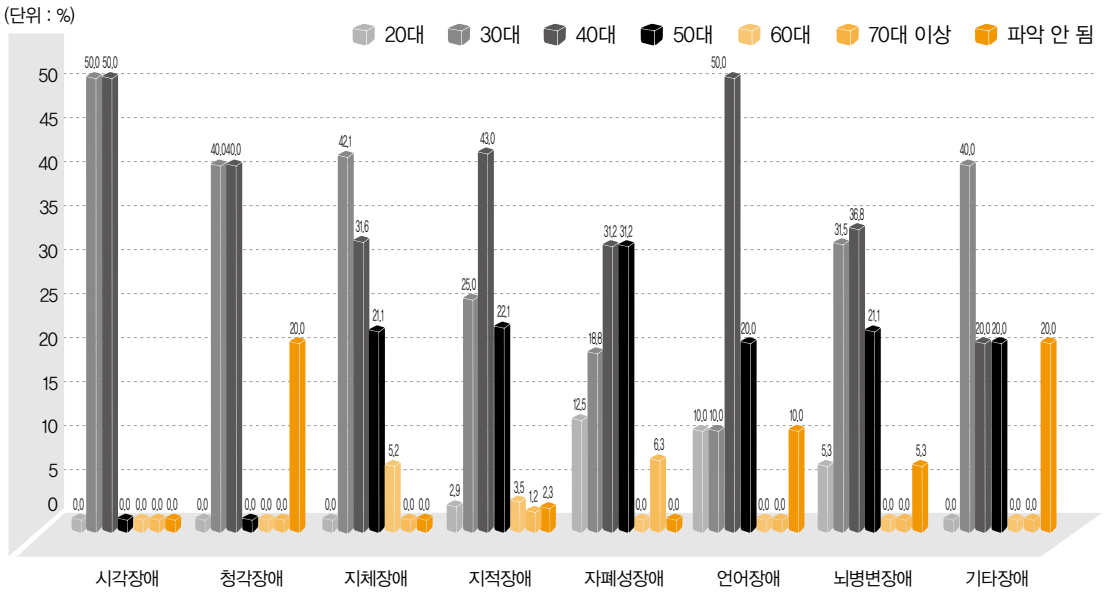

〈그림 5-88〉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표 5-102〉와 같다. 무직은 전체 사례인 248건 중 73건으로 29.4%를 차지하였고, 단순노무직은 38건(15.4%), 주부의 경우는 25건(10.2%)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전문직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13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였으며, 준전문직의 경우는 2건(0.8%)이었다.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전

체의 6%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현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빈곤, 실업 등으로 단순화 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감소 및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표 5-102〉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장애유형 / 직업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전문직	0 (0.0)	0 (0.0)	1 (5.3)	8 (4.7)	1 (6.3)	0 (0.0)	2 (10.5)	1 (20.0)	13 (5.2)
준전문직	0 (0.0)	0 (0.0)	0 (0.0)	2 (1.2)	0 (0.0)	0 (0.0)	0 (0.0)	0 (0.0)	2 (0.8)
사무직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서비스판매직	1 (50.0)	1 (20.0)	4 (21.0)	3 (1.7)	0 (0.0)	0 (0.0)	2 (10.5)	0 (0.0)	11 (4.4)
농 · 어 · 축산업	0 (0.0)	0 (0.0)	0 (0.0)	9 (5.2)	4 (24.9)	1 (10.0)	0 (0.0)	0 (0.0)	14 (5.6)
기능직	0 (0.0)	0 (0.0)	0 (0.0)	4 (2.3)	2 (12.5)	0 (0.0)	0 (0.0)	0 (0.0)	6 (2.4)
기계장치조작원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1 (5.3)	0 (0.0)	2 (0.8)
단순노무직	0 (0.0)	1 (20.0)	1 (5.3)	32 (18.6)	1 (6.3)	2 (20.0)	1 (5.3)	0 (0.0)	38 (15.4)
자영업	0 (0.0)	2 (40.0)	1 (5.3)	3 (1.7)	0 (0.0)	1 (10.0)	2 (10.5)	0 (0.0)	9 (3.6)
주부	0 (0.0)	0 (0.0)	4 (21.0)	17 (9.9)	2 (12.5)	1 (10.0)	1 (5.3)	0 (0.0)	25 (10.2)
학생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비정규직	0 (0.0)	1 (20.0)	0 (0.0)	11 (6.4)	0 (0.0)	0 (0.0)	1 (5.3)	0 (0.0)	13 (5.2)
무직	0 (0.0)	0 (0.0)	7 (36.8)	54 (31.4)	3 (18.7)	3 (30.0)	4 (20.0)	2 (40.0)	73 (29.4)
기타	1 (50.0)	0 (0.0)	1 (5.3)	12 (7.0)	1 (6.3)	2 (20.0)	3 (15.8)	0 (0.0)	20 (8.1)
파악 안 됨	0 (0.0)	0 (0.0)	0 (0.0)	14 (8.1)	2 (12.5)	0 (0.0)	2 (10.5)	2 (40.0)	20 (8.1)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라.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표 5-103〉은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을 살펴본 결과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은 59건으로 전체의 23.8%,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의 경우는 58건(23.5%)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이 36건(14.5%)을 차지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득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의 경우는 전체의 약 61.8%에 해당하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의 75.4%에 달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 중 소득이 약 3,693,833원인 것을 볼 때 과반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빈곤 또는 실직 상태 등이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을 볼 때, 아동학대 재발생을 막기 위한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경제적인 자립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03〉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득 \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50만 원 미만	0 (0.0)	0 (0.0)	1 (5.3)	28 (16.3)	1 (6.2)	1 (10.0)	3 (15.8)	2 (40.0)	36 (14.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0 (0.0)	0 (0.0)	2 (10.5)	45 (26.2)	5 (31.3)	6 (60.0)	1 (5.3)	0 (0.0)	59 (23.8)
100만 원이상~150만 원 미만	1 (50.0)	2 (40.0)	4 (21.1)	42 (24.4)	3 (18.8)	1 (10.0)	4 (21.0)	1 (20.0)	58 (23.5)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0 (0.0)	0 (0.0)	3 (15.8)	15 (8.7)	1 (6.2)	0 (0.0)	2 (10.5)	0 (0.0)	21 (8.5)
200만 원 미만~250만 원 미만	0 (0.0)	0 (0.0)	1 (5.3)	6 (3.5)	1 (6.2)	1 (10.0)	1 (5.3)	0 (0.0)	10 (4.0)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 (50.0)	1 (20.0)	1 (5.3)	4 (2.3)	0 (0.0)	0 (0.0)	1 (5.3)	0 (0.0)	8 (3.2)
300만 원 이상	0 (0.0)	2 (40.0)	0 (0.0)	5 (2.9)	0 (0.0)	1 (10.0)	3 (15.8)	0 (0.0)	11 (4.4)
파악 안 됨	0 (0.0)	0 (0.0)	7 (36.7)	27 (15.7)	5 (31.3)	0 (0.0)	4 (21.0)	2 (40.0)	45 (18.1)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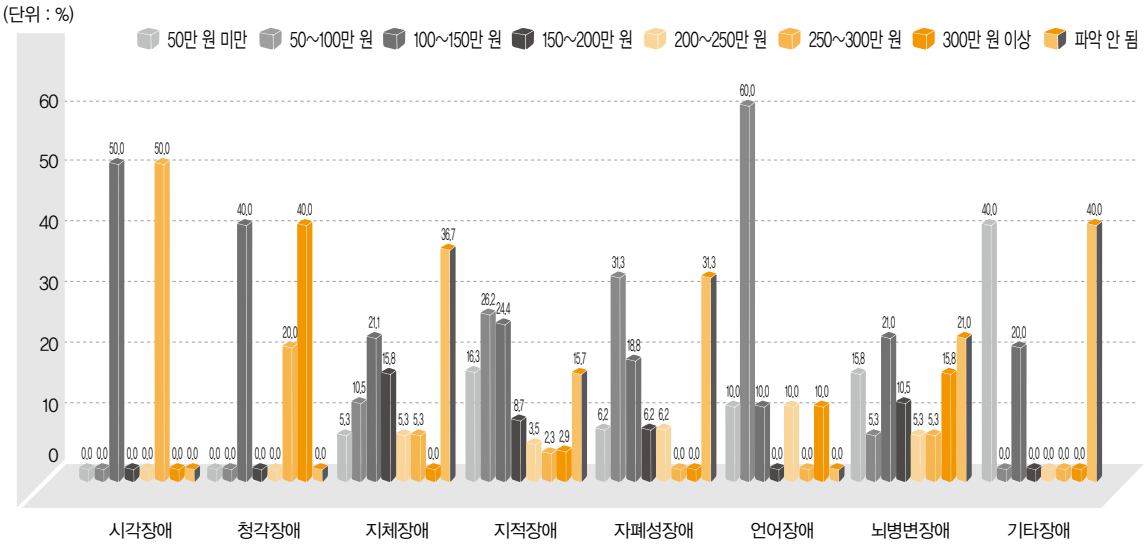

〈그림 5-89〉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마.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과 비수급권 대상은 각각 114건(46.0%), 113건(45.5%)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21건(8.5%)을 차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현황의 경우, 71.1%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가 비수급권에 해당하였으며, 24.5% 정도만 수급권에 한하였다. 이를 볼 때 장애아동 대상의 학대행위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04〉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장애유형 / 수급권 대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수급권 대상	0 (0.0)	1 (20.0)	6 (31.6)	92 (53.5)	5 (31.3)	4 (40.0)	4 (21.0)	2 (40.0)	114 (46.0)
비수급권 대상	2 (100.0)	4 (80.0)	11 (57.9)	64 (37.2)	11 (68.7)	6 (60.0)	14 (73.7)	1 (20.0)	113 (45.5)
파악 안 됨	0 (0.0)	0 (0.0)	2 (10.5)	16 (9.3)	0 (0.0)	0 (0.0)	1 (5.3)	2 (40.0)	21 (8.5)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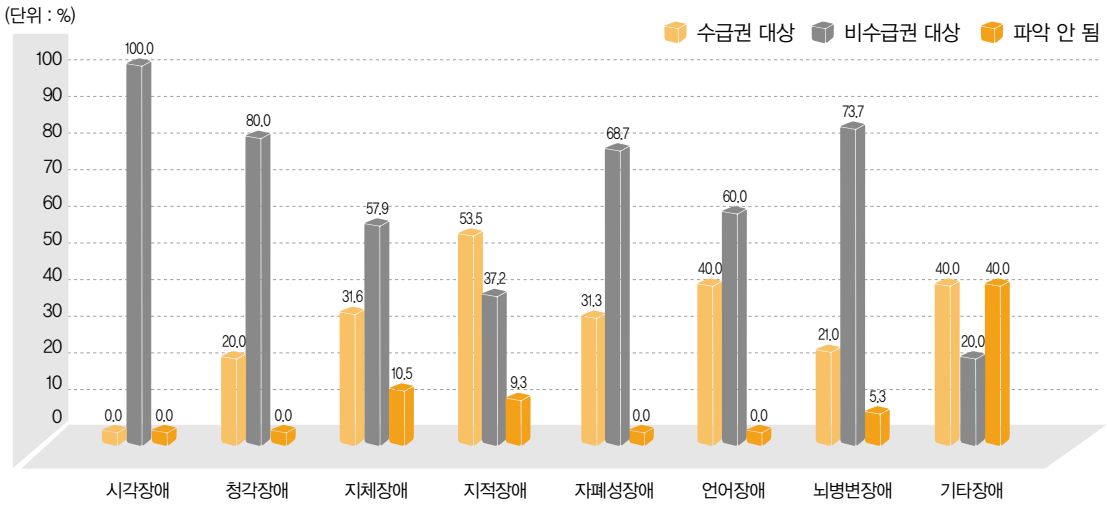

〈그림 5-90〉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

바.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 요인 중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표 5-105〉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었으며 258건(32.0%)을 차지하였고,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186건(23.2%)이었다. 이는 〈표 4-13〉에 해당하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며, 장애아동 대상의 학대행위자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고립이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질환문제 즉, 신체 · 정신 질환 및 장애를 지닌 학대행위자는 전체의 10.7%에 해당하는 86건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본 항목에 해당하는 비율이 약 5.6%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지닌 신체 및 정신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특성 가운데 중독문제, 부부 및 가족갈등, 그리고 성격 및 기질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 7.4%, 7.2%이었다.

〈표 5-105〉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장애유형 / 특성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 (20.0)	2 (20.0)	20 (31.7)	183 (31.6)	16 (37.1)	13 (40.5)	18 (29.0)	5 (45.4)	258 (32.0)
중독문제	0 (0.0)	1 (10.0)	1 (1.6)	49 (8.4)	4 (9.3)	3 (9.4)	2 (3.2)	2 (18.2)	62 (7.7)
질환문제	1 (20.0)	0 (0.0)	9 (14.3)	66 (11.4)	4 (9.3)	2 (6.3)	4 (6.5)	0 (0.0)	86 (10.7)
성격 및 기질문제	0 (0.0)	1 (10.0)	3 (4.8)	41 (7.1)	5 (11.6)	2 (6.3)	5 (8.1)	1 (9.1)	58 (7.2)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 (40.0)	3 (30.0)	19 (30.2)	127 (21.9)	6 (14.0)	10 (31.3)	18 (29.0)	1 (9.1)	186 (23.2)
어릴 적 학대경험	0 (0.0)	0 (0.0)	0 (0.0)	3 (0.5)	0 (0.0)	0 (0.0)	1 (1.6)	0 (0.0)	4 (0.5)
폭력성	0 (0.0)	0 (0.0)	0 (0.0)	20 (3.4)	2 (4.7)	0 (0.0)	1 (1.6)	0 (0.0)	23 (2.8)
전과력	0 (0.0)	0 (0.0)	0 (0.0)	3 (0.5)	0 (0.0)	0 (0.0)	1 (1.6)	0 (0.0)	4 (0.5)
성문제	0 (0.0)	1 (10.0)	1 (1.6)	14 (2.4)	0 (0.0)	1 (3.1)	0 (0.0)	0 (0.0)	17 (2.0)
원치 않는 아동	1 (20.0)	1 (10.0)	2 (3.2)	5 (0.9)	0 (0.0)	0 (0.0)	4 (6.5)	0 (0.0)	13 (1.6)
부부 및 가족갈등	0 (0.0)	1 (10.0)	7 (11.1)	42 (7.2)	3 (7.0)	1 (3.1)	6 (9.7)	0 (0.0)	60 (7.4)
종교문제	0 (0.0)	0 (0.0)	0 (0.0)	2 (0.3)	1 (2.3)	0 (0.0)	0 (0.0)	0 (0.0)	3 (0.3)
특성 없음	0 (0.0)	0 (0.0)	0 (0.0)	7 (1.2)	0 (0.0)	0 (0.0)	0 (0.0)	0 (0.0)	7 (0.9)
기타	0 (0.0)	0 (0.0)	1 (1.6)	10 (1.7)	0 (0.0)	0 (0.0)	1 (1.6)	0 (0.0)	12 (1.5)
파악 안 됨	0 (0.0)	0 (0.0)	0 (0.0)	9 (1.5)	2 (4.7)	0 (0.0)	1 (1.6)	2 (18.2)	14 (1.7)
계	5 (100.0)	10 (100.0)	63 (100.0)	581 (100.0)	43 (100.0)	32 (100.0)	62 (100.0)	11 (100.0)	807 (100.0)

4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대상의 아동학대사례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5-106〉과 같다. 관계를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모가 199건(8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타인이 30건(12.1%), 친인척은 14건으로 5.6%, 마지막으로 기타는 5건(2.0%)에 해당하였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결과인 〈표 4-8〉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항목들 중 부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129건(52.1%)이었으며, 친모는 67건(27.0%)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친부와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각각 47.1%, 32.4%인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장애아동 대

상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계부와 양부에 의한 학대는 각각 2건(0.8%), 1건(0.4%)으로 미비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가 12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특성인 장애로 인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낯선 사람과 이웃은 각각 7건(2.8%), 5건(2.0%)이었으며, 기타 항목은 1~2건으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친인척의 경우, 각 항목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친조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는 6건(2.4%)이었으며, 친인척 및 친조부에 의한 사례는 4건(1.6%), 3건(1.2%), 그리고 형제 및 자매에 의한 아동학대는 1건(0.4%)이 발생하였다.

〈표 5-106〉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부모	친부	2 (100.0)	2 (40.0)	2 (47.4)	93 (54.0)	8 (50.0)	4 (40.0)	9 (47.2)	2 (40.0)	129 (52.1)
	친모	0 (0.0)	2 (40.0)	2 (36.8)	44 (25.6)	4 (25.0)	4 (40.0)	4 (21.1)	2 (40.0)	67 (27.0)
	계부	0 (0.0)	0 (0.0)	0 (5.3)	0 (0.0)	0 (0.0)	0 (0.0)	1 (5.3)	0 (0.0)	2 (0.8)
	양부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소계	2 (100.0)	4 (80.0)	4 (89.5)	138 (80.2)	12 (75.0)	8 (80.0)	14 (73.6)	4 (80.0)	199 (80.3)
친인척	친조부	0 (0.0)	0 (0.0)	0 (0.0)	3 (1.7)	0 (0.0)	0 (0.0)	0 (0.0)	0 (0.0)	3 (1.2)
	친조모	0 (0.0)	0 (0.0)	0 (10.5)	1 (0.6)	2 (12.5)	0 (0.0)	1 (5.3)	0 (0.0)	6 (2.4)
	친인척	0 (0.0)	0 (0.0)	0 (0.0)	3 (1.7)	0 (0.0)	0 (0.0)	1 (5.3)	0 (0.0)	4 (1.6)
	형제 · 자매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소계	0 (0.0)	0 (0.0)	0 (10.5)	8 (4.6)	2 (12.5)	0 (0.0)	2 (10.5)	0 (0.0)	14 (5.6)
타인	부모의 동거인	0 (0.0)	0 (0.0)	0 (0.0)	2 (1.2)	0 (0.0)	0 (0.0)	0 (0.0)	0 (0.0)	2 (0.8)
	교사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학원강사	0 (0.0)	1 (20.0)	1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2 (0.8)
	시설종사자	0 (0.0)	0 (0.0)	0 (0.0)	7 (4.1)	2 (12.5)	1 (10.0)	2 (10.5)	0 (0.0)	12 (4.9)
	이웃	0 (0.0)	0 (0.0)	0 (0.0)	5 (2.9)	0 (0.0)	0 (0.0)	0 (0.0)	0 (0.0)	5 (2.0)
	낯선 사람	0 (0.0)	0 (0.0)	0 (0.0)	7 (4.1)	0 (0.0)	0 (0.0)	0 (0.0)	0 (0.0)	7 (2.8)
	위탁부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소계	0 (0.0)	1 (20.0)	1 (0.0)	23 (13.5)	2 (12.5)	2 (20.0)	2 (10.5)	0 (0.0)	30 (12.1)
기타		0 (0.0)	0 (0.0)	0 (0.0)	3 (1.7)	0 (0.0)	0 (0.0)	1 (5.3)	1 (20.0)	5 (2.0)
계		2 (100.0)	5 (100.0)	5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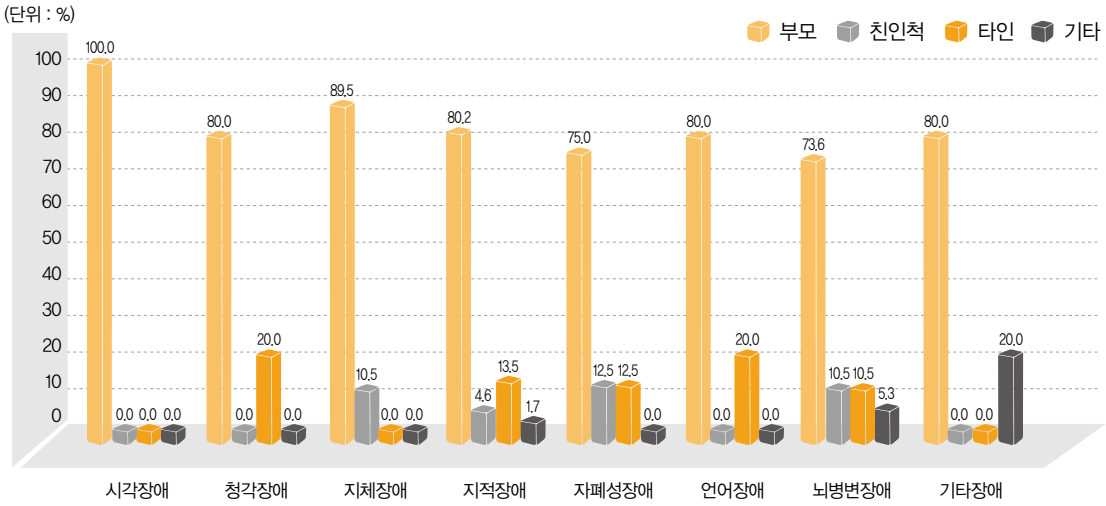

〈그림 5-91〉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장애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가. 장애유형별 발생장소

〈표 5-10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아동 대상의 사례 중 약 82.0%에 해당하는 203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가 전체의 약 80%인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와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각각 8건(3.2%)이었는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각각 0.9%, 1.8%인 것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라는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만큼 이와 비례하여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사례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사례에 집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설 내 집단 사례에 대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사태를 예방시키기 위하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례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도 필요하다.

〈표 5-107〉 장애유형별 발생장소

(단위 : 건, %)

장애유형 / 발생장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가정 내	1 (50.0)	2 (40.0)	18 (94.7)	144 (83.8)	13 (81.2)	7 (70.0)	15 (79.0)	3 (60.0)	203 (82.0)
집근처 또는 길가	0 (0.0)	0 (0.0)	0 (0.0)	9 (5.2)	0 (0.0)	0 (0.0)	0 (0.0)	1 (20.0)	10 (4.0)
친인척의 집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이웃집	0 (0.0)	0 (0.0)	0 (0.0)	3 (1.7)	0 (0.0)	0 (0.0)	0 (0.0)	0 (0.0)	3 (1.2)
어린이집	0 (0.0)	0 (0.0)	0 (0.0)	1 (0.6)	2 (12.5)	1 (10.0)	0 (0.0)	0 (0.0)	4 (1.6)
학원	0 (0.0)	1 (20.0)	0 (0.0)	1 (0.6)	0 (0.0)	1 (10.0)	0 (0.0)	0 (0.0)	3 (1.2)
병원	1 (50.0)	1 (20.0)	1 (5.3)	3 (1.7)	0 (0.0)	0 (0.0)	2 (10.5)	0 (0.0)	8 (3.2)
복지시설	0 (0.0)	0 (0.0)	0 (0.0)	5 (2.9)	1 (6.3)	0 (0.0)	2 (10.5)	0 (0.0)	8 (3.2)
파악 안 됨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0 (0.0)	0 (0.0)	1 (0.4)
기타	0 (0.0)	1 (20.0)	0 (0.0)	4 (2.3)	0 (0.0)	1 (10.0)	0 (0.0)	1 (20.0)	7 (2.8)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나.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장애아동 대상 아동학대사례를 발생빈도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5-108〉과 같다.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총 248건 중 119건으로 48.0%에 해당하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30건(12.1%), 1주일에 한 번은 29건(11.7%)을 차지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 248건 중 178건(71.8%)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표 4-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아동학대사례 발생빈도와 유사한 양상을 드러낸 것으로 과반수의 피해아동은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의 매우 빈번한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8〉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단위 : 건, %)

장애유형 / 발생빈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거의 매일	2 (100.0)	4 (80.0)	8 (42.0)	82 (47.7)	7 (43.7)	6 (60.0)	6 (31.5)	4 (80.0)	119 (48.0)
2~3일에 한 번	0 (0.0)	0 (0.0)	5 (26.3)	20 (11.6)	2 (12.5)	1 (10.0)	2 (10.5)	0 (0.0)	30 (12.1)
1주일에 한 번	0 (0.0)	0 (0.0)	1 (5.3)	20 (11.6)	1 (6.3)	1 (10.0)	5 (26.3)	1 (20.0)	29 (11.7)
2주일에 한 번	0 (0.0)	1 (20.0)	0 (0.0)	9 (5.2)	0 (0.0)	1 (10.0)	1 (5.3)	0 (0.0)	12 (4.8)
1개월에 한 번	0 (0.0)	0 (0.0)	2 (10.5)	11 (6.4)	4 (25.0)	1 (10.0)	1 (5.3)	0 (0.0)	19 (7.7)
2~3개월에 한 번	0 (0.0)	0 (0.0)	1 (5.3)	8 (4.7)	0 (0.0)	0 (0.0)	1 (5.3)	0 (0.0)	10 (4.0)
6개월에 한 번	0 (0.0)	0 (0.0)	1 (5.3)	4 (2.3)	2 (12.5)	0 (0.0)	0 (0.0)	0 (0.0)	7 (2.8)
일회성	0 (0.0)	0 (0.0)	1 (5.3)	18 (10.5)	0 (0.0)	0 (0.0)	3 (15.8)	0 (0.0)	22 (8.9)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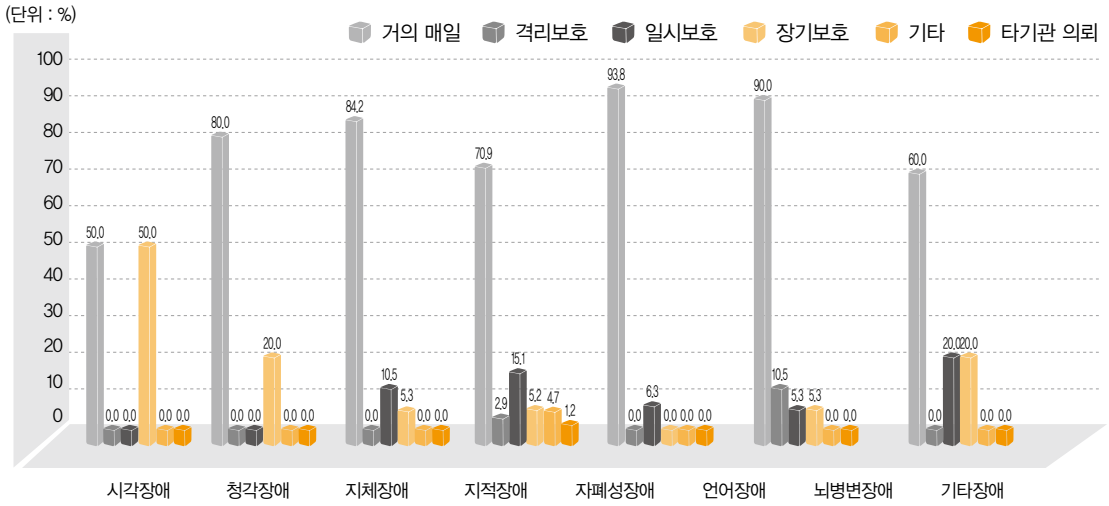

〈그림 5-92〉 장애유형별 발생빈도

6 장애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 중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5-109〉와 같다. 방임에 의해 접수된 사례가 137건(3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106건(28.5%), 신체학대 91건(24.5%), 성학대 34건(9.1%)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유기는 4건(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1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학대로 36.2%이었으며, 그 다음은 방임으로 31.9%였다. 장애아동 대상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경우, 부모가 시기에 맞는 양육 방법을 찾지 못하여 교육 및 의료 등 측면에 있어 적절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09〉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장애유형 / 학대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신체학대	0 (0.0)	0 (0.0)	6 (23.1)	62 (23.6)	9 (37.5)	3 (21.4)	9 (32.1)	2 (22.2)	91 (24.5)
정서학대	0 (0.0)	1 (16.7)	7 (26.9)	76 (28.9)	9 (37.5)	4 (28.6)	8 (28.6)	1 (11.2)	106 (28.5)
성학대	0 (0.0)	1 (16.7)	0 (0.0)	30 (11.4)	0 (0.0)	1 (7.1)	2 (7.1)	0 (0.0)	34 (9.1)
방임	2 (100.0)	4 (66.6)	13 (50.0)	95 (36.1)	5 (20.8)	6 (42.9)	8 (28.6)	4 (44.4)	137 (36.8)
유기	0 (0.0)	0 (0.0)	0 (0.0)	0 (0.0)	1 (4.2)	0 (0.0)	1 (3.6)	2 (22.2)	4 (1.1)
계	2 (100.0)	6 (100.0)	26 (100.0)	263 (100.0)	24 (100.0)	14 (100.0)	28 (100.0)	9 (100.0)	372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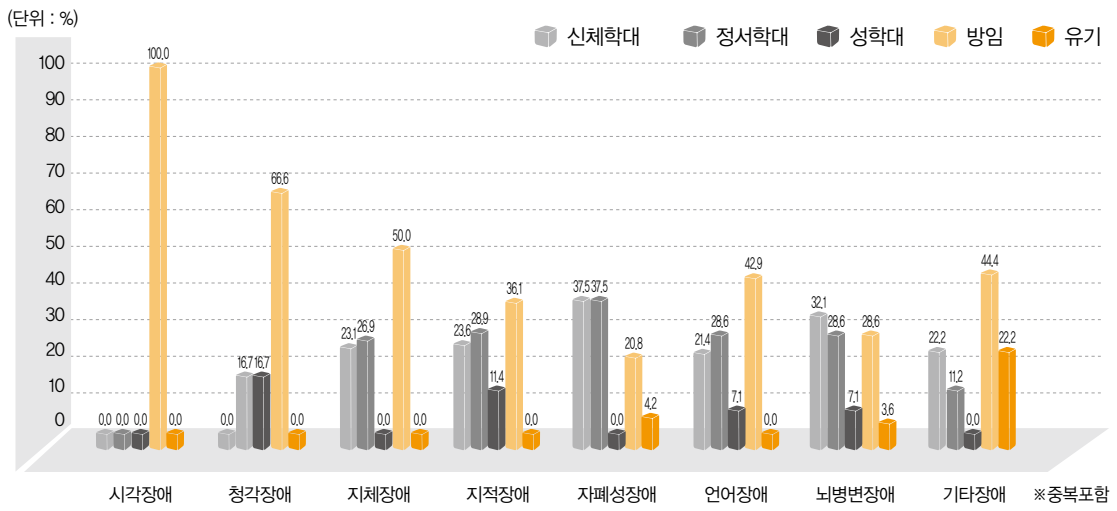

〈그림 5-93〉 장애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7 장애아동 사례의 조치결과

가.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피해아동 대상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에게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는 〈표 5-110〉과 같다. 총 248건 중 학대 발생 이후 원가정에 보호된 경우는 185건(74.6%)을 차지하였다.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등의 방식으로 격리보호된 아동은 61건(24.5%)이었으며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개입하기 위하여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는 2건(0.9%)이었다. 이는 〈표 4-23〉에서 나타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전체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가족보존'의 원칙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 내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해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 감소와 동시에 가족 기능 향상을 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격리보호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시보호가 31건(12.5%)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보호가 14건(5.6%), 그리고 친인척보호와 기타가 각각 8건(3.2%)에 해당하였다. 장애아동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 일반 피해아동과는 상이하게 친인척에 보호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신 장기보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친인척에 의해 보호되기보다 장애 시설 등으로 격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10〉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원가정보호		1 (50.0)	4 (80.0)	16 (84.2)	122 (70.9)	15 (93.7)	9 (90.0)	15 (78.9)	3 (60.0)	185 (74.6)
격리보호	친인척보호	0 (0.0)	0 (0.0)	0 (0.0)	5 (2.9)	0 (0.0)	1 (10.0)	2 (10.5)	0 (0.0)	8 (3.2)
	일시보호	0 (0.0)	0 (0.0)	2 (10.5)	26 (15.1)	1 (6.3)	0 (0.0)	1 (5.3)	1 (20.0)	31 (12.5)
	장기보호	1 (50.0)	1 (20.0)	1 (5.3)	9 (5.2)	0 (0.0)	0 (0.0)	1 (5.3)	1 (20.0)	14 (5.6)
	기타	0 (0.0)	0 (0.0)	0 (0.0)	8 (4.7)	0 (0.0)	0 (0.0)	0 (0.0)	0 (0.0)	8 (3.2)
	소계	1 (50.0)	1 (20.0)	3 (15.8)	48 (27.9)	1 (6.3)	1 (10.0)	4 (21.1)	2 (40.0)	61 (24.5)
타기관 의뢰		0 (0.0)	0 (0.0)	0 (0.0)	2 (1.2)	0 (0.0)	0 (0.0)	0 (0.0)	0 (0.0)	2 (0.9)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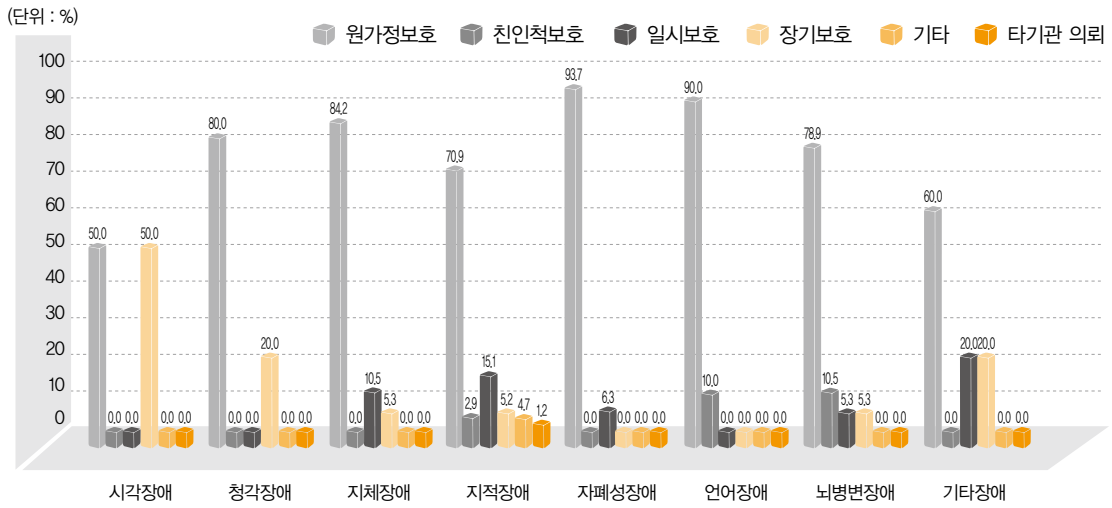

〈그림 5-94〉 장애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장애아동 대상의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표 5-111〉과 같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상담 및 교육,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지속관찰이 200건으로 전체의 약 80.6%를 차지하였다. 또한 고소 · 고발, 만나지 못함, 타기관 의뢰는 각각 22건(8.9%), 16건(6.5%), 10건(4.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애아동 대상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111〉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장애유형 / 조치결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장애	계
지속관찰	2 (100.0)	4 (80.0)	19 (100.0)	136 (79.0)	14 (87.5)	7 (70.0)	15 (78.9)	3 (60.0)	200 (80.6)
고소 · 고발	0 (0.0)	1 (20.0)	0 (0.0)	16 (9.3)	0 (0.0)	2 (20.0)	2 (10.5)	1 (20.0)	22 (8.9)
타기관 의뢰	0 (0.0)	0 (0.0)	0 (0.0)	8 (4.7)	0 (0.0)	1 (10.0)	1 (5.3)	0 (0.0)	10 (4.0)
만나지 못함	0 (0.0)	0 (0.0)	0 (0.0)	12 (7.0)	2 (12.5)	0 (0.0)	1 (5.3)	1 (20.0)	16 (6.5)
계	2 (100.0)	5 (100.0)	19 (100.0)	172 (100.0)	16 (100.0)	10 (100.0)	19 (100.0)	5 (100.0)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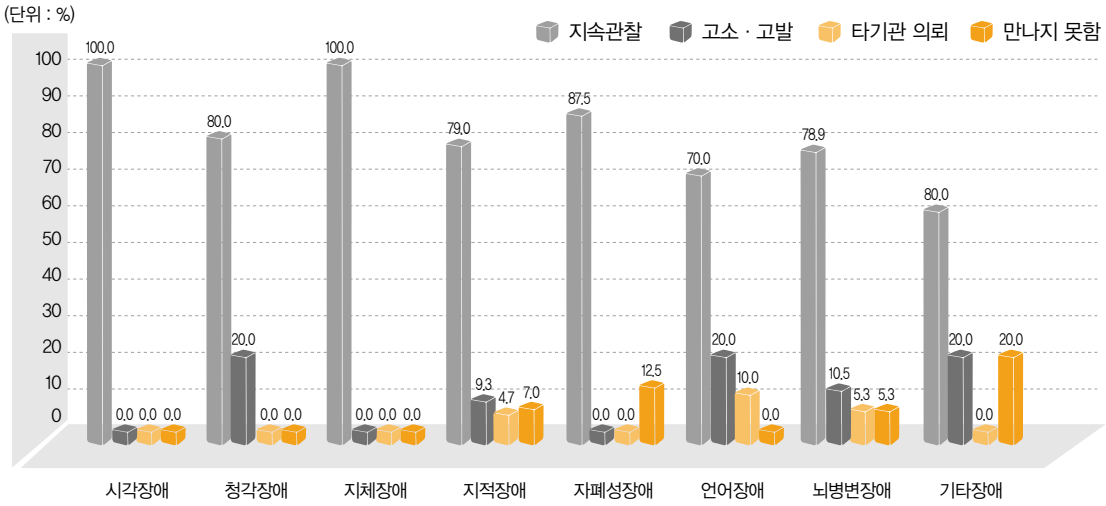

〈그림 5-95〉 장애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6 장

교육 및 홍보사업

제6장 교육 및 훈련사업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의무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사업은 787,997명에게 총 20,307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1〉와 〈표 6-2〉에서 교육사업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677,586명에게 18,438회 제공되었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106,196명에게 1,837회 실시된 것으로 집계되어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신고의무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발히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보다 유리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이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만큼 신고의무자 대상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은 매우 분명하다. 특히 일반인 대상 교육은 아동에게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된 아동 대상 교육은 11,818회(596,504명)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 부모에게 745회(28,316명), 자원봉사자에게 410회(2,845명), 실습생, 기관방문자, 일반 공무원 등 기타 대상에게 5,422회(46,156명), 경찰에게 43회(3,765명)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시설종사자에게 제공된 교육이 1,280회(87,94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교원 483회(12,6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2회(1,086명), 소방구급대원 26회(1,186명), 의료인 11회(795명),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5회(2,5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인원은 많으나 실시한 횟수의 경우 연간 의료인 11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2회, 소방구급대원 26회,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5회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 및 기관별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 12개에서 22개의 군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렇듯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회 및 법적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 직업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1〉 일반인 교육

(단위 : 회, 명)

구분 / 지역 및 기관		일 반 인					
		아동	부모	경찰	자원봉사자	기타	소계
중 앙		0 (0)	0 (0)	0 (0)	0 (0)	3 (70)	3 (70)
서 울	서울특별시	13 (810)	8 (456)	1 (6)	0 (0)	16 (1,231)	38 (2,503)
	서울특별시동부	8 (388)	1 (12)	0 (0)	0 (0)	13 (263)	22 (663)
	서울강서	285 (17,559)	32 (718)	1 (3)	0 (0)	5 (27)	323 (18,307)
	서울은평	353 (20,189)	7 (272)	0 (0)	0 (0)	8 (67)	368 (20,528)
	서울영등포	170 (15,472)	5 (99)	0 (0)	9 (20)	5 (234)	189 (15,825)
	서울성북	184 (15,837)	7 (445)	0 (0)	0 (0)	3 (65)	194 (16,347)
	서울마포	123 (8,119)	18 (728)	0 (0)	9 (41)	19 (685)	169 (9,573)
	소 계	1,136 (78,374)	78 (2,730)	2 (9)	18 (61)	69 (2,572)	1,303 (83,746)
부 산	부산광역시	99 (7,443)	1 (133)	7 (1,084)	2 (52)	9 (565)	118 (9,277)
	부산동부	493 (10,042)	61 (1,177)	3 (230)	20 (152)	15 (291)	592 (11,892)
	소 계	592 (17,485)	62 (1,310)	10 (1,314)	22 (204)	24 (856)	710 (21,169)
대 구	대구광역시	731 (17,946)	112 (3,574)	1 (80)	8 (230)	4,837 (5,479)	5,689 (27,309)
인 천	인천광역시	1,102 (39,498)	11 (210)	1 (200)	40 (64)	23 (847)	1,177 (40,819)
	인천북부	229 (28,888)	37 (1,123)	2 (150)	0 (0)	4 (31)	272 (30,192)
	소 계	1,331 (68,386)	8 (1,333)	3 (350)	40 (64)	27 (878)	1,449 (71,011)
광 주	광주광역시	161 (3,998)	21 (394)	1 (20)	6 (138)	10 (175)	199 (4,725)
대 전	대전광역시	320 (16,279)	18 (421)	0 (0)	0 (0)	20 (439)	358 (17,139)
울 산	울산광역시	283 (10,323)	0 (0)	0 (0)	8 (168)	6 (278)	297 (10,769)
경 기	경기도	754 (29,889)	28 (3,425)	0 (0)	21 (105)	12 (406)	815 (33,825)
	경기북부	175 (16,998)	12 (1,152)	0 (0)	1 (3)	3 (60)	191 (18,213)
	경기성남	180 (21,278)	30 (1,924)	0 (0)	20 (75)	6 (380)	236 (23,657)
	경기고양	271 (20,549)	15 (727)	0 (0)	2 (210)	1 (40)	289 (21,526)
	경기부천	127 (5,374)	0 (0)	0 (0)	13 (52)	2 (40)	142 (5,466)
	경기화성	221 (26,513)	42 (2,131)	0 (0)	63 (150)	13 (101)	339 (28,895)
	경기남양주	131 (10,245)	2 (93)	1 (50)	17 (60)	5 (378)	156 (10,826)
	안산시	166 (8,257)	0 (0)	1 (150)	31 (38)	17 (299)	215 (8,744)
	소 계	2,025 (139,103)	129 (9,452)	2 (200)	168 (693)	59 (1,704)	2,383 (151,152)
강 원	강원도	220 (5,286)	31 (649)	0 (0)	3 (43)	3 (34)	257 (6,012)
	강원동부	146 (10,225)	3 (50)	6 (462)	2 (29)	5 (139)	162 (10,905)
	원주시	552 (20,043)	1 (30)	0 (0)	2 (0)	0 (0)	555 (20,103)
	소 계	918 (35,554)	35 (729)	6 (462)	7 (102)	8 (173)	974 (37,020)
충 북	충청북도	599 (28,821)	25 (828)	0 (0)	13 (74)	170 (24,052)	807 (53,775)
	충북북부	152 (5,765)	11 (258)	0 (0)	18 (220)	9 (299)	190 (6,542)
	충북남부	78 (2,532)	2 (20)	1 (40)	3 (16)	0 (0)	84 (2,608)
	소 계	829 (37,118)	38 (1,106)	1 (0)	34 (310)	179 (24,351)	1,081 (62,925)
충 남	충청남도	642 (25,532)	21 (36)	2 (160)	23 (125)	5 (400)	693 (27,053)
	충청남도남부	143 (12,534)	10 (296)	2 (34)	15 (79)	0 (0)	170 (12,943)
	소 계	785 (38,066)	31 (1,132)	4 (194)	38 (204)	5 (400)	863 (39,996)
전 북	전라북도	192 (16,747)	16 (634)	1 (60)	0 (0)	13 (633)	222 (18,074)
	전라북도서부	242 (16,943)	29 (1,038)	1 (1)	17 (78)	9 (946)	298 (19,006)
	전라북도동부	404 (12,746	31 (1,922)	0 (0)	3 (32)	15 (477)	453 (15,177)
	소 계	838 (46,436)	76 (3,594)	2 (61)	20 (110)	37 (2,056)	973 (52,257)
전 남	전라남도	68 (8,450)	5 (230)	3 (190)	8 (196)	2 (110)	86 (9,176)
	전남목포	277 (16,621)	14 (342)	0 (0)	1 (10)	7 (577)	299 (17,550)
	소 계	345 (25,071)	19 (572)	3 (190)	9 (206)	9 (687)	385 (26,726)
경 북	경상북도	143 (4,436)	3 (116)	3 (148)	2 (24)	11 (1,168)	162 (5,892)
	경북안동	41 (899)	3 (44)	0 (0)	8 (147)	6 (252)	58 (1,342)
	경북포항	591 (22,307)	14 (786)	2 (332)	0 (0)	14 (293)	621 (23,718)
	구 미	73 (4,623)	9 (190)	0 (0)	0 (0)	0 (0)	82 (4,813)
	소 계	848 (32,265)	29 (1,136)	5 (480)	10 (171)	31 (1,713)	923 (35,765)
경 남	경상남도	96 (8,372)	1 (6)	0 (0)	9 (16)	43 (3,296)	149 (11,690)
	경남서부	110 (2,922)	14 (358)	0 (0)	1 (21)	8 (314)	133 (3,615)
	소 계	206 (11,294)	15 (364)	0 (0)	10 (37)	51 (3,610)	282 (15,30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93 (8,937)	31 (421)	1 (15)	11 (136)	15 (452)	251 (9,961)
	서귀포시	277 (9,869)	3 (48)	2 (350)	1 (11)	32 (263)	315 (10,541)
	소 계	470 (18,806)	34 (469)	3 (365)	12 (147)	47 (715	566 (20,502)
계		11,818 (596,504)	745 (28,316)	43 (3,765)	410 (2,845)	5,422 (46,156)	18,438 (677,586)

〈표 6-2〉 신고의무자 교육

(단위 : 회, 명)

구분 /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세미나	계
		교원	의료인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소방 구급대원	학원 및 교습소종사자	소계		
중 앙		0 (0)	3 (340)	16 (1,850)	2 (80)	0 (0)	0 (0)	21 (2,270)	1 (125)	25 (2,465)
서 울	서울특별시	0 (0)	0 (0)	33 (6,537)	0 (0)	0 (0)	0 (0)	33 (6,537)	0 (0)	71 (9,040)
	서울특별시동부	0 (0)	0 (0)	23 (2,840)	0 (0)	0 (0)	0 (0)	23 (2,840)	2 (191)	47 (3,694)
	서울강서	1 (5)	0 (0)	19 (1,045)	0 (0)	0 (0)	0 (0)	20 (1,050)	0 (0)	343 (19,357)
	서울은평	4 (508)	0 (0)	9 (300)	0 (0)	0 (0)	0 (0)	13 (808)	0 (0)	381 (21,336)
	서울영등포	0 (0)	0 (0)	14 (2,874)	0 (0)	0 (0)	0 (0)	14 (2,874)	0 (0)	203 (18,699)
	서울성북	3 (229)	0 (0)	8 (514)	1 (2	0 (0)	0 (0)	12 (745)	0 (0)	206 (17,092)
	서울마포	0 (0)	1 (8)	25 (2,150)	0 (0)	0 (0)	0 (0)	26 (2,158)	0 (0)	195 (11,731)
	소 계	8 (742)	1 (8)	131 (16,260)	1 (2)	0 (0)	0 (0)	141 (17,012)	2 (191)	1,446 (100,949)
부 산	부산광역시	0 (0)	0 (0)	29 (2,321)	0 (0)	4 (335)	0 (0)	33 (2,656)	1 (334)	152 (12,267)
	부산동부	21 (1,108)	4 (277)	59 (5,793)	4 (18)	0 (0)	1 (10)	89 (7,206)	0 (0)	681 (19,098)
	소 계	21 (1,108)	4 (277)	88 (8,114)	4 (18)	4 (335)	1 (10)	122 (9,862)	1 (334)	833 (31,365)
대 구	대구광역시	111 (1,710)	0 (0)	19 (2,466)	0 (0)	0 (0)	0 (0)	130 (4,176)	1 (350)	5,820 (31,835)
인 천	인천광역시	2 (43)	0 (0)	380 (4,173)	0 (0)	0 (0)	0 (0)	382 (4,216)	0 (0)	1,559 (45,035)
	인천북부	35 (728)	1 (60)	2 (100)	0 (0)	0 (0)	0 (0)	38 (888)	1 (65)	311 (31,145)
	소 계	37 (771)	1 (60)	382 (4,273)	0 (0)	0 (0)	0 (0)	420 (5,104)	1 (65)	1,870 (76,180)
광 주	광주광역시	10 (299)	1 (20)	27 (2,825)	2 (11)	2 (200)	0 (0)	42 (3,355)	0 (0)	241 (8,080)
대 전	대전광역시	4 (152)	0 (0)	23 (1,951)	0 (0)	0 (0)	0 (0)	27 (2,103)	0 (0)	385 (19,242)
울 산	울산광역시	1 (40)	0 (0)	22 (2,323)	0 (0)	0 (0)	0 (0)	23 (2,363)	0 (0)	320 (13,132)
경 기	경기도	8 (370)	0 (0)	29 (3,588)	0 (0)	0 (0)	0 (0)	37 (3,958)	3 (137)	855 (37,920)
	경기북부	3 (120)	0 (0)	8 (1,561)	0 (0)	0 (0)	0 (0)	11 (1,681)	1 (81)	203 (19,975)
	경기성남	62 (2,394)	0 (0)	4 (272)	0 (0)	0 (0)	0 (0)	66 (2,666)	1 (70)	303 (26,393)
	경기고양	58 (466)	0 (0)	29 (184)	0 (0)	0 (0)	1 (3)	88 (653)	1 (200)	378 (22,379)
	경기부천	1 (15)	0 (0)	15 (2,521)	0 (0)	0 (0)	0 (0)	16 (2,536)	1 (150)	159 (8,152)
	경기화성	29 (752)	0 (0)	16 (2,398)	0 (0)	0 (0)	0 (0)	45 (3,150)	1 (27)	385 (32,072)
	경기남양주	16 (81)	0 (0)	102 (2,019)	0 (0)	0 (0)	0 (0)	118 (2,100)	0 (0)	274 (12,926)
	안산시	0 (0)	0 (0)	11 (1,138)	1 (55)	0 (0)	2 (2,500)	14 (3,693)	0 (0)	229 (12,437)
	소 계	177 (4,198)	0 (0)	214 (13,681)	1 (55)	0 (0)	3 (2,503)	395 (20,437)	8 (665)	2,786 (172,254)
강 원	강원도	28 (619)	0 (0)	18 (965)	0 (0)	0 (0)	0 (0)	46 (1,584)	0 (0)	303 (7,596)
	강원동부	4 (35)	1 (90)	17 (1,191)	8 (63)	4 (28)	1 (2)	35 (1,409)	0 (0)	197 (12,314)
	원주시	2 (50)	0 (0)	4 (375)	0 (0)	0 (0)	0 (0)	6 (425)	0 (0)	561 (20,528)
	소 계	34 (704)	1 (90)	39 (2,531)	8 (63)	4 (28)	1 (2)	87 (3,418)	0 (0)	1,061 (40,438)
충 북	충청북도	2 (152)	0 (0)	6 (293)	3 (380)	0 (0)	0 (0)	11 (825)	0 (0)	818 (54,600)
	충북북부	2 (102)	0 (0)	15 (969)	0 (0)	0 (0)	0 (0)	17 (1,071)	1 (252)	208 (7,865)
	충북남부	0 (0)	0 (0)	7 (365)	0 (0)	0 (0)	0 (0)	7 (365)	1 (252)	92 (3,225)
	소 계	4 (254)	0 (0)	28 (1,627)	3 (380)	0 (0)	0 (0)	35 (2,261)	2 (504)	1,118 (65,690)
충 남	충청남도	4 (653)	0 (0)	30 (3,928)	0 (0)	9 (553)	0 (0)	43 (5,134)	2 (223)	738 (32,410)
	충청남도남부	2 (59)	0 (0)	14 (754)	0 (0)	0 (0)	0 (0)	16 (813)	1 (80)	187 (13,836)
	소 계	6 (712)	0 (0)	44 (4,682)	0 (0)	9 (553)	0 (0)	59 (5,947)	3 (303)	925 (46,246)
전 북	전라북도	2 (40)	0 (0)	32 (5,093)	0 (0)	0 (0)	0 (0)	34 (5,133)	0 (0)	256 (23,207)
	전라북도서부	2 (13)	0 (0)	9 (2,329)	0 (0)	0 (0)	0 (0)	11 (2,342)	2 (150)	311 (21,498)
	전라북도동부	17 (368)	0 (0)	28 (387)	4 (152)	0 (0)	0 (0)	49 (907)	1 (200)	503 (16,284)
	소 계	21 (421)	0 (0)	69 (7,809)	4 (152)	0 (0)	0 (0)	94 (8,382)	3 (350)	1,070 (60,989)
전 남	전라남도	8 (306)	0 (0)	10 (1,048)	1 (22)	7 (70)	0 (0)	26 (1,446)	3 (445)	115 (11,067)
	전남목포	0 (0)	0 (0)	22 (3,398)	0 (0)	0 (0)	0 (0)	22 (3,398)	1 (300)	322 (21,248)
	소 계	8 (306)	0 (0)	32 (4,446)	1 (22)	7 (70)	0 (0)	48 (4,844)	4 (745)	437 (32,315)
경 북	경상북도	1 (10)	0 (0)	0 (2,073)	1 (50)	0 (0)	0 (0)	17 (2,133)	1 (35)	180 (8,060)
	경북안동	2 (270)	0 (0)	4 (480)	0 (0)	0 (0)	0 (0)	6 (750)	1 (38)	65 (2,130)
	경북포항	1 (15)	0 (0)	7 (1,578)	0 (0)	0 (0)	0 (0)	8 (1,593)	0 (0)	629 (25,311)
	구 미	0 (0)	0 (0)	8 (877)	0 (0)	0 (0)	0 (0)	8 (877)	0 (0)	90 (5,690)
	소 계	4 (295)	0 (0)	34 (5,008)	1 (50)	0 (0)	0 (0)	39 (5,353)	2 (73)	964 (41,191)
경 남	경상남도	10 (46)	0 (0)	34 (5,884)	3 (198)	0 (0)	0 (0)	47 (6,328)	1 (250)	197 (18,268)
	경남서부	12 (357)	0 (0)	8 (840)	1 (45)	0 (0)	0 (0)	21 (1,242)	0 (0)	154 (4,857)
	소 계	22 (603)	0 (0)	42 (6,724)	4 (243)	0 (0)	0 (0)	68 (7,570)	1 (250)	351 (23,12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4 (268)	0 (0)	14 (867)	0 (0)	0 (0)	0 (0)	28 (1,135)	1 (200)	280 (11,296)
	서귀포시	1 (90)	0 (0)	56 (504)	1 (10)	0 (0)	0 (0)	58 (604)	2 (60)	375 (11,205)
	소 계	15 (358)	0 (0)	70 (1,371)	1 (10)	0 (0)	0 (0)	86 (1,739)	3 (260)	655 (22,501)
계		483 (12,673)	11 (795)	1,280 (87,941)	32 (1,086)	26 (1,186)	5 (2,515)	1,837 (106,196)	32 (4,215)	20,307 (787,99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은 브로셔, 포스터, 전단 등 인쇄물 홍보와 방송, 신문, 잡지와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 웹진 등 인터넷 홍보, 그리고 어린이주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등에 실시되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으로 구분된다.

〈표 6-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11년 실시된 홍보활동은 총 13,336,719회였으며, 이 중에서 인쇄물 홍보가 1,143,844회, 언론 홍보가 26,181회, 인터넷 홍보 1,078,026회, 캠페인이 1,116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으로 인쇄물 홍보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STOP&LOVE 광고가 제작되어 케이블 TV를 통해 송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상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앞으로 공중파 TV를 통한 공익광고 등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3〉 홍보사업

(단위 : 장, 개, 일, 회)

구분 / 지역 및 기관		인쇄물 홍보				언 론			인터넷 (일)	캠페인 (회)	기타 (회)	계
		브로셔(장)	포스터(장)	전단(장)	기타(개)	방송(회)	신문(회)	잡지(회)				
중 앙		730	0	0	750	30	190	2	96,671	12	260	98,645
서 울	서울특별시	7,322	0	2,303	49,412	3	0	0	25,615	6	0	84,661
	서울특별시동부	1,732	93	0	5,796	1	0	0	419,469	4	0	427,095
	서울강서	1,437	249	2,163	4,353	0	0	0	3,356	6	0	11,564
	서울은평	1,999	397	0	2,555	1	192	0	1,608	10	0	6,762
	서울영등포	3,214	230	0	4,501	8	32	0	11,324	16	0	19,325
	서울성북	2,378	550	30	358	0	1	0	5,892	5	2	9,216
	서울마포	3,061	430	0	2,980	3	0	0	18,721	25	0	25,220
	소 계	21,143	1,949	4,496	69,955	16	225	0	485,985	72	2	583,843
부 산	부산광역시	0	0	13,371	20,424	94	49	0	15,412	27	271	49,648
	부산동부	4,884	238	1,213	40,480	112	36	2	66,037	13	92	113,107
	소 계	4,884	238	14,584	60,904	206	85	2	81,449	40	363	162,755
대 구	대구광역시	9,116	585	272	28,874	342	646	0	149,959	64	631,301	821,159
인 천	인천광역시	5,063	10	335	26,757	2,190	3	0	18,059	19	732,365	784,801
	인천북부	1,058	0	132,000	1,084	0	4	0	671	10	0	134,827
	소 계	6,121	10	132,335	27,841	2,190	7	0	18,730	29	732,365	919,628
광 주	광주광역시	5,324	200	0	24,289	497	324	1	17,982	16	0	48,633
대 전	대전광역시	2,268	0	4,414	645	0	108	0	1,830	20	2	9,287
울 산	울산광역시	8,884	9	25,171	4,141	6,207	3,769	0	8,318	24	704	57,227
경 기	경기도	6,673	2,612	0	10,202	3	29	0	5,298	25	0	24,842
	경기북부	856	40	0	800	0	5	0	4,561	5	0	6,267
	경기성남	2,155	0	0	10,092	0	1	0	2,130	5	0	14,383
	경기고양	4,275	219	1,500	2,250	0	83	1	4,729	14	0	13,071
	경기부천	3,432	144	0	10,720	0	5	8	7,675	10	0	21,994
	경기화성	2,740	119	0	689	0	10	0	2,022	10	0	5,590
	경기남양주	3,423	258	0	8,674	0	1	0	11,559	40	0	23,955
	안산시	1,696	137	0	1,081	0	3	7	8,978	24	7	11,933
	소 계	25,250	3,529	1,500	44,508	3	137	16	46,952	133	7	122,035
강 원	강원도	4,351	90	0	10,399	1,581	151	0	25,839	9	0	42,420
	강원동부	12,259	256	0	29,500	1,461	95	1	11,314	27	0	54,913
	원주시	1,302	18	0	1,963	3	30	0	6,943	18	13	10,290
	소 계	17,912	364	0	41,862	3,045	276	1	44,096	54	13	107,623
충 북	충청북도	3,936	217	4,072	26,399	4	38	2	1,621	13	28	36,330
	충북북부	642	337	9,785	19,360	2	3	107	2,297	29	3,462	36,024
	충북남부	4,930	238	0	6,023	0	9	0	1,359	27	270	12,856
	소 계	9,508	792	13,857	51,782	6	50	109	5,277	69	3,760	85,210
충 남	충청남도	6,871	0	7,130	0	2	112	0	1,602	19	0	15,736
	충청남도남부	3,542	199	5,116	8,779	1	16	2	763	17	18	18,453
	소 계	10,413	199	12,246	8,779	3	128	2	2,365	36	18	34,189
전 북	전라북도	7,532	29	0	3,488	26	117	0	2,149	50	122	13,513
	전라북도서부	4,572	112	6,924	8,752	369	224	0	1,048	20	121	22,142
	전라북도동부	1,809	249	3,965	9,372	365	4	0	653	25	433	16,875
	소 계	13,913	390	10,889	21,612	760	345	0	3,850	95	676	52,530
전 남	전라남도	8,176	2,532	5,640	7,572	897	304	3	4,015	20	9,626,892	9,656,051
	전남목포	4,909	109	900	1,324	398	60	0	894	14	3,025	11,633
	소 계	13,085	2,641	6,540	8,896	1,295	364	3	4,909	34	9,629,917	9,667,684
경 북	경상북도	6,565	652	2,186	12,614	1,461	730	0	8,207	32	365	32,812
	경북안동	22,867	429	0	17,366	3	489	0	21,592	21	2,215	64,982
	경북포항	4,585	220	4,000	7,151	5	280	187	1,304	10	10,028	27,770
	구 미	15,670	238	4,090	10,671	53	188	20	9,611	59	52,201	92,801
	소 계	49,687	1,539	10,276	47,802	1,522	1,687	207	40,714	122	64,809	218,365
경 남	경상남도	7,855	195	8,760	40,624	18	342	1	17,575	68	3,650	79,088
	경남서부	2,382	130	495	27,970	10	60	0	13,216	22	284	44,569
	소 계	10,237	325	9,255	68,594	28	402	1	30,791	90	3,934	123,657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50,685	852	14,336	48,680	28	465	4	15,245	181	15,333	145,809
	서귀포시	10,687	689	5,661	3,940	54	380	13	2,903	25	4,088	78,440
	소 계	61,372	1,541	19,997	82,620	82	845	17	38,148	206	19,421	224,249
계		269,847	14,311	265,832	593,854	16,232	9,588	361	1,078,026	1,116	11,087,552	13,336,719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7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본 장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상담원 수와 아동학대 관련 지표들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로는 상담원의 업무량과 연관되어 있는 신고 접수 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 건수, 피해아동 원가정보호와 격리보호조치 건수, 타기관 의뢰 건수, 대상별 서비스제공 횟수,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횟수를 선정하였다.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정리한 〈표 7-1〉에 의하면, 신고 접수된 10,143건 가운데 82.1%에 해당하는 8,325건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정되었으며, 이 사례를 대상으로 14,278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각 사례 당 평균 1.7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 중에는 신고접수 후 야간이더라도 12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958건이었으며,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필요한 조치와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는 6,058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킨 사례가 1,555건, 원가정에 보호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위험 요소를 감소시킨 사례가 4,462건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킨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25.6%를 차지하였는데, 이처럼 사례개입 초기에 아동을 격리 보호하는 사례들은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여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례이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해야 하는 사례이다. 여기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 · 심리적 치료와 함께 아동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보호자를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격리보호조치에 대한 설득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한 사례 당 투입되는 상담원의 업무량은 더욱 많아진다.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서비스 개입이 요구되어 타기관으로 의뢰 조치된 사례는 총 40건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조치에 비해 미비한 수치이다.

한편 2011년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에서 최종적으로 고소 ·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총 389건으로 집계되어 전체 사례의 6.4%에 해당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수사관에 의한 피해아동 조사 및 진술녹화 또는 수사기관의 참조인 조사 또는 법원의 심리과정 시 피해아동의 보조인으

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는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과중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후유증 극복과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요인 감소 및 재학대 방지, 그리고 학대 발생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게 310,406회, 학대행위자에게 51,147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32,07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사례는 아니지만 일반상담 및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에 21,498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공한 서비스 총량은 415,122회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등 총 785,532명에게 20,282회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하였고, 인쇄물 · 언론 · 인터넷 · 캠페인 등을 통해 13,238,074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7-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단위 : 명, 건, 회)

항 목			계
상담 지원 사업	상담원(기관장 포함)		312
	신고 접수		10,143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958
	아동학대의심사례		7,367
	현장조사		14,278
	아동학대사례		6,058
	고소 · 고발		389
	원가정보호 조치		4,462
	격리보호 조치		1,555
	타기관 의뢰		40
	서비스제공	피해아동	310,406
		학대행위자	51,147
		부모 또는 가족	32,071
		아동학대외사례의 서비스	21,498
		소 계	415,122
교육 · 홍보 사업	교육사업	횟수	20,282
		인원수	785,532
	홍보사업		13,238,074

*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표 7-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 명, 건, 회)

지역 및 기관 \ 항목		상담원 (기관장 포함)	신고 접수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 사례	고소 · 고발	원가정 보호조치	격리보호 조치	타기관 의뢰
서 울	서울특별시	7	300	2	272	305	215	7	38	175	2
	서울특별시동부	7	233	35	181	476	134	12	90	43	0
	서울강서	6	136	4	110	224	82	1	65	17	0
	서울은평	6	186	13	138	268	120	3	76	40	4
	서울영등포	6	134	11	100	171	83	10	71	12	0
	서울성북	6	134	39	83	231	95	6	74	21	0
	서울마포	5	130	5	117	175	111	5	73	37	1
	소 계	43	1,253	109	1,001	1,850	840	44	487	345	7
부 산	부산광역시	6	332	22	231	361	143	6	97	42	4
	부산동부	5	236	7	196	333	148	2	101	4	3
	소 계	11	568	29	427	694	291	8	198	86	7
대 구	대구광역시	8	351	33	199	364	136	16	79	54	3
인 천	인천광역시	7	290	25	164	388	148	8	107	40	1
	인천북부	6	154	31	119	267	93	7	60	33	0
	소 계	13	444	56	283	655	241	15	167	73	1
광 주	광주광역시	8	303	10	185	362	134	10	102	31	1
대 전	대전광역시	9	257	16	198	338	169	2	145	23	1
울 산	울산광역시	8	472	18	374	726	210	44	176	34	0
경 기	경기도	10	399	61	268	611	221	24	153	68	0
	경기북부	10	236	13	178	282	129	2	91	36	2
	경기성남	5	397	15	296	418	213	14	139	74	0
	경기고양	7	209	11	176	345	159	3	141	16	2
	경기부천	5	255	31	214	446	170	9	140	30	0
	경기화성	8	293	48	205	501	184	20	131	53	0
	경기남양주	5	246	39	171	312	173	7	145	28	0
	안산시	5	238	27	171	326	175	22	146	29	0
	소 계	55	2,273	245	1,679	3,241	1,424	101	1,086	334	4
강 원	강원도	8	170	19	120	235	118	0	93	25	0
	강원동부	8	140	7	97	203	75	2	57	18	0
	원주시	6	136	5	114	176	105	18	89	16	0
	소 계	22	446	31	331	614	298	20	239	59	0
충 북	충청북도	11	285	42	185	431	204	10	157	44	3
	충북북부	7	218	21	162	270	139	9	104	35	0
	충북남부	6	121	9	96	130	66	3	59	6	1
	소 계	24	624	72	443	831	409	22	320	85	4
충 남	충청남도	9	323	42	258	488	217	3	170	44	3
	충청남도남부	5	145	5	111	147	92	2	66	26	0
	소 계	14	468	47	369	635	309	5	236	70	3
전 북	전라북도	11	298	29	238	488	145	4	103	39	3
	전라북도서부	7	207	15	165	215	125	5	113	12	0
	전라북도동부	7	125	4	99	142	97	0	93	4	0
	소 계	25	630	48	502	845	367	9	309	55	3
전 남	전라남도	8	248	12	204	441	162	29	103	57	2
	전남목포	6	205	11	154	303	136	4	116	20	0
	소 계	14	453	23	358	744	298	33	219	77	2
경 북	경상북도	8	163	32	95	220	83	5	55	28	0
	경북안동	7	229	27	125	247	137	2	122	15	0
	경북포항	8	181	18	120	263	112	11	92	19	1
	구 미	8	203	12	152	299	123	9	86	37	0
	소 계	31	776	89	492	1,029	455	27	355	99	1
경 남	경상남도	10	401	97	268	841	262	16	187	73	2
	경남서부	5	160	12	105	193	61	12	46	15	0
	소 계	15	561	109	373	1,034	323	28	233	88	2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7	139	17	79	214	77	4	46	30	1
	서귀포시	5	125	6	74	102	77	1	65	12	0
	소 계	12	264	23	153	316	154	5	111	42	1
계		312	10,143	958	7,367	14,278	6,058	389	4,462	1,555	40

(계속)

지역 및 기관 \ 항목		서비스제공 횟수					교육사업		홍보사업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	아동학대 외 사례의 서비스	소계	횟수	인원수	
서 울	서울특별시	293	89	16	85	483	71	9,040	84,661
	서울특별시동부	19,950	840	555	1,515	22,860	47	3,694	427,095
	서울강서	1,916	873	894	234	3,917	343	19,357	11,564
	서울은평	3,247	693	575	127	4,642	381	21,336	6,762
	서울영등포	2,289	343	149	240	3,021	203	18,699	19,325
	서울성북	2,562	847	371	46	3,826	206	17,092	9,216
	서울마포	6,550	990	310	200	8,050	195	11,731	25,220
	소 계	36,807	4,675	2,870	2,447	46,799	1,446	100,949	583,843
부 산	부산광역시	7,086	1,120	263	448	8,917	152	12,267	49,648
	부산동부	6,594	1,091	521	482	8,688	681	19,098	113,107
	소 계	13,680	2,211	784	930	17,605	833	31,365	162,755
대 구	대구광역시	10,000	1,422	2,366	121	13,909	5,820	31,835	821,159
인 천	인천광역시	9,834	3,266	1,111	92	14,303	1,559	45,035	784,801
	인천북부	4,452	782	297	370	5,901	311	31,145	134,827
	소 계	14,286	4,048	1,408	462	20,204	1,870	76,180	919,628
광 주	광주광역시	11,489	1,935	1,278	565	15,267	241	8,080	48,633
대 전	대전광역시	7,995	2,153	851	1,503	12,502	385	19,242	9,287
울 산	울산광역시	12,772	1,587	1,277	595	16,231	320	13,132	57,227
경 기	경기도	15,884	1,115	844	2,507	20,350	855	37,920	24,842
	경기북부	13,198	482	486	352	14,518	203	19,975	6,267
	경기성남	8,372	730	654	789	10,545	303	26,393	14,383
	경기고양	3,944	557	756	131	5,388	378	22,379	13,071
	경기부천	5,997	866	664	82	7,609	159	8,152	21,994
	경기화성	3,926	975	420	134	5,455	385	32,072	5,590
	경기남양주	9,054	1,315	864	642	11,875	274	12,926	23,955
	안산시	9,362	1,972	1,084	643	13,061	229	12,437	11,933
	소 계	69,737	8,012	5,772	5,280	88,801	2,786	172,254	122,035
강 원	강원도	5,343	790	511	52	6,696	303	7,596	42,420
	강원동부	4,668	1,333	537	248	6,786	197	12,314	54,913
	원주시	3,587	734	495	236	5,052	561	20,528	10,290
	소 계	13,598	2,857	1,543	536	18,534	1,061	40,438	107,623
충 북	충청북도	22,712	1,127	561	401	24,801	818	54,600	36,330
	충북북부	6,896	1,693	1,195	473	10,257	208	7,865	36,024
	충북남부	2,986	660	624	1,833	6,103	92	3,225	12,856
	소 계	32,594	3,480	2,380	2,707	41,161	1,118	65,690	85,210
충 남	충청남도	6,248	1,078	362	334	8,022	738	32,410	15,736
	충청남도남부	2,081	670	470	42	3,263	187	13,836	18,453
	소 계	8,329	1,748	832	376	11,285	925	46,246	34,189
전 북	전라북도	3,890	821	342	911	5,964	256	23,207	13,513
	전라북도서부	3,679	463	396	871	5,409	311	21,498	22,142
	전라북도동부	4,086	1,188	1,280	57	6,611	503	16,284	16,875
	소 계	11,655	2,472	2,018	1,839	17,984	1,070	60,989	52,530
전 남	전라남도	4,496	1,736	581	266	7,079	115	11,067	9,656,051
	전남목포	12,193	1,152	595	444	14,384	322	21,248	11,633
	소 계	16,689	2,888	1,176	710	21,463	437	32,315	9,667,684
경 북	경상북도	3,159	905	458	612	5,134	180	8,060	32,812
	경북안동	7,104	1,340	1,204	392	10,040	65	2,130	64,982
	경북포항	4,980	1,368	1,108	307	7,763	629	25,311	27,770
	구 미	6,711	2,442	1,151	310	10,614	90	5,690	92,801
	소 계	21,954	6,055	3,921	1,621	33,551	964	41,191	218,365
경 남	경상남도	12,245	3,220	1,995	442	17,902	197	18,268	79,088
	경남서부	1,683	991	479	411	3,564	154	4,857	44,569
	소 계	13,928	4,211	2,474	853	21,466	351	23,125	123,657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6,954	707	656	953	9,270	280	11,296	145,809
	서귀포시	7,939	686	465	0	9,090	375	11,205	78,440
	소 계	14,893	1,393	1,121	953	18,360	655	22,501	224,249
계		310,406	51,147	32,071	21,498	415,122	20,282	785,532	13,238,074

2011년 12월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31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상담원 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3〉과 같다.

먼저 2011년 한 해 동안 교육 및 홍보사업 관련 업무를 제외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 등의 아동학대 사례 개입 및 관리 관련 업무량을 상담원 1인으로 산출하여 살펴보면 총 1,429.4회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결과는 상담원 1인이 1개월 간 119.1회, 1일 간 5.9회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이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3,775건이 종결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2011년, 상담원 1인이 약 12.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3〉에 의하면 2011년에 상담원 1인이 실시한 현장조사는 약 45.8회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현장조사의 경우 상담원 2인이 함께 동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실제적으로는 1인당 약 91.6회의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산출된다. 현장조사 업무 특성 상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다양한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아동 등 대상자의 안전 조치 및 아동학대의 감소를 위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뿐 아니라 피해아동 가족 등의 주변인을 직접 대면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개입을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대상을 바탕으로 상담 업무를 진행할 뿐 아니라 고소 · 고발 조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과 투여하는 시간은 다른 업무에 비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조사 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총 1,330.5회에 해당한다. 서비스 제공에는 개별 · 집단 · 기관 · 주변인 상담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고소 · 고발지원서비스 등의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상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상담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함께 실시하게

되는데 상담원 1인이 1년 동안 약 42,494.7회의 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1개월과 1일 단위로 산출하면 각각 3,541.2회, 177.0회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 및 홍보사업은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각 상담원의 업무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의 성격은 복합적일 뿐 아니라 상담원 1인에게 할당되는 업무량 및 시간은 매우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담원의 업무 성과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소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을 발생시키며 피해아동이 적절한 서비스 및 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위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개선을 통해 아동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상담원 증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표 7-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단위 : 건, 회)

항 목			계
상담 지원 사업	신고 접수		32.5
	현장조사		45.8**
	고소 · 고발		1.2
	원가정보호 조치		14.3
	격리보호 조치		5.0
	타기관 의뢰		0.1
	서비스제공	피해아동	994.9
		학대행위자	163.9
		부모 또는 가족	102.8
		아동학대외사례의 서비스	68.9
		소 계	1,330.5
소 계			1,429.4
교육 · 홍보 사업	교육사업		65.0
	홍보사업		42,429.7
소 계			42,494.7

*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면 현장조사 업무는 상담원 2인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총 현장조사 횟수인 14,278회를 바탕으로 할 때 실제적인 1인당 현장조사 횟수는 약 91.6회라 할 수 있음.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8 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2001~2011년)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현황 중 2001년부터 2011년의 중요한 일부 지표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11년 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아동보호체계가 지니고 있는 현 주소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신고 접수 현황은 〈표 8-1〉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1년 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1년 신고 건수는 10,146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40.4%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05, 2006년에도 각각 14.3%,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09년부터는 2008년 신고 건수에 비해 261건이 줄어들어 2.7%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10년에는 2009년보다 110건 감소하여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2010년보다 947건 증가하여 10.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러한 언론 홍보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보다 2011년에 약 3.2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심사례 비율도 82.1%로 다른 연도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가 전체 신고 접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와 그로 인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으로 신고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자녀 양육 및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이 확충된 것도 그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8-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분 / 연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 대비 증가율
2001년	2,606 (63.1)	–	1,527 (36.9)	4,133 (100.0)	–
2002년	2,946 (71.7)	–	1,165 (28.3)	4,111 (100.0)	–0.5
2003년	3,536 (71.0)	–	1,447 (29.0)	4,983 (100.0)	21.2
2004년	4,880 (69.7)	–	2,118 (30.3)	6,998 (100.0)	40.4
2005년	5,761 (72.0)	–	2,239 (28.0)	8,000 (100.0)	14.3
2006년	6,452 (72.5)	–	2,451 (27.5)	8,903 (100.0)	11.3
2007년	7,083 (74.7)	–	2,395 (25.3)	9,478 (100.0)	6.5
2008년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0)	1.0
2009년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2.7
2010년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1.2
2011년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10.3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그림 8-1〉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표 8-2〉는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20건의 재신고로 시작하여 2011년까지 1,325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상담 · 수강 명령 및 치료와 같은 보호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적 여건이 재신고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8-2〉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 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그림 8-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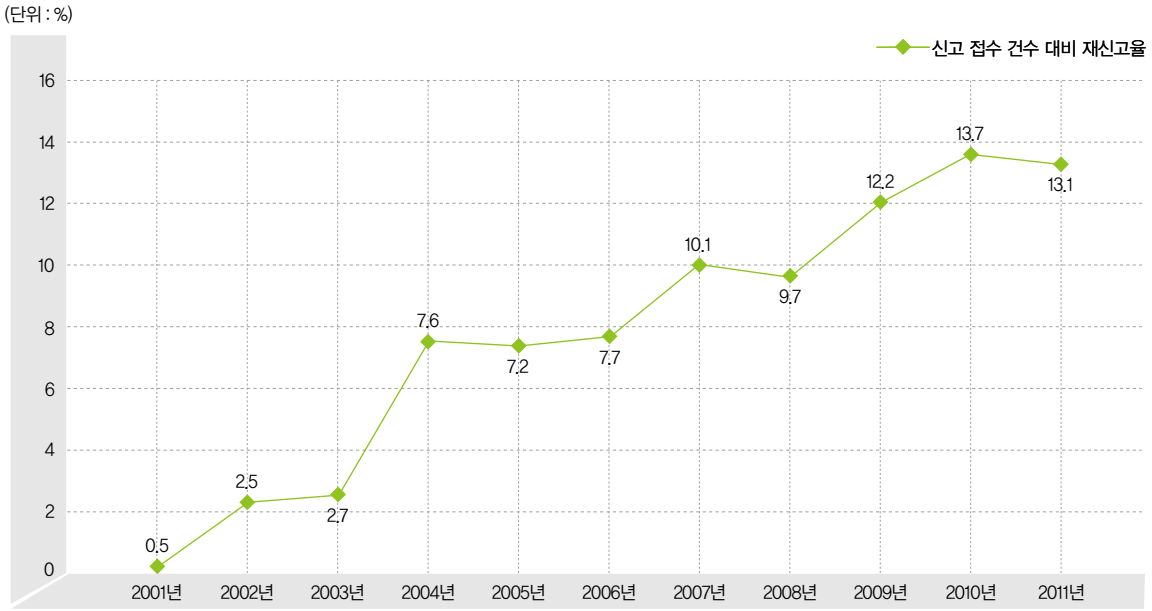

〈그림 8-3〉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표 8-3〉에서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1년에 비해 2011년도에 3.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직군 특성상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며, 아동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 의식 부족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소속된 직장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거부적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해마다 교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신고의무자 유형에서는 부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이웃 및 친구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경우 2002년 90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2011년의 경우 1,856건의 신고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경찰의 경우 2011년 3.8%의 신고 비율을 보여 2010년 4.1%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교차 신고 되지 않고 경찰 내부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8-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 연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1년
신고의무자	시설종사자*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222 (3.8)	217 (3.3)	374 (5.3)	426 (5.9)	–	–	–
	교원	134 (5.1)	149 (5.0)	190 (5.4)	280 (5.7)	431 (7.5)	611 (9.5)	771 (10.9)	887 (12.3)	547 (7.4)	535 (7.2)	594 (7.1)
	의료인	51 (2.0)	59 (2.0)	83 (2.3)	102 (2.1)	126 (2.2)	114 (1.8)	157 (2.2)	105 (1.5)	98 (1.3)	83 (1.1)	88 (1.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0.0)	15 (0.3)	23 (0.4)	32 (0.5)	26 (0.4)	24 (0.3)	18 (0.2)	16 (0.2)	6 (0.1)
	소방구급대원	–	–	–	–	–	–	3 (0.0)	6 (0.1)	11 (0.2)	6 (0.1)	10 (0.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358 (4.9)	425 (5.7)	338 (4.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26 (0.4)	24 (0.3)
	보육시설 종사자	–	–	–	–	–	–	–	–	76 (1.0)	152 (2.1)	178 (2.1)
	유치원 종사자	–	–	–	–	–	–	–	–	43 (0.6)	66 (0.9)	40 (0.5)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	–	–	–	41 (0.6)	47 (0.6)	45 (0.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7 (0.1)	13 (0.2)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142 (1.9)	141 (1.9)	199 (2.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16 (8.3)	392 (13.3)	575 (16.3)	738 (15.1)	805 (14.0)	1,038 (16.1)	953 (13.4)	941 (13.0)	975 (13.3)	786 (10.6)	1,169 (14.0)
	소 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비신고의무자	부 모	772 (29.6)	591 (20.1)	673 (19.0)	990 (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411 (16.9)
	이웃 · 친구	685 (26.3)	757 (25.7)	843 (23.8)	921 (18.9)	933 (16.2)	886 (13.7)	856 (12.1)	845 (11.7)	805 (10.9)	861 (11.6)	991 (11.9)
	친인척	241 (9.3)	242 (8.2)	367 (10.4)	373 (7.6)	481 (8.3)	500 (7.7)	471 (6.7)	502 (6.9)	468 (6.4)	488 (6.6)	461 (5.5)
	경 찰	104 (4.0)	164 (5.6)	221 (6.3)	338 (6.9)	357 (6.2)	340 (5.3)	275 (3.9)	322 (4.5)	416 (5.7)	302 (4.1)	314 (3.8)
	종교인	–	36 (1.2)	49 (1.4)	47 (1.0)	74 (1.3)	99 (1.5)	77 (1.1)	54 (0.7)	54 (0.7)	54 (0.7)	53 (0.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90 (3.0)	114 (3.2)	506 (10.4)	823 (14.3)	980 (15.2)	1,165 (16.5)	1,176 (16.3)	1,356 (18.4)	1,562 (21.1)	1,856 (22.3)
	낯선 사람	–	–	4 (0.1)	114 (2.3)	80 (1.4)	148 (2.3)	88 (1.2)	70 (1.0)	71 (1.0)	69 (0.9)	55 (0.7)
	아동 본인	40 (1.5)	56 (1.9)	52 (1.5)	65 (1.3)	80 (1.4)	71 (1.1)	50 (0.7)	73 (1.0)	88 (1.2)	115 (1.6)	135 (1.6)
	익 명	–	11 (0.4)	13 (0.4)	13 (0.3)	41 (0.7)	26 (0.4)	11 (0.1)	61 (0.8)	8 (0.1)	6 (0.1)	40 (0.5)
	형제 · 자매	–	–	–	–	–	–	–	–	34 (0.5)	44 (0.6)	47 (0.6)
	기 타	78 (3.0)	161 (5.5)	170 (4.8)	152 (3.1)	212 (3.7)	225 (3.5)	512 (7.2)	416 (5.8)	359 (4.9)	241 (3.2)	258 (3.1)
	소 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5,621 (67.5)
계		2,606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5,761 (100.0)	6,452 (100.0)	7,083 (100.0)	7,219 (100.0)	7,354 (100.0)	7,406 (100.0)	8,325 (100.0)

* 2009년부터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유치원 종사자 항목을 신설함

3.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네 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8-4〉에서 알 수 있듯이 매 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2007년에 보건복지 관련 전화번호를 129번으로 통·폐합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긴급지원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77-1391'로 신고 접수가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신고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표 8-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경로유형 / 연도	1577-1391	129	인터넷	내방	계
2007년	8,125 (85.7)	709 (7.5)	40 (0.4)	604 (6.4)	9,478 (100.0)
2008년	8,589 (89.7)	538 (5.6)	83 (0.9)	360 (3.8)	9,570 (100.0)
2009년	8,707 (93.5)	438 (4.7)	28 (0.3)	136 (1.5)	9,309 (100.0)
2010년	8,461 (92.0)	367 (4.0)	111 (1.2)	260 (2.8)	9,199 (100.0)
2011년	9,470 (93.3)	382 (3.8)	100 (1.0)	194 (1.9)	10,1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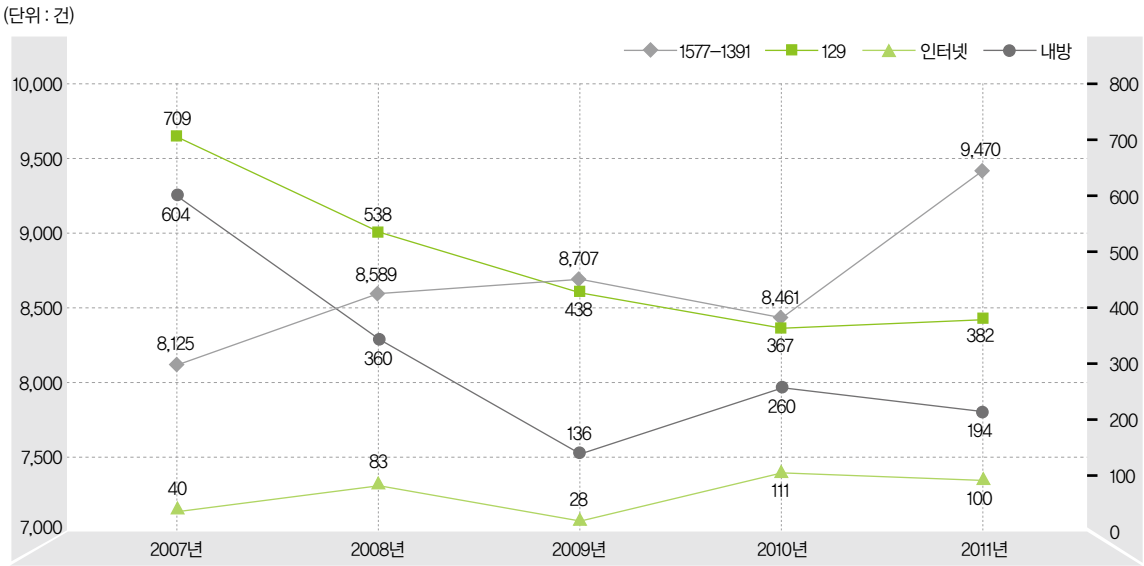

〈그림 8-4〉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표 8-5〉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사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2,105건에서 2011년 6,058건으로 지난 11년 동안 2.9배 정도 늘어났다. 이와 같은 피해아동 보호건수의 증가를 아동학대 발생률의 증가로 보기보다는 2001년 17개소에 불과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9년 44개소로 증설되어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함께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401건 증가하여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간 신고 접수 증가 폭이 큰 것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다양한 아동복지 관련 인프라가 활발하게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학대 고위험군 사례 또한 개입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호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고유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아동복지 실천 현장의 상황도 아동학대사례 건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짚어볼 수 있겠다.

〈표 8-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증가 기관수		–	2	18	1	4	1	–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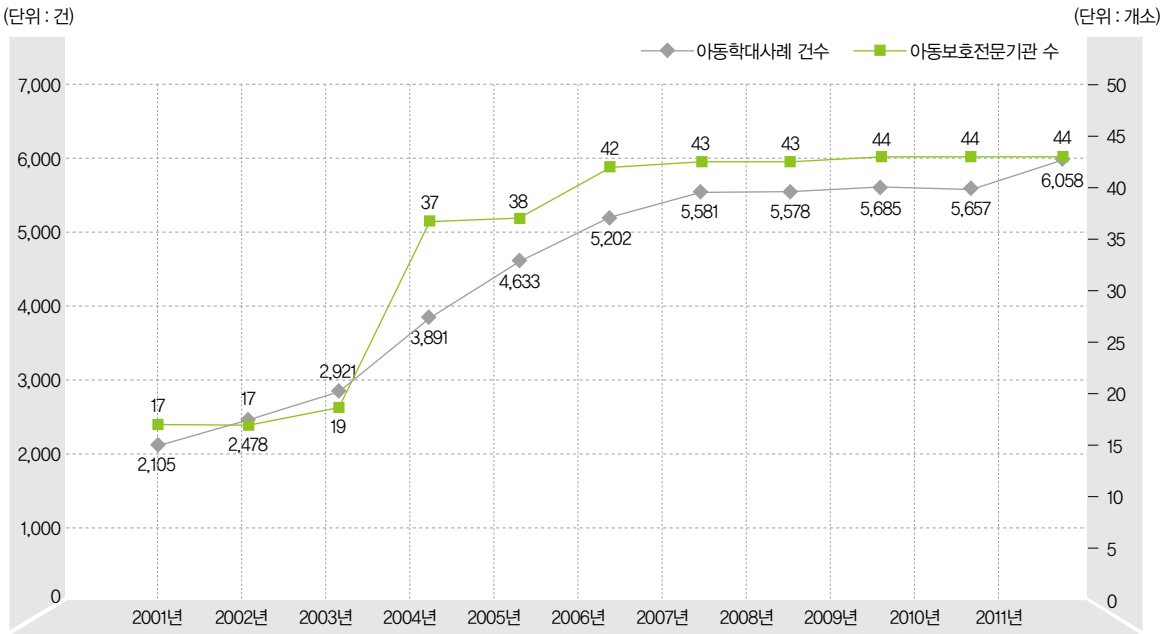

〈그림 8-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비교하였다.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보호율은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인해 전국민의 인식이 향상된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더불어 향후 학대받는 아동이 더욱 많이 발견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보호 체계로 연계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8-6〉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율

(단위 : 명, 건, ‰)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피해아동 보호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 통계청(www.kosis.kr), 2001-2011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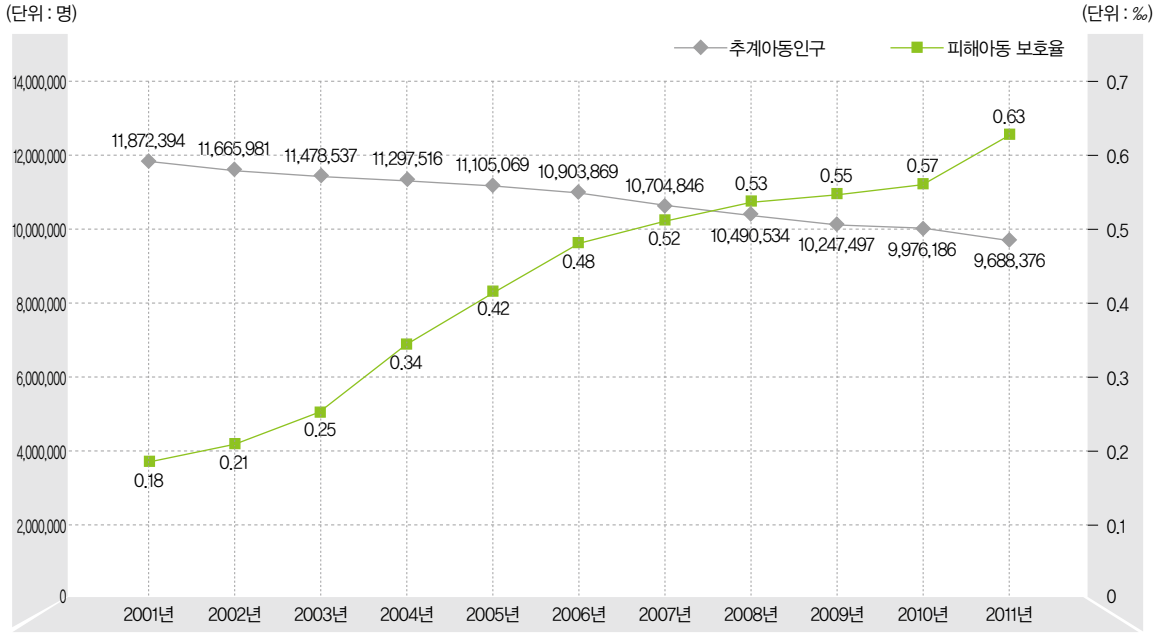

〈그림 8-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5.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현황

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

〈표 8-7〉과 같이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건수는 2009년 581건에서 2010년 503건으로 78건 감소하였으나 2011년 재학대 신고 건수는 563건으로 전년대비 60건 증가하였다.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 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581명에서 2010년에는 494명으로 87명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1년에 559명으로 65명 증가하였다.

〈표 8-7〉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학대 사례 건수	581	503	563
재학대 사례 아동수	581	494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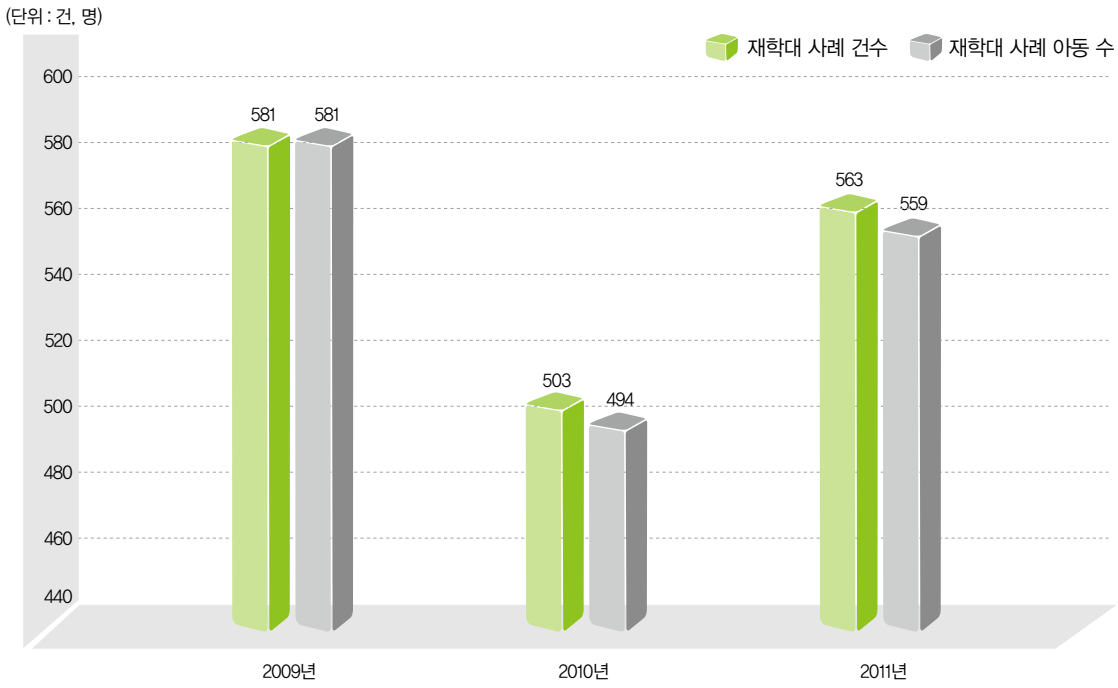

〈그림 8-7〉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표 8-8〉에서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방임 39.1%, 정서학대 32.2%, 신체학대 23.6%, 2010년에는 방임 35.6%, 정서학대 35.2%, 신체학대 24.1%, 2011년에는 정서학대 37.7%, 방임 29.5%, 신체학대 28.5%로 최근 3년 간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방임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 개입 시 다른 유형의 학대로 신고되었더라도 정서 및 신체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성학대와 유기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체학대	196 (23.6)	193 (24.1)	257 (28.5)
정서학대	268 (32.2)	282 (35.2)	340 (37.7)
성학대	41 (4.9)	40 (5.0)	39 (4.2)
방임	325 (39.1)	286 (35.6)	266 (29.5)
유기	2 (0.2)	1 (0.1)	1 (0.1)
계	832 (100.0)	802 (100.0)	903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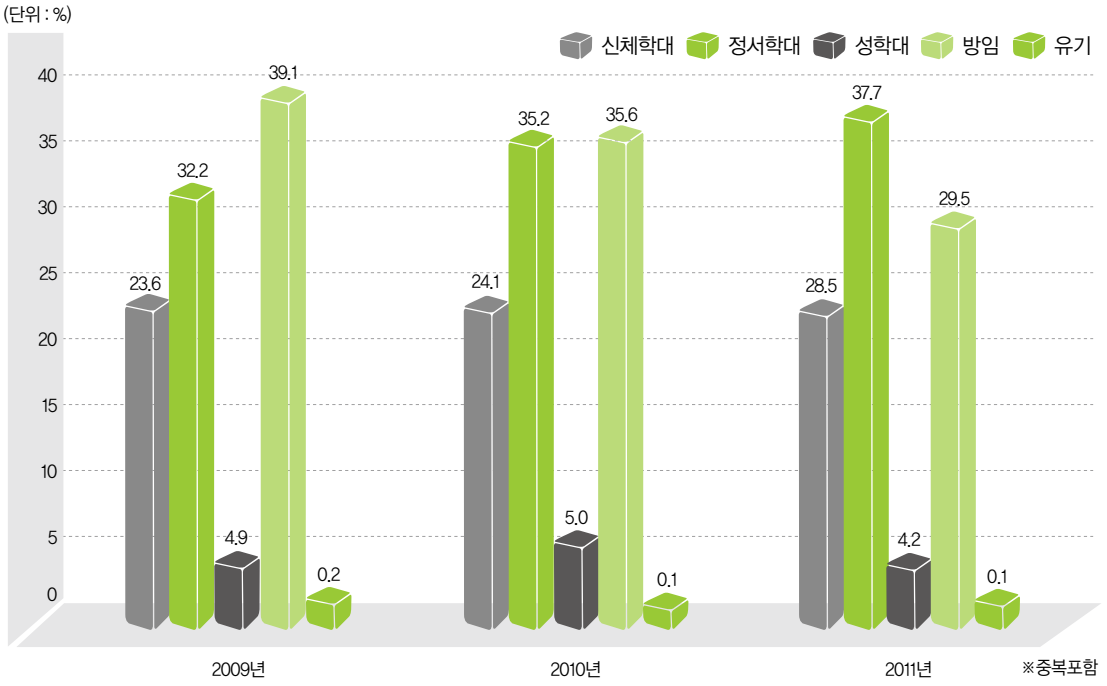

〈그림 8-8〉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발생시기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 시기를 살펴본 결과 〈표 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에는 사례종결 후 3년 이상이 26.9%,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사례종결 후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2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례종결 후 3년 이상이 129건(22.8%)으로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8-9〉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사례종결 후 1개월 미만	22 (3.8)	19 (3.8)	19 (3.4)
사례종결 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6 (4.5)	17 (3.4)	26 (4.6)
사례종결 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1 (5.3)	24 (4.8)	55 (9.8)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1년 미만	128 (22.0)	83 (16.5)	116 (20.6)
사례종결 후 1년 이상~2년 미만	114 (19.6)	124 (24.6)	131 (23.3)
사례종결 후 2년 이상~3년 미만	104 (17.9)	87 (17.3)	87 (15.5)
사례종결 후 3년 이상	156 (26.9)	149 (29.6)	129 (22.8)
계	581 (100.0)	503 (100.0)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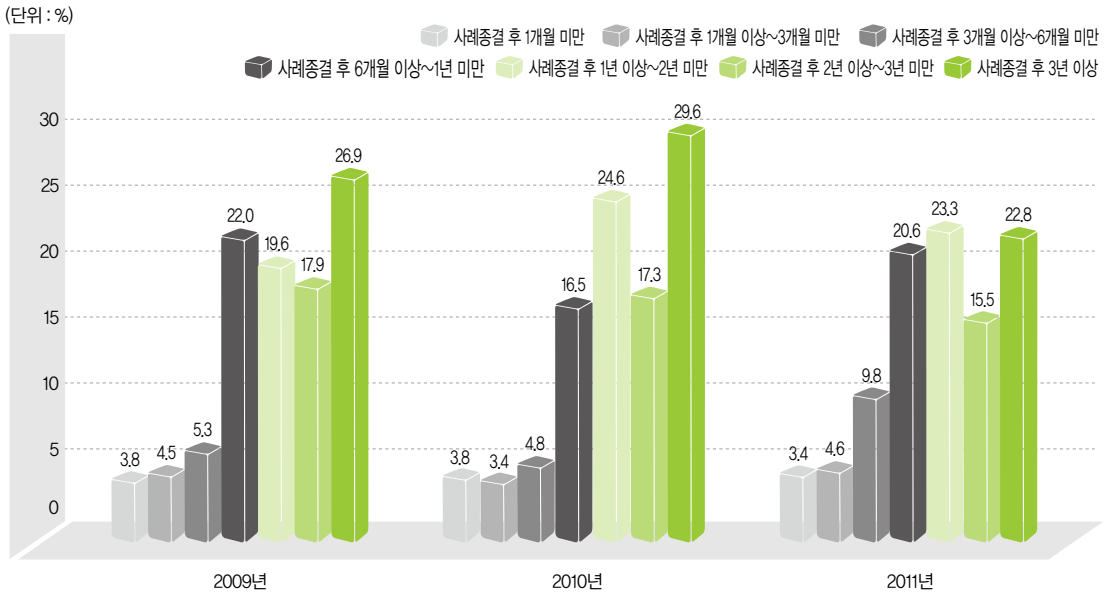

〈그림 8-9〉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발생시기

4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표 8-10〉에서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원가정보호 66.7%의 비율을 보이나 2010년 72.0%로 증가한 반면, 2011년 68.9%로 감소하였다. 반면 격리보호의 경우 2009년 33.3%의 비율에서 2010년 27.2%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30.0%로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2010년 대비 2011년 신체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보호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표 8-10〉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원가정보호	387 (66.7)	362 (72.0)	388 (68.9)
격리보호	193 (33.3)	137 (27.2)	169 (30.0)
사망	0 (0.0)	0 (0.0)	0 (0.0)
타기관 의뢰	0 (0.0)	4 (0.8)	6 (1.1)
계	580 (100.0)	503 (100.0)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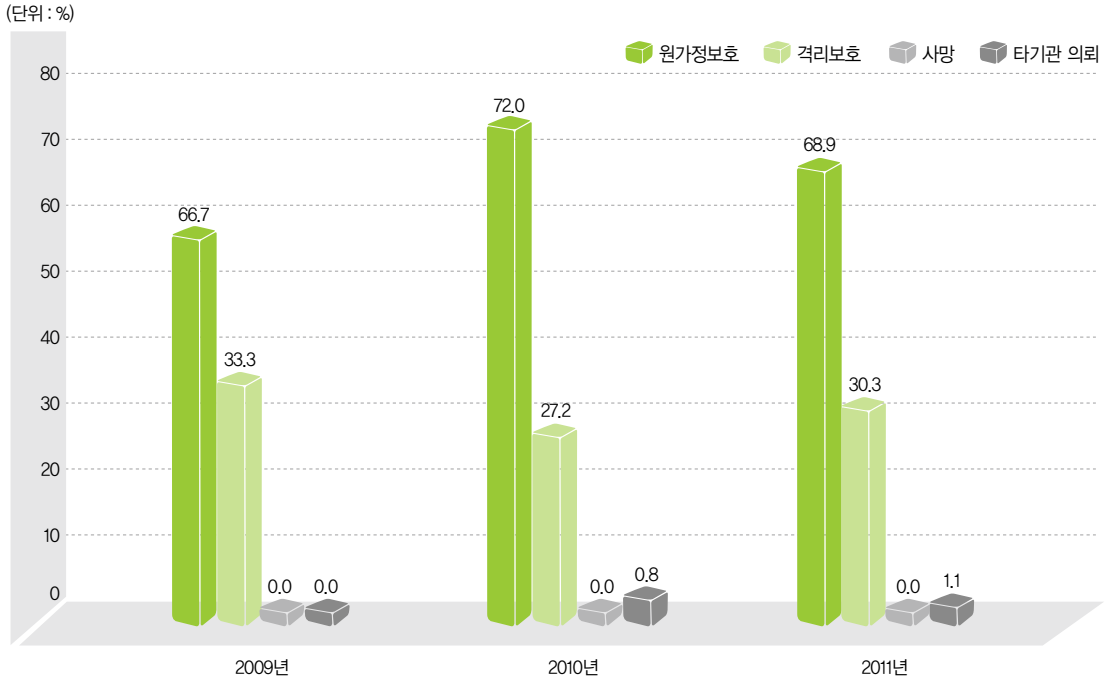

〈그림 8-10〉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표 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지속관찰은 83.5%의 비율을 보이나 2010년 81.7%로 감소하였고 2011년 83.8%로 증가하였고, 고소 · 고발의 경우 2009년 5.2%에서 2010년 4.2%로 감소하였고 2011년 5.3%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의 격리보호 증감률과도 일치하며 해당 조치결과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한편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와 타기관 의뢰 조치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다소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속관찰과 고소 · 고발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표 8-1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속관찰	485 (83.5)	411 (81.7)	472 (83.8)
고소 · 고발	30 (5.2)	21 (4.2)	30 (5.3)
타기관 의뢰	27 (4.6)	24 (4.8)	23 (4.1)
만나지 못함	39 (6.7)	47 (9.3)	38 (6.8)
계	581 (100.0)	503 (100.0)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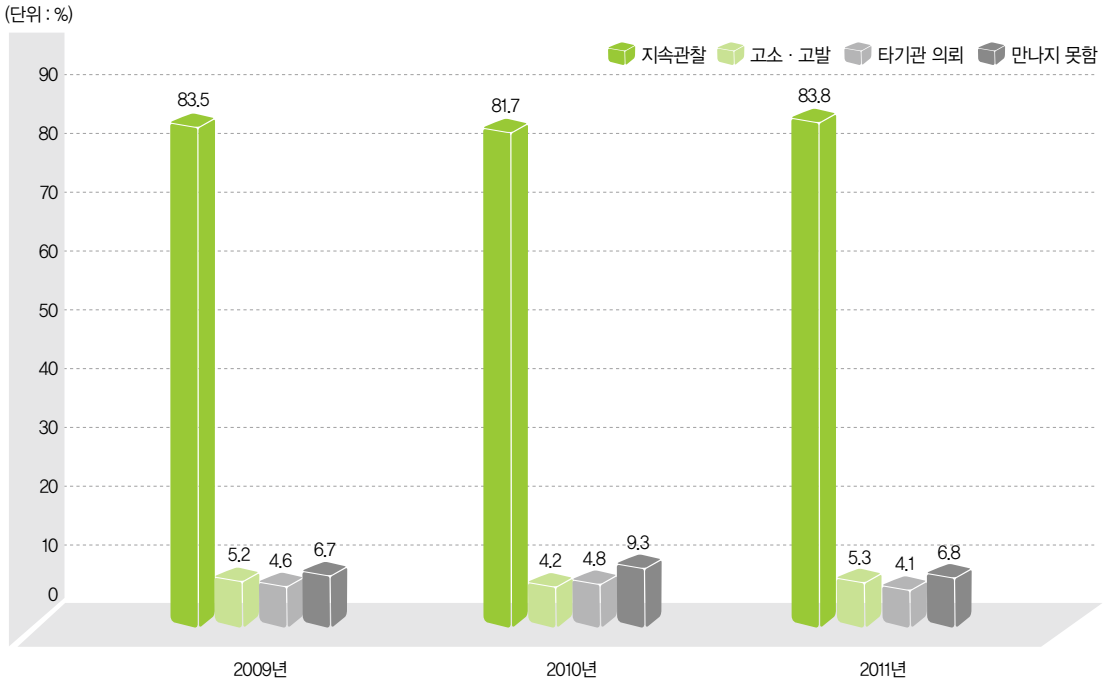

〈그림 8-11〉 연도별 재학대 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6.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현황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건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에 신고 접수된 다문화가족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 내에 국제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미 다문화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양한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 생활습관 및 문화차이, 가정폭력 이유 등으로 여전히 다문화가족 해체 및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에 대한 다문화가족 신고 사례 주요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건수는 〈표 8-12〉에 의하면 2009년 181건에서 2010년 243건으로 62건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31건으로 전년대비 12건 감소하였다.

〈표 8-1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건수

(단위 : 건)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181	243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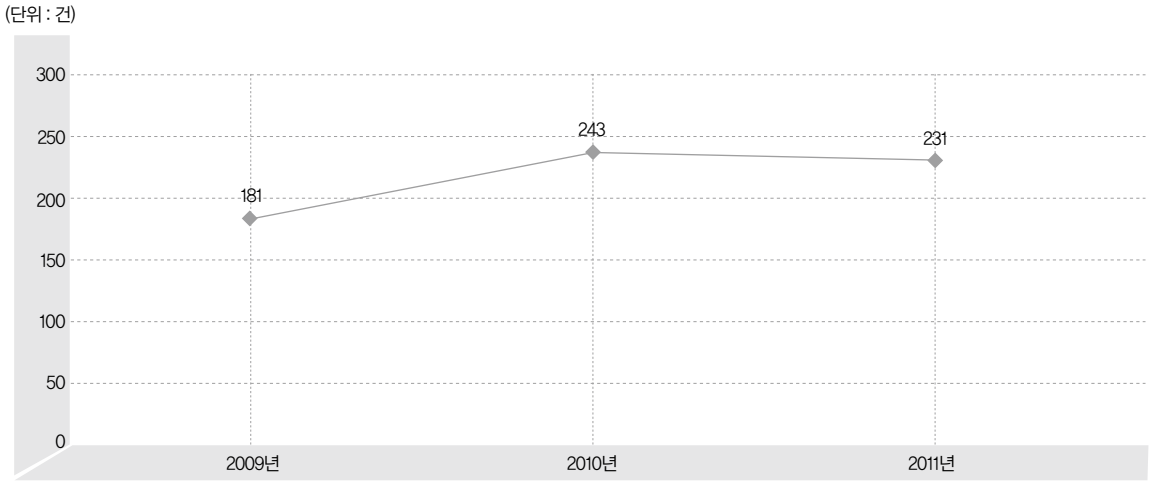

〈그림 8-1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건수

2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표 8-13〉에 의하면 2009년에는 정서학대 34.7%, 방임 34.3%, 2010년에는 방임 43.0%, 정서학대 35.7%, 2011년에는 정서학대 39.0%, 방임 32.2%로 최근 3개년 모두 정서학대와 방임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또한 성학대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신체학대와 유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체학대	27 (10.2)	60 (18.0)	89 (25.4)
정서학대	92 (34.7)	119 (35.7)	137 (39.0)
성 학 대	9 (3.4)	9 (2.7)	9 (2.6)
방 임	91 (34.3)	143 (43.0)	113 (32.2)
유 기	1 (0.4)	2 (0.6)	3 (0.8)
계	265 (100.0)	333 (100.0)	351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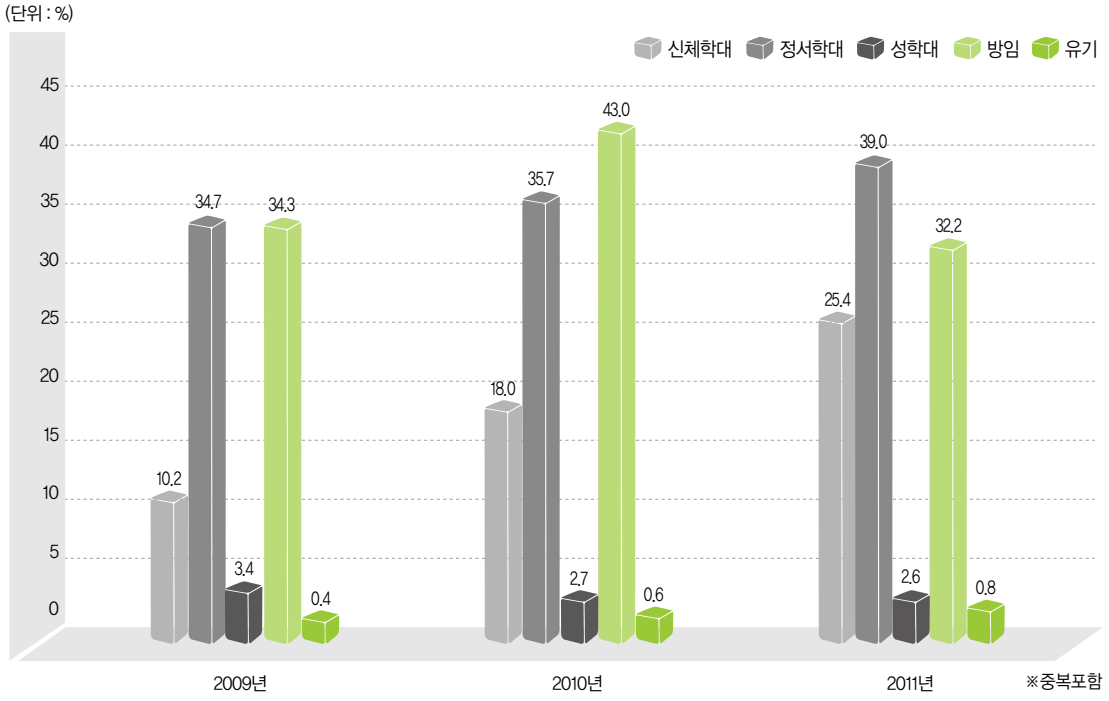

〈그림 8-1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표 8-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71.3%에서 2010년 72.8%로 증가한 이후 2011년에는 72.7%로 소폭 감소한 반면, 격리보호의 경우 2009년 28.2%에서 2010년 25.5%로 감소, 2011년에는 27.3%로 증가하였다. 이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점차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사례 중에서 격리보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했다거나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후 신고 접수되어 개입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8-1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원가정보호	129 (71.3)	177 (72.8)	168 (72.7)
격리보호	51 (28.2)	62 (25.5)	63 (27.3)
사망	0 (0.0)	0 (0.0)	0 (0.0)
타기관 의뢰	1 (0.5)	4 (1.7)	0 (0.0)
계	181 (100.0)	243 (100.0)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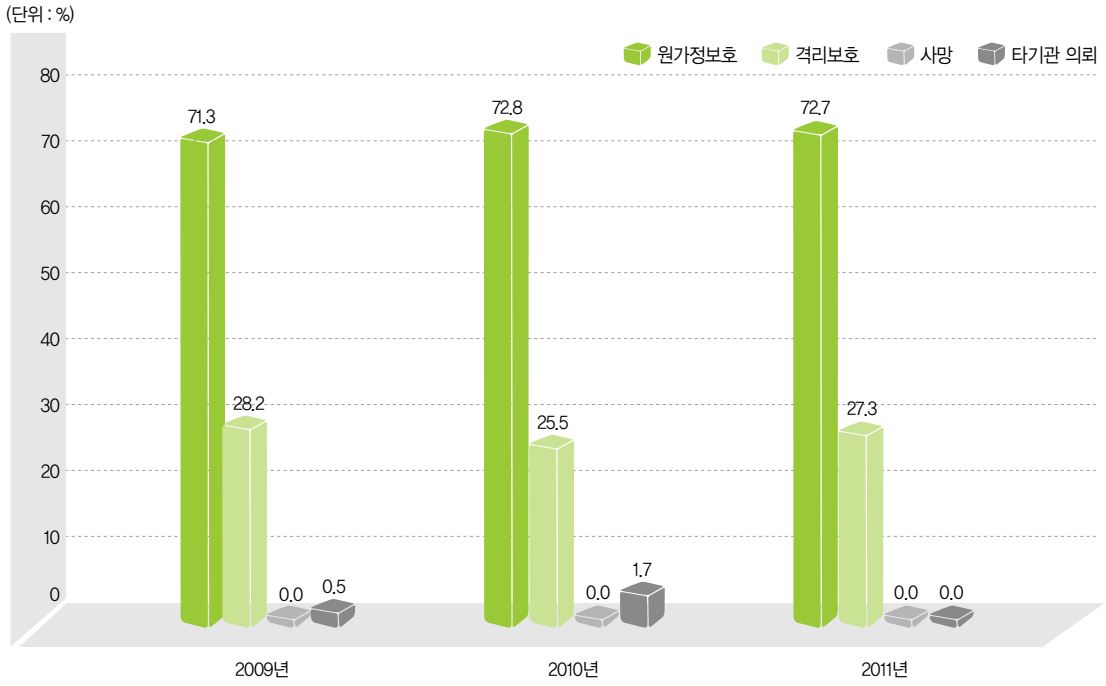

〈그림 8-1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4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8-15〉와 같이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지속관찰의 경우, 2009년 90.0%에서 해가 지날수록 비율이 감소하여 2010년은 87.7%, 2011년은 86.6%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소 · 고발 건수는 2009년 2.8%의 비율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 4.3%로 증가하였다.

고소 · 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가족 사례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표 8-15〉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속관찰	163 (90.0)	213 (87.7)	200 (86.6)
고소 · 고발	5 (2.8)	8 (3.3)	10 (4.3)
타기관 의뢰	5 (2.8)	4 (1.6)	9 (3.9)
만나지 못함	8 (4.4)	18 (7.4)	12 (5.2)
계	181 (100.0)	243 (100.0)	2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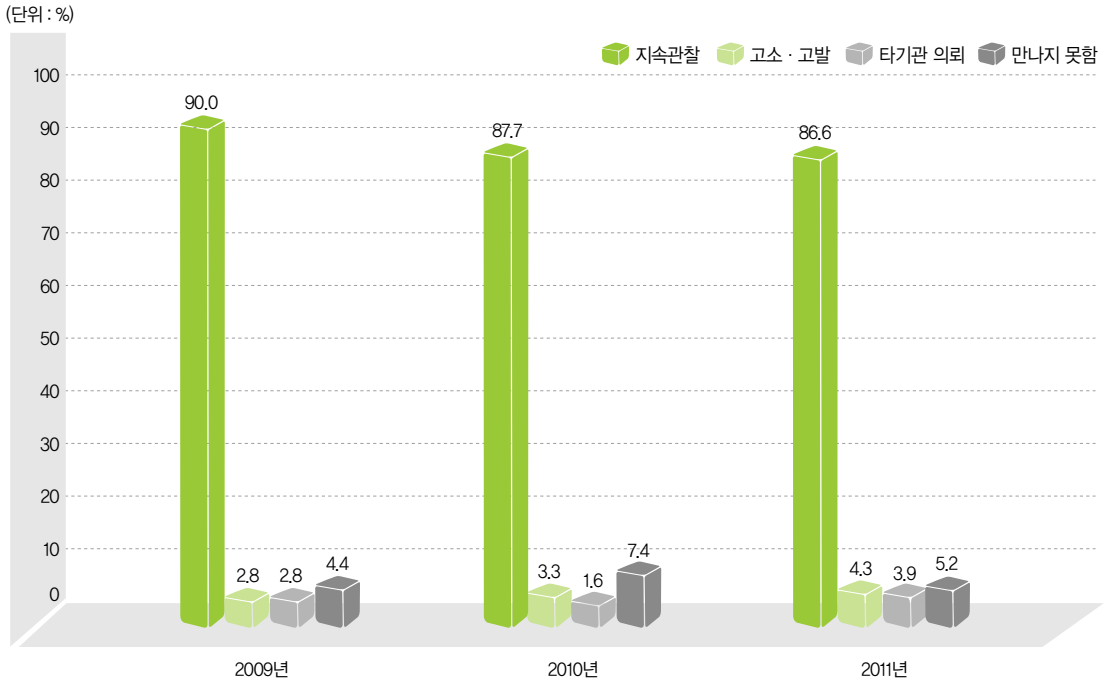

〈그림 8-15〉 연도별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7.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현황

1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건수

시설 내 발생 사례 건수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9년 264건에서 2010년 22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270건으로 증가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에서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된 이유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면서 더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2010년 말에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신고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아동학대사례 판정이 시설 운영 정지 및 폐쇄 등의 행정처분으로 직결되는 강력한 처벌 지침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 의뢰 및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16〉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건수

(단위 : 건, %)

시설유형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어린이집	67 (25.4)	100 (44.1)	159 (58.9)
복지시설	197 (74.6)	127 (55.9)	111 (41.1)
계	264 (100.0)	227 (100.0)	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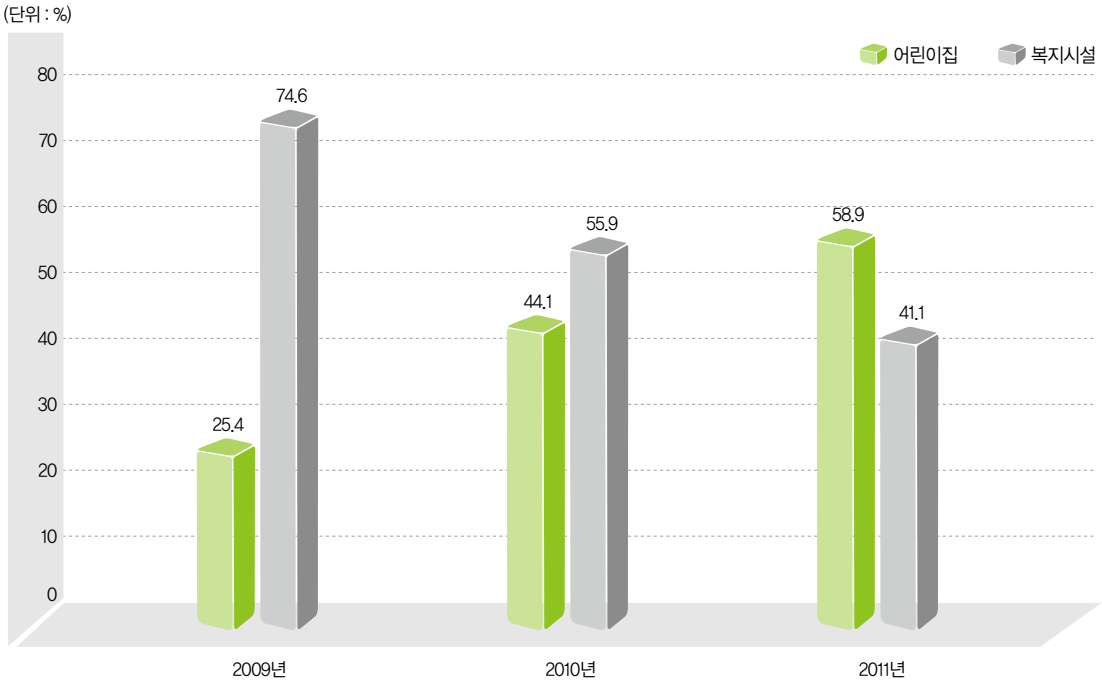

〈그림 8-16〉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건수

2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8-17〉에서 살펴보면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모두 매년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09년은 41.1%에서 2010년 39.4%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40.3%로 증가하였다. 신체학대와 유기의 경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학대 및 방임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신체학대의 경우 2010년 11.4%에서 2011년 18.6%로 증가하였고 정서학대는 2010년에 9.8%에서 2011년에 21.9%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8-17〉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체학대	어린이집	33 (9.4)	36 (11.4)	79 (18.6)
	복지시설	58 (16.6)	64 (20.3)	58 (13.7)
	소계	91 (26.0)	100 (31.7)	137 (32.3)
정서학대	어린이집	32 (9.1)	31 (9.8)	93 (21.9)
	복지시설	112 (32.0)	93 (29.6)	78 (18.4)
	소계	144 (41.1)	124 (39.4)	171 (40.3)
성학대	어린이집	4 (1.1)	5 (1.6)	4 (1.0)
	복지시설	22 (6.3)	13 (4.1)	12 (2.8)
	소계	26 (7.4)	18 (5.7)	16 (3.8)
방임	어린이집	26 (7.4)	45 (14.3)	54 (12.7)
	복지시설	62 (17.7)	25 (7.9)	35 (8.3)
	소계	88 (25.1)	70 (22.2)	89 (21.0)
유기	어린이집	0 (0.0)	3 (1.0)	6 (1.4)
	복지시설	1 (0.4)	0 (0.0)	5 (1.2)
	소계	1 (0.4)	3 (1.0)	11 (2.6)
계		350 (100.0)	315 (100.0)	424 (100.0)

3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8-18〉을 통해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2009년 79.5%, 2010년 59.5%, 2011년 4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 · 고발 조치와 타기관 의뢰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소 · 고발의 경우 2009년 14.8%, 2010년 22.0%, 2011년 29.6%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복지시설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뚜렷한 증가 양상을 나타내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가 언론에 통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 건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 타기관 의뢰는 2009년 0.4%, 2010년 2.2%, 2011년 17.1%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는 타기관 의뢰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7.9%에 해당하는 21건이 타기관으로 의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아동학대로 인해 해당 행정기관에 연계되어 어린이집의 영업 정지 및 면허 취소 등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8-18〉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속관찰	어린이집	51 (19.3)	48 (21.2)	77 (28.5)
	복지시설	159 (60.2)	87 (38.3)	52 (19.3)
	소계	210 (79.5)	135 (59.5)	129 (47.8)
고소 · 고발	어린이집	6 (2.3)	39 (17.2)	58 (21.5)
	복지시설	33 (12.5)	11 (4.8)	22 (8.1)
	소계	39 (14.8)	50 (22.0)	80 (29.6)
타기관 의뢰	어린이집	0 (0.0)	0 (0.0)	21 (7.9)
	복지시설	1 (0.4)	5 (2.2)	25 (9.2)
	소계	1 (0.4)	5 (2.2)	46 (17.1)
만나지 못함	어린이집	10 (3.8)	13 (5.7)	3 (1.0)
	복지시설	4 (1.5)	24 (10.6)	12 (4.5)
	소계	14 (5.3)	37 (16.3)	15 (5.5)
계		264 (100.0)	227 (100.0)	270 (100.0)

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표 8-19〉에서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정서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학대와 유기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중복학대를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

에 모두 포함시켜 분석한 〈표 8-20〉에 의하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할 때와 유사하게 방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임 사례를 파악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방임 가정의 학대행위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자녀양육 능력 부족 및 정신질환 등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기간 내에 학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방임은 아동에게 신체 · 인지 · 사회 · 정서 발달 영역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방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 발굴을 통한 예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표 8-19〉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계
2001년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0)
2002년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0)
2003년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100.0)
2004년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0)
2005년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0)
2006년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0)
2007년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100.0)
2008년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100.0)
2009년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0)
2010년	348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0)
2011년	466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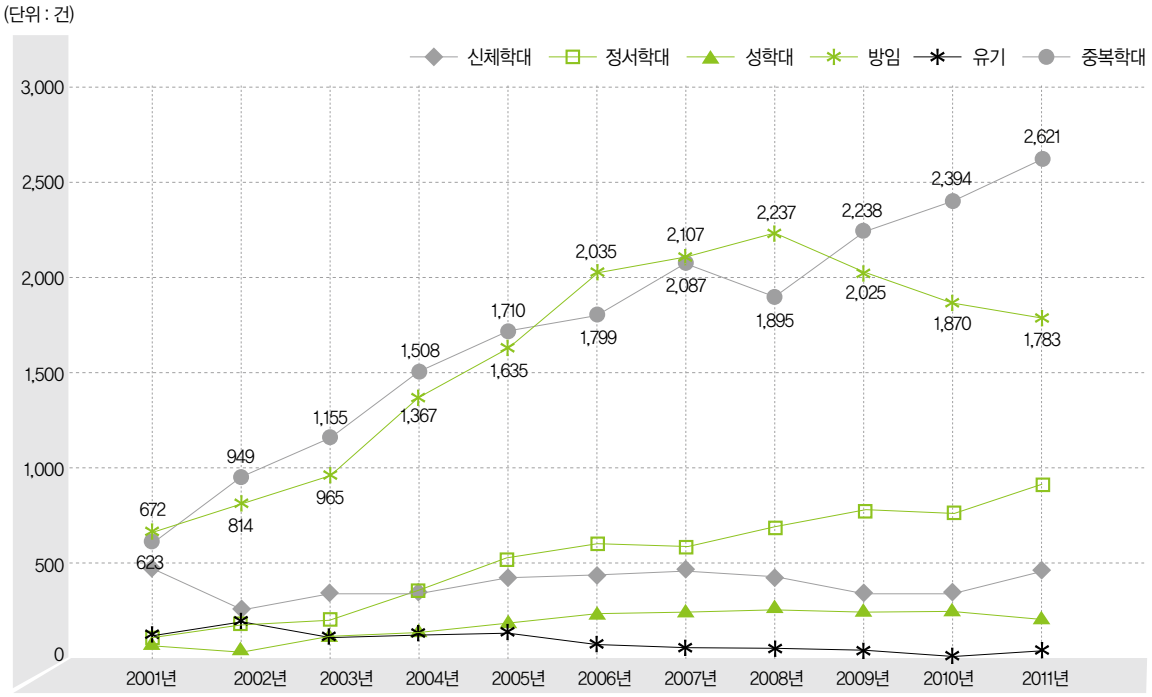

〈그림 8-1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표 8-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평균 20.0% 가량 높다. 이를 통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들은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대 행위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정서학대만으로 신고되기 보다는 타 학대 유형과 함께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정서학대만을 받는 아동들은 장기적인 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지난 11년 동안 정서학대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서학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서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8-20〉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계
2001년	890 (41.8)	192 (9.0)	116 (5.4)	797 (37.5)	133 (6.3)	2,128 (100.0)
2002년	1,039 (28.4)	961 (26.3)	119 (3.2)	1,329 (36.3)	212 (5.8)	3,660 (100.0)
2003년	1,315 (30.3)	1,172 (27.1)	203 (4.7)	1,514 (35.0)	126 (2.9)	4,330 (100.0)
2004년	1,587 (27.5)	1,680 (29.2)	266 (4.6)	2,071 (35.9)	160 (2.8)	5,764 (100.0)
2005년	1,728 (25.9)	2,034 (30.5)	305 (4.6)	2,416 (36.4)	176 (2.6)	6,659 (100.0)
2006년	1,827 (24.9)	2,182 (29.8)	372 (5.1)	2,842 (38.8)	106 (1.4)	7,329 (100.0)
2007년	2,095 (26.1)	2,420 (30.1)	409 (5.1)	3,018 (37.6)	92 (1.1)	8,034 (100.0)
2008년	1,857 (23.8)	2,315 (30.0)	424 (5.0)	3,105 (40.0)	94 (1.2)	7,795 (100.0)
2009년	2,095 (25.1)	2,847 (34.1)	426 (5.1)	2,939 (35.2)	43 (0.5)	8,350 (100.0)
2010년	2,182 (25.8)	2,974 (35.1)	400 (4.7)	2,878 (34.0)	32 (0.4)	8,466 (100.0)
2011년	2,464 (26.9)	3,312 (36.3)	368 (4.0)	2,919 (31.9)	85 (0.9)	9,148 (100.0)

※중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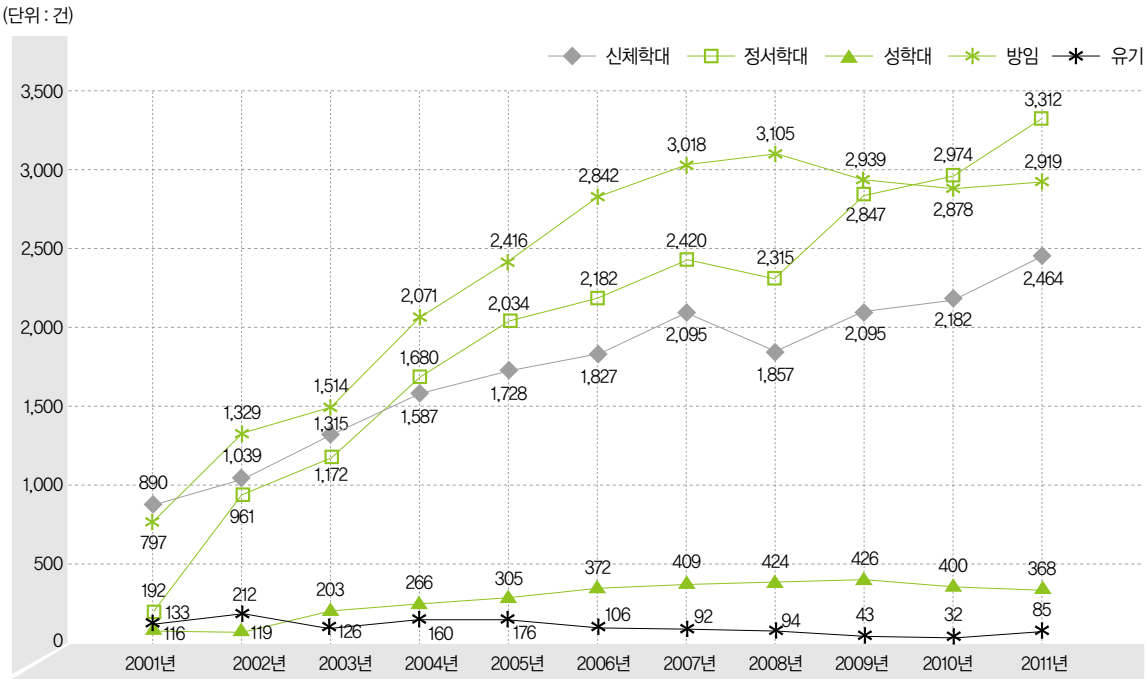

※중복포함

〈그림 8-1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8-21〉에서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부모가 80.0% 이상을 차지하여 아동학대사례의 대부분이 주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친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률은 매년 80.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사로 치부하던 과거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화하여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는 감소되지 않아 부모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마련과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신고의무자인 교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위탁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 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 이상으로 아동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 감독과 함께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21〉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모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2,797 (49.4)	2,855(47.1)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28.3)	1,708 (30.2)	1,963 (32.4)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양부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83.1)
친인척	친조부	48 (2.3)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친조모	–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외조부	–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외조모	–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형제 ·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타인	부 · 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교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이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낯선 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위탁부	–	–	–	–	–	–	–	–	2 (0.1)	3 (0.1)	5 (0.1)
	위탁모	–	–	–	–	–	–	–	–	7 (0.1)	5 (0.1)	8 (0.1)
	소계	103 (4.9)	121 (4.9)	217 (7.4)	368 (9.5)	372 (8.0)	423 (8.1)	529 (9.5)	394 (7.2)	465 (8.2)	534 (9.4)	574 (9.5)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파악안 됨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그림 8-1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추이를 분석한 〈표 8-22〉에 의하면, 부자가정이 평균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모자가정이 지난 11년 동안 평균 14.4%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과 더불어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미혼부 · 모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47.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와 같은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보호체계의 안전망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 및 시행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같은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8-22〉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가족유형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친부모가족		536 (25.5)	619 (25.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친부모가족 외 형태	부자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모자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미혼 부 · 모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0)
	재혼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0)	395 (7.1)	429 (7.6)	380 (6.7)	441 (7.3)
	친인척보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0)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303 (5.3)	266 (4.4)
	동거 (사실혼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소년소녀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소계	1,389 (66.0)	1,692 (68.3)	2,075 (71.0)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9)	3,769 (67.5)	3,736 (65.7)	3,678 (65.0)	3,688 (60.9)
대리양육형태	가정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15 (0.3)	28 (0.4)
	입양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25 (0.4)	30 (0.5)
	시설보호	–	10 (0.4)	57 (2.0)	90 (2.3)	88 (1.9)	102 (2.0)	254 (4.6)	104 (1.9)	204 (3.6)	196 (3.5)	155 (2.6)
	소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기타		25 (1.2)	40 (1.6)	29 (1.0)	76 (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1)
파악 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21 (0.4)	102 (1.7)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7,753 (100.0)	5,202 (100.0)	9,392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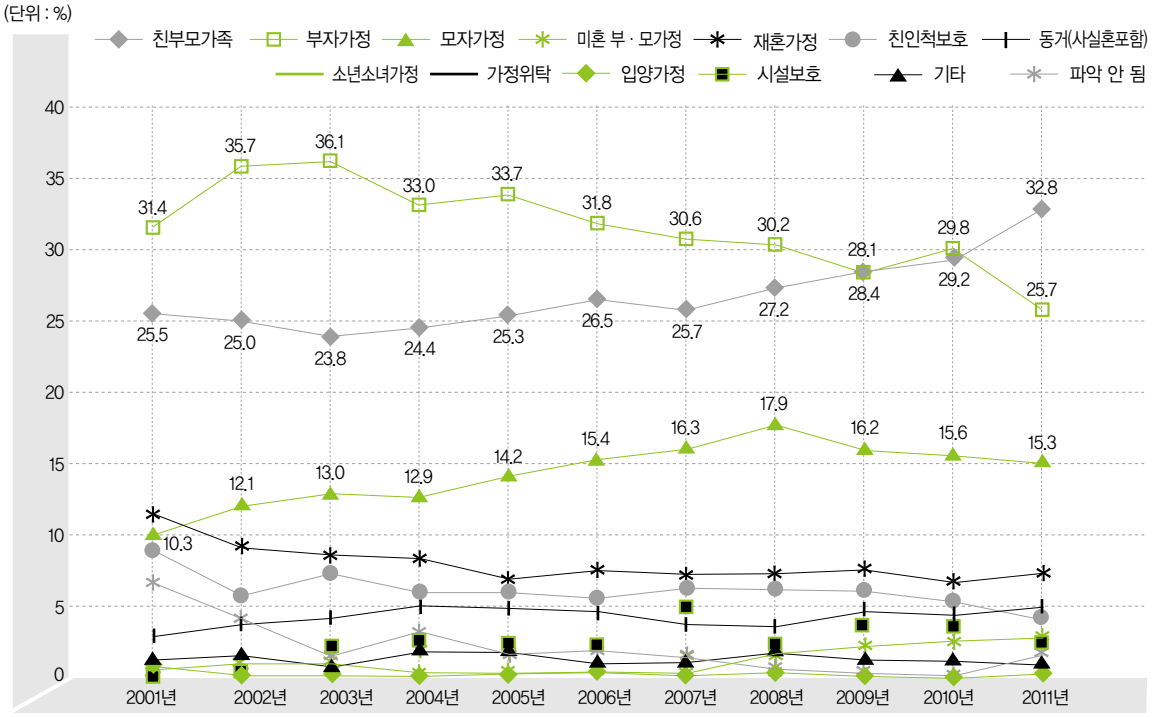

〈그림 8-2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1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 연도별 사망아동 수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는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표 8-23〉에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87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 정보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아동 수의 집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에 관한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정책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사례에 관한 정보는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의한 또 다른 피해아동, 즉 사망아동의 형제 · 자매 및 비가해부모 등 또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에 복지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제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사망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적절한 사후대처 방안 마련 및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표 8-23〉 연도별 사망아동 수

(단위 : 명)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수	7	4	3	11	16	7	7	8	8	3	1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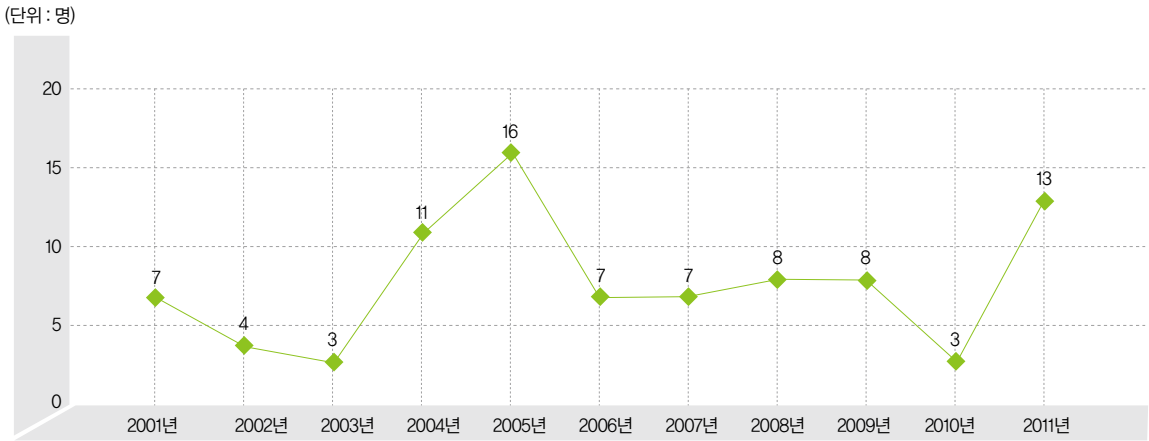

〈그림 8-21〉 연도별 사망아동 수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은 〈표 8-24〉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에는 방임이 50.0%, 중복학대가 25.0%, 2010년에는 방임 66.7%, 중복학대 33.3%, 2011년에는 방임 61.5%, 중복학대 23.1%로 최근 3개년 모두 방임과 중복학대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또한 신체학대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서학대 및 성학대와 유기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4〉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신체학대	1 (12.5)	0 (0.0)	2 (15.4)
정서학대	1 (12.5)	0 (0.0)	0 (0.0)
성학대	0 (0.0)	0 (0.0)	0 (0.0)
방임	4 (50.0)	2 (66.7)	8 (61.5)
유기	0 (0.0)	0 (0.0)	0 (0.0)
중복학대	2 (25.0)	1 (33.3)	3 (23.1)
계	8 (100.0)	3 (100.0)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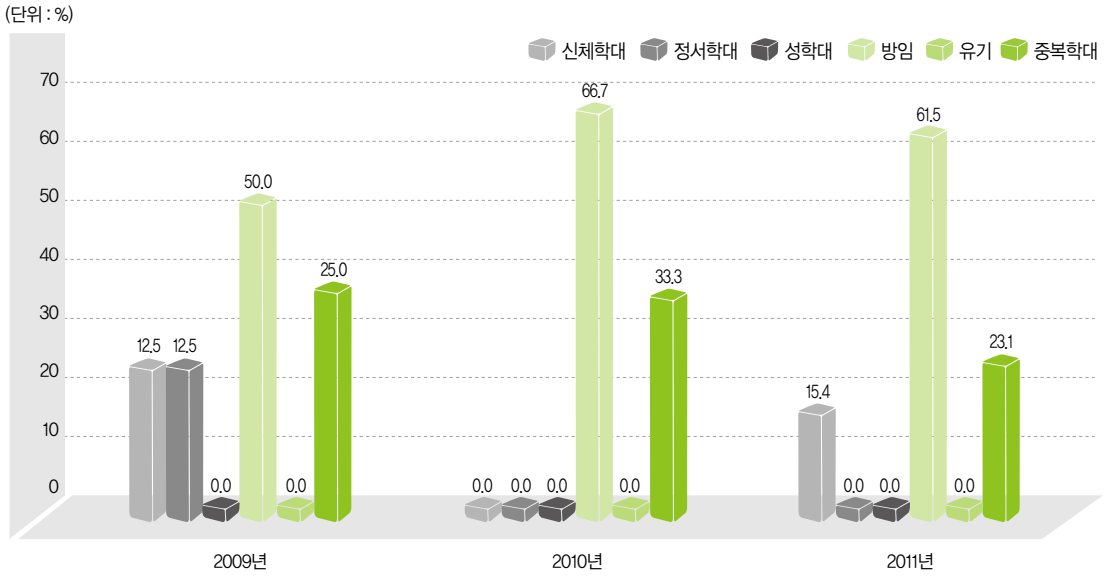

〈그림 8-2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표 8-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지속관찰이 25.0%의 비율을 보이나 2010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1년에 69.2%로 증가하였다. 고소 · 고발의 경우 2009년 75.0%에서 2010년 100.0%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그 비율이 감소하여 23.1%로 감소하였다. 사망아동 사례인 경우에는 주로 학대행위자에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나 2011년의

경우 고소 · 고발 비율이 감소하고 지속관찰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동의 사망 요인이 법적 처벌과 연관이 없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8-25〉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속관찰	2 (25.0)	0 (0.0)	9 (69.2)
고소 · 고발	6 (75.0)	3 (100.0)	3 (23.1)
타기관 의뢰	0 (0.0)	0 (0.0)	0 (0.0)
만나지 못함	0 (0.0)	0 (0.0)	1 (7.7)
계	8 (100.0)	3 (100.0)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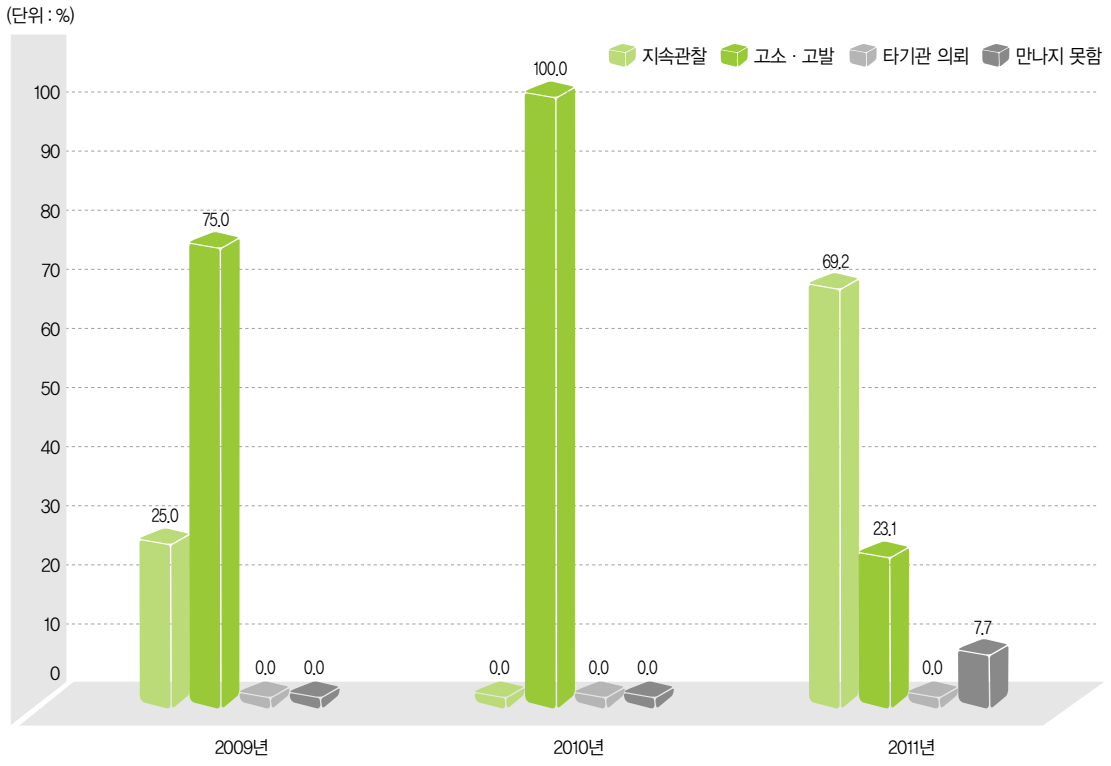

〈그림 8-2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2.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2011년의 교육 횟수는 약 12.7배, 교육 인원의 경우, 23.6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교육 횟수 측면에서 비교하였을 때, 2010년에는 전년대비 4,193회 정도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6,137회가 증가하였다. 교육 인원의 경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98,578명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8년도와 2004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78.1%, 75.6%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4년도에 나타난 교육실적 증가는 1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2008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신고의무자 교육이 전년보다 대폭 상승하였다.

일반인 교육 중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경찰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실적은 감소하였다. 일부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화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횟수를 보면 2010년에는 387건인 것에 비해 2011년에는 5,422건으로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에 실시한 교육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횟수 및 인원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인원의 경우 2배 가까이 상승된 것을 알 수 있다. 소방구급대원의 경우는 교육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인원은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의료진,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은 횟수와 인원 모두 감소하였으며, 교원의 경우는 교육 횟수는 감소한 반면, 교육 인원은 증가하였다. 2010년과 대비하여 교육 횟수는 2.7%, 교육 인원은 64.0%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8-26〉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

(단위 : 회(명))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	아동	–	–	1,172 (61,453)	1,465 (70,799)	2,139 (166,171)	2,892 (158,467)	5,716 (319,602)	6,940 (459,583)	9,295 (505,413)	10,750 (571,262)	11,818 (596,504)
	부모	–	–	49 (1,249)	244 (9,471)	329 (11,788)	506 (18,182)	595 (20,715)	620 (21,820)	612 (19,263)	706 (18,749)	745 (28,316)
	경찰	–	–	8 (616)	97 (925)	56 (1,461)	36 (623)	19 (1,107)	11 (834)	146 (16,439)	56 (5,959)	43 (3,765)
	자원봉사자	–	–	60 (1,609)	450 (3,047)	1,277 (6,900)	900 (6,983)	839 (9,037)	940 (7,314)	686 (5,118)	453 (3,921)	410 (2,845)
	기타	–	–	316 (12,837)	381 (9,929)	626 (14,728)	549 (29,362)	896 (36,944)	2,350 (38,086)	2,601 (38,401)	387 (21,257)	5,422 (46,156)
	소계	–	–	1,605 (77,764)	2,637 (94,171)	4,427 (201,048)	4,883 (213,617)	8,065 (387,405)	10,861 (527,637)	13,340 (584,634)	12,352 (621,148)	18,438 (677,586)
신고의무자	시설종사자	–	–	104 (2,472)	218 (7,037)	315 (11,996)	286 (13,197)	320 (12,692)	2,697 (26,704)	3,720 (36,917)	1,137 (43,073)	1,280 (87,941)
	교원	–	–	89 (4,382)	280 (5,895)	308 (6,304)	372 (10,793)	712 (17,300)	964 (15,830)	547 (15,765)	566 (11,836)	483 (12,673)
	의료인	–	–	14 (942)	40 (1,356)	46 (439)	30 (878)	27 (1,341)	1,577 (3,119)	226 (1,052)	14 (1,206)	11 (79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6 (1,566)	50 (7,190)	10 (2,515)	11 (4,940)	5 (2,515)
	소방구급대원	–	–	–	–	–	–	20 (1,152)	20 (741)	28 (1,024)	21 (1,952)	26 (1,18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75 (2,426)	159 (2,442)	88 (1,689)	92 (2,846)	68 (2,055)	288 (2,470)	460 (1,524)	39 (1,420)	32 (1,086)
	소계	–	–	282 (10,222)	697 (16,730)	757 (20,428)	780 (27,714)	1,153 (36,106)	5,596 (56,054)	4,991 (58,797)	1,788 (64,427)	1,837 (106,196)
세미나		–	–	25 (1,833)	24 (2,175)	64 (3,213)	38 (3,258)	48 (2,432)	43 (6,178)	32 (3,643)	30 (3,844)	32 (4,215)
계		1,603 (33,345)	1,495 (71,006)	1,912 (89,819)	3,358 (113,076)	5,248 (224,689)	5,701 (244,589)	9,266 (425,943)	16,503 (589,839)	18,363 (647,074)	14,170 (689,419)	20,307 (787,997)

* 2001년, 2002년은 교육사업 현황이 세부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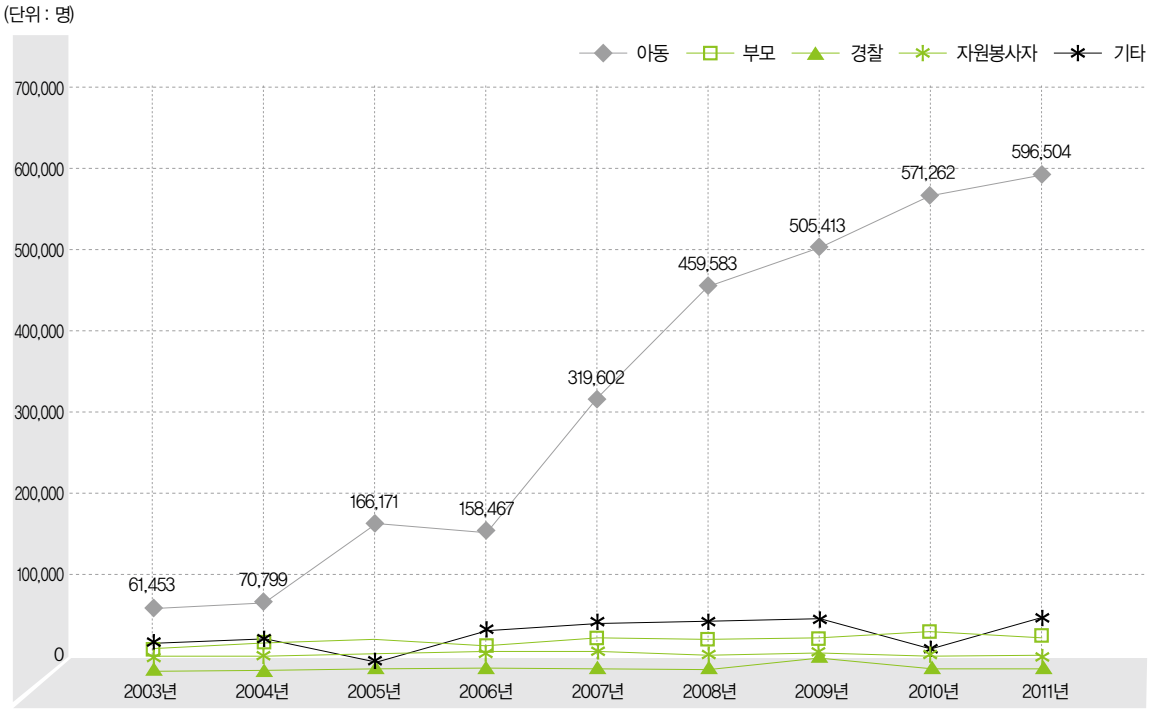

〈그림 8-24〉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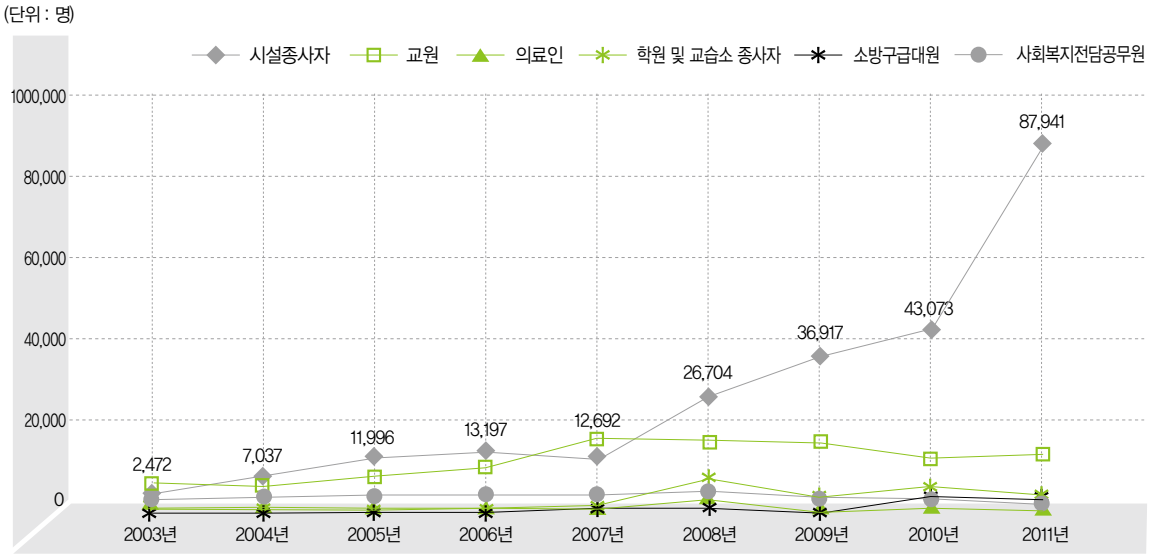

〈그림 8-25〉 연도별 교육사업 실적(신고의무자)

13.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홍보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홍보 수단이 다양화 되는 등 홍보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의 홍보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3,315,967건에서 13,336,719건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홍보사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의 경우, 브로셔와 전단의 실적은 증가한 반면, 포스터는 감소하였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홍보함에 있어 다양한 문구를 포함할 수 있는 등 포스터 형태보다 브로셔 혹은 전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부분을 보면 방송과 신문을 통한 홍보 실적은 약 1.4배와 1.8배 정도 상승한 반면 잡지는 감소하였다. 이는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국민 및 방송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높아진 인식 정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8-27〉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단위 : 장, 개, 일, 회)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쇄물홍보	브로셔(장)	–	–	100,090	154,331	160,139	224,651	240,281	259,215	249,294	227,642	269,847
	포스터(장)	–	–	10,234	11,549	30,490	38,584	105,097	49,655	47,064	26,133	14,311
	전단(장)	–	–	75,823	130,022	143,337	136,161	150,610	220,666	197,226	176,373	265,832
	기타(개)	–	–	106,604	203,172	226,686	2,208,941	368,983	472,338	572,925	604,621	593,854
언론	방송(회)	–	–	97,960	125,572	33,786	12,285	16,644	8,744	10,036	11,835	16,232
	신문(회)	–	–	3,501	4,077	4,933	6,076	5,698	4,924	2,970	5,354	9,588
	잡지(회)	–	–	4,015	211	421	231	917	1,154	1,307	618	361
인터넷(일)		–	–	141,616	115,311	86,604	75,638	135,524	570,591	444,223	889,393	1,078,026
캠페인(회)		–	–	376	671	884	945	952	1,238	1,086	970	1,116
전체기타(회)		–	–	61,351	–	–	52,547	108,311	84,560	796,422	1,373,028	11,087,552
계		18,146	149,814	601,570	744,916	687,280	2,756,059	1,133,017	1,673,085	2,322,553	3,315,967	13,336,719

* 2001년, 2002년은 홍보사업 현황이 세부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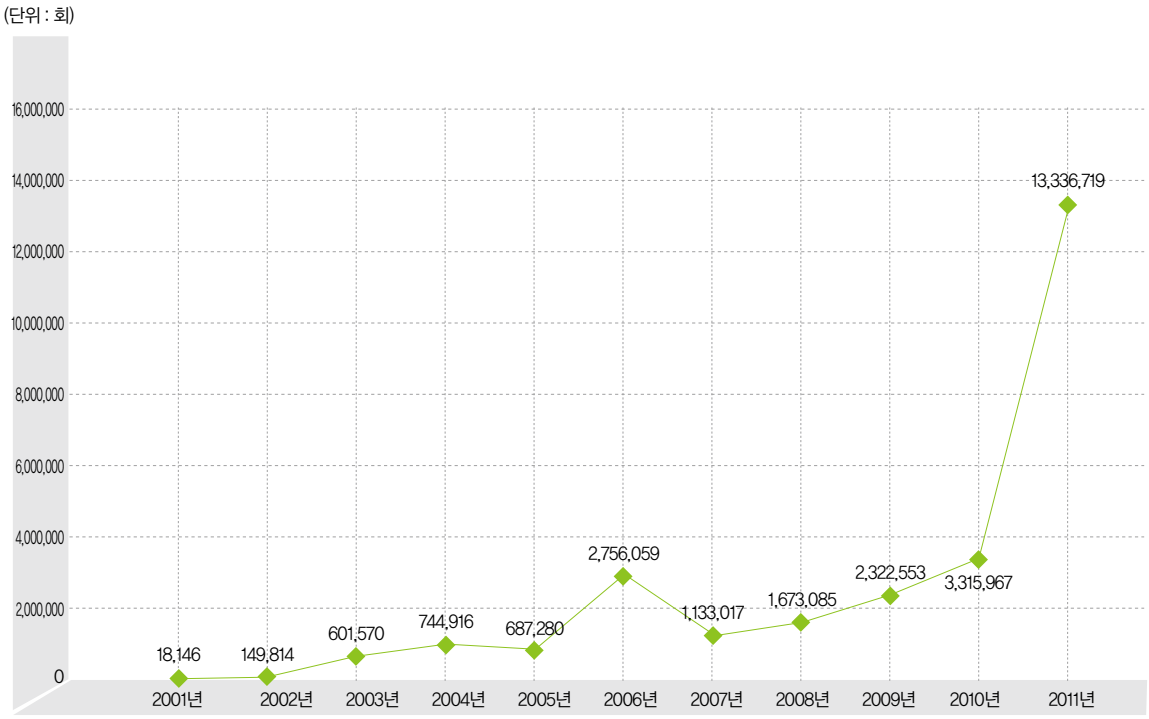

〈그림 8-26〉 연도별 홍보사업 실적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제 9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1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분석과 지난 11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고 접수 현황

가. 신고 접수

2011년 신고 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 비해 10,146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신고 접수 현황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1년 신고 접수 건수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 비율은 82.1%로 전년도 80.5%에 비해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및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 건수는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자들의 이해가 높아졌고,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에는 신규로 접수된 사례와 이전에 신고된 적이 있는 재신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1년 신고 접수된 10,146건 중 1,325건은 재신고 사례이며 이는 전체의 1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건수는 지난 11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1년 재학대 신고사례는 전년도에 비해 11.9% 정도 증가하였다. 재신고 건수와 재학대 건수의 증가는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

나. 신고의무자 신고율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결과 지난 11년 동안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686건에 비해 2011년도 2,704건으로 3.9배 증가하였지만 201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건수 비율은 32.5%로 지난 11년 동안 평균 30.0%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2년 8월에 아동복지법이 전

부 개정됨에 따라 22개 직군으로 확대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건수가 예전보다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여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79.0%인 반면,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69.8%로 나타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종에 종사하는 만큼 비신고의무자보다 신고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건수도 현재보다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신고의무자 직군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는 분위기 및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발생 현황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11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6,058건 중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중복학대는 43.3%, 방임은 29.4%의 비율을 보였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중복학대와 방임이 30~4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는데, 이를 통해 아동학대는 단일 유형의 학대보다 여려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사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각각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아동학대사례의 인구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의 성별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분포에서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43.0%로 전년도 학령기 아동 비율이 44.7% 인데 비해 다소 감소되었다. 반면, 만 0~2세의 영아 비율에서는 2010년도는 9.4%의 비율을 보였으나 2011년도는 11.7%로 2.3% 정

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아동학대에 상당히 취약하며 학대로 인한 영향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아 대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들은 반항 · 충동 · 공격성, 학교부적응, 학습문제와 같은 적응 · 행동 특성과 주의산만, 불안,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서 · 정신건강 특성 등이 주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피해아동 특성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체계 내에서 정서 · 정신건강 및 적응 행동 문제 해결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이 지원 · 활성화되는 것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학대행위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30~40대, 즉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연령에 집중되어 있어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83.1%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30.2%, 2011년에는 32.4%로 증가하였다. 친부에 의한 학대가 점차 감소되는 반면, 친모에 의한 학대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영아대상 아동학대의 증가와 연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대행위자 유형 중 타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2011년도는 4.4%로 2009년 3.5%, 2010년 4.0%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 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 이상으로 아동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 감독과 함께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망 형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조치결과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4,462건, 격리보호가 1,555건으로 원가정보호가 격리보호보다 약 2.9배 많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격리보호조치된 1,555건 가운데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413건으로 격리보호 대비 26.6%의 비율을 보여 격리보호된 대부분의 아동들이 원가정 복귀 보다는 장기격리보호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해아동의 가정과 환경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시 및 관련 법, 제도 마련 등의 제반 여건들이 신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 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한 비율은 83.5%이며, 심각한 학대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된 행위자 비율은 6.4%이다. 그리고 고소 · 고발된 389건의 사례 중 62건(보호처분 13건, 형사처분 49건)만 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의 경우 고소 · 고발된 건은 290건이며 법원 판결 받은 건수도 75건으로 전체 고소 · 고발 건수 중 1/4정도로 파악되었는데 2011년도는 법원 판결 받은 건수가 전체 고소 · 고발 건수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점점 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치료적 개입이 더 활성화되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4 서비스제공 현황

2011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에게 310,406회, 아동학대행위자에게 51,145회,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32,071회 제공하였다. 서비스제공 총량 대비 피해아동에게 78.9%,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3.0%,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8.1%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어 아동학대사례개입이 피해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꺼리는 비자발적인 대상자라는 점과 서비스 참여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 등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상담 및 심리치료에 준하는 수준이 아닌 학대행위자 및 부모 또는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도 적극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5 특성별 아동학대현황

재학대 신고 사례는 2011년 총 56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대비 9.3%의 재학대 발생률을 보였다. 재학대 사례 중 중복학대가 48.7%로 높은 비율을 보여 전체 아동학대 유형에서 중복학대가 43.3%를 차지한 것에 비해 5.4%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5.6%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이 83.1%인데 비해 2.5%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사례의 경우 총 231건으로 2011년 아동학대사례 총 6,058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아동 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하면 1.53‰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 0.63‰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가족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대책 마련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를 살펴본 결과 13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 사망아동의 77.0%를 차지하여 학령기 전의 아동들이 학대에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보호능력이 없으며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호자들이 아동을 잘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아동 사례 유형을 살펴본 결과 방임이 8건(61.5%)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중복학대가 3건(23.1%), 신체학대는 2건(15.4%)이었다. 또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친부모, 계모, 부모의 동거인으로 나타나 사망아동

사례 모두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망아동 중 75.0%가 20~30대의 친모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냄에 따라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이 적극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 중 3세 미만의 영아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피해아동 사례 중 영아의 비율은 11.7%에 이르렀다. 영아 대상 학대유형으로 방임이 48.1%로 나타나 전체 아동학대 유형에서 방임이 31.9%의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6.2%나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아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 비율이 66.7%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인 43.0%보다 23.7% 이상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대행위자 특성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2.4%,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이 25.2%에 달해 영아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72.9%,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에서 7.9%로 나타났는데 전체 아동학대사례 발생장소 중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인데 반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 교육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 내 발생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는 여성이 76.3%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여성 비율인 43.0%보다 33.3%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많았는데 시설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여겨지며 더욱 시설 종사자들의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시설 내 발생사례의 학대유형을 분석해보면, 중복학대(50.4%) 다음으로 신체학대(24.4%), 정서학대(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방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파악된 근거를 토대로, 시설 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시설 내 아동학대

사례 개입 지침 마련 및 관련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장애아동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 24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전체 장애 아동 중 피해아동 보호율은 약 2.59‰로 나타나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인 0.6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이 장애의 문제를 지닐 경우 그러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치료시설 조차 부재하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장애아동, 발달지체아동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특수 위탁가정, 그룹홈이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호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체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장애아동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및 적극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권리 및 자기보호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훈육방법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양한 대상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사업은 총 20,307회, 787,997명으로 파악되었다.

11년 동안의 연도별 교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33,345명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2011년 787,997명에 이르러 교육대상자 수가 24배 정도 증가하였다. 시설종사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 인원은 2003년 2,472명으로 시작하여 2011년 87,941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교육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로 인해 교육 대상층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활성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 및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언론홍보, 홍보물배포 등을 수행하였고 총 13,336,719회로 집계되었다. 홍보사업으로는 2001년 18,146회로 시작하여 2011년 13,336,719회까지

증가하여 약 7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방송, 신문 등의 횟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인터넷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가 다양하게 추진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2.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전한 아동성장 환경 조성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등 아동학대예방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가.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 가정지원 프로그램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중 만 6세 미만이 1,441건으로 이는 전체 피해아동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학대에 의한 사망아동 사례 13건 중 10건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되었다. 영유아는 스스로 보호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에 아동학대에 매우 취약하며, 학대피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치명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정책과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등 일련의 과정 중에 겪는 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등을 통한 아동 및 보호자 신체 · 정서적 건강관리, 부모교육,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검진 및 접종 시기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알림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지 이외에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것 또한 의료적 방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스크리닝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선별하고 이를 위험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관리 플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및 보건체계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이 제도를 아동보호체계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여 영유아 대상 학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성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위 사업의 경우, 센터별로 300세대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포괄적이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대상 및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겠고 각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 연계된 정책이 개발되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위험군 대상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피해아동 보호율이 전체 피해아동 보호율보다 약 4.8배 높은 2.59‰로 나타나 장애아동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장애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의 경우 자녀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이 주된 아동학대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개입방향이 가족 기능 강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양육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장애아동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학대예방교육 및 심리 · 정서적 지원 및 치료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및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공동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기에는 아동권리 및 자기보호훈련에 대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정착화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소 및 산부인과 등을 통한 임산부 대상 출산예비교육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및 아동학대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은 지원되지 않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산전 · 후 교육에 대한 강제성 부여 및 정부의 예산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 발달 단계별 및 생애주기별 양육 교육도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약을 통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 정규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그 시간을 통해 바람직한 자녀양육 기법,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을 집중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장애아동 부모, 다문화가족 부모 등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체계도 마련되어 특성에 맞는 예방 전략을 함께 펼쳐나가는 것도 수반될 필요가 있겠다.

2 안전한 아동성장환경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가. 학대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실시

2011년 재학대 신고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9.3%로 파악되었고 학대행위자도 부모에 의한 학대가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는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3.1%인데 반해 재학대 신고 사례는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또 다시 학대에 노출된다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치명적이므로 사전에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형사처분을 통한 처벌 보다는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 · 치료하여 근본적으로 학대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담수강명령, 치료위탁, 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놓고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및 시설 입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 마련과 아울러 불이행시 처벌조항 등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법원판결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조치결정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의 보호를 위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을 의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을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그대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피해아동들이 재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격리시키는 최종 결정기관으로 오해하는 학대행위자들로 인해 상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광의적으로는 친권의 일시적인 제한과 관련된 제재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과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행정처분이 아닌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법원 판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국 법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판사가 365일 동안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적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전담재판부제도 도입과 같은 사법적 시스템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변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폭력적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다. 심한 경우 학대행위자는 상담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원들의 소진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상담원의 잦은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 소진은 단순히 상담원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을 통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조항과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이 내려지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조사를 제외한 아동학대사례개입 중에 학대행위자가 기관으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학대행위자가 상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 위협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나 개입단계를 한정짓지 않고 모든 아동학대사업 수행 시에도 상담원 신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아동복지법 상 경찰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상의 규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경찰로 접수된 사건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사건내용 또는 정보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아동의 보호 및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 공유 협조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아동학대사례 개입에 대한 정책 및 사망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신속한 개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법경찰관리는 경찰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었거나 형사 입건되지는 않으나 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이 필요한 사건, 그리고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아니라도 아동의 사망 또는 상해 사건에 대한 직무를 행하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 관련 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신고 및 현장조사 이후의 아동보호절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법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아동학대예방 업무 공동 추진체계 마련

가.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부처 간 업무 협의 · 조정

아동학대예방사업은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 발달을 도모하며, 행위자의 회복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종국에는 피해아동을 가정에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그 총괄적인 업무를 계획하여 수립하게 되나,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적인 요인뿐 아니라 아동과 행위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보건복지부(및 산하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사업 추진,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및 교도를 위한 사업 처리 업무수행,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과정과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과 업무연계가 필요하며 아울러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례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부처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찰청, 경찰청, 법원, 법무부와는 아동학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체계 및 학대행위자 처벌 및 관리에 관한 제

도 마련에 있어서 충분한 합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가족부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협력 기준을 마련하며,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부처 간 업무처리 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아동학대예방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학대예방협의체(가칭)'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각 부처마다 계획된 예산이 다르고, 추진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부처들 간의 협의만으로는 원활한 업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를 아우르고 총괄하는 제 3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활성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 지역사회, 사회적인 문제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가용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학대예방 업무의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종류와 업무 협력 내용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가용 자원의 편차가 심하고 협력체계와의 관계가 임시 방편인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적극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협력을 의무화하거나 필수 협력기관을 명시하고 협력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훈령 제545호)'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 훈령에서는 필수연계기관을 지정하고, 협력의무 및 역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통합지원

체계 운영협의회 및 실행위원회, 수당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해볼 필요가 있겠다.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부 록

용어집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부록

용 어 집

[신고 접수]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신고 접수 (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개입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24조)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됨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아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2012년 8월 5일 시행 예정)

학대행위자 : 아동에게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보호자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 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 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복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미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동일한 학대 유형을 보고한 사례 *2012년부터는 개입 중인 모든 사례가 아닌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정 이전 사례에 한함.

일반상담(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 접수된 사례로 중복신고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사례 진행 중 재신고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유형이 있음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 접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 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 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 접수하였으나 사례판정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 접수된 사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아동복지법 제26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정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스크리닝척도 :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아동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를 구분할 뿐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학대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사용됨

(자체)사례회의 : 사례판정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사례판정위원회의 : 아동학대 사례판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정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정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잠재위험사례 : 사례판정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교육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일반사례 : 사례판정 유형 중 하나로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피해아동 보호율 :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수)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모 · 부자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미혼부 · 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친족(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사실혼포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계부 · 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양부 · 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위탁부 · 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조치결과 : 사례판정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위험사정척도 :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의 위험성과 위험 요인을 정확히 사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 사례판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 · 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격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 양육하는 것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격리한 이후 친족(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개별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집단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서비스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하며,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

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학대예방교육 : 훈련된 교육강사가 재학대 예방을 위해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

학습지원 : 피해아동의 학업 증진 및 심리 · 정서적 발달을 목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학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일시보호서비스 :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서비스

고소 · 고발지원 : 학대행위자가 고소 · 고발된 이후,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 ·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법원 동행 및 보조인 선임제도 신청 등을 지원하는 것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함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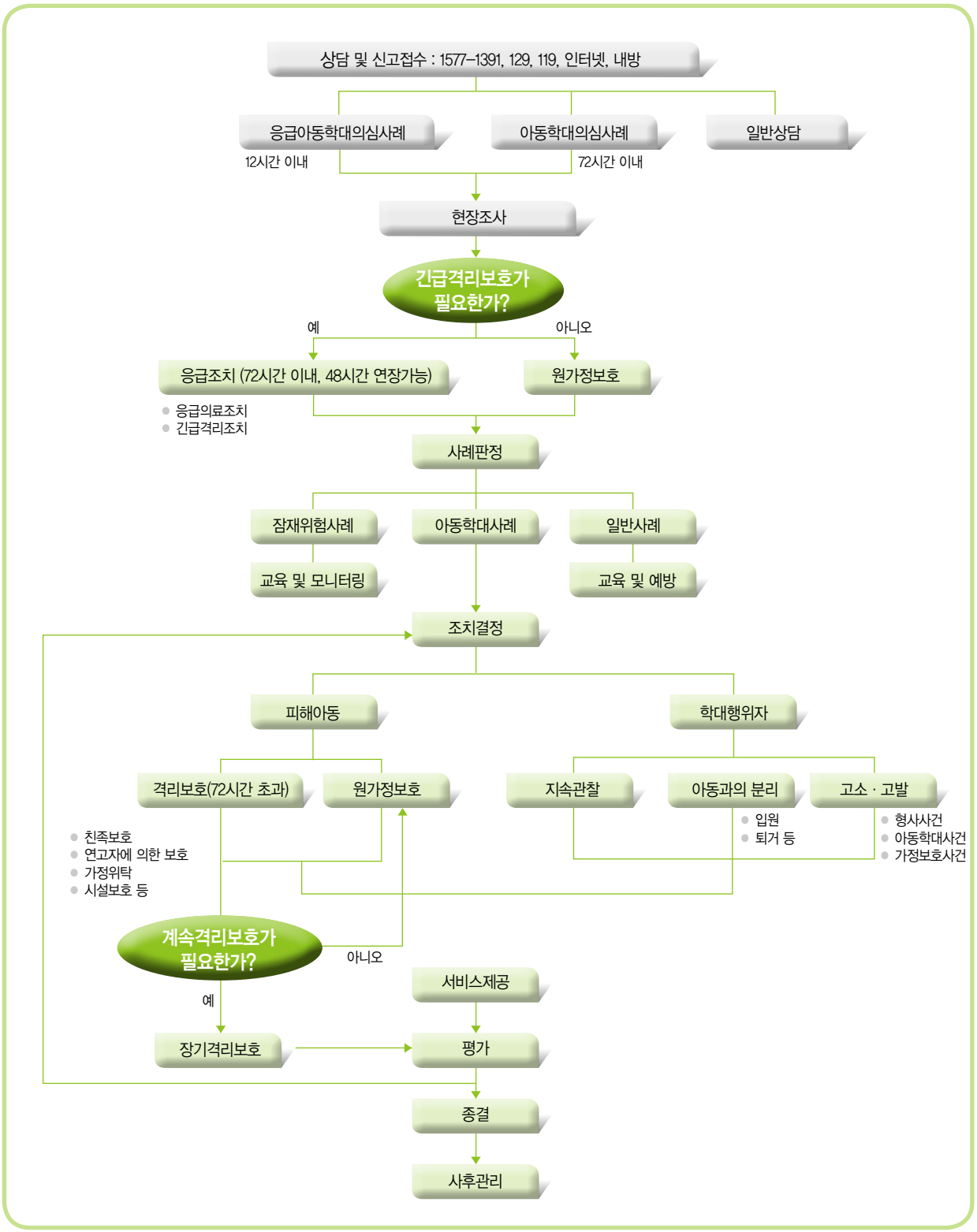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2년 5월 기준, 45개소)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 (7개소)	서울특별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child.seoul.go.kr	02-2040-4200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cps.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6길 102 세진빌딩 4층	gangseo.gni.kr	02-3665-5183~5
	서울은평 아동보호 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65 2층	ep1391.gni.kr	02-3157-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33 유현빌딩 2층	yongdungpo.gni.kr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나길 3 성지관 201호	seongbuk.gni.kr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층 401	mapo.sc.or.kr	02-422-1391
부산 (2개소)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구,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adong.busan.go.kr	051-242-1391
	부산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5층	www.bd1391.or.kr	051-507-1391
대구 (1개소)	대구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dg1391.or.kr	053-422-1391~2
인천 (2개소)	인천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평구, 계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제현빌딩 4층	inchon.gni.kr	032-515-1391
광주 (1개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www.cyber1391.or.kr	062-385-1391~3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	daejon.gni.kr	042-254-6790~1
울산 (1개소)	울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ulsan.sc.or.kr	052-245-9382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 (8개소)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길 20	suwon.gni.kr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60 금구빌딩 3, 4층	ui1391.gni.kr	031-877-8004
	경기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11 인성빌딩 3층	sungnam.gni.kr	031-758-1385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길 11 삼정프라자 7층	goyang.gni.kr	031-966-1391
	경기화성 아동보호 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송현빌딩 4층	hwaseong.gni.kr	031-297-6587
	경기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03 서전빌딩 5층 502호	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길 39 다남빌딩 204호	www.nyj1391.or.kr	031-592-9818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 4로 144 트윈타워 제A동 203호	www.ansan.sc.or.kr	031-402-0442
강원 (3개소)	강원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길 35	www.1391.org	033-244(3)-1391~2
	강원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50 삼성빌딩 4층	www.kd1391.or.kr	033-535-6350~3
	원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길 7	wonju.gni.kr	033-766-1391
충북 (3개소)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202길66-1	cheongju.gni.kr	043-217(6)-1391
	충북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종합보건복지센터	www.cchkorea.org/ccpa/	043-643-0943~4
	충북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광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 1길 19	www.cbnb1391.org	043-731-3685~7
충남 (2개소)	충청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 10길 25	chonan.gni.kr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보령북로 9 성일빌딩 5층	boryeong.gni.kr	041-931-6941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북 (3개소)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jeonju.gni.kr	063-283-1391~2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57	namwon.gni.kr	063-635-1391~4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77 2층	iksan.gni.kr	063-852-1391
전남 (2개소)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완도군, 강진군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삼산로 92-5	www.e1391.or.kr	061-753-5125~8
	전남목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mokpo.gni.kr	061-285-1391
경북 (4개소)	경상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문경시, 의성군, 군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길 24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안동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	www.ad1391.org	054-853-1391
	경북포항 아동보호 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청송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길 6-4 3층	pohang.gni.kr	054-284-1391
	경북구미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2-1	gumi1391.or.kr	054-455-1391
경남 (2개소)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www.gnw1391.or.kr	055-757-1391
제주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	www.jj1391.or.kr	064-712-1391~4
	서귀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	www.sgp1391.org	064-732-1391~2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12년 6월
발 행 일 : 2012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 민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최윤정, 김기해, 전수영, 강주희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 : 02-558-1391
인 쇄 : 한빛문화사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